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2021. 10.

Hankook Research

제 출 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 10.

연구 수탁기관: (주)한국리서치

연구책임자: 정관철 부장

연구실무자: 박강서 차장

박세준 연구원

CONTENTS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제 1 장. 서론	1
I. 조사배경 및 목적	3
II. 조사설계	4
III. 조사내용	7
IV. 응답자 구성	9
제 2 장. 인식도 조사결과 요약	13
제 3 장.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21
I.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인식 변화	23
1. 인식 변화	23
1) 일반국민	24
2) 법 적용대상	26
3)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29
4)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 변화	30
5)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	32
II.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35
1.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35
2.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되는 정도	36
3.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도	37
III.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의견	38
1. 가액범위	38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의 적정성	38
2) 선물금액 한도 5만원의 적정성	39
3)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의 적정성	40
3-1)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한시적 20만원 상향	41
4) 청탁금지법 선물금액이 일반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	42
5) 일반국민/기업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 별도 마련의 필요성	43
6) 경조사비 한도 5만원의 적정성	44
7)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정성	45

CONTENTS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업종 변화	46
1)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46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종 전반 매출에 대한 의견	48
IV.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50
1.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정도	50
2. 청탁금지법 교육 경험	51
3. 청탁금지법 교육 충분성	52
4. 청탁금지법 교육 받을 의향 및 선호하는 교육방식	53
5.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 필요성	54
6. 청탁금지법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55
제 4 장. 인식도 시계열 분석	57
1.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와 효과	59
1)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인식	59
2)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 변화	60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62
4)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63
5)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 도움 정도	64
6)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도	65
7)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66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인식	67
1) 가액 범위의 적정성	67
3. 청탁금지법 개선방향	70
1) 청탁금지법 교육 경험 및 충분성	70
2)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71
제 5 장. FGI 조사 결과	73
제 6 장. 제 언	79
부록1. 설문지	85
부록2. 결과표	107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CHAPTER

—

1

서론



I. 조사배경 및 목적

1. 조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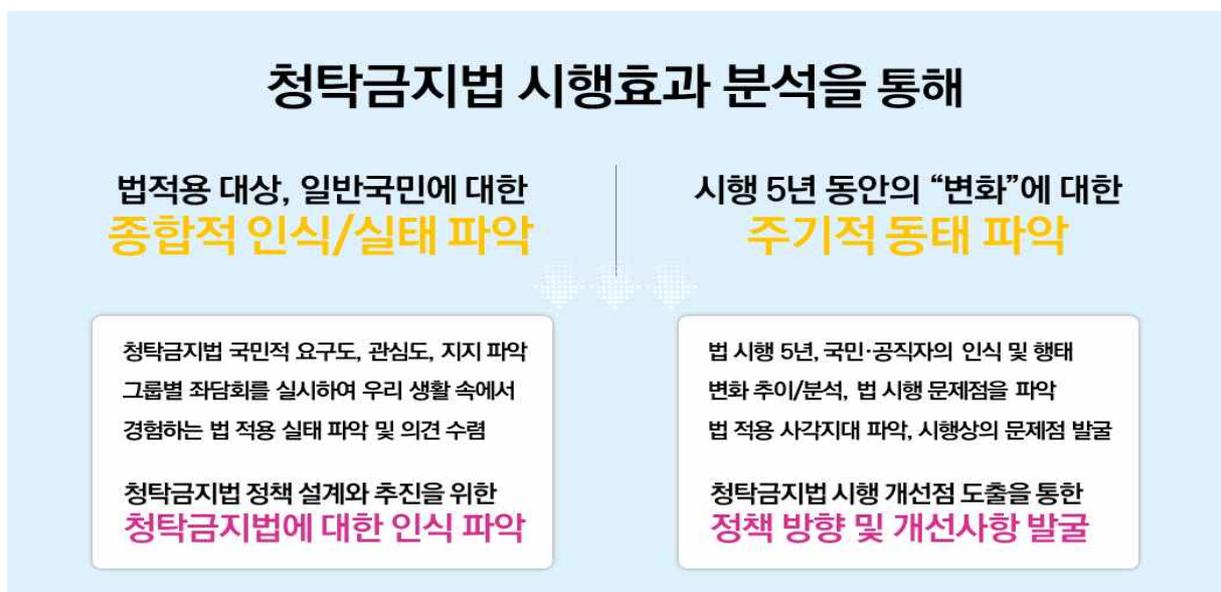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어 시행 5년차를 맞이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불러왔다. 이중 청탁금지법의 가장 큰 성과는 반부패·청렴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 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른바 청렴으로의 의식전환에 있다고 생각한다. 공직사회와 민간 곳곳에 남아있는 부정청탁과 금품등 수수라는 그간의 낡은 관행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청탁금지법과 이 법을 준수하려는 공직자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지난 5년간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 공직자 등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법 시행의 효과를 파악하고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본 조사가 기획되었다.

2. 조사 목적

본 조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청탁금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법적용대상자와 일반국민들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 및 행태 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결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림1-1〉 조사 목적



II.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서 (1)전국의 만 19세 이상에 해당되는 일반국민과 (2)국가직/지방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하는 공직자, 중앙지/지방지 기자, 방송기자/PD, 인터넷신문기자에 해당하는 언론인,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교육계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가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는 (3)음식점업과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및 도소매업 등 영향업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대상자별로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한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한 조사 그룹별 구성과 표본수, 표본오차,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은 아래와 같다.

〈표1-1〉 표본구성 현황

그룹		구성	할당 수		응답자 수		표본 오차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일반국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800명		±3.5%p	2021. 7. 22. ~ 8. 04. (전화조사)
법적응대상	공직자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550	350명	550명	350명	±4.2%p	2021. 7. 23. ~ 8. 04. (전화조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00명		200명		
	언론인	중앙지/지방지 기자, 방송기자, 인터넷신문기자	150명		150명		±8.0%p	2021. 7. 26. ~ 8. 09. (웹조사)
	교육계	전국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	300명		303명		±5.6%p	2021. 7. 23. ~ 8. 09. (전화조사&웹조사)
영향업종		전국 음식점업 및 농수축산화훼업	200명		200명		±6.9%p	2021. 7. 23. ~ 8. 04. (전화조사)
합계			2,000명		2,003명		±2.2%p	

일반국민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2021년 6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 성, 연령대별 비례할당을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와 웹조사를 활용하였다.

〈표 1-2〉 일반국민 대상 표본구성 현황

구분	할당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800	68	65	65	62	76	73	79	77	108	127
서울	152	14	15	13	13	14	14	13	14	19	23
부산	54	4	4	3	4	6	5	5	5	8	10
대구	37	3	3	3	3	3	3	4	4	5	6
인천	46	4	4	4	4	4	4	5	5	6	6
광주	22	2	2	2	2	2	2	2	2	3	3
대전	22	2	2	2	2	2	2	2	2	3	3
울산	17	2	1	1	1	2	2	2	2	2	2
경기	206	19	17	18	17	21	21	21	20	24	28
강원	24	2	2	2	1	2	2	2	2	4	5
충북	25	1	2	2	2	2	2	3	2	5	4
충남	37	3	3	3	3	4	3	4	3	5	6
전북	28	2	2	2	2	2	2	3	3	4	6
전남	29	2	2	2	2	2	2	3	3	5	6
경북	40	3	2	3	2	4	3	4	4	7	8
경남	50	4	3	4	3	5	5	5	5	7	9
제주	11	1	1	1	1	1	1	1	1	1	2

주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에 포함함

공무원은 2020년도 「행정자치통계연보」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구분 및 직급을 고려하여 할당하였다. 공무원은 1차로 국가직 공무원(중앙)과 지방직 공무원(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고, 직급에 따라 관리직(4급 과장급 이상)과 실무직(5급 사무관 이하)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모집단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직 3-4급과 지방직 4급 이상 공무원은 분석을 위한 표본수 확보를 위해 30명씩 강제할당한 후 비례할당을 실시하였다.

〈표1-3〉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표본구성 현황

구분	모집단	할당 수	응답자 수	표본추출 방법	
국가직	3-4급	7,023	40	40	최소 30표본 강제할당 후 비례할당
	5급 이하	150,770	80	80	
지방직	4급 이상	4,478	40	40	최소 30표본 강제할당 후 비례할당
	5급 이하	340,160	190	190	
공직유관단체	관리자	-	40	40	1:4 임의할당
	실무자		160	160	
합계			550	55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모집단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전체 유효표본수를 200명으로 확정 후 관리자와 실무자 분포를 1:4 비율로 할당하여 진행하였다. 공직유관단체에서 관리자는 부장급 이상으로, 실무자는 차장급 이하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유관단체의 누리집을 확인하여 전화번호를 수집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언론인은 정확한 모집단 분포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1) 중앙지 기자, (2) 지방지 기자, (3) 방송사 기자/PD, (4) 인터넷 언론사 4가지 구분으로 분류한 뒤 세부 집단별로 임의할당 하였다. 조사는 웹조사 방식을 활용하였다.

〈표1-4〉 언론인 표본구성 현황

구분	할당 수	응답자 수	표본추출 방법
중앙지 기자	35	39	언론사 직종별, 소속기관별 임의할당
지방지 기자	50	53	
방송 기자/PD	35	38	
인터넷신문기자	30	20	
합계	150	150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별 교원집단을 분류한 후 임의할당하였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이 초·중·고등학교 교사에 비해 대학교 교수에 미치는 영향(초청 강의, 자문 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관수에 비례하여 할당한 것이 아닌 1:1 비율로 균등할당한 것이다. 이러한 할당 이후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설립유형에 상관없이 권역별 비율을 고려하여 비례할당 하였고, 대학교 교원은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원의 비교를 위하여 각 50표본, 100표본으로 임의할당 하였다. 할당된 표본은 교원 수가 아닌 학교 수를 의미하며, 추출된 학교당 1명의 교원을 임의로 추출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표 1-5〉 교원 표본구성 현황

구분	할당 수	응답자 수	표본추출 방법	
초등학교	50	50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1:1비율로 균등할당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원은 권역별 비례할당, 대학교 교원은 국공립/사립 여부를 고려하여 임의할당(표본추출을 위한 할당은 학교 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학교당 1명의 교원을 임의추출)	
중학교	50	50		
고등학교	50	50		
대학교	국공립	50		53
	사립	100		100
합계	300	303		

영향업종은 모집단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조사에서는 (1) 음식점업, (2) 농축수산물화훼 생산업, (3) 농축수산물화훼 도소매업으로 나눈 뒤, 3개 분류 안에서 세부 업종 분류를 고려하여 임의할당 하였다. 영향업종 조사의 경우 2019년 사업체 한국전화번호부에서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무작위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표1-6〉 영향업종 표본구성 현황

대분류	중분류	할당 수	응답자 수
음식점업	한식 음식점업	20	20
	중식 음식점업	20	20
	일식 음식점업	20	20
	서양식 음식점업	20	20
	기타 음식점업	20	20
	소계	100	100
생산업	농업	10	11
	수산업	10	11
	축산업	10	6
	화훼업	10	6
	소계	40	34
도매업/소매업	과실 및 채소 도매업	7	7
	육류 도매업	8	11
	수산물 도매업	8	8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7	8
	과실 및 채소 소매업	7	6
	수산물 소매업	8	9
	육류 소매업	8	7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7	10
	소계	60	66

Ⅲ. 조사내용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이를 응답 대상자들에게 전화 혹은 웹조사 하는 방식을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3종으로 구성되었으며, (1) 일반국민 대상과 (2) 법적용대상(공직자, 언론인, 교원) 집단 (3) 영향업종 설문으로 각각 설계되었다. 각 설문지는 대부분 유사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설문 문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집단별 특징이나 영향력 등을 반영하기 위해 독자적 설문 문항을 추가하였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축수산물 선물금액에 대한 한시적 상향, 일반국민 및 기업 이해 관계자간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 별도 마련의 필요성,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에 대한 문항 등이 추가되었다.

〈표 1-7〉 설문 문항

문항	조사 대상				
	일반 국민	공직자	언론인	교원	영향 중
I.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	○	○	○	○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	○	○	○	○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	○	○	○	○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한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상한)	○	○	○	○	○
일반국민 및 기업 간 청탁금지법 선물 가액기준에 영향 받는지 여부	○	○	○	○	○
일반국민 및 기업간 적용할 선물 가액기준 마련의 필요성	○	○	○	○	○
경조사비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	○	○	○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한 의견	40만원	×	○	×	×
	100만원	×	×	○	×
II.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변화					
부절적인 행위에 대한 인식	○	○	○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변화들	○	○	○	○	×
직무수행 공정성	○	○	○	○	×
각자내기 인식	○	○	○	○	×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 (부정청탁, 접대 및 선물제공, 금품제공)	○	○	○	○	×
사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 유무	×	×	×	×	○
사업체 매출 변화	×	×	×	×	○
업종 전반의 매출감소 여부	×	×	×	×	○
III.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	○	○	○	○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되는 정도	○	○	○	○	○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	○	○	○	×
IV.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정도	○	○	○	○	○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받은 경험	×	○	○	○	×
청탁금지법 교육이 충분한 정도	×	○	○	○	×
선호하는 청탁금지법 교육 방식	×	○	○	○	×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 필요성	○	○	○	○	×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	○	○	○	○

IV. 응답자 구성

응답자 분포표_1) 일반국민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800)	100.0
성별		
남자	(396)	49.5
여자	(404)	50.5
연령		
20대	(134)	16.8
30대	(128)	16.0
40대	(148)	18.5
50대	(156)	19.5
60대 이상	(234)	29.3
거주 지역		
서울	(152)	19.0
경기/인천	(252)	31.5
대전/세종/충북/충남	(84)	10.5
광주/전북/전남	(79)	9.9
대구/경북	(77)	9.6
부산/울산/경남	(121)	15.1
강원/제주	(35)	4.4
직업		
농/임/어업	(25)	3.1
자영업	(117)	14.6
판매/영업/서비스직	(68)	8.5
생산/기능/노무직	(40)	5.0
사무/관리/전문직	(273)	34.1
전업주부	(136)	17.0
학생	(50)	6.3
무직/퇴직/기타	(91)	11.4
잘 모르겠다	(1)	0.1

응답자 분포표_2) 공직자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550)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63.6
공직유관단체	(200)	36.4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21.8
지방직	(230)	41.8
공직유관단체	(200)	36.4
직급		
관리자	(120)	21.8
실무자	(430)	78.2
기관 소재지		
서울	(54)	9.8
경기/인천	(106)	19.3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28.5
광주/전북/전남	(60)	10.9
대구/경북	(56)	10.2
부산/울산/경남	(93)	16.9
강원/제주	(24)	4.4
성별		
남자	(363)	66.0
여자	(187)	34.0
연령		
20대	(59)	10.7
30대	(176)	32.0
40대	(171)	31.1
50대	(140)	25.5
60대 이상	(4)	0.7

응답자 분포표_3) 언론인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150)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42.7
	지방언론	(66)	44.0
	인터넷 언론	(20)	13.3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74.0
	방송기자	(16)	10.7
	PD	(23)	15.3
성별			
	남자	(115)	76.7
	여자	(35)	23.3
연령			
	20대	(1)	0.7
	30대	(40)	26.7
	40대	(58)	38.7
	50대	(44)	29.3
	60대 이상	(7)	4.7

응답자 분포표_4) 교원

(단위 : %)

Base=전체		사례수 (명)	비율
▣ 전체 ▣		(303)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16.5
	중/고등학교	(100)	33.0
	대학교	(153)	50.5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49.5
	사립	(153)	50.5
기관 소재지			
	서울	(91)	30.0
	경기/인천	(76)	25.1
	대전/세종/충북/충남	(35)	11.6
	광주/전북/전남	(35)	11.6
	대구/경북	(25)	8.3
	부산/울산/경남	(28)	9.2
	강원/제주	(13)	4.3
성별			
	남자	(156)	51.5
	여자	(147)	48.5
연령			
	20대	(21)	6.9
	30대	(48)	15.8
	40대	(88)	29.0
	50대	(106)	35.0
	60대 이상	(40)	13.2

응답자 분포표_5) 영향업종

(단위 : %)

Base=전체 ▣ 전체 ▣		사례수 (명) (200)	비율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50.0
	농수축산화훼업	(100)	5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5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17.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17.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16.0
세부업종			
	한식	(20)	10.0
	중식	(20)	10.0
	일식	(20)	10.0
	서양식	(20)	10.0
	음식점 기타	(20)	10.0
	농업	(24)	12.0
	축산업	(31)	15.5
	수산업	(21)	10.5
	화훼업	(24)	12.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6.5
	경기/인천	(38)	19.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15.5
	광주/전북/전남	(33)	16.5
	대구/경북	(37)	18.5
	부산/울산/경남	(40)	20.0
	강원/제주	(8)	4.0
상권			
	관공서 인근	(19)	9.5
	대형오피스 밀집지	(4)	2.0
	학교 주변	(15)	7.5
	주택가	(44)	22.0
	도시 변두리	(38)	19.0
	대도시 교외	(2)	1.0
	역세권	(8)	4.0
	도심 유흥 변화가	(19)	9.5
	농어촌	(26)	13.0
	시장	(11)	5.5
	기타	(14)	7.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23.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22.5
	1억-5억원 미만	(42)	21.0
	5억-10억원 미만	(21)	10.5
	10억원 이상	(24)	12.0
	잘 모르겠다	(22)	11.0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79.5
	5인 이상 10인 미만	(21)	10.5
	10인 이상	(20)	10.0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CHAPTER

—

2

인식도 조사결과 요약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인식 변화

- 법 적용대상자 및 일반국민 10명 중 8명,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탁, 선물, 접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0.0%, 교원 86.8%로 다른 법 적용대상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그 외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공무원(85.7%), 일반국민(81.3%), 언론인(78.0%) 순임

- 일반국민 10명 중 6명,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응답
 - 법 시행 이후 나타난 일반국민의 행태 변화로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응답이 60.2%로 가장 높음
 -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 대한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는 응답은 58.6%임

- 언론인을 제외한 법 적용대상자 및 일반국민 10명 중 7명,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응답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는 응답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86.5%), 공무원(83.4%), 일반국민(73.6%), 교원(73.3%), 언론인(44.7%)순임

-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5년전 대비)
 - ‘공직자에 대한 접대/선물 제공 행위 감소했다’와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 감소했다’는 응답이 각각 80.8%, 80.7%로 가장 높고,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감소했다’는 응답은 76.3%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 청탁금지법,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세
 -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7.5%)에서 가장 높음
 - 다음으로 공무원(96.3%), 교원(93.7%), 일반국민(87.1%), 언론인(81.3%) 순임
 - 한편, 영향업종에서는 64.5%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함

- 청탁금지법, ‘공직의 부조리관행,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 10명 중 7명 이상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은 공무원(95.7%)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4.5%)에서 90% 이상으로 높고, 다음으로 교원(88.4%), 일반국민(78.7%), 언론인(68.7%) 순임
 - 한편, 영향업종은 59.0%만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함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된다’, 언론인 14.7%
 -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조사대상 중 언론인(14.7%)에서만 10% 이상 응답
 - 그 외 집단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0% 미만임(일반국민 7.6%, 공무원 4.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4.5%, 교원 6.9%)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 청탁금지법 지지, 공직자 96% 이상, 영향업종 종사자 60% 이상에서 지지
 -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공무원 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6.5%, 교원 93.1%, 일반국민 87.5%, 언론인 79.3%, 영향업종 62.5% 순임

- 청탁금지법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로는, ‘부정청탁을 유발하는 법 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해야 한다고 응답
 - 일반국민의 경우 과반이 ‘법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은 반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영향업종은 ‘법 제도 개선’을 필요한 것으로 응답함
 - 언론인(64.7%)과 교원(61.4%)의 경우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큰 편임

-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 ‘필요하다’ 우세
 - 현행 청탁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모든 집단에서 약 75%를 상회하고 있음
 - 일반국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에서는 80%를 상회, 공무원은 75.1%, 언론인은 76.7%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업종 변화

- 법 시행 이후 본인 사업체 ‘매출 영향 없다’ 53.0%, ‘매출 영향 있다’ 43.0%
 - 영향업종 종사자 200명 중 사업체 매출에 영향이 없다는 응답(53.0%)이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43.0%)보다 10.0%p 높음
- 법 시행 이후 업종 전반 매출, ‘감소했다’ 53.5%, ‘감소하지 않았다’ 42.5%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종 전반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해, ‘감소했다’는 응답이 53.5%,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2.5%로, 감소했다는 응답이 11.0%p 높음

청탁금지법 가액범위에 대한 의견

- 식사금액 한도 3만원, 선물금액 한도 5만원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
 - 식사금액 한도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은 70% 이상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음
 - 선물금액 한도 5만원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언론인과 영향업종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60% 이상 ‘적정하다’고 평가함
-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영향업종에서는 70% 내외로 ‘적정하다’는 응답, 일반국민은 67.0%, 언론인은 58.0%가 ‘적정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한시적 20만원 상향, ‘상향 필요’와 ‘유지하자’는 의견이 팽팽
 - 일반국민, 공무원, 교원의 50% 이상이 ‘기존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영향업종의 50% 이상이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응답
- 일반국민과 기업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이 우세
 - 일반국민, 공무원, 언론인, 교원, 영향업종의 60% 이상 ‘영향 받는다’ 응답, 언론인은 57.0% ‘영향 받는다’ 응답

- 일반국민과 기업에 적용할 가액기준 마련,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의 60% 이상 ‘불필요’ 응답, 일반국민과 교원에서 50% 이상 ‘불필요’ 응답
 - 반면 영향업종의 경우 51.0%가 ‘필요’ 응답

- 경조사비 한도 5만원,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
 - 경조사비 한도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언론인(49.3%)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55% 이상으로 우세함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
 -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시간당 40만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각각 79.1%, 72.5%로 나타남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에 대해 ‘적정하다’는 응답이 국공립 교원의 경우 62.7%, 언론인 58.7%, 사립 교원 53.6%로 나타남

요약 총평

-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모든 집단에서 우세함
 - 우리 국민 10명 중 8-9명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적극 지지
 - 공무원(96.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 교원(93.1%) 등 절대다수가 지지함

- 응답자의 대다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부조리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함
 - 모든 집단에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우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7.5%, 공무원 96.3%, 교원 93.7%, 일반국민 87.1%, 언론인 81.3%, 영향업종 종사자 64.5%)
 -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긍정적 평가가 우세함
(공무원 95.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4.5%, 교원 88.4%, 일반국민 78.7%, 언론인 68.7%, 영향업종 종사자 59.0%)

○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접대 및 선물제공 행위, 금품제공 행위가 감소했다고 응답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10명 중 9명이 법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부정청탁 행위, 접대/선물제공 행위, 금품제공 행위가 감소했다는데 동의
- 우리 국민 10명 중 6-7명은 부정청탁 행위, 접대/선물제공 행위, 금품제공 행위가 감소했다는데 동의

동의 비율	1)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감소하였다	2) 공직자에 대한 접대/선물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3)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일반국민	66.7	71.4	70.8
공무원	92.9	95.4	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91.0	92.5	92.5
언론인	57.3	70.0	70.7
교원	82.5	86.1	86.5

○ 청탁금지법 가액 범위가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우세함.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에 대해 ‘상향 필요’와 ‘그대로 유지’ 입장이 팽팽함

- 식사 가액 3만원, 선물 가액 5만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의 한도에 대하여 ‘적정하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우세

○ 일반국민과 기업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에 전반적으로 동의했으나, 일반국민과 기업에 적용할 가액기준을 마련하는 것에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CHAPTER

—

3

인식도 조사결과 분석



I.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변화

1. 인식 변화

문]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등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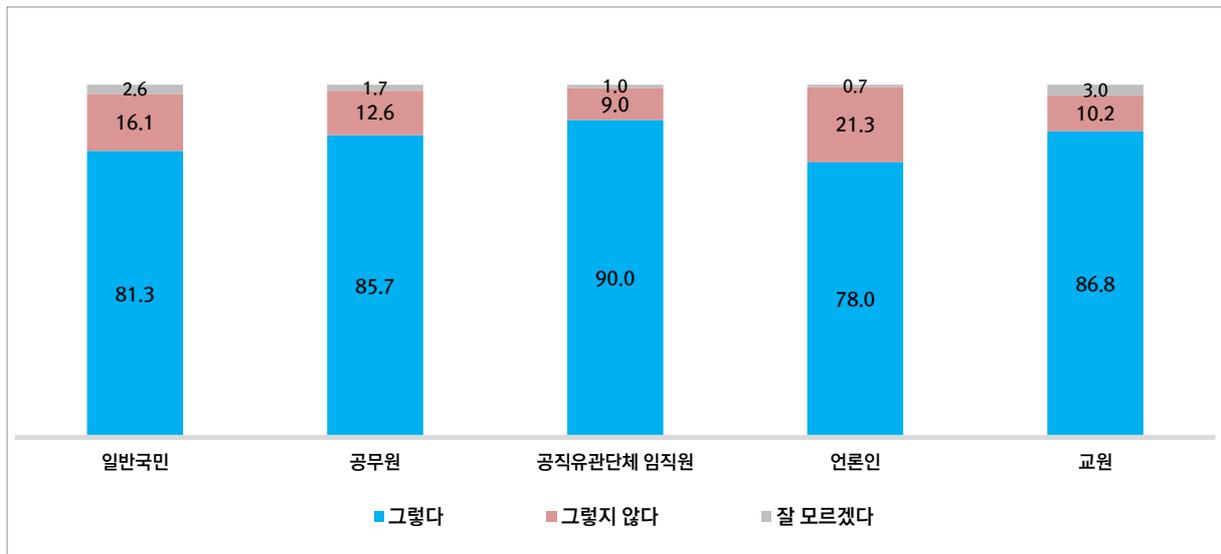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존의 부탁·접대·선물 등의 관행을 ‘부적절한 행위’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서 90.0%로 가장 높음
- ▶ 다음으로는 교원(86.8%), 공무원(85.7%), 일반국민(81.3%), 언론인(78.0%)의 순으로 높았음

〈그림3-1〉 인식 변화

(단위 : %)



2. 행태 변화

1) 일반국민

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 대한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국민

- ▶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 시행 이후의 행태변화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응답이 60.2%로 ‘그렇지 않다’(36.3%)는 응답 대비 23.9%p 높게 나타남

〈그림3-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 일반국민

1)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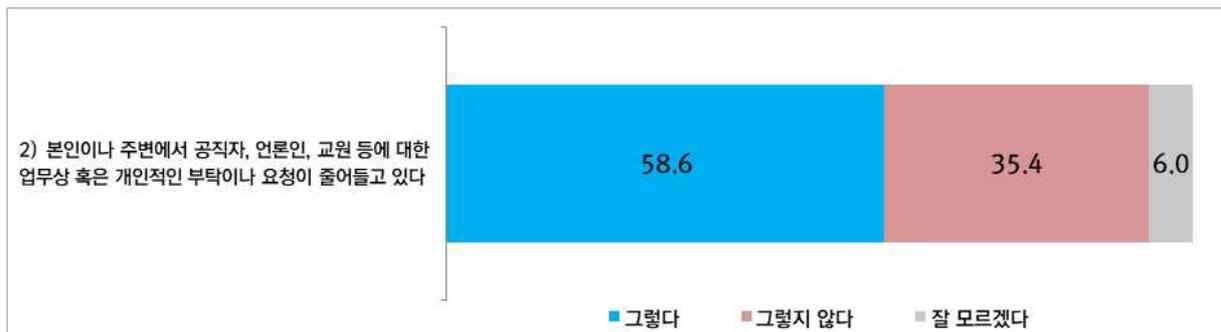


일반국민

- ▶ 일반국민은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 대한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는 응답이 58.6%로 ‘그렇지 않다’(35.4%)는 응답 대비 23.2%p 높게 나타남

〈그림3-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 일반국민

2)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 대한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
(단위 : %)



2) 법 적용대상

- 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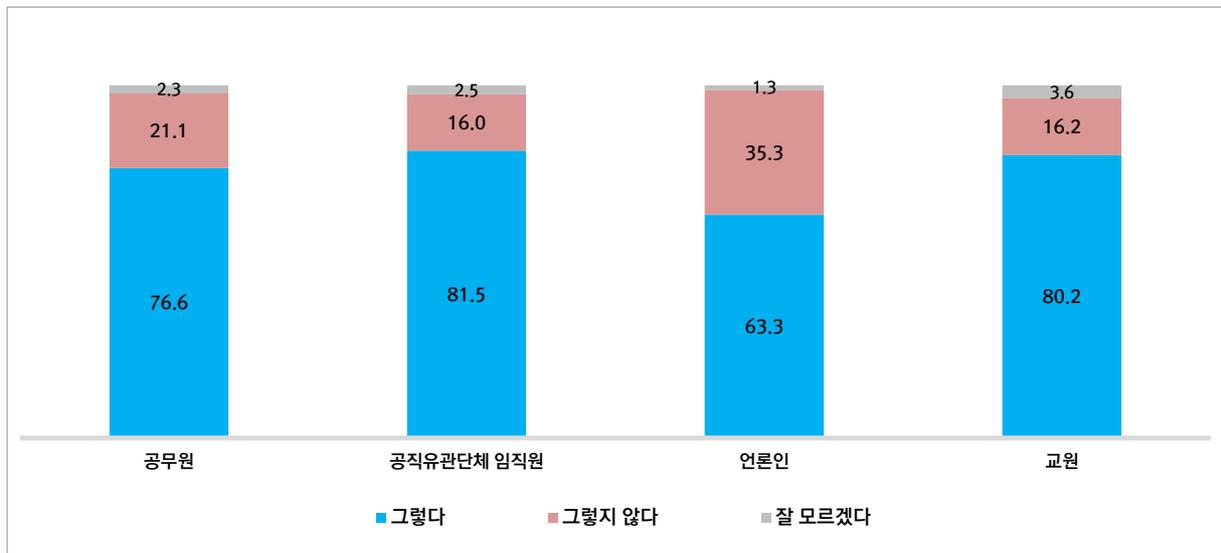


법 적용대상

- ▶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교원의 10명 중 8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 그 외 공무원과 언론인에서도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76.6%, 63.3%로 높게 나타남

〈그림3-4〉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 법 적용대상
1)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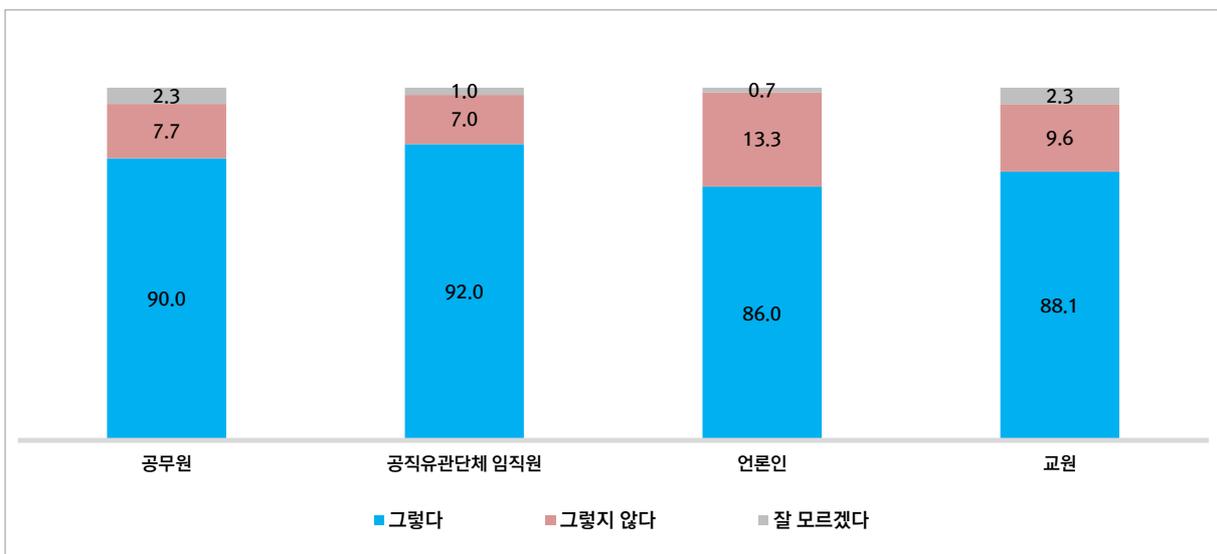


법 적용대상

-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 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에 대하여 모든 법 적용대상자의 85%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92.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무원(90.0%), 교원(88.1%), 언론인(86.0%)의 순임

〈그림3-5〉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 법 적용대상
2)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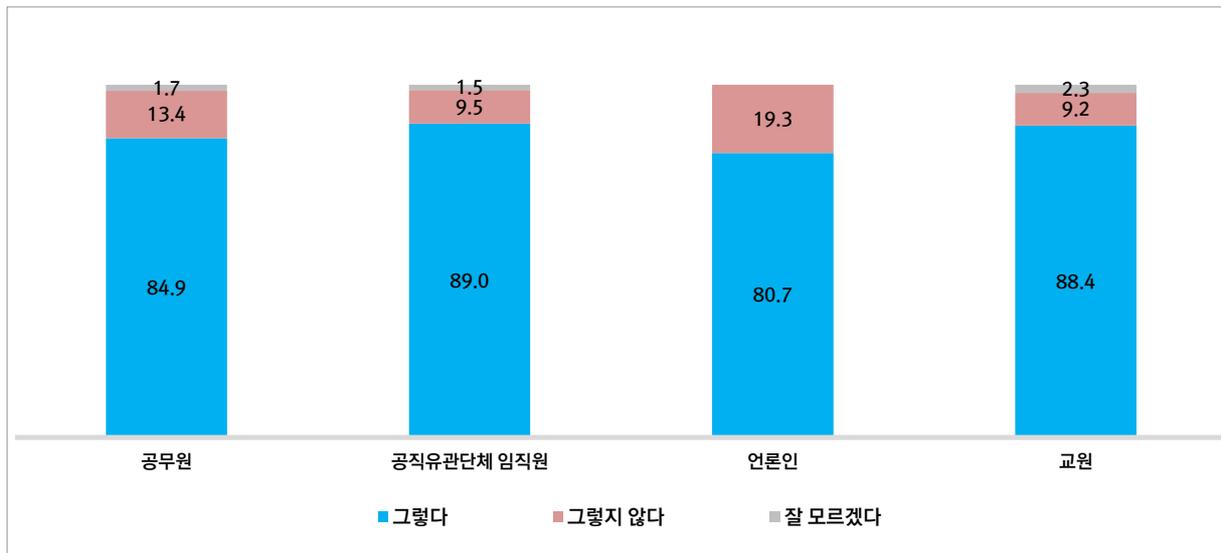


법 적용대상

- ▶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에 대해 법 적용대상자 10명 중 8명은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89.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원(88.4%), 공무원(84.9%), 언론인(80.7%)의 순임

〈그림3-6〉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 법 적용대상
3)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

(단위 : %)



3)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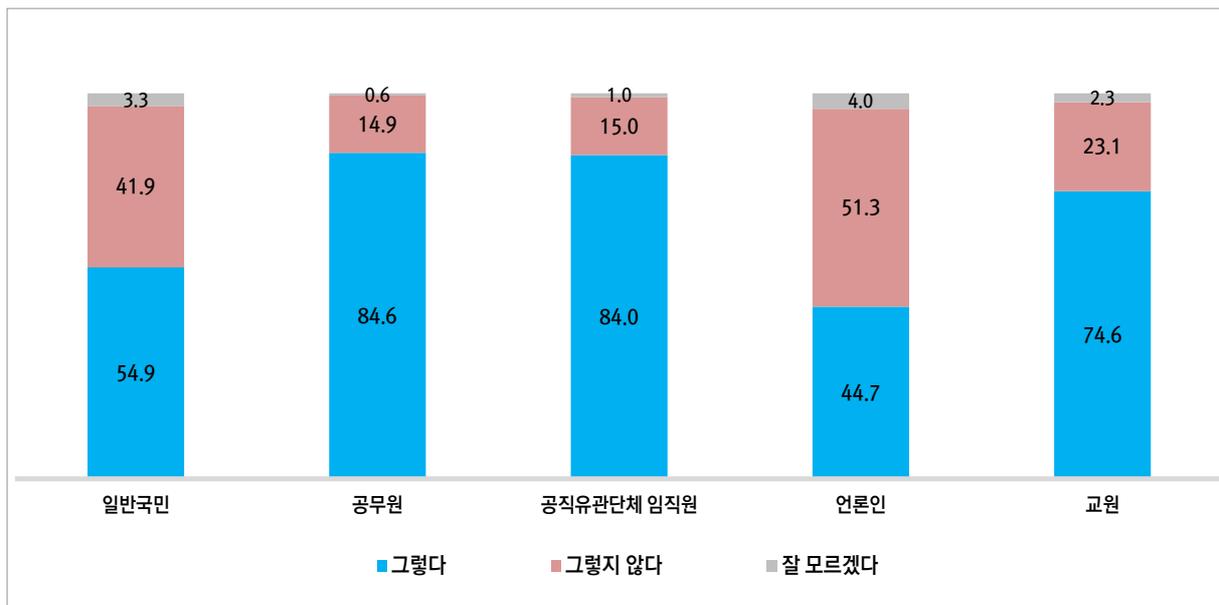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공무원(84.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84.0%), 교원(74.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일반국민(54.9%)과 언론인(44.7%)의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7〉 공직자, 언론인, 교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 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

(단위 : %)



4)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 변화

- 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는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 문]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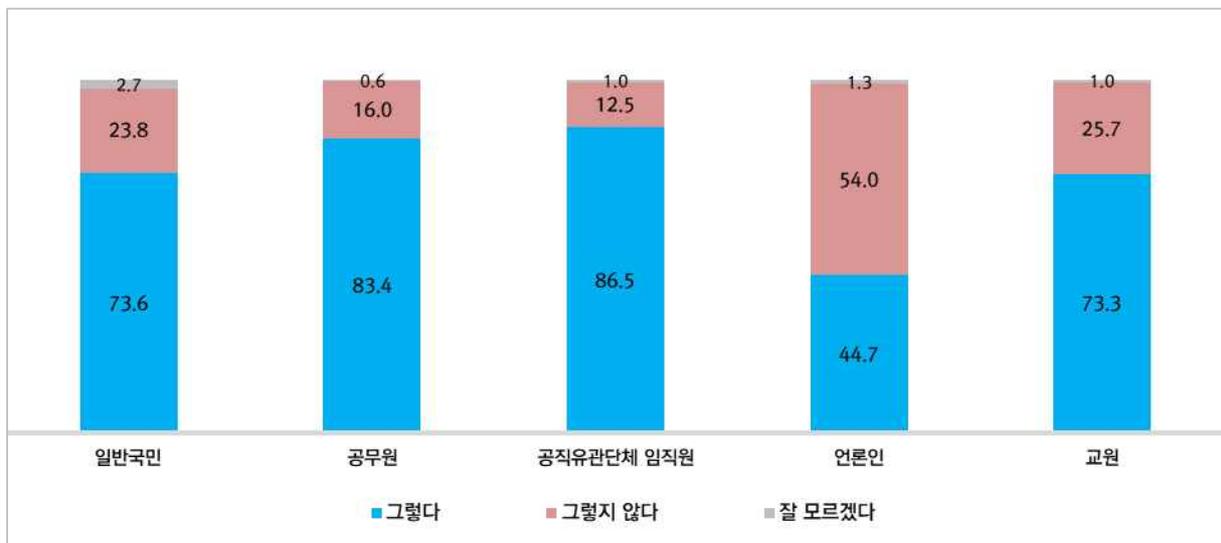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86.5%), 공무원(83.4%), 일반국민(73.6%), 교원(7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언론인(44.7%)의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8〉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 변화
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는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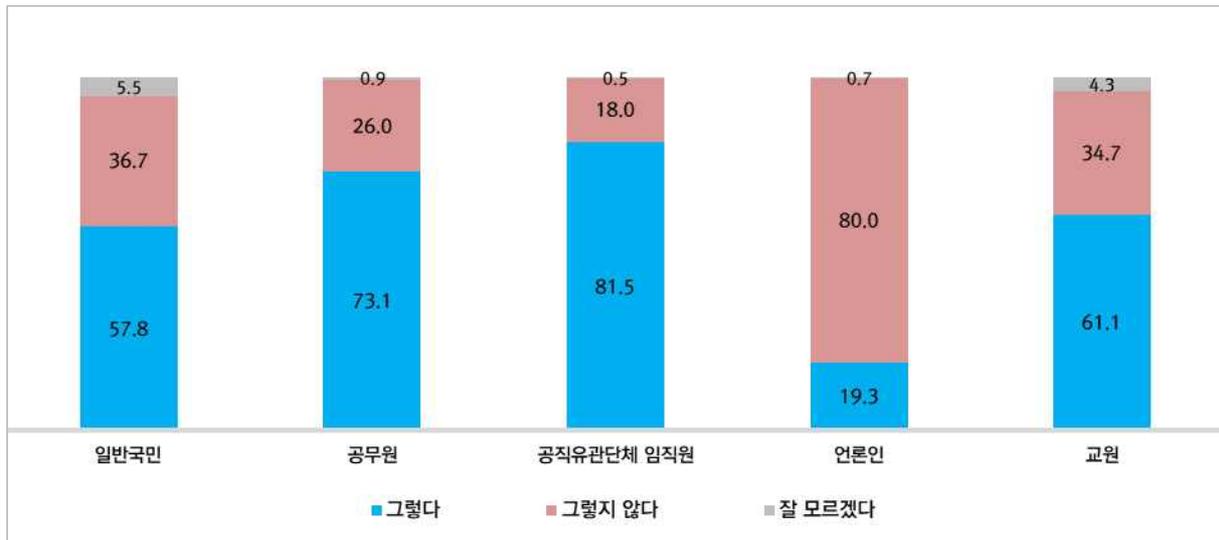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81.5%), 공무원(73.1%), 교원(61.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일반국민(57.8%), 언론인(19.3%)의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9〉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 변화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

(단위 : %)



5)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

- 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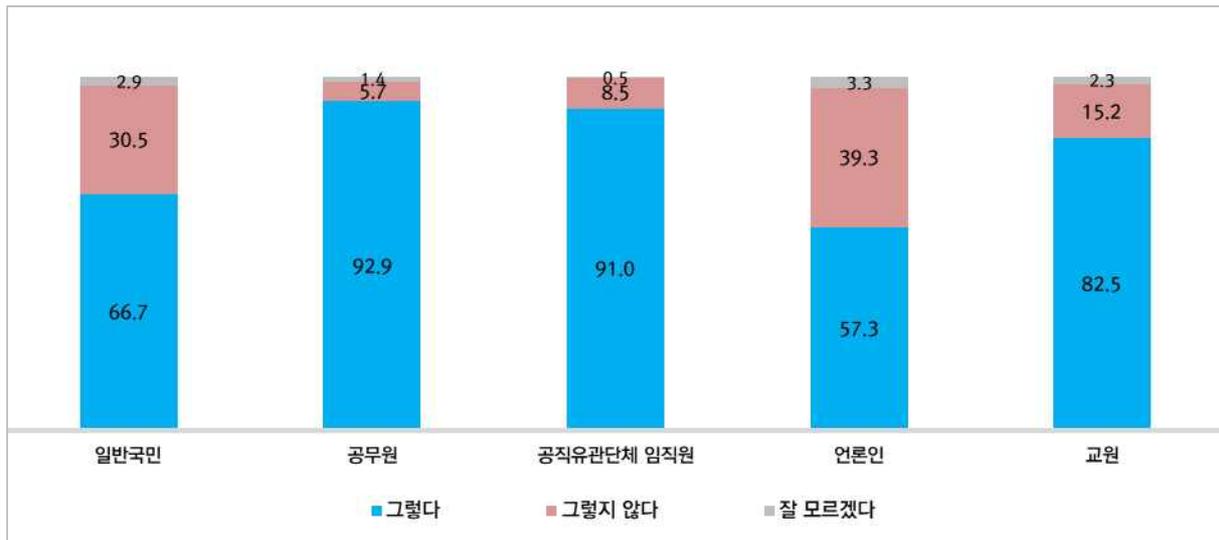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한 결과,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에 대해 공무원(92.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1.0%), 교원(82.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일반국민(66.7%), 언론인(57.3%)의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10〉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

1) 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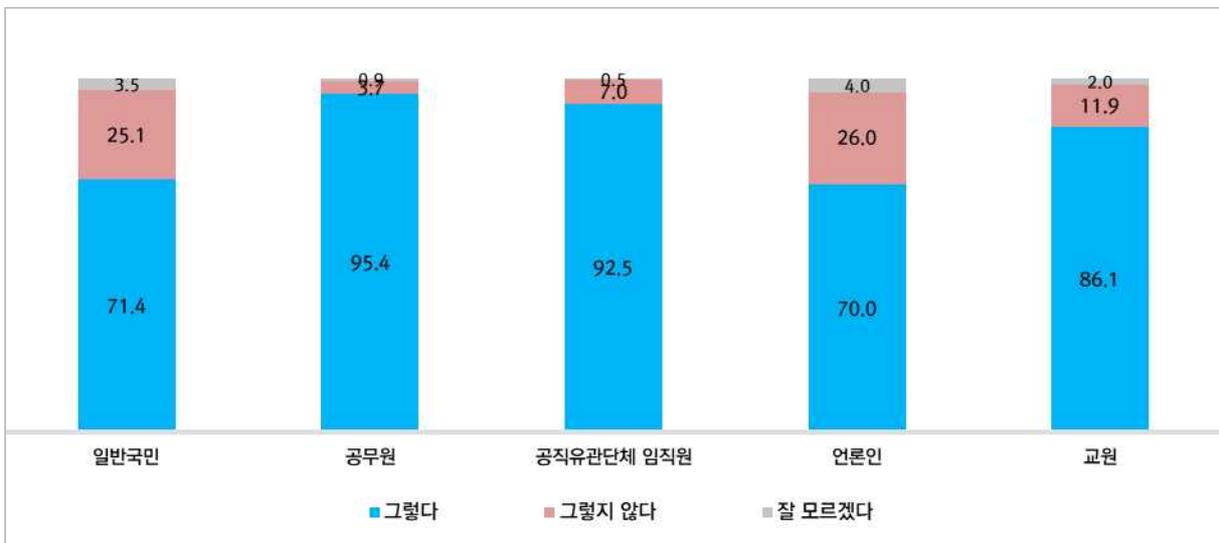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한 결과, ‘공직자에 대한 접대/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에 대해 공무원(95.4%),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2.5%), 교원(86.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일반국민(71.4%), 언론인(70.0%)의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11〉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

2) 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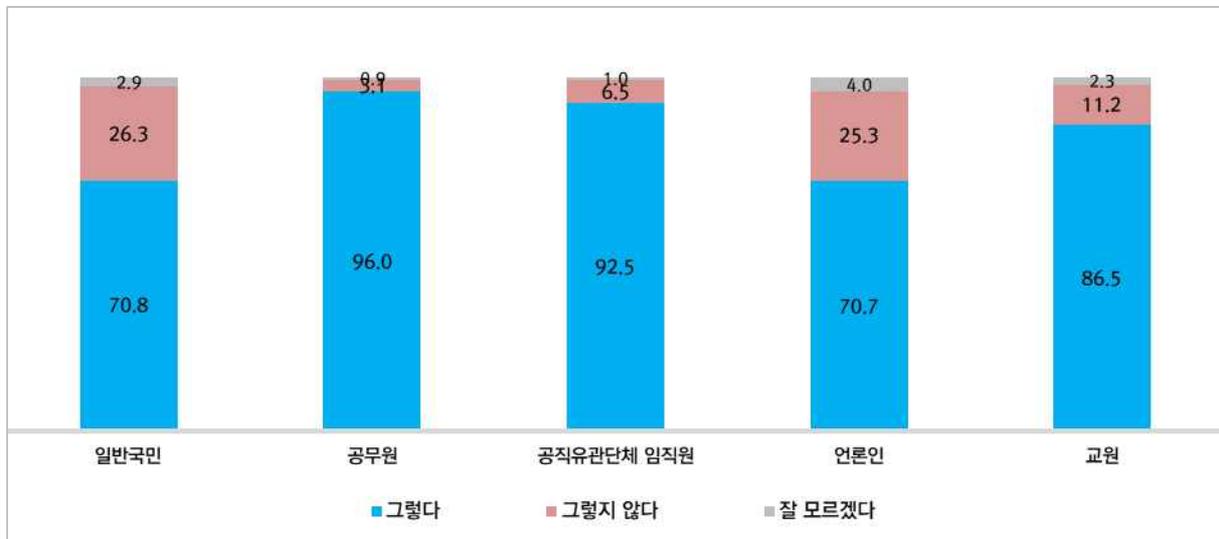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한 결과,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에 대해 공무원(96.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2.5%), 교원(8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일반국민(70.8%), 언론인(70.7%)의 ‘그렇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1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

2) 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단위 : %)



II.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1.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문]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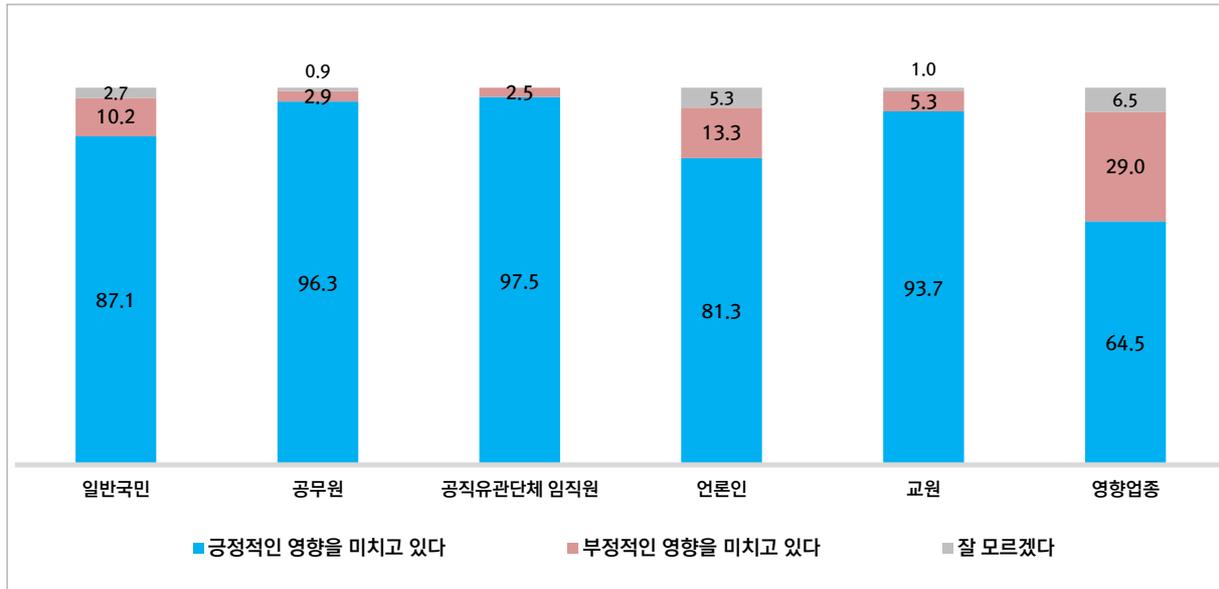


전체

- ▶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함
- ▶ 한편, 영향업종의 경우 64.5%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13〉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2.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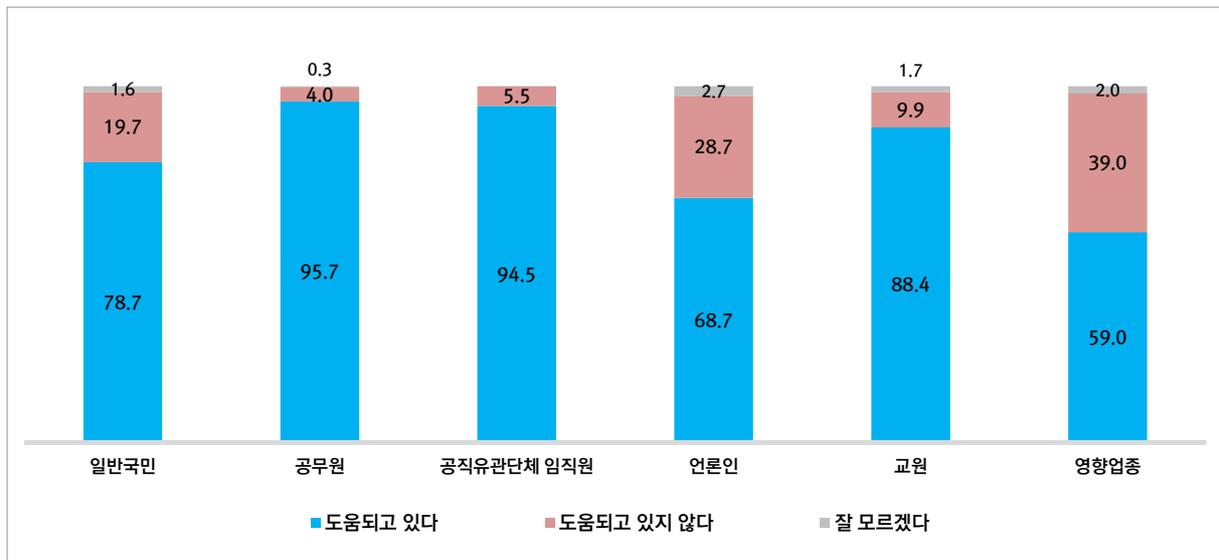


전체

-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은 공무원(95.7%),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4.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영향업종(59.0%)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3-14〉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



3.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도

문]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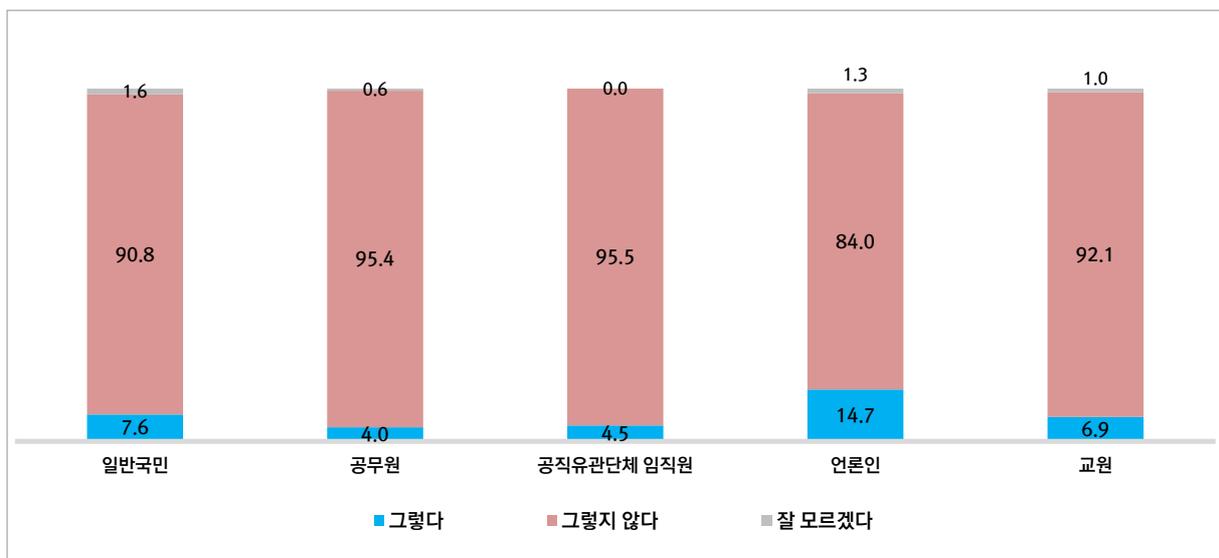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일반국민과 법 적용대상에게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0% 미만으로 나타남
- ▶ 언론인의 경우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14.7%임

〈그림3-15〉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도

(단위 : %)



III.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의견

1. 가액범위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의 적정성

문] 귀하께서는 현재의 식사금액의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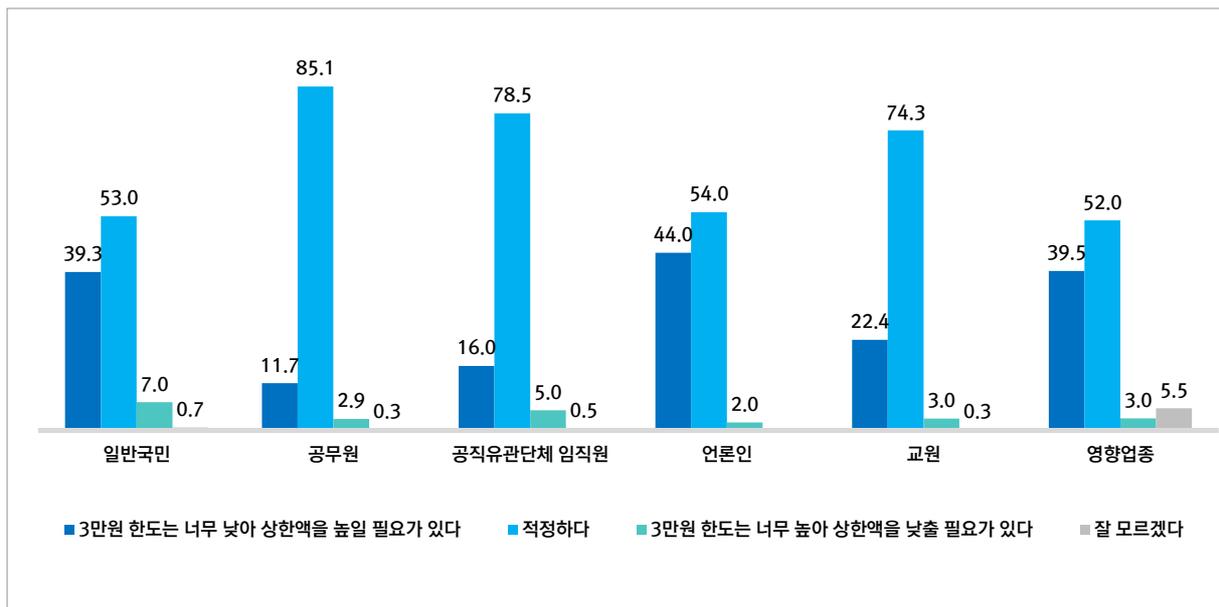


전체

- ▶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해, 모든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공무원 (85.1%), 공직유관단체 임직원(78.5%), 교원(74.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한도가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언론인(44.0%), 영향업종 (39.5%), 일반국민(39.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16〉 식사금액 한도 3만원의 적정성

(단위 : %)



2) 선물금액 한도 5만원의 적정성

문] 귀하께서는 현재의 선물금액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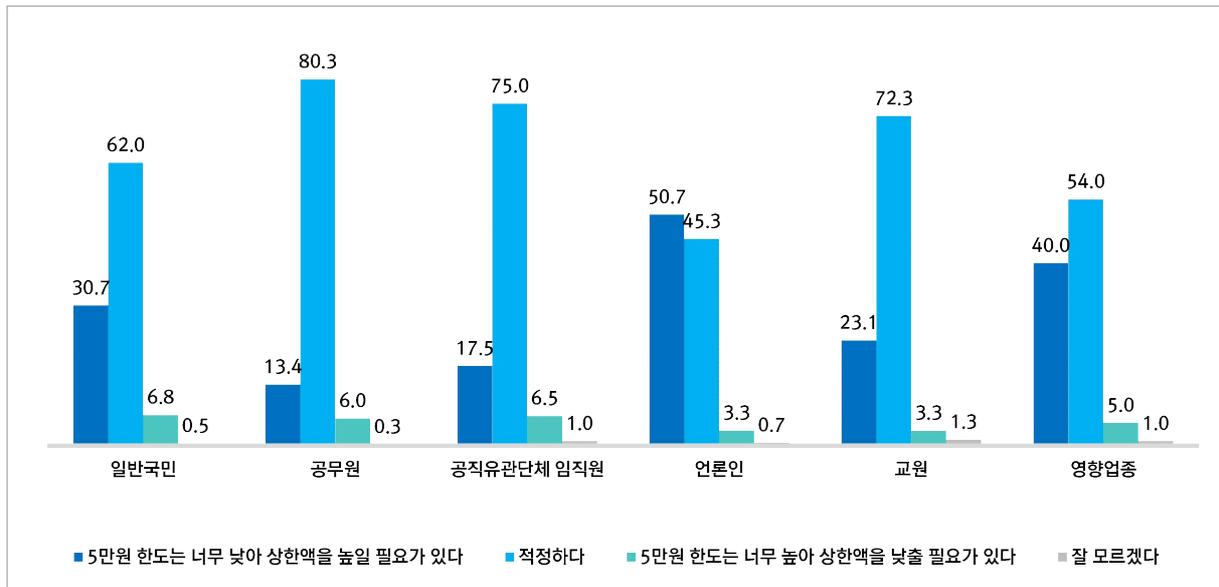


전체

- ▶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해,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공무원(80.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75.0%), 교원(72.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한도가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언론인(50.7%), 영향업종(40.0%), 일반국민(30.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특히, 언론인의 경우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50.7%로 '적정하다'(45.3%)는 응답보다 5.4%p 높게 나타남

〈그림3-17〉 선물금액 한도 5만원의 적정성

(단위 : %)



3)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의 적정성

문]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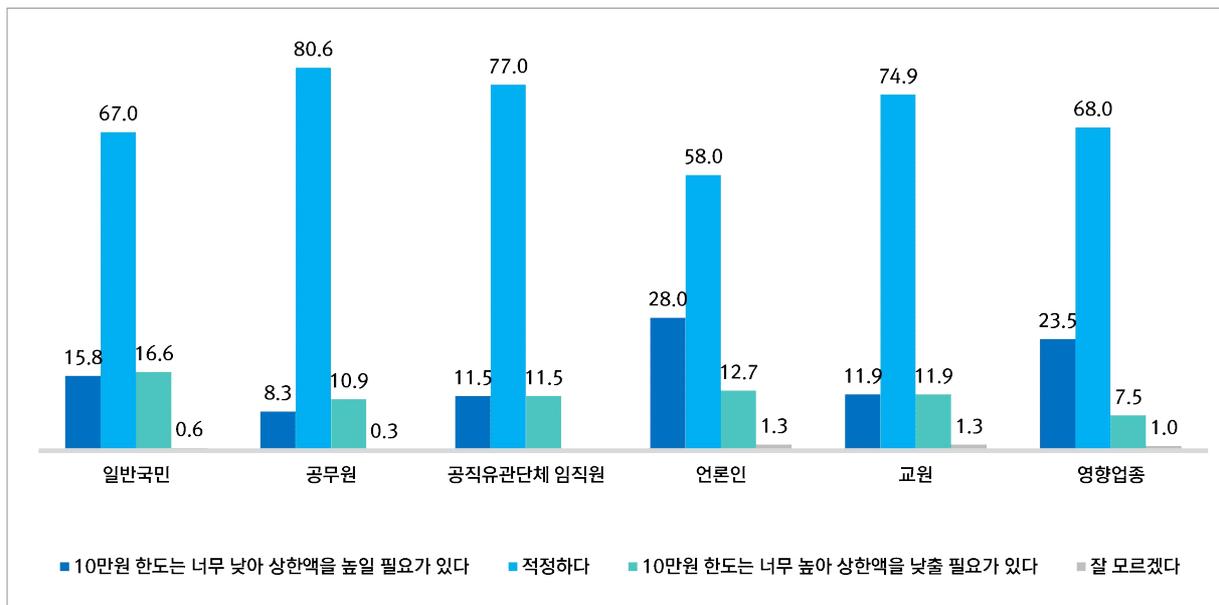


전체

- ▶ 식사선물 금액 한도와 마찬가지로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모든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공무원(80.6%), 공직유관단체 임직원(77.0%), 교원(74.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한도가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언론인(28.0%)과 영향업종(23.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18〉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의 적정성

(단위 : %)



3-1)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한시적 20만원 상향

문]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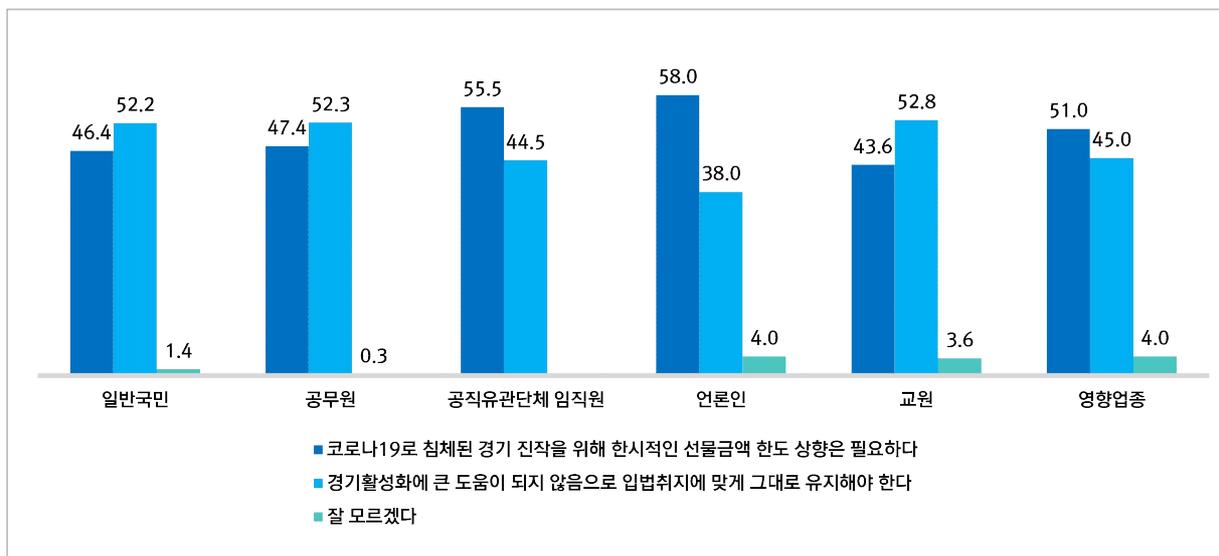


전체

-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는 응답은 언론인(58.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55.5%), 영향업종(51.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교원(52.8%), 공무원(52.3%), 일반국민(52.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19〉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한시적 20만원 상향

(단위 : %)



4) 청탁금지법 선물금액이 일반국민과 기업간에 미치는 영향

문)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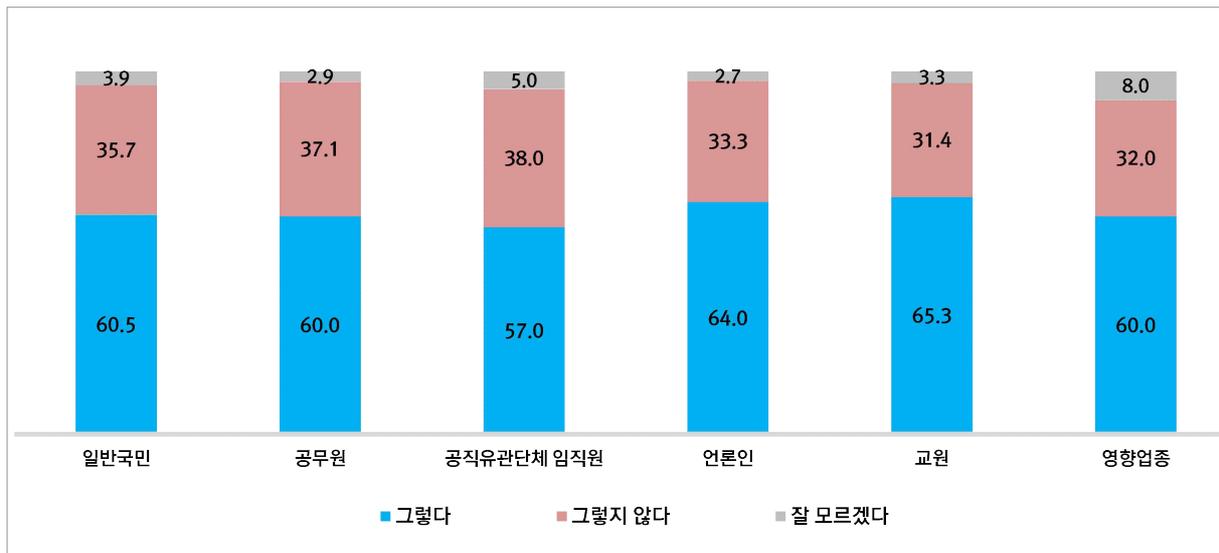


전체

- ▶ 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 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의 과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함
- ▶ 집단별로 '그렇다'는 응답은 교원에서 65.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언론인(64.0%), 일반국민(60.5%), 공무원과 영향업종(각각 60.0%), 공직유관단체 임직원(57.0%)의 순임

〈그림3-20〉 청탁금지법 선물금액이 일반국민과 기업간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5) 일반국민/기업간에 적용할 선물 등 가액 기준 별도 마련의 필요성

문)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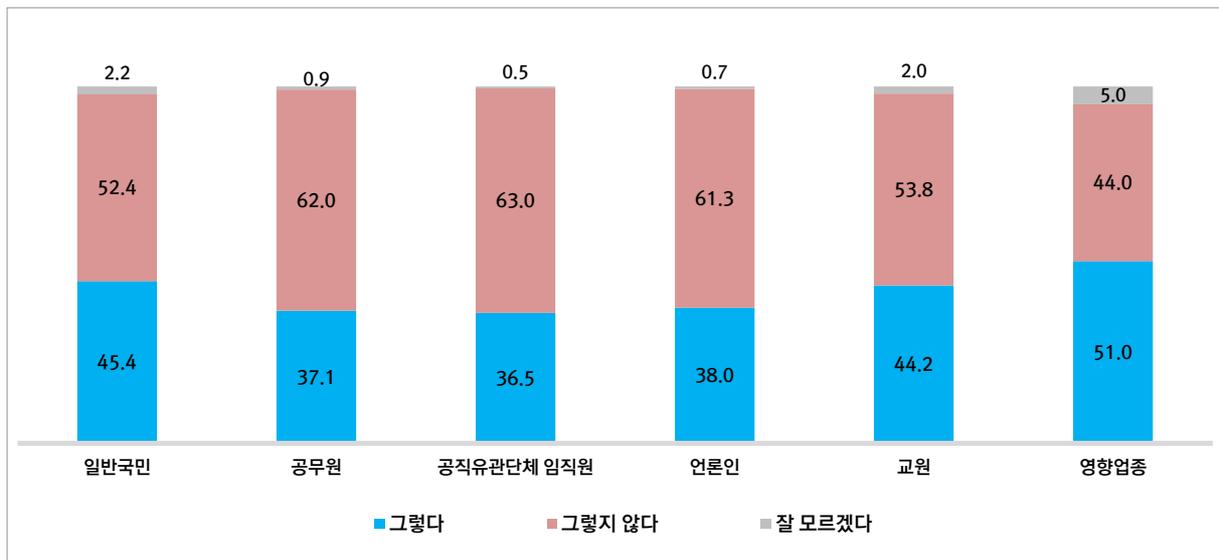


전체

- ▶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영향업종을 제외한 모든 집단의 과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함
- ▶ 집단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서 6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무원(62.0%), 언론인(61.3%), 교원(53.8%), 일반국민(52.4%), 영향업종(44.0%)의 순임
- ▶ 영합업종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51.0%로 ‘그렇지 않다’(44.0%)는 응답 대비 7.0%p 높게 나타남

〈그림3-21〉 일반국민/기업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 별도 마련의 필요성

(단위 : %)



6) 경조사비 한도 5만원의 적정성

문]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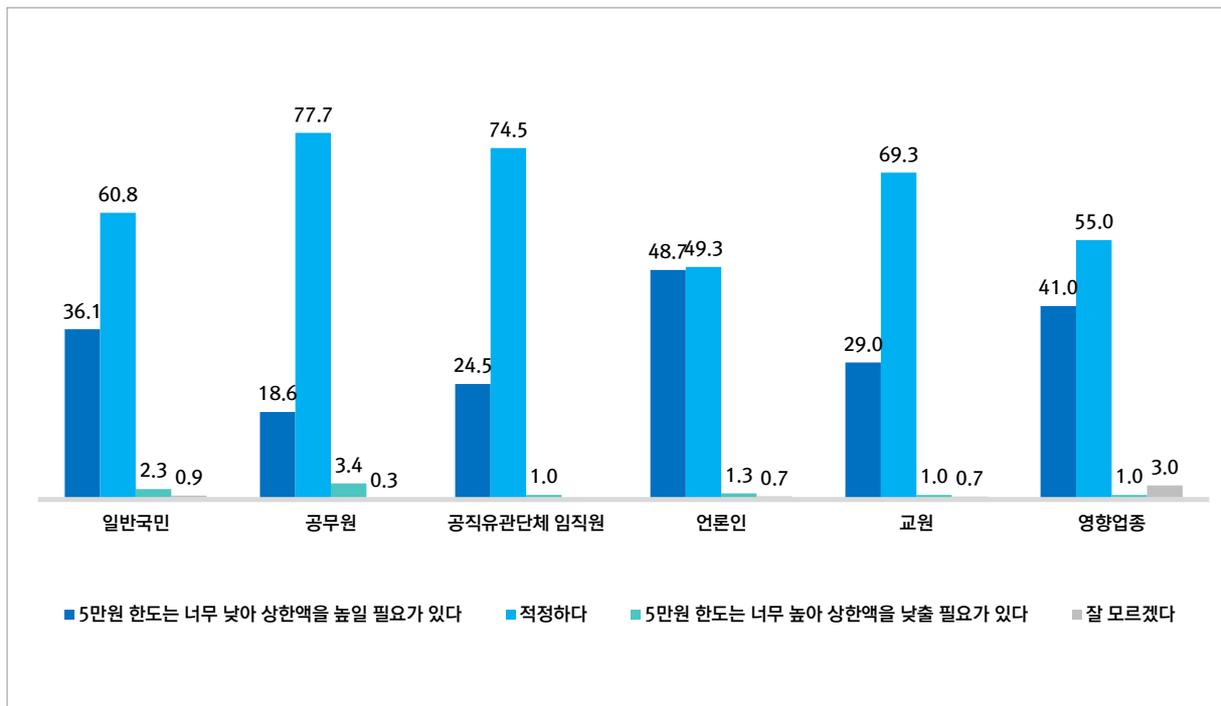


전체

- ▶ 경조사비 한도 5만원의 적정성에 대해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남
- ▶ 집단별로 ‘적정하다’는 응답은 공무원에서 7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74.5%), 교원(69.3%), 일반국민(60.8%), 영향업종(55.0%), 언론인(49.3%)의 순임
- ▶ 언론인의 경우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48.7%로 ‘적정하다’(49.3%)는 응답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림3-22〉 경조사비 한도 5만원의 적정성

(단위 : %)



7)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정성

- 문]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국공립교원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립과 마찬가지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 (사립교원 및 언론사 임직원만)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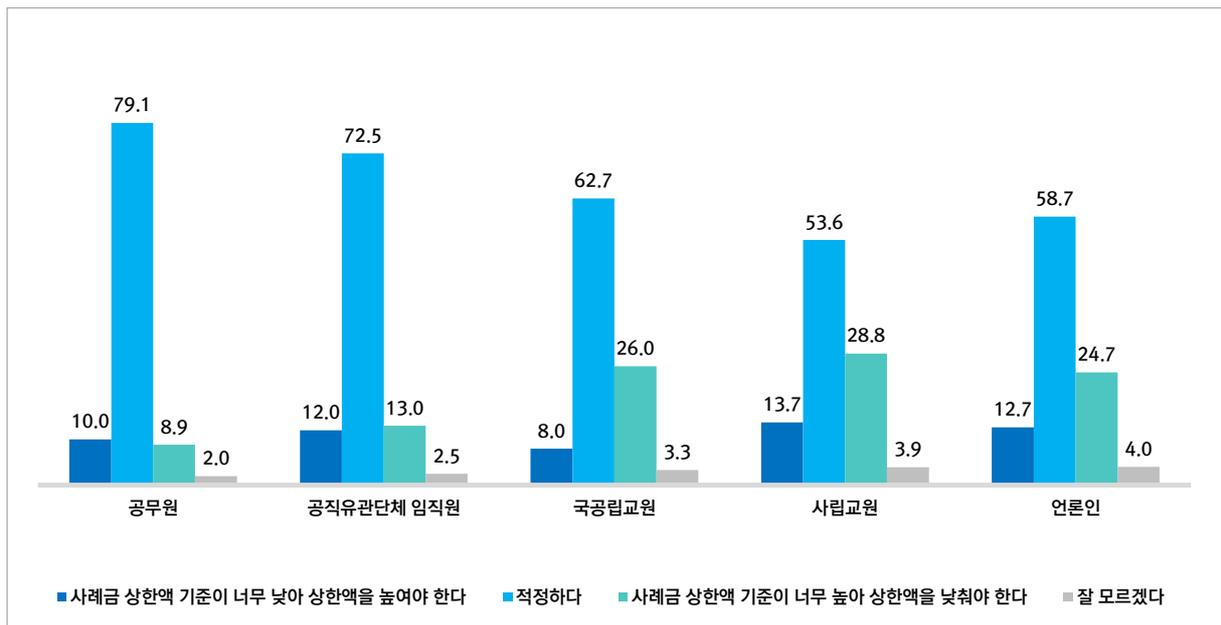


법 적용대상

- ▶ 법 적용대상자에게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의 과반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함
- ▶ 집단별로 '적정하다'는 응답은 공무원에서 79.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72.5%), 국공립교원(62.7%), 언론인(58.7%), 사립교원(53.6%)의 순으로 나타남
- ▶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은 사립교원(28.8%), 국공립교원(26.0%), 언론인(24.7%)에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3-23〉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기준 적정성

(단위 : %)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업종 변화

1)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문1] 청탁금지법 시행이 귀 사업체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2]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귀하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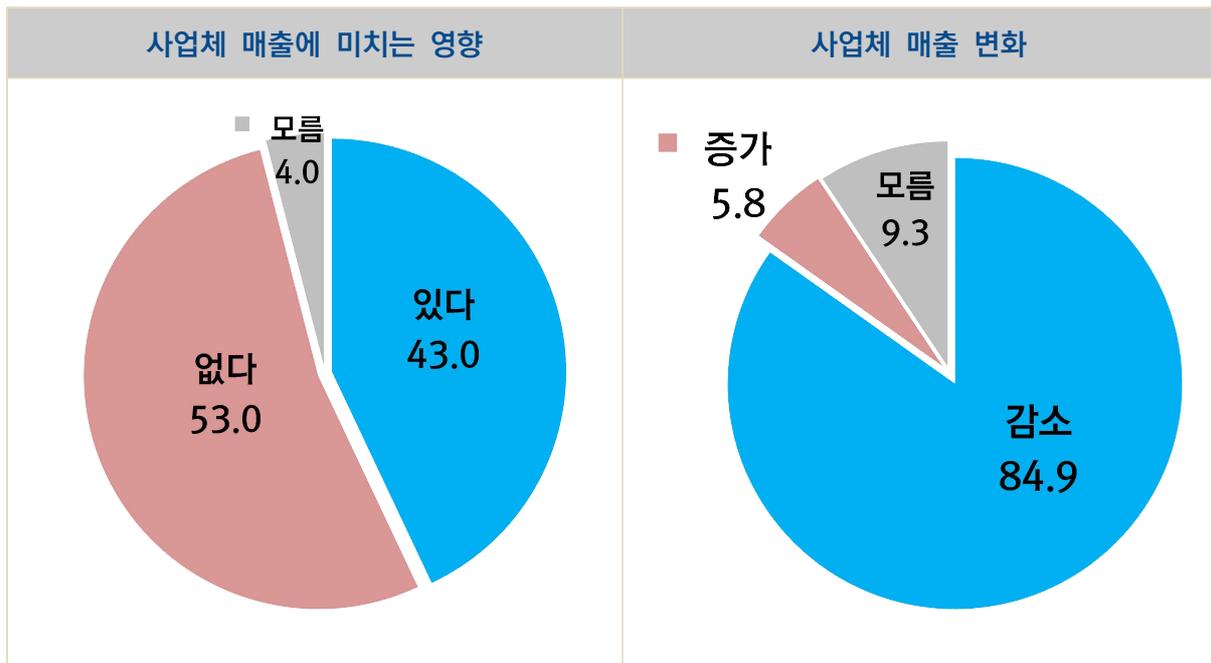


영향업종

- ▶ 영향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영향 '없다'는 응답이 53.0%로, 영향 '있다'(43.0%)는 응답 대비 10.0%p 높게 나타남
- ▶ 매출 영향이 '있다'고 답한 86명을 대상으로, 사업체 매출 변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84.9%,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5.8%로 나타남

〈그림3-24〉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Base: 영향업종 종사자 200명]

[Base: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매출 영향 있음 응답자 86명]



응답자 특성 추가 분석

- ▶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매출에 영향이 '있다'는 응답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업종(1) 기준, △농축수산화혜업(8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매출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업종(1) 기준, △일반음식점(7.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1〉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Base :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매출 영향 있음	사례수 (명)	① 크게 감소 했다	② 조금 감소 했다	①+② 감소 했다	③ 조금 증가 했다	④ 크게 증가 했다	③+④ 증가 했다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86)	44.2	40.7	84.9	4.7	1.2	5.8	9.3	100.0	1.6	0.7
업종 (1)											
일반음식업	(38)	42.1	39.5	81.6	5.3	2.6	7.9	10.5	100.0	1.6	0.7
농축수산화혜업	(48)	45.8	41.7	87.5	4.2	0.0	4.2	8.3	100.0	1.5	0.6
업종 (2)											
일반음식업	(38)	42.1	39.5	81.6	5.3	2.6	7.9	10.5	100.0	1.6	0.7
농축수산화혜 생산업	(12)	33.3	41.7	75.0	8.3	0.0	8.3	16.7	100.0	1.7	0.7
농축수산화혜 도매업	(16)	31.3	56.3	87.5	6.3	0.0	6.3	6.3	100.0	1.7	0.6
농축수산화혜 소매업	(20)	65.0	30.0	95.0	0.0	0.0	0.0	5.0	100.0	1.3	0.5
세부업종											
한식	(12)	41.7	41.7	83.3	0.0	8.3	8.3	8.3	100.0	1.7	0.9
중식	(4)	25.0	50.0	75.0	0.0	0.0	0.0	25.0	100.0	1.7	0.6
일식	(13)	46.2	38.5	84.6	7.7	0.0	7.7	7.7	100.0	1.6	0.7
서양식	(6)	66.7	16.7	83.3	16.7	0.0	16.7	0.0	100.0	1.5	0.8
음식점 기타	(3)	0.0	66.7	66.7	0.0	0.0	0.0	33.3	100.0	2.0	0.0
농업	(7)	71.4	14.3	85.7	0.0	0.0	0.0	14.3	100.0	1.2	0.4
축산업	(12)	33.3	50.0	83.3	8.3	0.0	8.3	8.3	100.0	1.7	0.6
수산업	(12)	33.3	50.0	83.3	0.0	0.0	0.0	16.7	100.0	1.6	0.5
화혜업	(17)	52.9	41.2	94.1	5.9	0.0	5.9	0.0	100.0	1.5	0.6

※ 사례수가 30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 평가를 위한 유효 표본이 부족하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

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종 전반 매출에 대한 의견

문]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종 전반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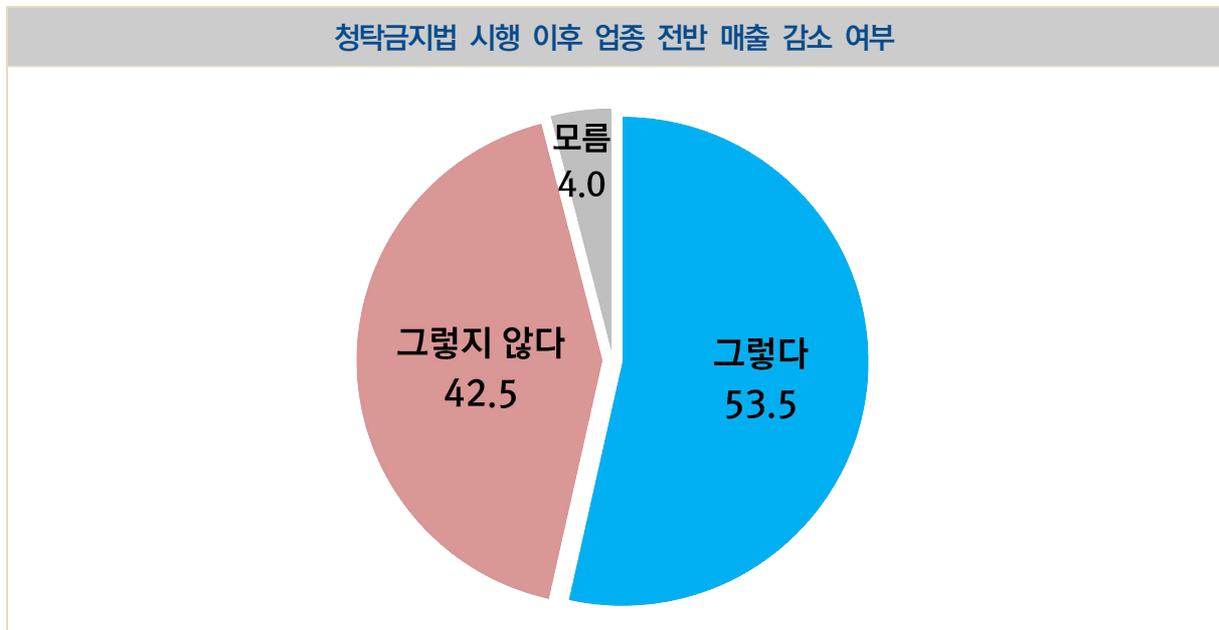


영향업종

- ▶ 영향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종 전반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53.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2.5%로 나타남

〈그림3-25〉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종 전반 매출에 대한 의견

(단위 : %)



[Base: 영향업종 종사자 200명]



응답자 특성 추가 분석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업종 전반 매출에 대해 ‘감소했다(그렇다)’는 응답은 업종(2) 기준, △농축수산화물 소매업(6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반면, 업종 전반 매출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업종(2) 기준, △농축수산화물 생산업, △농축수산화물 도매업에서 각각 50.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3-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업종 전반 매출 감소에 대한 의견

(단위 : %)

Base=영향업종	사례수 (명)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그렇지 않다	③ 대체로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잘 모르 겠다	계
▣ 전체 ▣	(200)	12.5	30.0	42.5	30.5	23.0	53.5	4.0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14.0	29.0	43.0	29.0	24.0	53.0	4.0	100.0
농축수산화물업	(100)	11.0	31.0	42.0	32.0	22.0	54.0	4.0	10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14.0	29.0	43.0	29.0	24.0	53.0	4.0	100.0
농축수산화물 생산업	(34)	14.7	35.3	50.0	29.4	20.6	50.0	0.0	100.0
농축수산화물 도매업	(34)	11.8	38.2	50.0	26.5	17.6	44.1	5.9	100.0
농축수산화물 소매업	(32)	6.3	18.8	25.0	40.6	28.1	68.8	6.3	100.0
세부업종									
한식	(20)	10.0	15.0	25.0	45.0	30.0	75.0	0.0	100.0
중식	(20)	15.0	30.0	45.0	25.0	20.0	45.0	10.0	100.0
일식	(20)	15.0	20.0	35.0	20.0	40.0	60.0	5.0	100.0
서양식	(20)	15.0	40.0	55.0	20.0	25.0	45.0	0.0	100.0
음식점 기타	(20)	15.0	40.0	55.0	35.0	5.0	40.0	5.0	100.0
농업	(24)	16.7	33.3	50.0	20.8	16.7	37.5	12.5	100.0
축산업	(31)	12.9	38.7	51.6	35.5	9.7	45.2	3.2	100.0
수산업	(21)	9.5	28.6	38.1	23.8	38.1	61.9	0.0	100.0
화훼업	(24)	4.2	20.8	25.0	45.8	29.2	75.0	0.0	100.0

※ 사례수가 30미만인 경우 통계적 유의성 평가를 위한 유효 표본이 부족하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

IV.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1.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정도

문]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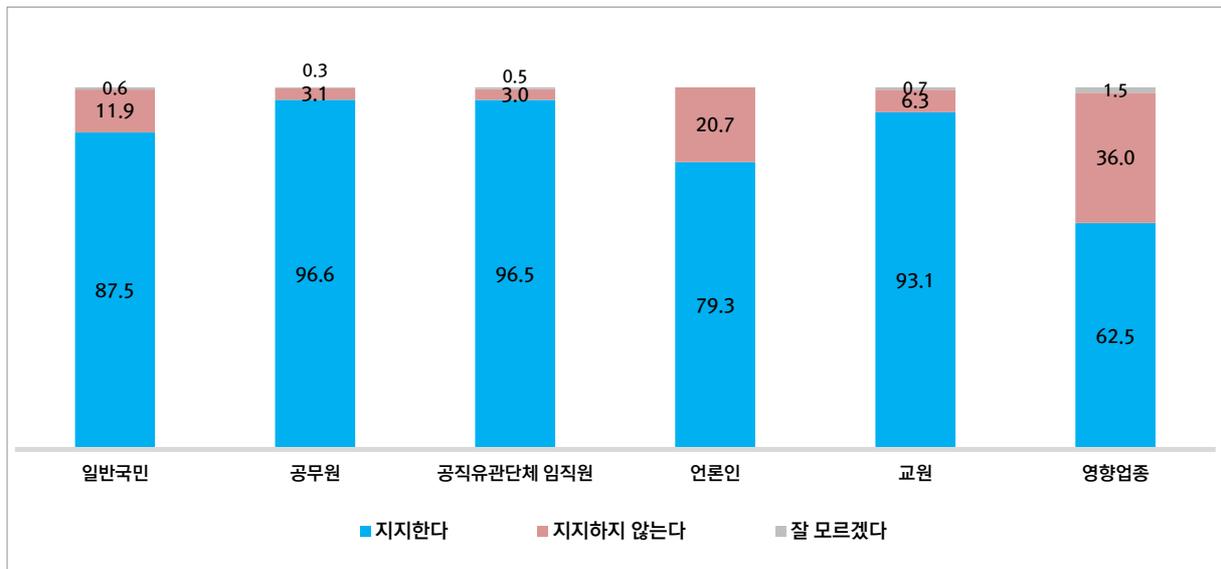


전체

- ▶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든 집단에서 ‘지지한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공무원(96.6%)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96.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다음으로 교원(93.1%), 일반국민(87.5%), 언론인(79.3%), 영향업종(62.5%) 순으로 높았음
- ▶ 한편, 영향업종의 경우 ‘지지한다’ 응답이 62.5%로 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3-26〉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정도

(단위 : %)



2. 청탁금지법 교육 경험

문)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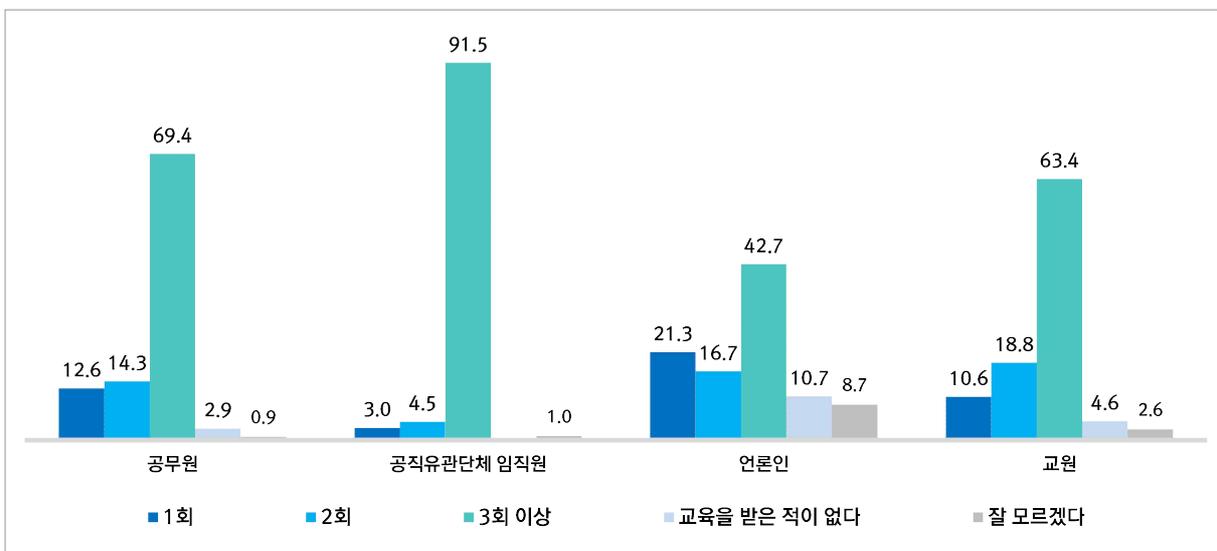


법 적용대상

- ▶ 법 적용대상자에게 청탁금지법 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3회 이상’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우세함
- ▶ 집단별로 ‘3회 이상’ 교육 받았다는 응답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서 91.5%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무원(69.4%), 교원(63.4%), 언론인(42.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3-27〉 청탁금지법 교육 경험

(단위 : %)



3. 청탁금지법 교육 충분성

문]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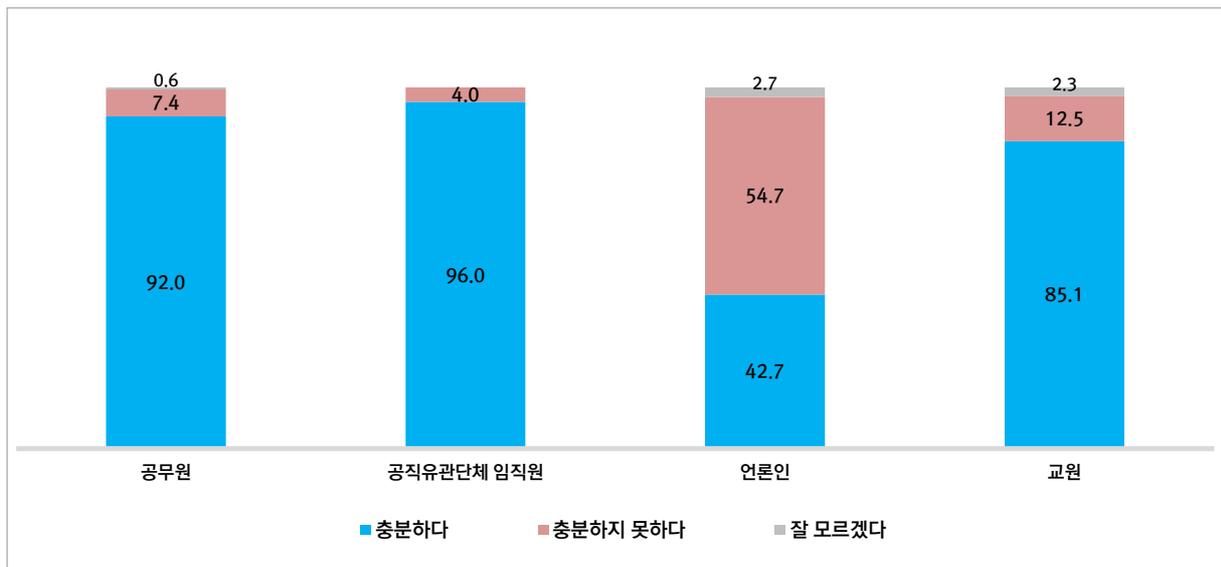


법 적용대상

- ▶ 법 적용대상에게 청탁금지법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우세함
- ▶ 집단별로 ‘그렇다’는 응답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서 9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공무원(92.0%), 교원(85.1%), 언론인(42.7%)의 순으로 나타남
- ▶ 한편, 언론인의 경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7%로 ‘그렇다’(42.7%)는 응답 대비 12.0%p 높게 나타남

〈그림3-28〉 청탁금지법 교육의 충분성 정도

(단위 : %)



4. 청탁금지법 교육 받을 의향 및 선호하는 교육방식

문]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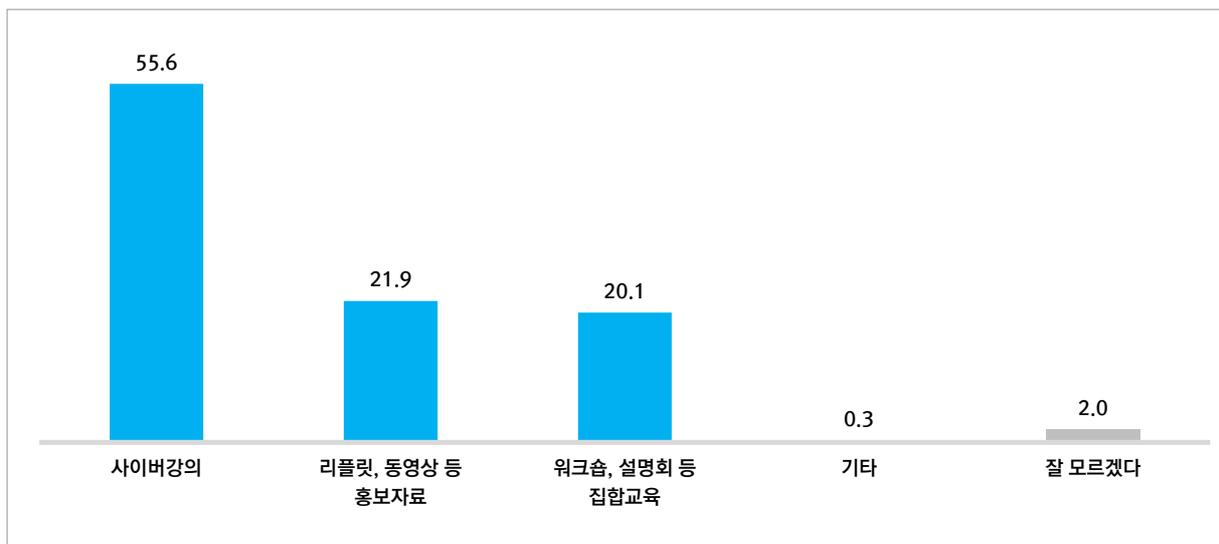


법 적용대상

- ▶ 법 적용대상자에게 청탁금지법 관련 선호하는 교육방식을 조사한 결과, ‘사이버강의’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았음
- ▶ 다음으로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자료’(21.9%), ‘워크숍, 설명회 등 집합교육’(20.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3-29〉 청탁금지법 관련 선호하는 교육방식

(단위 : %)



5.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 신설 필요성

문]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와 같이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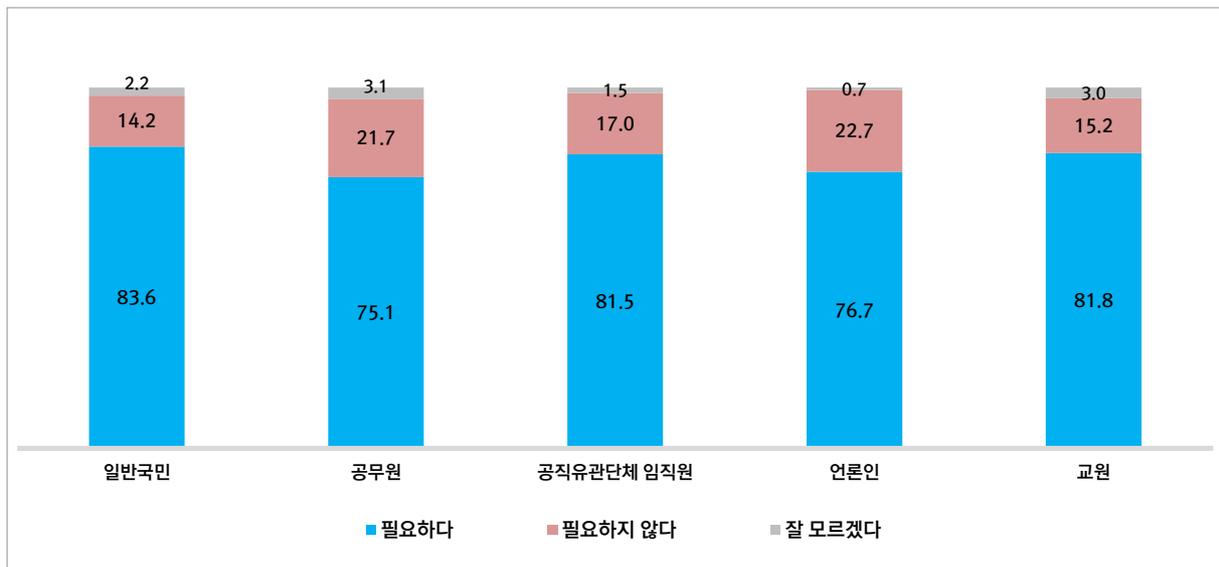


일반국민, 법 적용대상

- ▶ 일반국민과 법 적용대상에게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든 집단의 70%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 집단별로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국민’(83.6%), ‘교원’(81.8%), ‘공직유관단체 임직원’(81.5%), ‘언론인’(76.7%), ‘공무원’(75.1%)의 순으로 공무원이 가장 낮았음

〈그림3-30〉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 규정의 신설 필요성

(단위 : %)



6. 청탁금지법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

문]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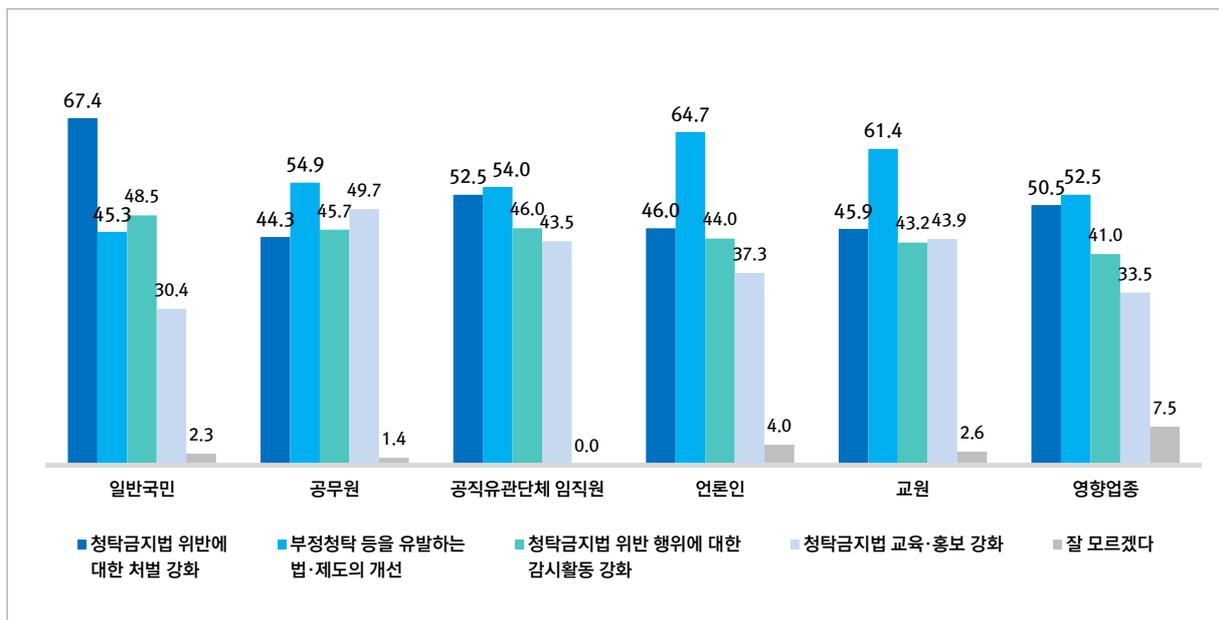


전체

- ▶ 청탁금지법이 시행 5년을 지나며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전에 없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정착되어 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
- ▶ 법 적용대상 집단과 영향업종 종사자의 경우 과반 이상이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꼽음
- ▶ 일반국민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67.4%)를 우선 해결 과제로 선택함
- ▶ ‘법·제도의 개선’이라는 응답을 집단별로 살펴보면, 언론인(64.7%)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원(61.4%), 공무원(54.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54.0%), 영향업종(52.5%), 일반국민(45.3%)의 순임

〈그림3-31〉 청탁금지법 성공적 정착을 위한 우선 해결 과제(1+2순위)

(단위 : %)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CHAPTER

—

4

인식도 시계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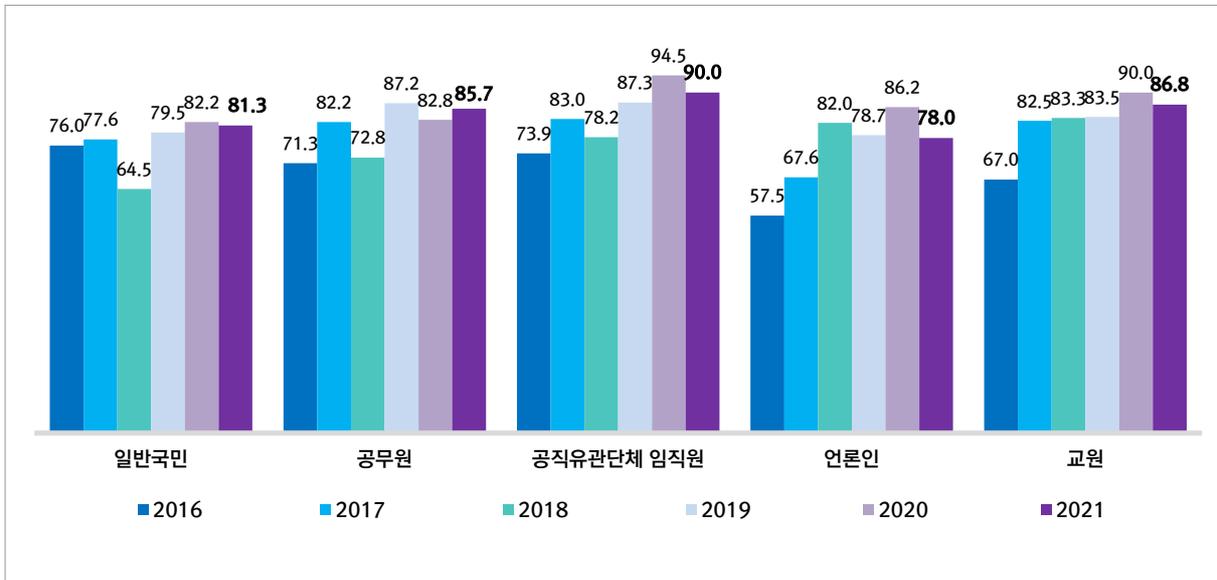
1. 청탁금지법 시행 후 변화와 효과

1)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인식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2020년보다 소폭 감소하였음
- ▶ 공무원의 경우,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85.7%로 2020년 대비(82.8%) 2.9%p 증가함

〈그림4-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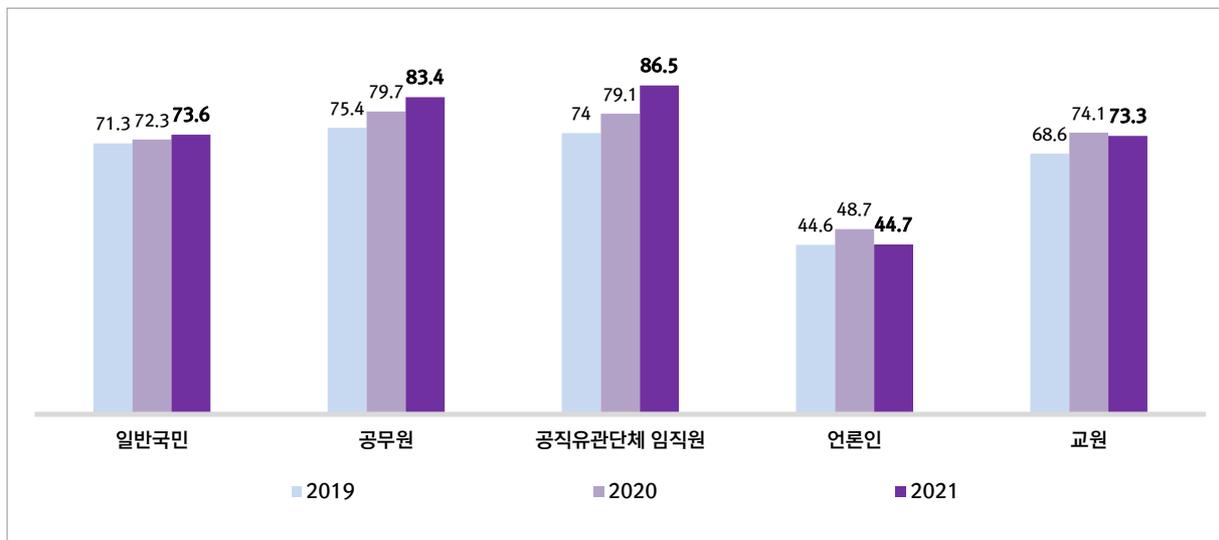


2) 각자내기에 대한 인식 변화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인식 변화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은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7.4%p), 공무원 (3.7%p), 일반국민(1.3%p)에서 2020년 대비 증가하였음
- ▶ 반면, 언론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는 응답은 44.7%로 2020년 대비 4.0%p 감소함
- ▶ 한편, 교원의 경우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는 응답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전반적으로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에 동의 응답이 우세함

〈그림4-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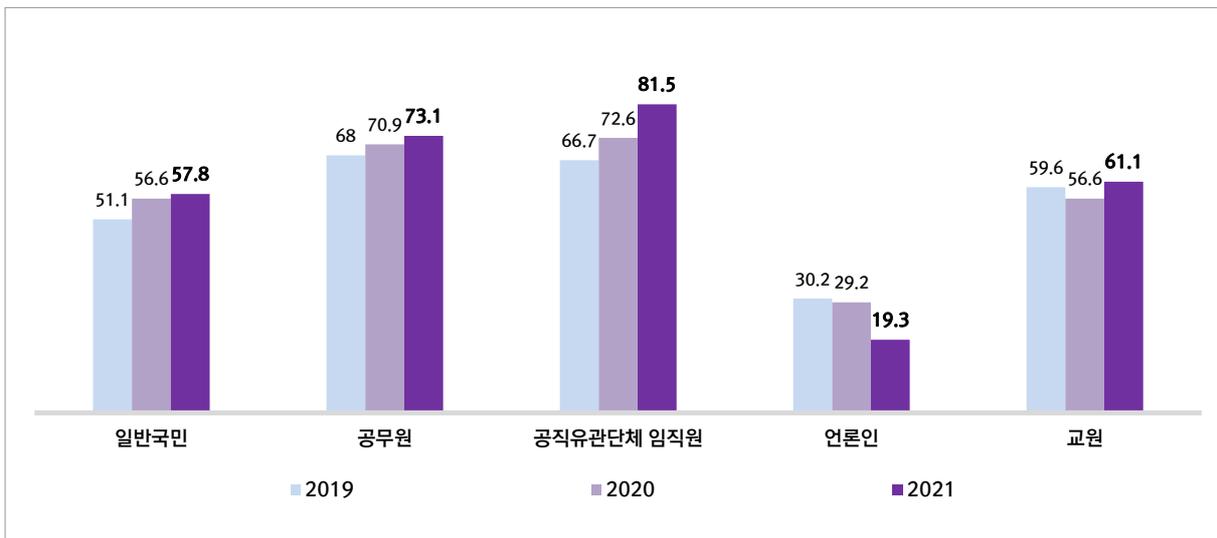
(단위 : %)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되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2020년 대비 증가하였음
- ▶ 반면, 언론인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되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19.3%로 2020년(29.2%) 대비 9.9%p 감소함
- ▶ 전반적으로 언론인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되었다’에 동의 응답이 우세함

〈그림4-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되었다

(단위 : %)



3)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들에 대하여 일반국민의 동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함
-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의 동의 비율은 2020년 대비 언론인은 증가함, 그 외 모든 법 적용대상자에서 2020년 대비 감소함
- ▶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의 동의 비율은 2020년 대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교원은 증가하였고, 언론인과 공무원은 감소함
- ▶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의 동의 비율은 2020년 대비 언론인과 교원은 증가했으나, 공무원과 공직직유관단체 임직원에서 2020년 대비 감소함
- ▶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의 동의 비율은 2020년 대비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증가, 그 외 모든 집단은 2020년 대비 감소함

〈표4-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행태 변화

항 목	연 도	동의 응답 비율(%)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교원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2019	60.0	-	-	-	-
	2020	61.1	-	-	-	-
	2021	60.2	-	-	-	-
	증감 (2021-2020)	-0.9	-	-	-	-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 대한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	2019	62.4	-	-	-	-
	2020	65.0	-	-	-	-
	2021	58.6	-	-	-	-
	증감 (2021-2020)	-6.4	-	-	-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	2019	-	93.2	96.0	82.7	88.8
	2020	-	92.7	93.5	82.6	90.9
	2021	-	90.0	92.0	86.0	88.1
	증감 (2021-2020)	-	-2.7	-1.5	3.4	-2.8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	2019	-	86.2	88.7	81.2	85.3
	2020	-	85.9	88.1	82.6	85.9
	2021	-	84.9	89.0	80.7	88.4
	증감 (2021-2020)	-	-1.0	0.9	-1.9	2.5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	2019	-	82.2	80.0	62.9	74.8
	2020	-	80.8	85.6	63.1	80.0
	2021	-	76.6	81.5	63.3	80.2
	증감 (2021-2020)	-	-4.2	-4.1	0.2	0.2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	2019	48.8	84.8	82.0	47.5	75.6
	2020	56.9	87.3	79.1	53.3	77.2
	2021	54.9	84.6	84.0	44.7	74.6
	증감 (2021-2020)	-2.0	-2.7	4.9	-8.6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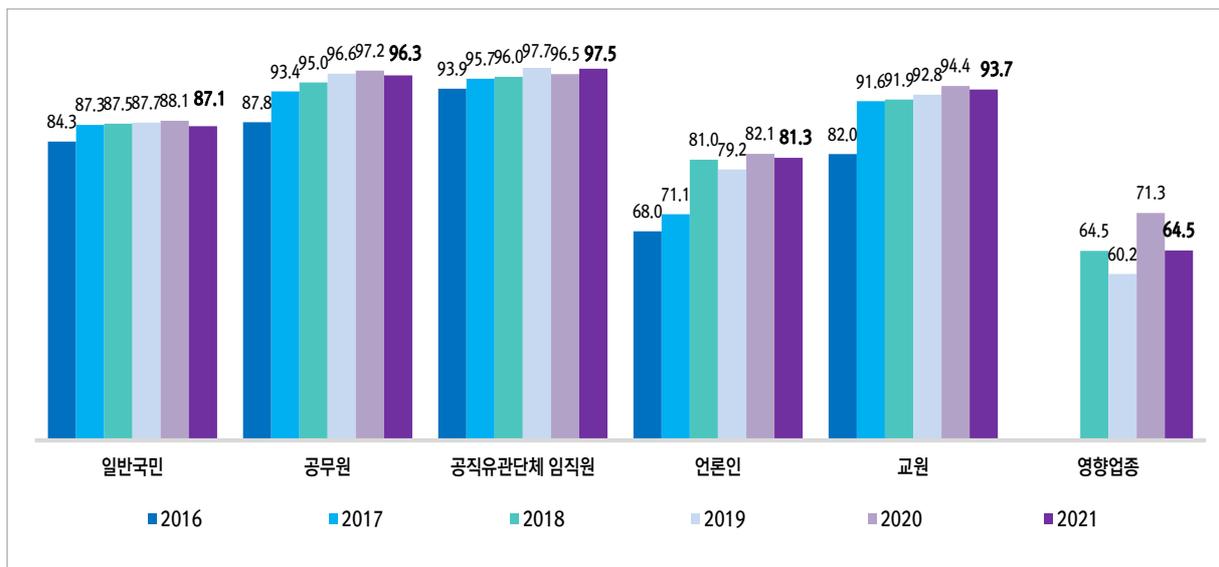
※ 행태 변화 문항은 일반국민과 법적용대상에게 공통적으로 질문하거나 집단별로 따로 질문함

4)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 ▶ 청탁금지법이 공직사회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본 결과, 영향업종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영향업종의 경우 ‘긍정적’ 응답은 64.5%로 2020년(71.3%) 대비 6.8%p 감소함
- ▶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우세함

〈그림4-4〉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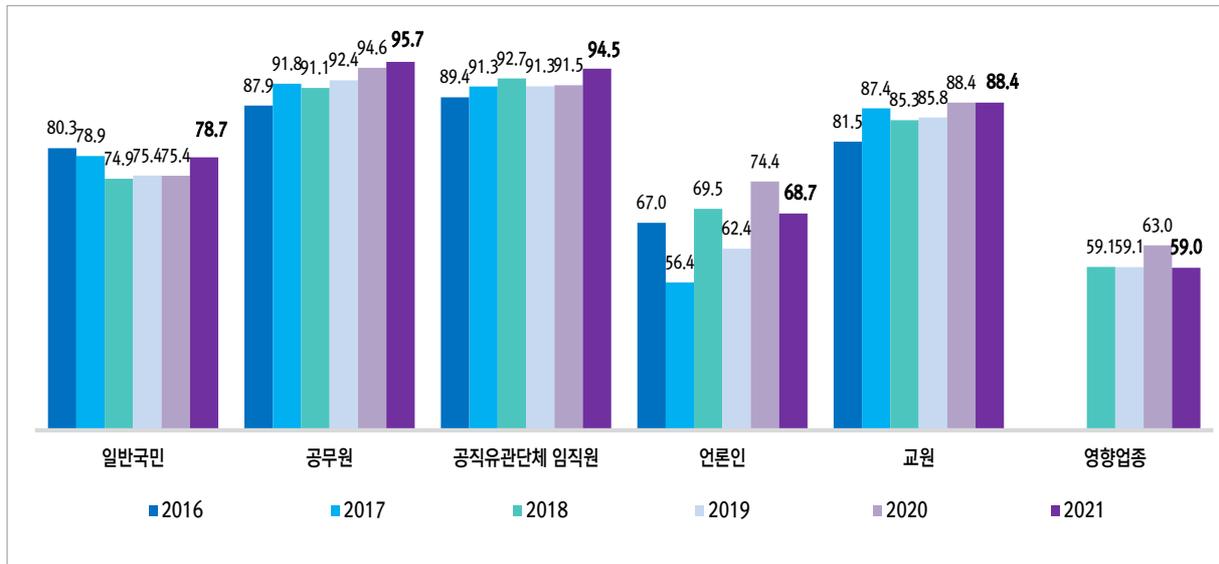


5)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 도움 정도

- ▶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3.3%p), 공직유관단체 임직원(3.0%p), 공무원(1.1%p)에서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2020년 대비 증가함
- ▶ 교원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88.4%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반면, 언론인과 영향업종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2020년 대비 감소함

〈그림4-5〉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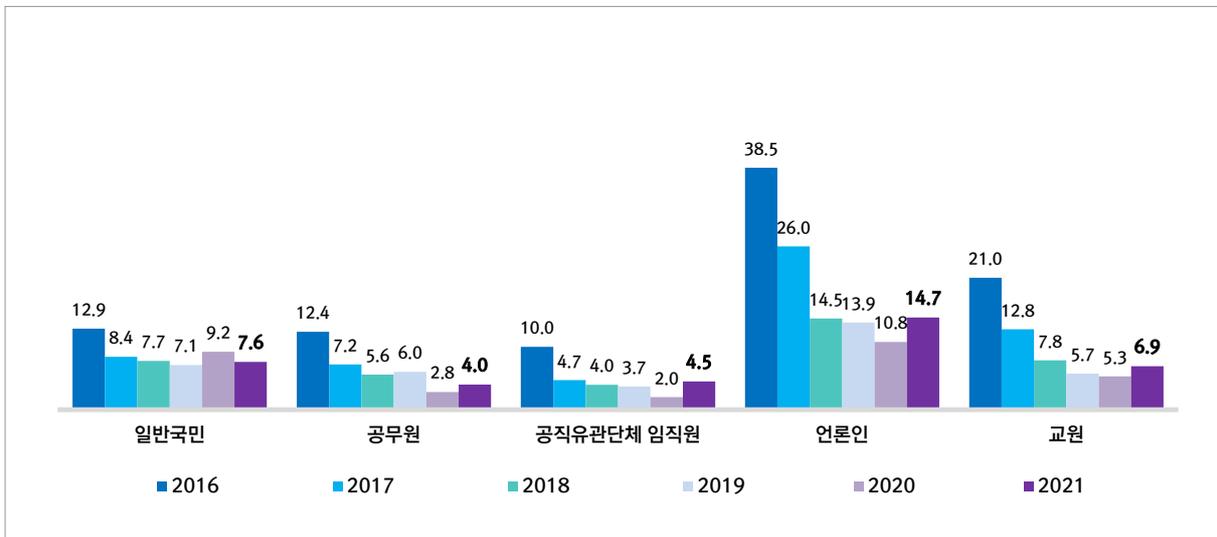


6)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는 정도

- ▶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일반국민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지장이 되었다’는 응답이 2020년 대비 소폭 증가함
- ▶ 반면, 일반국민의 경우 ‘지장이 되었다’는 응답은 7.6%로 2020년(9.2%) 대비 1.6%p 감소함

〈그림4-6〉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었다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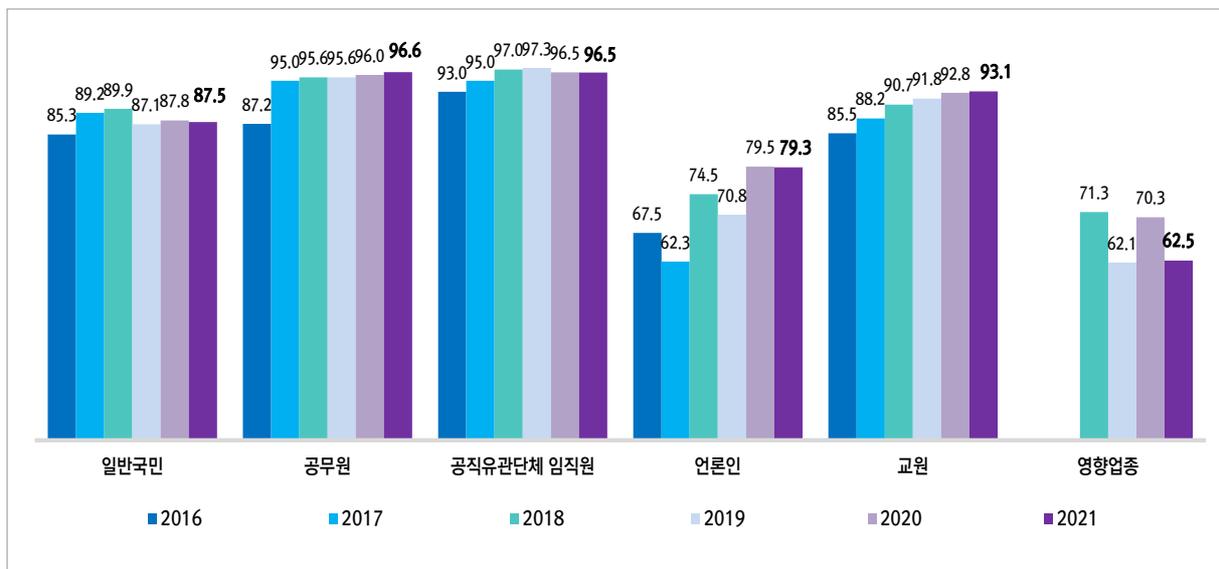


7)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 ▶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영향업종을 제외한 모든 집단에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반면, 영향업종의 경우 ‘지지한다’는 응답은 62.5%로 2020년(70.3%) 대비 7.8%p 감소함
- ▶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우세함

〈그림4-7〉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여부

(단위 : %)



※ 2016~2018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 여부를 묻고, 2019~2021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지지 여부를 물음
 ※ 영향업종은 청탁금지법 시행 찬반/지지 질문을 2018~2021년 조사에서만 물음

2.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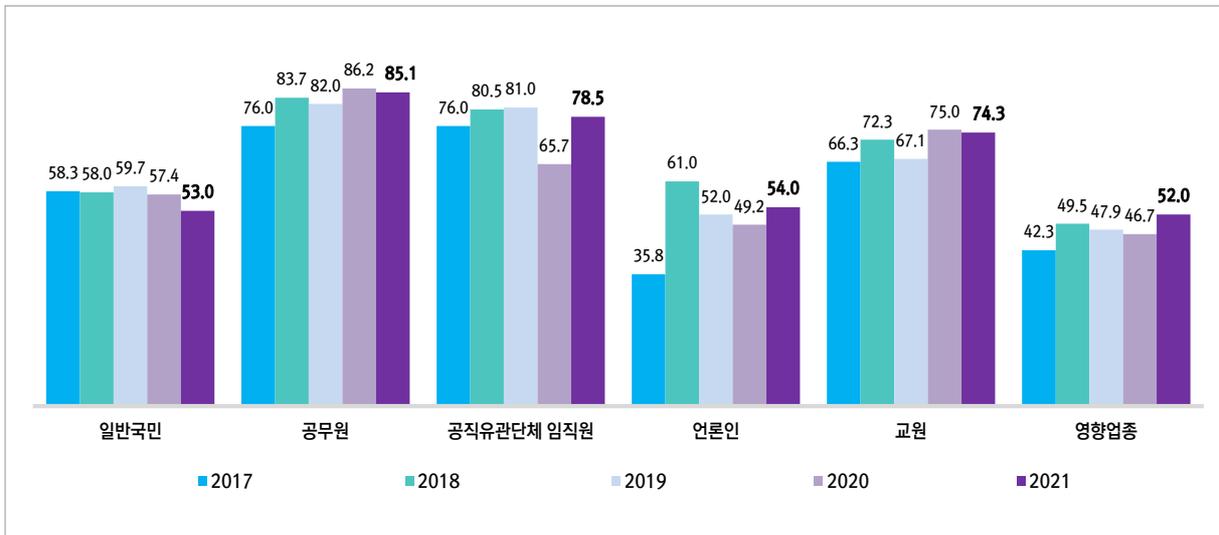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식사(3만), 선물(5만), 경조사비(5만) 한도와 관련하여, 가액 범위의 적정성에 대해 질문함

1) 가액 범위의 적정성

- ▶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2.8%p), 영향업종(5.3%p), 언론인(4.8%p)의 ‘적정하다’는 응답은 2020년 대비 증가하였음
- ▶ 반면, 일반국민, 공무원, 교원의 경우 ‘적정하다’는 응답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함
- ▶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식사금액 한도 3만원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함

〈그림4-8〉 식사금액 3만원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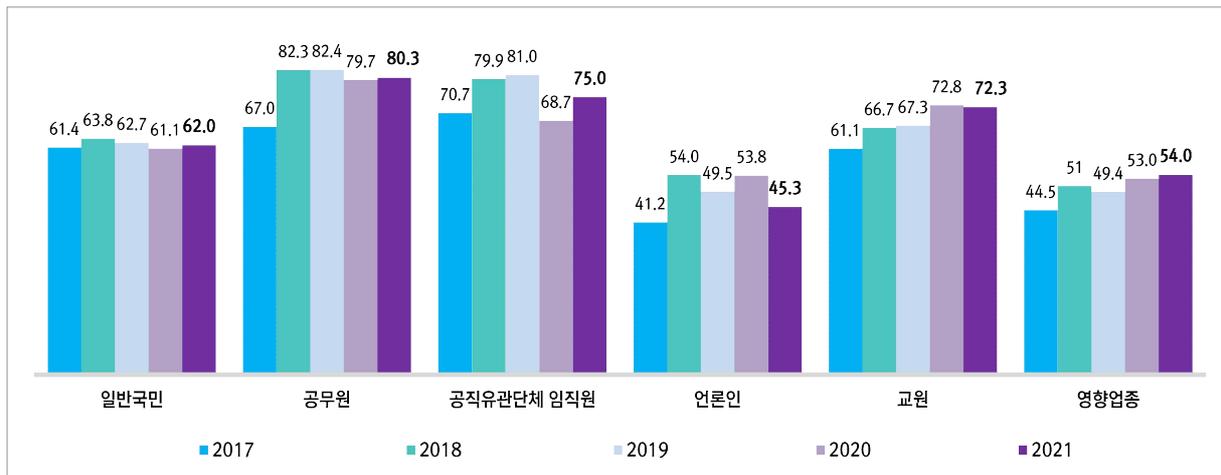
(단위 : %)



- ▶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6.3%p), 영향업종(1.0%p)의 ‘적정하다’는 응답은 2020년 대비 증가하였음
- ▶ 반면, 언론인의 경우 ‘적정하다’는 응답은 45.3%로 2020년(53.8%) 대비 8.5%p 감소함
- ▶ 그 외 일반국민, 공무원, 교원의 ‘적정하다’는 응답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림4-9〉 선물금액 5만원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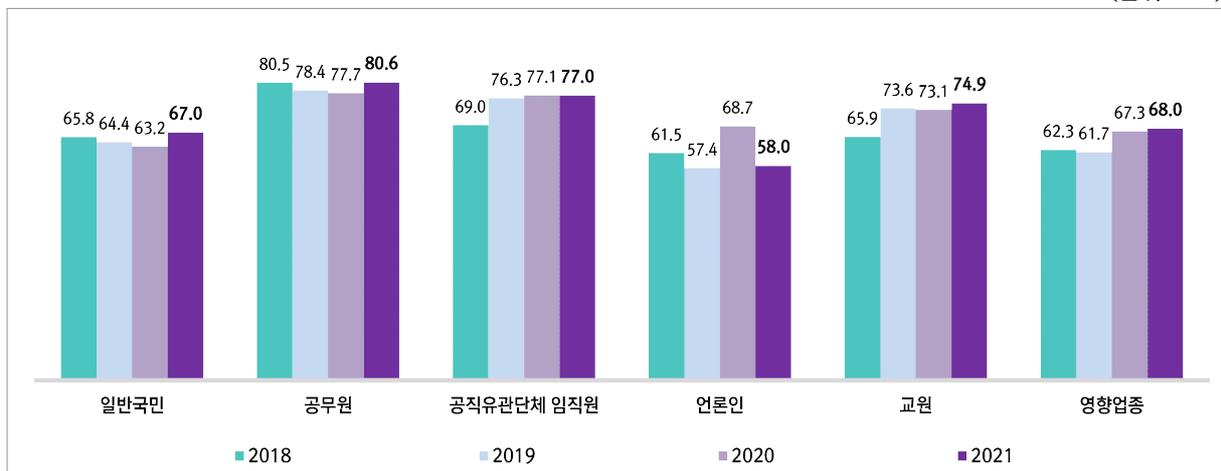
(단위 : %)



- ▶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일반국민(3.8%p), 공무원(2.9%p), 교원(1.8%p)의 ‘적정하다’는 응답은 2020년 대비 증가하였음
- ▶ 반면, 언론인의 경우 ‘적정하다’는 응답은 58.0%로 2020년(68.7%) 대비 10.7%p 감소함
- ▶ 그 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영향업종의 ‘적정하다’는 응답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전반적으로 모든 집단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은 ‘적정하다’는 응답이 우세함

〈그림4-10〉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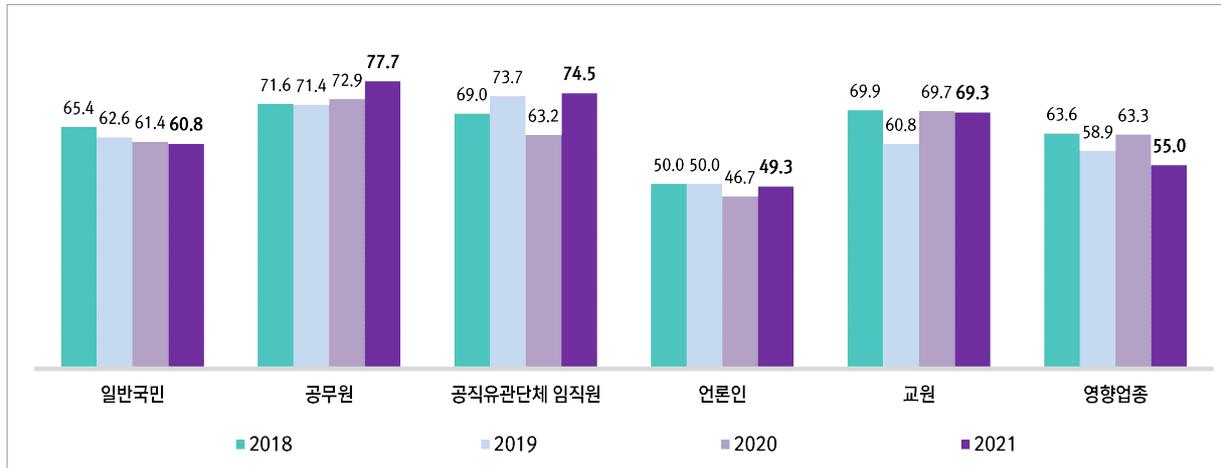
(단위 : %)



- ▶ 경조사비 한도 5만원에 대해 공무원(4.8%p),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1.3%p), 언론인(2.7%p)의 '적정하다'는 응답은 2020년 대비 증가하였음
- ▶ 반면, 영향업종의 경우 '적정하다'는 응답은 55.0%로 2020년(63.3%) 대비 8.3%p 감소함
- ▶ 그 외 일반국민, 교원의 '적정하다'는 응답은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그림4-11〉 경조사비 한도 5만원의 적정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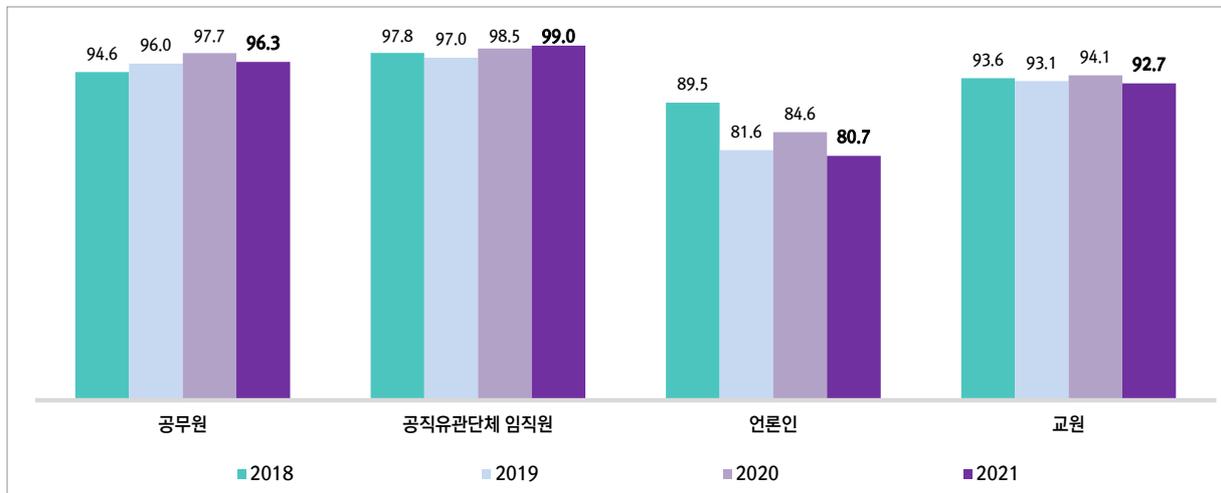
3. 청탁금지법 개선방향

1) 청탁금지법 교육 경험 및 충분성

- ▶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경험이 있는지, 교육이 충분한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향후 교육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교육 경험과 교육의 충분성에 대해 조사함
-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교원 집단의 경우,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90% 이상이며, ‘교육이 충분하다’는 응답자 또한 85% 이상으로,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 반면, 언론인의 경우 교육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0.7%로 전년대비 3.9%p 감소했고, 교육 충분성에 대해서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42.7%로 전년대비 12.2%p 감소해, 다른 법 적용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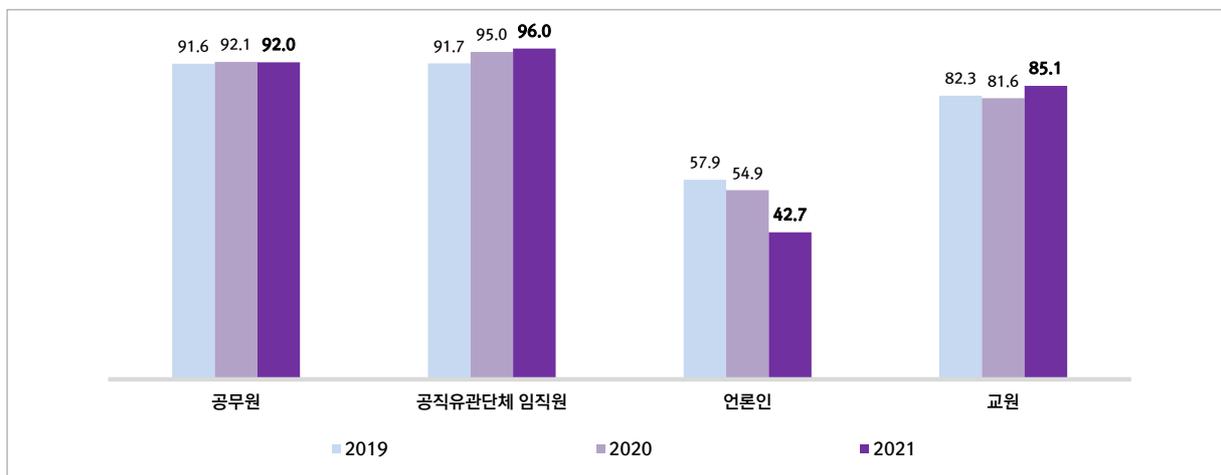
〈그림4-12〉 청탁금지법 교육 경험

(단위 : %)



〈그림4-13〉 청탁금지법 교육 충분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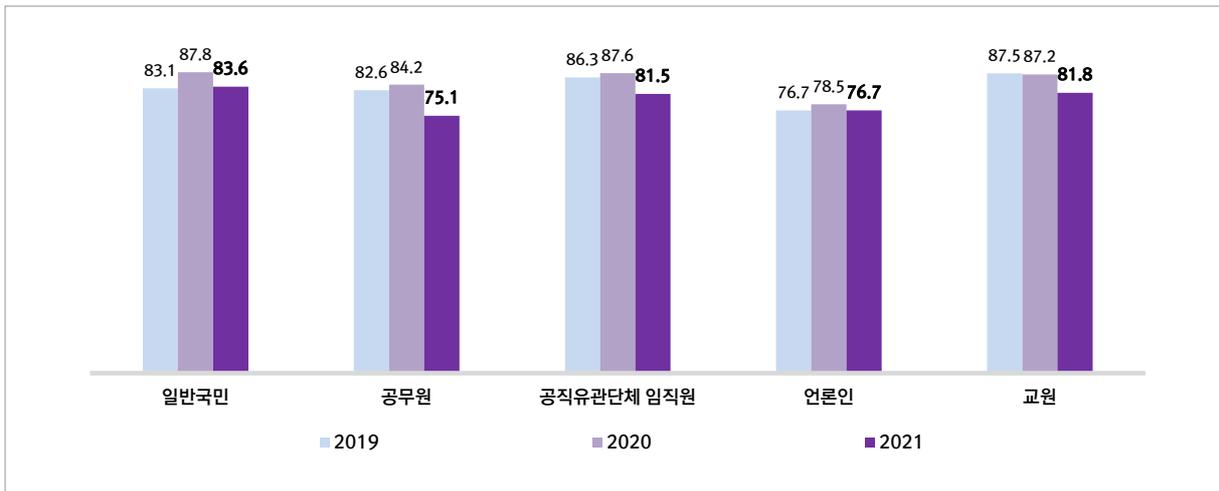


2)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확대

- ▶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모든 집단에서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20년 대비 소폭 감소함
- ▶ 전반적으로 2021년에도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우세함

〈그림4-14〉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지규정 신설의 필요성

(단위 : %)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CHAPTER

—

5

FGI 조사 결과



1. FGI 조사 설계

- 공직자등이 현장에서 느끼는 청탁금지법의 영향력 등 현 실태를 솔직하게 들어보고, 부정청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취약분야 등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찾기 위하여 공직자, 언론인, 교원, 기업·법조인·시민단체 각 1그룹씩 총 4그룹(그룹별 6명으로 구성)을 그룹별 집중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임

2.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 방향

- 현실적인 수준에 맞게 가액 한도를 상향하자는 인식과 입법 취지를 생각해 현 가액을 유지하자는 인식이 공존함
 - 물가상승률, 경제 활성화 등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액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 반면, 법의 취지를 고려해 어렵게 만들어진 3, 5, 5, 10만 원(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농수산물 선물)의 가액범위를 근본적으로 유지하자는 인식도 있음
-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일시 상향했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인식임
 - 명절기간 일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20만 원까지 가액을 상향해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시적으로 가액을 상향하는 조치는, 선물 가액의 상한선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선물하는 입장에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있음
-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상향한다고 해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는 않으며, 가능하다면 상시적인 상향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 근본적인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한선을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명절을 이유로 예외적으로 한도를 상향하는 조치는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 또한, 상한선이 늘어남에 따라, 오히려 상향의 취지 자체를 왜곡하여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인식도 있음
- 한편, 물가상승률과 사회의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피해를 받는 1차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명절기간 등 예외적

인 가액 한도 상향은 큰 무리가 없다는 인식

- 반면, 농축수산화혜의 소비 진작을 위한 예외 사항이 굳이 이 법에서 논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태도도 존재
 - 피해 업종을 농수축산화혜만으로 한정할 수 없기에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3. 청렴선물 권고안

- 일반국민이나 민간 기업 등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을 준용함으로써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고 다소 과한 주장이라고 인식함
- 청렴선물 권고안 마련에 대한 선의는 이해하지만 민간 부분까지 청탁금지법상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과도한 것 같다는 인식
- 원칙적으로 민간영역은 청탁금지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법의 적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
- 개방형 인사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어 공직과 민간영역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어서 민간영역이라고 해도 최소 수준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의
- 사회 전반에 부패가 만연하기에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문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스템 차원에서 ‘공직자등’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기보다 전 사회적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도 있음
- 권고적 성격이라도 공공 부분을 벗어난 민간 영역에의 규제나 행동의 제약을 주는 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4. 부정청탁 및 잘못된 관행

- 집단별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처벌이 어려운 분야들을 언급함
- 공직자 집단에서는 비자 발급 관련,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 채용과 관련한 사례를 제시함. 교직원 집단에서는 교직 인사 발령, 대학 논문심사 등의 사례를 제시함
- 언론인 집단에서는 대가성 입증이 어려운 인턴 채용 비리, 민간위탁 분야의 전문가 채용과 관련한 비리 등의 사례를 제시함

- 기업이나 시민단체 집단에서는 기사 청탁, 예산 청탁, 공공기관 임용, 기부 관련, 공동체 라디오 등의 사례를 제시함.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무기계약직 채용 비리, 인맥을 통한 후원 명칭 사용 등의 사례를 제시함
- 재량 행사 범위가 넓은 하위직 공무원이 개인적 관계 등을 통해서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행위 등의 부패 유발 사례를 제시함
- 공직자가 민간에 자녀 또는 친인척 취업을 청탁하는 행태, 고위 공직자의 퇴직 후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민간업체에 전관예우의 형태로 취업하는 행태에 대한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인식
- 청탁금지법의 파급효과와 사회적인 안착 여부를 검토하여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를 희망
- 민간 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 보다, 기존 청탁금지법을 보완 또는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를 희망함
 - 금지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먼저 기존 청탁금지법을 보완한 후에 도입하여도 된다는 인식

5.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

- 기관장이 소속기관 직원의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인식
- 동일한 사안에 대한 다수의 위반자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시 법 위반자가 속한 관할법원에 따른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 현행 통보 절차를 유지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체나 제도적 방안을 도입하는 형태로 개선할 수 있다는 지적
- 제시된 개선방안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다른 기관으로 부과 처분을 인솔하는 건 가능하나, 현재의 변경에는 수검자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
- 공직자, 교원 집단의 대부분에서 행정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맡는 것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임
- 언론인 집단에서는 수용 가능한 수준일 경우에 부과 처분을 이관하자는 의견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권리구제에 있어 단점이 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6. 청탁금지법 개선방향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의 제정 취지를 지키기 위해 ‘거대 부패’를 제재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
 - 거대 부패, 정치 부패 방지를 위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민간부문에 대한 인사 청탁 금지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언급
 - 언론인과 기업 및 시민단체 집단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부패에 논의가 집중되는 것 같아 아쉬우며, 본래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더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지적
- 교원 집단에서는 개정 필요사항으로 외부강의 신고 절차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
 - 외부강의 신고 절차 관련,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에 한 번에 신고하는 방안이 제시됨
-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 홍보 부족하며, 시행 초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일부 인식
-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더 동기를 부여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
 - 더 체계적인 교육방식의 필요성과 관련 민간영역까지의 교육 범위 확장의 필요성 언급
 - 간결하고 시인성 있는 홍보, 참여 욕구나 동기를 유발하는 홍보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
- 기존 운영 중인 청탁금지법 웹사이트 및 질문답변 서비스 개선이 필요
 - 청탁금지법 관련 사이트의 단순화, 자주 나오는 질문을 별도로 표시, 검색기능 강화 등의 개선점을 언급
 - 청탁금지법 관련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의 부족, 뚜렷한 정보제공의 부족을 개선점으로 제시
- 청탁금지법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예방하는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하기를 희망
- 청탁금지법의 개선 방향이 규제 완화하고, 예외를 확대하려는 것 같다는 우려 표명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CHAPTER

—

6

제언



- 2016년 9월 28일 처음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5년을 맞아 국민, 공직자, 영향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인식과 행태 변화, 제도에 대한 호응 및 지지도를 조사함.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서 법 시행 이전과 이후의 변화와 파급효과에 대한 시계열적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었음
-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공직자, 교육, 기자 등 법 적용 대상자 그룹 이외에도 기업·법조계·시민단체 그룹에 대한 집단인터뷰(FGI)를 통해 현장에서 느끼는 청탁금지법 영향력 등을 솔직하게 들어보고, 부정청탁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취약분야,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수수 가능한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통보 절차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았음
-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과 변화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공직자등 법적용 대상자의 92.9%, 일반국민의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음이 확인됨. 이는 법이 시행된 2016년과 비교하여 각각 7.4%, 2.2% 포인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 등의 93.5%, 일반국민의 87.1%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응답했는데, 공직자등의 경우 2016년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한 수치임
- 또한,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은 공직자등의 85.7%, 일반국민의 81.3%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등에서는 2016년에 비해 16.7% 포인트로 큰 폭으로 증가함

	구분	'16	'17	'18	'19	'20	'21	16년 대비
청탁금지법 지지한다	공직자등	85.5	88.3	91.5	91.3	92.1	92.9	7.4%p
	국민	85.3	89.2	89.9	87.1	87.8	87.5	2.2%p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공직자등	85.1	90.1	92.3	93.2	93.5	93.5	8.4%p
	국민	84.3	87.3	87.5	87.7	88.1	87.1	2.8%p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	공직자등	69.0	80.3	78.3	84.9	87.8	85.7	16.7%p
	국민	76.0	77.6	64.5	79.5	82.2	81.3	5.3%p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 시행에 대한 호응과 지지는 꾸준히 상승하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선물제공 문화, 접대문화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되었고, 각자내기 문화의 정착도 청탁금지법이 가져다 준 긍정적인 결과로 보여짐
- 부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행 개선 등 긍정적 인식의 확산이 법 시행 이후의 가장 큰 변화와 성과로 확인됨. 더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영향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일상생활에서 확산되는 변화도 지속적으로 관찰됨
- 한편,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농수산물 선물 등의 3/5/5/10만원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과반 이상이 “적정하다.”라고 응답했음. 특히 선물의 경우 공직자등 71.6%, 일반국민 62.0%, 영향업종 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함
- 청탁금지법이 제정·시행되면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도 혈연·지연·학연 등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의 낡은 관행이 생활 속에서부터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청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져 과거에는 부패라고 인식되지 않던 행위들도 개선이 필요한 부패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국민, 공직자의 이러한 의식전환은 우리나라의 청렴 수준을 한 층 높일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것임
- 이러한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어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청탁금지법이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고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내부신고 활성화, 교육홍보 강화, 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함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패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해 이 법이 공직자의 청렴윤리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패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급기관의 내부규정, 제도운영 등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임
- 갈수록 은밀해지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내부신고를 보다 활성화하고 신고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며,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적극 지급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제도 보완의 일환으로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신고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와 함께 각급기관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를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고, 법 위반 관련자를 엄중히 제재하도록 해야 함.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과태료 부과 통보를 관할 법원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하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함
- 또한, 공직자등이 민간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하는 인사, 협찬 청탁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민간부문의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국민·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확산하는 등 청렴 교육을 강화해 청렴의식을 깊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것임
- 앞으로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변화와 공직자등과 대국민 인식 변화 추이를 시계열 분석하고 제도 보완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진행하여 청탁금지법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취약분야업무를 발굴·개선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임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CHAPTER

—

부록1

설문지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 조사

일 반 국 민

안녕하세요? 한국리서치 ____입니다.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여쭙고자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응답자 선정 질문

선문1. 귀하의 거주지역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선문2.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선문3. 귀하의 연세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만 18세 이하 -> 면접 중단
2. 만 19-29세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I.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직자들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액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입니다.

※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범위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문1. 귀하께서는 현재의 식사금액의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3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3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2. 귀하께서는 현재의 선물금액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10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10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3-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
2.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4.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5.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6.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II.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변화

문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들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8-1.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 대한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9.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는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0-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1.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1-1.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1-2.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III.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문12.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3.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2.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3.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4.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4.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IV.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문15.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1. 매우 지지한다
2.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3.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4.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6.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와 같이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 2. 대체로 필요하다
-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_____

- 1.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 2.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 3.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4.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V. 응답자 특성

배문1.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농/임/어업
- 2. 자영업
- 3. 판매/영업/서비스직
- 4. 생산/기능/노무직
- 5. 사무/관리/전문직
- 6. 전업주부
- 7. 학생
- 8. 무직/퇴직/기타
-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 응답해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 조사

공직자/ 교원/ 언론인

안녕하세요? 한국리서치 ____입니다.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여쭙고자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 조사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 시행기관 : 한국리서치

응답자 선정 질문_1) 공직자

선문1. 공직자 구분

- | | |
|---------------|----------|
| 1. 국가공무원 | -> 선문2로 |
| 2. 지방공무원 | -> 선문2로 |
| 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 선문3으로 |
| 4. 그 외 | -> 조사 중단 |

선문2. (선문1의 1.과 2. 응답자만)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관리자 (과장급 이상)
2. 실무자

선문3. (선문1의 3. 응답자만) 귀하의 직급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관리자 (실장, 부장급 이상)
2. 실무자 (차장급 이하)

선문4. 귀하의 근무지는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응답자 선정 질문_2) 교원

선문1. 소속 기관 유형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대학교
5. 그 외 -> 조사 중단

선문2. 국공립 여부

1. 국공립
2. 사립

선문3. 기관 소재지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세종

응답자 선정 질문_3) 언론인

선문1. 소속 언론사 구분

1. 중앙언론
2. 지방언론
3. 인터넷 언론
4. 그 외 -> 조사 중단

선문2. 담당 업무

1. 신문기자
 2. 방송기자
 3. PD
-

I.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

※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직자등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또는 부조 목적을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금액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액한도는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 조화의 경우 10만원)입니다.

문1. 귀하께서는 현재의 식사금액의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3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3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문2. 귀하께서는 현재의 선물금액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10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10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문3-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
2.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4.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5.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워지 마시오)

문6.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 청탁금지법은 우회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지침: 외부강의 등은 종사분야와 관련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문6-1.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외부강의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
2. 적정하다
3.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
99. 잘 모르겠다

문6-2. (국공립교원만)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립과 마찬가지로 외부강의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
2. 적정하다
3.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
99. 잘 모르겠다

문6-3. (사립교원 및 언론사 임직원만)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
2. 적정하다
3.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
99. 잘 모르겠다

II.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변화

문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들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9.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9-1.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10.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는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1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12.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2-1.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2-2.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런 편이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III.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효과

문13.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99. 잘 모르겠다

문14.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2.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3.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4.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15.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99. 잘 모르겠다

IV.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및 개선방향

문16.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1. 매우 지지한다
2.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3.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4.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99. 잘 모르겠다

문1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1. 1회
2. 2회
3. 3회 이상
4.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99. 잘 모르겠다

문17-1.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충분하다
2. 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3. 별로 충분하지 못하다
4. 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99. 잘 모르겠다

문17-2.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1. 사이버강의
2.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자료
3. 워크숍, 설명회 등 집합교육
4. 기타()
99. 잘 모르겠다

문18.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을뿐,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와 같이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_____

1.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2.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3.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4.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99. 잘 모르겠다

V. 응답자 특성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배문2. 귀하의 연세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1. 만 19-29세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 이상

❶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❶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 조사

영향업종

안녕하세요? 한국리서치 ____입니다.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____의 인식을 여쭙고자 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 조사 주관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 시행기관 : 한국리서치

응답자 선정 질문_영향업종

선문1. 귀하의 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 | |
|------------------|------------|
| 1. 일반음식업 | -> 선문 2 로 |
| 2.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 -> 선문 3 으로 |
| 3.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 -> 선문 3 으로 |
| 4.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 -> 선문 3 으로 |
| 5. 그 외 | -> 조사 중단 |

선문2. 귀하의 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한식
 2. 중식
 3. 일식
 4. 서양식
 5. 기타(기관 구내식당, 치킨,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업, 분식/김밥 전문점 등 기타)
- > 선문 2 응답 후 선문 4 로

선문3. 귀하의 업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농업 (과실, 채소, 임산물 등)
2. 축산업 (육류 및 육가공식품 등)
3. 수산업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 등)
4. 화훼업 (화초 및 산식물 등)

선문3-1. (선문1의 2. 생산업만) 귀하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어떻게 되십니까?

- | | | | | |
|-------|-------|-------|-------|-----------|
| 1. 한우 | 2. 과일 | 3. 전복 | 4. 굴비 | 5. 기타 () |
|-------|-------|-------|-------|-----------|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10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10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3-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
2.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4.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등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5.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6.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적정하다
3.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II.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업상의 변화

문7. 청탁금지법 시행이 귀 사업체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없다 → 문8로
2. 있다 → 문7-1로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7-1.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귀하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1. 크게 증가했다
2. 조금 증가했다
3. 조금 감소했다
4. 크게 감소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종 전반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별로 그렇지 않다
4. 전혀 그렇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III.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

* 다음 문항부터는 귀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0.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2.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3. 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4.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IV. 청탁금지법 정착여부

문11.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1. 매우 지지한다
2. 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3. 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4.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문12.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 _____ 2순위: _____

1.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2.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3.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4.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99. 잘 모르겠다 (읽지 마시오)

V. 응답자 특성

배문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배문2. __님의 연세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1. 만 18세 이하 면접중단
2. 만 19-29세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배문3. 귀 사업체가 위치한 상권은 다음 중 어디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1개만 선택해 주십시오.)

1. 관공서 인근
2. 대형오피스 밀집지
3. 학교 주변
4. 주택가
5. 도시 변두리
6. 대도시 교외
7. 역세권
8. 도심 유흥·번화가
9. 농어촌
10. 시장
11. 기타()

배문4. 귀 사업체의 2020년 기준 연간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1. 5천만원 미만
2. 5천만원~1억원 미만
3. 1억~5억원 미만
4. 5억~10억원 미만
5. 10억원 이상
99. 잘 모르겠다

❶ 설문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❶

청탁금지법 시행효과 분석을 통한 발전방향 모색 연구 보고서

CHAPTER

—

부록2

결과표



[결과표 1. 일반국민]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 전체 ▣		사례수 (명)	1.00
		(800)	100.0
성별	남자	(396)	49.5
	여자	(404)	50.5
연령	20대	(134)	16.8
	30대	(128)	16.0
	40대	(148)	18.5
	50대	(156)	19.5
	60대 이상	(234)	29.3
	거주 지역	서울	(152)
경기/인천		(252)	31.5
대전/세종/충북/충남		(84)	10.5
광주/전북/전남		(79)	9.9
대구/경북		(77)	9.6
부산/울산/경남		(121)	15.1
강원/제주		(35)	4.4
직업		농/임/어업	(25)
	자영업	(117)	14.6
	판매/영업/서비스직	(68)	8.5
	생산/기능/노무직	(40)	5.0
	사무/관리/전문직	(273)	34.1
	전업주부	(136)	17.0
	학생	(50)	6.3
	무직/퇴직/기타	(91)	11.4
	잘 모르겠다	(1)	0.1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문1] 귀하께서는 현재의 식사금액의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3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3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39.3	53.0	7.0	0.7	100.0
성별						
남자	(396)	44.2	47.5	7.8	0.5	100.0
여자	(404)	34.4	58.4	6.2	1.0	100.0
연령						
20대	(134)	39.6	55.2	5.2	0.0	100.0
30대	(128)	33.1	55.2	10.9	0.8	100.0
40대	(148)	38.2	55.9	5.4	0.6	100.0
50대	(156)	44.9	50.6	4.5	0.0	100.0
60대 이상	(234)	39.4	50.3	8.5	1.7	100.0
거주 지역						
서울	(152)	46.7	47.4	5.9	0.0	100.0
경기/인천	(252)	38.1	53.6	7.9	0.4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84)	27.6	67.6	3.6	1.2	100.0
광주/전북/전남	(79)	51.9	43.0	3.8	1.3	100.0
대구/경북	(77)	29.9	57.1	11.7	1.3	100.0
부산/울산/경남	(121)	38.7	53.2	6.6	1.5	100.0
강원/제주	(35)	37.1	51.4	11.4	0.0	100.0
직업						
농/임/어업	(25)	43.1	48.8	8.1	0.0	100.0
자영업	(117)	46.1	47.0	6.0	0.9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8)	35.3	58.8	5.9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0)	39.9	53.0	5.0	2.1	100.0
사무/관리/전문직	(273)	35.7	58.1	6.2	0.0	100.0
전업주부	(136)	35.3	52.9	9.6	2.2	100.0
학생	(50)	38.0	54.0	8.0	0.0	100.0
무직/퇴직/기타	(91)	49.7	41.5	7.7	1.1	100.0
잘 모르겠다	(1)	0.0	100.0	0.0	0.0	100.0

[표 2]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2] 귀하께서는 현재의 선물금액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30.7	62.0	6.8	0.5	100.0
성별						
남자	(396)	39.6	52.6	7.1	0.8	100.0
여자	(404)	22.0	71.3	6.4	0.2	100.0
연령						
20대	(134)	25.4	69.4	4.5	0.7	100.0
30대	(128)	19.5	67.2	13.3	0.0	100.0
40대	(148)	34.1	59.1	6.1	0.7	100.0
50대	(156)	41.7	51.9	5.8	0.6	100.0
60대 이상	(234)	30.5	63.5	5.6	0.4	100.0
거주 지역						
서울	(152)	32.9	60.5	5.9	0.7	100.0
경기/인천	(252)	31.0	60.7	7.9	0.4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84)	24.3	67.4	8.3	0.0	100.0
광주/전북/전남	(79)	41.8	53.2	5.1	0.0	100.0
대구/경북	(77)	26.0	64.9	7.8	1.3	100.0
부산/울산/경남	(121)	28.5	65.7	5.0	0.8	100.0
강원/제주	(35)	28.6	65.7	5.7	0.0	100.0
직업						
농/임/어업	(25)	43.1	52.8	4.1	0.0	100.0
자영업	(117)	41.0	50.4	6.9	1.7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8)	29.4	66.2	4.4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0)	47.9	44.5	7.6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273)	28.2	63.7	7.7	0.4	100.0
전업주부	(136)	23.5	71.3	5.1	0.0	100.0
학생	(50)	12.0	78.0	10.0	0.0	100.0
무직/퇴직/기타	(91)	35.5	56.9	6.6	1.1	100.0
잘 모르겠다	(1)	100.0	0.0	0.0	0.0	100.0

[표 3]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10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10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15.8	67.0	16.6	0.6	100.0
성별						
남자	(396)	21.8	61.6	16.3	0.3	100.0
여자	(404)	9.9	72.3	16.8	1.0	100.0
연령						
20대	(134)	11.9	73.9	14.2	0.0	100.0
30대	(128)	11.7	64.8	22.7	0.8	100.0
40대	(148)	17.3	67.1	14.9	0.7	100.0
50대	(156)	24.4	66.0	9.0	0.6	100.0
60대 이상	(234)	13.5	64.9	20.8	0.9	100.0
거주 지역						
서울	(152)	16.4	68.4	14.5	0.7	100.0
경기/인천	(252)	13.5	66.7	19.0	0.8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84)	16.2	62.9	21.0	0.0	100.0
광주/전북/전남	(79)	21.5	64.6	13.9	0.0	100.0
대구/경북	(77)	14.3	71.4	13.0	1.3	100.0
부산/울산/경남	(121)	13.8	71.3	14.0	0.8	100.0
강원/제주	(35)	25.7	54.3	20.0	0.0	100.0
직업						
농/임/어업	(25)	23.6	56.1	20.3	0.0	100.0
자영업	(117)	27.4	56.3	15.4	0.9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8)	11.8	75.0	13.2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0)	32.4	47.9	19.7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273)	12.8	71.1	16.1	0.0	100.0
전업주부	(136)	7.4	69.9	19.9	2.9	100.0
학생	(50)	16.0	70.0	14.0	0.0	100.0
무직/퇴직/기타	(91)	16.0	67.6	16.4	0.0	100.0
잘 모르겠다	(1)	0.0	100.0	0.0	0.0	100.0

[표 3_1]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에 대한 의견(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상향)
 [문3_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46.4	52.2	1.4	100.0
성별					
남자	(396)	47.9	50.9	1.3	100.0
여자	(404)	45.0	53.5	1.5	100.0
연령					
20대	(134)	45.5	51.5	3.0	100.0
30대	(128)	41.9	58.1	0.0	100.0
40대	(148)	51.0	47.6	1.4	100.0
50대	(156)	51.3	48.7	0.0	100.0
60대 이상	(234)	43.3	54.5	2.1	100.0
거주 지역					
서울	(152)	42.1	54.6	3.3	100.0
경기/인천	(252)	47.2	51.6	1.2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84)	44.5	54.3	1.2	100.0
광주/전북/전남	(79)	62.0	38.0	0.0	100.0
대구/경북	(77)	49.4	50.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21)	37.3	61.0	1.7	100.0
강원/제주	(35)	54.3	45.7	0.0	100.0
직업					
농/임/어업	(25)	48.0	52.0	0.0	100.0
자영업	(117)	52.3	44.3	3.4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8)	52.9	47.1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0)	52.1	47.9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273)	45.7	53.5	0.7	100.0
전업주부	(136)	43.4	55.1	1.5	100.0
학생	(50)	38.0	60.0	2.0	100.0
무직/퇴직/기타	(91)	42.1	55.8	2.2	100.0
잘 모르겠다	(1)	100.0	0.0	0.0	100.0

[표 4] 일반국민 및 기업간에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문4]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8.7	27.0	35.7	46.4	14.1	60.5	3.9	100.0	2.7	0.8
성별											
남자	(396)	11.7	25.5	37.2	44.8	14.8	59.6	3.2	100.0	2.6	0.9
여자	(404)	5.7	28.5	34.2	48.0	13.4	61.4	4.5	100.0	2.7	0.8
연령											
20대	(134)	7.5	27.6	35.1	53.7	4.5	58.2	6.7	100.0	2.6	0.7
30대	(128)	15.9	26.0	41.9	45.6	11.7	57.3	0.8	100.0	2.5	0.9
40대	(148)	6.1	27.6	33.7	45.5	17.6	63.1	3.3	100.0	2.8	0.8
50대	(156)	8.3	25.6	34.0	41.0	23.1	64.1	1.9	100.0	2.8	0.9
60대 이상	(234)	7.3	27.7	35.0	46.8	12.6	59.5	5.6	100.0	2.7	0.8
거주 지역											
서울	(152)	7.2	30.9	38.2	41.4	16.4	57.9	3.9	100.0	2.7	0.8
경기/인천	(252)	9.1	28.2	37.3	44.0	14.7	58.7	4.0	100.0	2.7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7.1	26.0	33.1	47.1	16.2	63.3	3.6	100.0	2.8	0.8
광주/전북/전남	(79)	11.4	29.1	40.5	44.3	12.7	57.0	2.5	100.0	2.6	0.9
대구/경북	(77)	13.0	26.0	39.0	45.5	10.4	55.8	5.2	100.0	2.6	0.9
부산/울산/경남	(121)	5.2	20.8	26.0	58.4	12.4	70.8	3.2	100.0	2.8	0.7
강원/제주	(35)	11.4	22.9	34.3	48.6	11.4	60.0	5.7	100.0	2.6	0.9
직업											
농/임/어업	(25)	4.1	28.5	32.5	44.7	18.7	63.4	4.1	100.0	2.8	0.8
자영업	(117)	10.3	24.0	34.3	45.1	16.3	61.4	4.3	100.0	2.7	0.9
판매/영업/서비스직	(68)	10.3	14.7	25.0	57.4	16.2	73.5	1.5	100.0	2.8	0.8
생산/기능/노무직	(40)	5.0	29.8	34.8	42.5	17.7	60.1	5.0	100.0	2.8	0.8
사무/관리/전문직	(273)	8.6	28.3	36.9	45.2	15.4	60.6	2.6	100.0	2.7	0.8
전업주부	(136)	8.8	30.9	39.7	43.4	12.5	55.9	4.4	100.0	2.6	0.8
학생	(50)	8.0	36.0	44.0	50.0	4.0	54.0	2.0	100.0	2.5	0.7
무직/퇴직/기타	(91)	8.7	23.0	31.7	48.8	10.9	59.7	8.6	100.0	2.7	0.8
잘 모르겠다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5] 일반국민 및 기업에 적용할 가액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5]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18.6	33.8	52.4	31.2	14.2	45.4	2.2	100.0	2.4	1.0
성별											
남자	(396)	25.7	31.9	57.6	24.4	16.8	41.2	1.2	100.0	2.3	1.0
여자	(404)	11.6	35.6	47.3	37.9	11.6	49.5	3.2	100.0	2.5	0.9
연령											
20대	(134)	11.2	34.3	45.5	40.3	11.9	52.2	2.2	100.0	2.5	0.9
30대	(128)	22.9	43.2	66.1	26.0	7.8	33.9	0.0	100.0	2.2	0.9
40대	(148)	28.3	22.2	50.5	32.8	14.9	47.6	1.9	100.0	2.3	1.1
50대	(156)	16.7	32.7	49.4	26.9	21.2	48.1	2.6	100.0	2.5	1.0
60대 이상	(234)	15.7	36.3	52.1	30.6	13.9	44.5	3.4	100.0	2.4	0.9
거주 지역											
서울	(152)	23.7	30.3	53.9	32.2	11.8	44.1	2.0	100.0	2.3	1.0
경기/인천	(252)	20.6	29.0	49.6	34.5	12.7	47.2	3.2	100.0	2.4	1.0
대전/세종/충북/충남	(84)	16.4	39.3	55.7	31.7	11.4	43.1	1.2	100.0	2.4	0.9
광주/전북/전남	(79)	11.4	44.3	55.7	29.1	12.7	41.8	2.5	100.0	2.4	0.9
대구/경북	(77)	16.9	37.7	54.5	24.7	20.8	45.5	0.0	100.0	2.5	1.0
부산/울산/경남	(121)	16.7	34.0	50.7	30.4	16.5	47.0	2.3	100.0	2.5	1.0
강원/제주	(35)	14.3	37.1	51.4	22.9	22.9	45.7	2.9	100.0	2.6	1.0
직업											
농/임/어업	(25)	7.3	56.9	64.2	24.4	11.4	35.8	0.0	100.0	2.4	0.8
자영업	(117)	17.9	34.3	52.1	25.6	19.7	45.3	2.6	100.0	2.5	1.0
판매/영업/서비스직	(68)	14.7	27.9	42.6	38.2	17.6	55.9	1.5	100.0	2.6	1.0
생산/기능/노무직	(40)	30.3	17.7	47.9	32.4	19.7	52.1	0.0	100.0	2.4	1.1
사무/관리/전문직	(273)	23.2	37.5	60.7	25.4	12.8	38.2	1.1	100.0	2.3	1.0
전업주부	(136)	10.3	29.4	39.7	45.6	9.6	55.1	5.1	100.0	2.6	0.8
학생	(50)	12.0	34.0	46.0	40.0	14.0	54.0	0.0	100.0	2.6	0.9
무직/퇴직/기타	(91)	23.0	33.9	56.9	24.7	14.2	39.0	4.2	100.0	2.3	1.0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6] 경조사비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6]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36.1	60.8	2.3	0.9	100.0
성별						
남자	(396)	41.1	55.4	2.5	1.0	100.0
여자	(404)	31.2	66.1	2.0	0.7	100.0
연령						
20대	(134)	36.6	59.7	3.0	0.7	100.0
30대	(128)	28.4	68.5	3.1	0.0	100.0
40대	(148)	44.5	53.5	1.4	0.7	100.0
50대	(156)	41.0	55.8	1.9	1.3	100.0
60대 이상	(234)	31.5	65.1	2.1	1.3	100.0
거주 지역						
서울	(152)	40.1	57.2	0.7	2.0	100.0
경기/인천	(252)	41.3	55.2	3.2	0.4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84)	24.5	71.9	3.6	0.0	100.0
광주/전북/전남	(79)	32.9	64.6	0.0	2.5	100.0
대구/경북	(77)	31.2	64.9	3.9	0.0	100.0
부산/울산/경남	(121)	34.8	63.5	0.8	0.8	100.0
강원/제주	(35)	31.4	62.9	5.7	0.0	100.0
직업						
농/임/어업	(25)	19.5	76.4	0.0	4.1	100.0
자영업	(117)	36.9	59.7	1.7	1.7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8)	36.8	61.8	1.5	0.0	100.0
생산/기능/노무직	(40)	44.9	55.1	0.0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273)	37.2	58.8	2.6	1.5	100.0
전업주부	(136)	32.4	66.2	1.5	0.0	100.0
학생	(50)	30.0	62.0	8.0	0.0	100.0
무직/퇴직/기타	(91)	41.4	56.5	2.2	0.0	100.0
잘 모르겠다	(1)	0.0	100.0	0.0	0.0	100.0

[표 7]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인식

[문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들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2.8	13.4	16.1	48.9	32.4	81.3	2.6	100.0	3.1	0.8
성별											
남자	(396)	4.5	14.1	18.7	48.3	31.5	79.8	1.5	100.0	3.1	0.8
여자	(404)	1.0	12.6	13.6	49.5	33.2	82.7	3.7	100.0	3.2	0.7
연령											
20대	(134)	3.7	20.1	23.9	50.0	24.6	74.6	1.5	100.0	3.0	0.8
30대	(128)	1.6	11.7	13.3	55.5	29.7	85.2	1.6	100.0	3.2	0.7
40대	(148)	4.1	8.8	12.8	45.6	36.9	82.5	4.6	100.0	3.2	0.8
50대	(156)	1.3	14.1	15.4	46.2	37.2	83.3	1.3	100.0	3.2	0.7
60대 이상	(234)	3.0	12.8	15.8	48.6	32.1	80.8	3.4	100.0	3.1	0.8
거주 지역											
서울	(152)	1.3	16.4	17.8	45.4	34.2	79.6	2.6	100.0	3.2	0.7
경기/인천	(252)	4.8	13.9	18.7	48.0	31.0	79.0	2.4	100.0	3.1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1.2	13.1	14.3	49.8	32.4	82.1	3.6	100.0	3.2	0.7
광주/전북/전남	(79)	1.3	13.9	15.2	51.9	30.4	82.3	2.5	100.0	3.1	0.7
대구/경북	(77)	2.6	15.6	18.2	48.1	31.2	79.2	2.6	100.0	3.1	0.8
부산/울산/경남	(121)	2.5	9.9	12.4	50.0	34.4	84.4	3.2	100.0	3.2	0.7
강원/제주	(35)	2.9	2.9	5.7	60.0	34.3	94.3	0.0	100.0	3.3	0.7
직업											
농/임/어업	(25)	4.1	28.5	32.5	39.8	19.5	59.3	8.1	100.0	2.8	0.8
자영업	(117)	4.3	20.6	24.9	47.1	27.1	74.3	0.9	100.0	3.0	0.8
판매/영업/서비스직	(68)	1.5	11.8	13.2	61.8	22.1	83.8	2.9	100.0	3.1	0.6
생산/기능/노무직	(40)	0.0	10.1	10.1	55.1	29.8	84.9	5.0	100.0	3.2	0.6
사무/관리/전문직	(273)	2.9	11.7	14.7	45.8	38.8	84.6	0.7	100.0	3.2	0.8
전업주부	(136)	2.2	9.6	11.8	44.9	39.0	83.8	4.4	100.0	3.3	0.7
학생	(50)	6.0	16.0	22.0	54.0	24.0	78.0	0.0	100.0	3.0	0.8
무직/퇴직/기타	(91)	1.1	10.9	12.0	54.5	27.1	81.6	6.4	100.0	3.1	0.7
잘 모르겠다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사/선물수수/경조사의 금액/지불방식 변화

[문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본인이나 주변에서 식사, 선물수수,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불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10.6	25.7	36.3	42.4	17.8	60.2	3.5	100.0	2.7	0.9
성별											
남자	(396)	11.3	27.2	38.5	40.7	17.0	57.8	3.7	100.0	2.7	0.9
여자	(404)	9.9	24.3	34.2	44.1	18.6	62.6	3.2	100.0	2.7	0.9
연령											
20대	(134)	14.9	29.9	44.8	39.6	11.2	50.7	4.5	100.0	2.5	0.9
30대	(128)	8.6	18.8	27.3	50.0	22.7	72.7	0.0	100.0	2.9	0.9
40대	(148)	10.0	20.3	30.3	41.0	26.1	67.1	2.6	100.0	2.9	0.9
50대	(156)	7.1	26.9	34.0	42.9	18.6	61.5	4.5	100.0	2.8	0.8
60대 이상	(234)	12.0	29.7	41.7	40.4	13.2	53.6	4.7	100.0	2.6	0.9
거주 지역											
서울	(152)	12.5	23.7	36.2	44.1	16.4	60.5	3.3	100.0	2.7	0.9
경기/인천	(252)	9.9	26.2	36.1	43.3	17.1	60.3	3.6	100.0	2.7	0.9
대전/세종/충북/충남	(84)	10.7	29.3	40.0	36.4	20.0	56.4	3.6	100.0	2.7	0.9
광주/전북/전남	(79)	7.6	26.6	34.2	46.8	17.7	64.6	1.3	100.0	2.8	0.8
대구/경북	(77)	15.6	26.0	41.6	48.1	10.4	58.4	0.0	100.0	2.5	0.9
부산/울산/경남	(121)	8.1	21.5	29.6	39.4	23.7	63.1	7.3	100.0	2.8	0.9
강원/제주	(35)	11.4	34.3	45.7	31.4	20.0	51.4	2.9	100.0	2.6	1.0
직업											
농/임/어업	(25)	0.0	36.6	36.6	35.8	15.4	51.2	12.2	100.0	2.8	0.7
자영업	(117)	12.9	31.7	44.6	41.0	11.9	52.9	2.6	100.0	2.5	0.9
판매/영업/서비스직	(68)	11.8	30.9	42.6	48.5	8.8	57.4	0.0	100.0	2.5	0.8
생산/기능/노무직	(40)	12.2	32.3	44.5	32.8	15.1	47.9	7.6	100.0	2.6	0.9
사무/관리/전문직	(273)	8.4	18.7	27.1	43.5	26.8	70.3	2.6	100.0	2.9	0.9
전업주부	(136)	10.3	27.9	38.2	47.1	12.5	59.6	2.2	100.0	2.6	0.8
학생	(50)	10.0	36.0	46.0	36.0	18.0	54.0	0.0	100.0	2.6	0.9
무직/퇴직/기타	(91)	16.4	20.6	37.0	38.3	15.1	53.4	9.7	100.0	2.6	1.0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8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자/언론인/교원에 대한 부탁/요청 감소
 [문8_1]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본인이나 주변에서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 대한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8.1	27.3	35.4	41.6	17.0	58.6	6.0	100.0	2.7	0.9
성별											
남자	(396)	9.8	29.7	39.5	36.2	17.7	53.9	6.6	100.0	2.7	0.9
여자	(404)	6.4	25.0	31.4	46.8	16.3	63.1	5.4	100.0	2.8	0.8
연령											
20대	(134)	10.4	28.4	38.8	38.1	14.9	53.0	8.2	100.0	2.6	0.9
30대	(128)	6.3	27.6	33.9	44.0	18.2	62.2	3.9	100.0	2.8	0.8
40대	(148)	10.1	25.6	35.7	36.8	22.7	59.6	4.7	100.0	2.8	0.9
50대	(156)	8.3	26.3	34.6	41.0	17.9	59.0	6.4	100.0	2.7	0.9
60대 이상	(234)	6.4	28.4	34.8	45.6	13.2	58.8	6.4	100.0	2.7	0.8
거주 지역											
서울	(152)	11.8	23.0	34.9	42.1	15.8	57.9	7.2	100.0	2.7	0.9
경기/인천	(252)	10.7	27.4	38.1	37.7	17.1	54.8	7.1	100.0	2.7	0.9
대전/세종/충북/충남	(84)	6.0	29.0	35.0	42.4	15.5	57.9	7.1	100.0	2.7	0.8
광주/전북/전남	(79)	6.3	20.3	26.6	50.6	20.3	70.9	2.5	100.0	2.9	0.8
대구/경북	(77)	9.1	29.9	39.0	39.0	16.9	55.8	5.2	100.0	2.7	0.9
부산/울산/경남	(121)	2.5	34.0	36.5	42.0	17.4	59.4	4.1	100.0	2.8	0.8
강원/제주	(35)	0.0	28.6	28.6	48.6	17.1	65.7	5.7	100.0	2.9	0.7
직업											
농/임/어업	(25)	0.0	31.7	31.7	39.8	20.3	60.2	8.1	100.0	2.9	0.8
자영업	(117)	9.4	33.4	42.9	35.9	14.4	50.3	6.9	100.0	2.6	0.9
판매/영업/서비스직	(68)	8.8	27.9	36.8	52.9	5.9	58.8	4.4	100.0	2.6	0.7
생산/기능/노무직	(40)	12.6	27.2	39.9	30.3	22.3	52.6	7.6	100.0	2.7	1.0
사무/관리/전문직	(273)	6.6	25.4	32.0	40.0	22.1	62.2	5.9	100.0	2.8	0.9
전업주부	(136)	8.1	25.0	33.1	44.1	16.2	60.3	6.6	100.0	2.7	0.8
학생	(50)	12.0	24.0	36.0	42.0	20.0	62.0	2.0	100.0	2.7	0.9
무직/퇴직/기타	(91)	8.7	29.3	38.0	45.6	9.8	55.4	6.6	100.0	2.6	0.8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공직자/언론인/교원 직무수행 공정성
 [문9]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10.0	31.9	41.9	43.5	11.4	54.9	3.3	100.0	2.6	0.8
성별											
남자	(396)	12.6	29.1	41.7	40.8	14.4	55.3	3.0	100.0	2.6	0.9
여자	(404)	7.4	34.7	42.1	46.0	8.4	54.5	3.5	100.0	2.6	0.8
연령											
20대	(134)	10.4	33.6	44.0	43.3	9.0	52.2	3.7	100.0	2.5	0.8
30대	(128)	8.6	30.7	39.3	45.6	14.3	59.9	0.8	100.0	2.7	0.8
40대	(148)	13.4	30.3	43.7	37.5	14.1	51.6	4.7	100.0	2.5	0.9
50대	(156)	7.7	32.7	40.4	44.2	13.5	57.7	1.9	100.0	2.6	0.8
60대 이상	(234)	9.8	32.1	42.0	45.6	8.1	53.8	4.3	100.0	2.5	0.8
거주 지역											
서울	(152)	13.2	36.8	50.0	39.5	8.6	48.0	2.0	100.0	2.4	0.8
경기/인천	(252)	9.5	32.9	42.5	44.8	8.7	53.6	4.0	100.0	2.5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6.0	27.6	33.6	47.4	15.5	62.9	3.6	100.0	2.8	0.8
광주/전북/전남	(79)	10.1	30.4	40.5	48.1	7.6	55.7	3.8	100.0	2.6	0.8
대구/경북	(77)	10.4	35.1	45.5	36.4	15.6	51.9	2.6	100.0	2.6	0.9
부산/울산/경남	(121)	10.6	28.2	38.8	42.0	17.5	59.5	1.7	100.0	2.7	0.9
강원/제주	(35)	5.7	22.9	28.6	51.4	11.4	62.9	8.6	100.0	2.8	0.8
직업											
농/임/어업	(25)	8.1	47.2	55.3	36.6	4.1	40.7	4.1	100.0	2.4	0.7
자영업	(117)	14.6	40.1	54.7	29.9	11.1	41.0	4.3	100.0	2.4	0.9
판매/영업/서비스직	(68)	10.3	30.9	41.2	48.5	7.4	55.9	2.9	100.0	2.5	0.8
생산/기능/노무직	(40)	7.6	34.8	42.4	32.8	22.3	55.1	2.5	100.0	2.7	0.9
사무/관리/전문직	(273)	8.1	30.2	38.3	45.1	15.2	60.3	1.5	100.0	2.7	0.8
전업주부	(136)	11.0	35.3	46.3	43.4	4.4	47.8	5.9	100.0	2.4	0.8
학생	(50)	8.0	28.0	36.0	52.0	10.0	62.0	2.0	100.0	2.7	0.8
무직/퇴직/기타	(91)	10.8	19.5	30.2	53.4	12.0	65.4	4.4	100.0	2.7	0.8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1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인식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
 [문1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는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5.7	18.0	23.8	46.4	27.2	73.6	2.7	100.0	3.0	0.8
성별											
남자	(396)	7.0	21.3	28.3	44.5	23.6	68.1	3.6	100.0	2.9	0.9
여자	(404)	4.5	14.9	19.3	48.3	30.7	79.0	1.7	100.0	3.1	0.8
연령											
20대	(134)	6.7	20.9	27.6	45.5	25.4	70.9	1.5	100.0	2.9	0.9
30대	(128)	3.1	18.8	21.9	48.2	26.6	74.7	3.4	100.0	3.0	0.8
40대	(148)	5.3	13.3	18.6	44.5	35.6	80.1	1.4	100.0	3.1	0.8
50대	(156)	4.5	16.0	20.5	45.5	29.5	75.0	4.5	100.0	3.0	0.8
60대 이상	(234)	7.7	20.3	28.0	47.7	21.7	69.4	2.6	100.0	2.9	0.9
거주 지역											
서울	(152)	3.9	19.7	23.7	44.7	28.3	73.0	3.3	100.0	3.0	0.8
경기/인천	(252)	6.3	17.5	23.8	50.0	23.0	73.0	3.2	100.0	2.9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3.6	21.0	24.5	40.0	35.5	75.5	0.0	100.0	3.1	0.8
광주/전북/전남	(79)	10.1	15.2	25.3	50.6	21.5	72.2	2.5	100.0	2.9	0.9
대구/경북	(77)	11.7	14.3	26.0	41.6	31.2	72.7	1.3	100.0	2.9	1.0
부산/울산/경남	(121)	2.3	19.6	21.9	45.9	28.7	74.5	3.6	100.0	3.0	0.8
강원/제주	(35)	2.9	17.1	20.0	45.7	31.4	77.1	2.9	100.0	3.1	0.8
직업											
농/임/어업	(25)	8.1	20.3	28.5	55.3	16.3	71.5	0.0	100.0	2.8	0.8
자영업	(117)	10.3	22.1	32.4	39.3	25.7	65.0	2.6	100.0	2.8	0.9
판매/영업/서비스직	(68)	4.4	16.2	20.6	51.5	25.0	76.5	2.9	100.0	3.0	0.8
생산/기능/노무직	(40)	2.5	24.7	27.2	40.4	29.9	70.2	2.5	100.0	3.0	0.8
사무/관리/전문직	(273)	3.3	15.0	18.3	46.8	32.5	79.3	2.3	100.0	3.1	0.8
전업주부	(136)	4.4	14.0	18.4	53.7	25.0	78.7	2.9	100.0	3.0	0.8
학생	(50)	8.0	24.0	32.0	42.0	26.0	68.0	0.0	100.0	2.9	0.9
무직/퇴직/기타	(91)	9.7	22.6	32.2	41.5	20.8	62.3	5.5	100.0	2.8	0.9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10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인식_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되었다
 [문10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7.4	29.4	36.7	44.5	13.3	57.8	5.5	100.0	2.7	0.8
성별											
남자	(396)	10.1	31.8	41.8	40.7	12.7	53.4	4.8	100.0	2.6	0.8
여자	(404)	4.7	27.0	31.7	48.3	13.9	62.1	6.2	100.0	2.8	0.8
연령											
20대	(134)	8.2	26.9	35.1	47.0	11.9	59.0	6.0	100.0	2.7	0.8
30대	(128)	3.1	27.3	30.5	47.4	18.2	65.6	3.9	100.0	2.8	0.8
40대	(148)	9.3	20.7	30.1	43.8	19.5	63.3	6.6	100.0	2.8	0.9
50대	(156)	8.3	31.4	39.7	42.9	12.2	55.1	5.1	100.0	2.6	0.8
60대 이상	(234)	7.3	36.0	43.2	43.1	8.1	51.2	5.6	100.0	2.6	0.8
거주 지역											
서울	(152)	6.6	27.6	34.2	46.1	11.8	57.9	7.9	100.0	2.7	0.8
경기/인천	(252)	7.1	30.2	37.3	44.4	13.1	57.5	5.2	100.0	2.7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8.3	27.6	36.0	45.0	15.5	60.5	3.6	100.0	2.7	0.8
광주/전북/전남	(79)	8.9	31.6	40.5	45.6	10.1	55.7	3.8	100.0	2.6	0.8
대구/경북	(77)	9.1	27.3	36.4	41.6	14.3	55.8	7.8	100.0	2.7	0.9
부산/울산/경남	(121)	6.5	30.3	36.8	45.9	14.2	60.1	3.2	100.0	2.7	0.8
강원/제주	(35)	5.7	31.4	37.1	37.1	17.1	54.3	8.6	100.0	2.7	0.9
직업											
농/임/어업	(25)	8.1	47.2	55.3	28.5	16.3	44.7	0.0	100.0	2.5	0.9
자영업	(117)	11.1	29.7	40.9	42.0	7.7	49.7	9.4	100.0	2.5	0.8
판매/영업/서비스직	(68)	4.4	25.0	29.4	55.9	8.8	64.7	5.9	100.0	2.7	0.7
생산/기능/노무직	(40)	5.0	29.8	34.8	42.9	17.2	60.1	5.0	100.0	2.8	0.8
사무/관리/전문직	(273)	4.8	29.3	34.1	43.0	19.9	63.0	2.9	100.0	2.8	0.8
전업주부	(136)	5.1	26.5	31.6	52.9	8.1	61.0	7.4	100.0	2.7	0.7
학생	(50)	14.0	22.0	36.0	46.0	12.0	58.0	6.0	100.0	2.6	0.9
무직/퇴직/기타	(91)	12.9	35.9	48.8	35.0	9.8	44.8	6.4	100.0	2.4	0.9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11]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1)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감소하였다
 [문11]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6.9	23.6	30.5	50.7	16.0	66.7	2.9	100.0	2.8	0.8
성별											
남자	(396)	8.6	22.5	31.0	49.8	16.6	66.5	2.5	100.0	2.8	0.8
여자	(404)	5.2	24.8	30.0	51.5	15.3	66.8	3.2	100.0	2.8	0.8
연령											
20대	(134)	5.2	31.3	36.6	50.7	8.2	59.0	4.5	100.0	2.6	0.7
30대	(128)	8.6	19.0	27.6	51.8	18.2	70.1	2.3	100.0	2.8	0.8
40대	(148)	10.1	21.6	31.8	47.7	17.2	65.0	3.3	100.0	2.7	0.9
50대	(156)	9.6	21.2	30.8	49.4	18.6	67.9	1.3	100.0	2.8	0.9
60대 이상	(234)	3.0	24.6	27.6	52.7	16.7	69.4	3.0	100.0	2.9	0.7
거주 지역											
서울	(152)	7.9	27.0	34.9	48.0	14.5	62.5	2.6	100.0	2.7	0.8
경기/인천	(252)	7.9	26.2	34.1	51.6	11.9	63.5	2.4	100.0	2.7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3.6	22.1	25.7	50.5	17.9	68.3	6.0	100.0	2.9	0.8
광주/전북/전남	(79)	3.8	20.3	24.1	48.1	25.3	73.4	2.5	100.0	3.0	0.8
대구/경북	(77)	7.8	22.1	29.9	51.9	16.9	68.8	1.3	100.0	2.8	0.8
부산/울산/경남	(121)	8.3	20.9	29.2	47.1	21.3	68.5	2.3	100.0	2.8	0.9
강원/제주	(35)	2.9	14.3	17.1	71.4	5.7	77.1	5.7	100.0	2.8	0.6
직업											
농/임/어업	(25)	0.0	36.6	36.6	35.0	20.3	55.3	8.1	100.0	2.8	0.8
자영업	(117)	10.3	24.0	34.3	44.4	17.9	62.3	3.4	100.0	2.7	0.9
판매/영업/서비스직	(68)	4.4	29.4	33.8	48.5	17.6	66.2	0.0	100.0	2.8	0.8
생산/기능/노무직	(40)	2.5	22.2	24.7	47.9	22.3	70.2	5.0	100.0	2.9	0.8
사무/관리/전문직	(273)	5.9	21.4	27.3	52.5	18.0	70.5	2.2	100.0	2.8	0.8
전업주부	(136)	8.1	25.7	33.8	48.5	12.5	61.0	5.1	100.0	2.7	0.8
학생	(50)	8.0	20.0	28.0	62.0	8.0	70.0	2.0	100.0	2.7	0.7
무직/퇴직/기타	(91)	8.7	20.6	29.3	57.8	12.0	69.8	0.9	100.0	2.7	0.8
잘 모르겠다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11_1]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2) 공직자에 대한 접대/선물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문11_1]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5.3	19.8	25.1	50.6	20.9	71.4	3.5	100.0	2.9	0.8
성별											
남자	(396)	6.1	19.8	25.9	47.7	22.4	70.1	4.0	100.0	2.9	0.8
여자	(404)	4.5	19.8	24.3	53.5	19.3	72.8	3.0	100.0	2.9	0.8
연령											
20대	(134)	6.0	23.9	29.9	49.3	15.7	64.9	5.2	100.0	2.8	0.8
30대	(128)	7.0	18.0	25.0	49.7	21.4	71.1	3.9	100.0	2.9	0.8
40대	(148)	6.8	13.3	20.0	54.5	22.7	77.3	2.7	100.0	3.0	0.8
50대	(156)	7.1	19.9	26.9	50.0	21.2	71.2	1.9	100.0	2.9	0.8
60대 이상	(234)	1.7	22.6	24.3	49.7	22.1	71.9	3.8	100.0	3.0	0.7
거주 지역											
서울	(152)	8.6	23.7	32.2	42.8	19.1	61.8	5.9	100.0	2.8	0.9
경기/인천	(252)	6.7	19.0	25.8	53.6	17.5	71.0	3.2	100.0	2.8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1.2	26.0	27.1	45.7	23.6	69.3	3.6	100.0	3.0	0.8
광주/전북/전남	(79)	2.5	15.2	17.7	51.9	26.6	78.5	3.8	100.0	3.1	0.7
대구/경북	(77)	5.2	14.3	19.5	55.8	20.8	76.6	3.9	100.0	3.0	0.8
부산/울산/경남	(121)	3.3	20.4	23.7	49.0	26.4	75.5	0.8	100.0	3.0	0.8
강원/제주	(35)	2.9	14.3	17.1	65.7	14.3	80.0	2.9	100.0	2.9	0.6
직업											
농/임/어업	(25)	4.1	24.4	28.5	39.8	31.7	71.5	0.0	100.0	3.0	0.9
자영업	(117)	5.1	24.0	29.1	48.7	17.9	66.6	4.3	100.0	2.8	0.8
판매/영업/서비스직	(68)	2.9	25.0	27.9	51.5	20.6	72.1	0.0	100.0	2.9	0.8
생산/기능/노무직	(40)	2.5	15.1	17.7	62.6	17.2	79.8	2.5	100.0	3.0	0.7
사무/관리/전문직	(273)	5.9	15.4	21.3	51.5	24.0	75.4	3.3	100.0	3.0	0.8
전업주부	(136)	5.1	24.3	29.4	49.3	16.2	65.4	5.1	100.0	2.8	0.8
학생	(50)	6.0	14.0	20.0	54.0	18.0	72.0	8.0	100.0	2.9	0.8
무직/퇴직/기타	(91)	6.6	20.2	26.7	48.1	23.0	71.1	2.2	100.0	2.9	0.8
잘 모르겠다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11_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3)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문11_2]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5.6	20.7	26.3	51.9	19.0	70.8	2.9	100.0	2.9	0.8
성별											
남자	(396)	6.8	19.6	26.4	52.0	18.6	70.6	3.0	100.0	2.8	0.8
여자	(404)	4.5	21.8	26.2	51.7	19.3	71.0	2.7	100.0	2.9	0.8
연령											
20대	(134)	5.2	22.4	27.6	56.7	10.4	67.2	5.2	100.0	2.8	0.7
30대	(128)	8.6	20.3	28.9	49.7	20.6	70.3	0.8	100.0	2.8	0.9
40대	(148)	6.1	21.5	27.6	51.9	17.9	69.8	2.6	100.0	2.8	0.8
50대	(156)	7.7	18.6	26.3	49.4	22.4	71.8	1.9	100.0	2.9	0.9
60대 이상	(234)	2.6	20.9	23.4	51.9	21.3	73.2	3.4	100.0	3.0	0.7
거주 지역											
서울	(152)	7.9	20.4	28.3	52.0	15.1	67.1	4.6	100.0	2.8	0.8
경기/인천	(252)	7.1	22.6	29.8	52.8	16.3	69.0	1.2	100.0	2.8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3.6	20.0	23.6	52.9	18.8	71.7	4.8	100.0	2.9	0.7
광주/전북/전남	(79)	5.1	15.2	20.3	51.9	25.3	77.2	2.5	100.0	3.0	0.8
대구/경북	(77)	5.2	16.9	22.1	55.8	19.5	75.3	2.6	100.0	2.9	0.8
부산/울산/경남	(121)	3.3	25.5	28.8	46.7	22.2	68.9	2.3	100.0	2.9	0.8
강원/제주	(35)	0.0	14.3	14.3	51.4	28.6	80.0	5.7	100.0	3.2	0.7
직업											
농/임/어업	(25)	4.1	28.5	32.5	43.9	19.5	63.4	4.1	100.0	2.8	0.8
자영업	(117)	6.9	23.1	30.0	47.1	18.6	65.7	4.3	100.0	2.8	0.8
판매/영업/서비스직	(68)	2.9	23.5	26.5	50.0	22.1	72.1	1.5	100.0	2.9	0.8
생산/기능/노무직	(40)	0.0	22.7	22.7	44.9	27.3	72.2	5.0	100.0	3.0	0.7
사무/관리/전문직	(273)	6.6	16.9	23.5	53.7	21.0	74.7	1.8	100.0	2.9	0.8
전업주부	(136)	5.1	25.7	30.9	50.7	14.7	65.4	3.7	100.0	2.8	0.8
학생	(50)	4.0	10.0	14.0	70.0	12.0	82.0	4.0	100.0	2.9	0.6
무직/퇴직/기타	(91)	7.7	21.5	29.1	51.4	17.5	68.9	2.0	100.0	2.8	0.8
잘 모르겠다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12]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문12]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②	③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④	잘 모르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2.4	7.8	10.2	64.9	22.2	87.1	2.7	100.0	3.1	0.6
성별											
남자	(396)	2.5	8.4	11.0	62.8	24.2	87.1	2.0	100.0	3.1	0.7
여자	(404)	2.2	7.2	9.4	66.8	20.3	87.1	3.5	100.0	3.1	0.6
연령											
20대	(134)	0.7	9.7	10.4	72.4	11.9	84.3	5.2	100.0	3.0	0.5
30대	(128)	3.1	3.1	6.3	66.1	26.8	93.0	0.8	100.0	3.2	0.6
40대	(148)	0.7	6.8	7.4	67.1	22.2	89.3	3.3	100.0	3.1	0.6
50대	(156)	3.2	5.1	8.3	64.1	25.6	89.7	1.9	100.0	3.1	0.7
60대 이상	(234)	3.4	11.7	15.1	58.9	23.4	82.3	2.6	100.0	3.1	0.7
거주 지역											
서울	(152)	2.0	9.2	11.2	59.9	23.7	83.6	5.3	100.0	3.1	0.6
경기/인천	(252)	3.6	6.0	9.5	68.3	20.6	88.9	1.6	100.0	3.1	0.6
대전/세종/충북/충남	(84)	4.8	7.6	12.4	60.5	24.8	85.2	2.4	100.0	3.1	0.7
광주/전북/전남	(79)	1.3	11.4	12.7	64.6	21.5	86.1	1.3	100.0	3.1	0.6
대구/경북	(77)	1.3	5.2	6.5	66.2	23.4	89.6	3.9	100.0	3.2	0.6
부산/울산/경남	(121)	0.8	9.9	10.7	62.0	24.1	86.1	3.2	100.0	3.1	0.6
강원/제주	(35)	0.0	5.7	5.7	80.0	14.3	94.3	0.0	100.0	3.1	0.4
직업											
농/임/어업	(25)	4.1	11.4	15.4	69.1	15.4	84.6	0.0	100.0	3.0	0.7
자영업	(117)	5.1	5.1	10.3	67.6	18.7	86.3	3.4	100.0	3.0	0.7
판매/영업/서비스직	(68)	0.0	8.8	8.8	72.1	17.6	89.7	1.5	100.0	3.1	0.5
생산/기능/노무직	(40)	0.0	9.6	9.6	57.6	30.3	87.9	2.5	100.0	3.2	0.6
사무/관리/전문직	(273)	2.2	4.8	7.0	62.8	29.1	91.9	1.1	100.0	3.2	0.6
전업주부	(136)	3.7	11.0	14.7	63.2	17.6	80.9	4.4	100.0	3.0	0.7
학생	(50)	0.0	10.0	10.0	76.0	10.0	86.0	4.0	100.0	3.0	0.5
무직/퇴직/기타	(91)	1.1	11.8	12.9	59.9	21.9	81.8	5.3	100.0	3.1	0.6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13]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되는 정도

[문13]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②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④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3.5	16.2	19.7	58.1	20.6	78.7	1.6	100.0	3.0	0.7
성별											
남자	(396)	4.3	18.1	22.4	53.8	22.9	76.6	1.0	100.0	3.0	0.8
여자	(404)	2.7	14.4	17.1	62.4	18.3	80.7	2.2	100.0	3.0	0.7
연령											
20대	(134)	2.2	17.9	20.1	70.1	9.7	79.9	0.0	100.0	2.9	0.6
30대	(128)	6.3	7.8	14.1	61.2	24.0	85.2	0.8	100.0	3.0	0.8
40대	(148)	3.4	15.5	18.9	58.9	22.2	81.1	0.0	100.0	3.0	0.7
50대	(156)	1.9	12.8	14.7	57.1	26.3	83.3	1.9	100.0	3.1	0.7
60대 이상	(234)	3.8	22.5	26.3	49.7	20.1	69.8	3.8	100.0	2.9	0.8
거주 지역											
서울	(152)	3.9	20.4	24.3	49.3	23.7	73.0	2.6	100.0	3.0	0.8
경기/인천	(252)	4.8	15.1	19.8	60.3	18.3	78.6	1.6	100.0	2.9	0.7
대전/세종/충북/충남	(84)	2.4	21.0	23.3	56.4	20.2	76.7	0.0	100.0	2.9	0.7
광주/전북/전남	(79)	1.3	19.0	20.3	58.2	20.3	78.5	1.3	100.0	3.0	0.7
대구/경북	(77)	3.9	10.4	14.3	58.4	24.7	83.1	2.6	100.0	3.1	0.7
부산/울산/경남	(121)	2.5	11.6	14.0	65.7	19.4	85.1	0.8	100.0	3.0	0.6
강원/제주	(35)	2.9	17.1	20.0	57.1	20.0	77.1	2.9	100.0	3.0	0.7
직업											
농/임/어업	(25)	0.0	28.5	28.5	63.4	4.1	67.5	4.1	100.0	2.7	0.5
자영업	(117)	2.6	24.0	26.6	52.1	19.6	71.7	1.7	100.0	2.9	0.7
판매/영업/서비스직	(68)	2.9	16.2	19.1	61.8	19.1	80.9	0.0	100.0	3.0	0.7
생산/기능/노무직	(40)	2.5	14.6	17.2	55.1	27.8	82.8	0.0	100.0	3.1	0.7
사무/관리/전문직	(273)	2.9	10.3	13.2	59.4	26.3	85.7	1.1	100.0	3.1	0.7
전업주부	(136)	5.1	19.1	24.3	54.4	16.9	71.3	4.4	100.0	2.9	0.8
학생	(50)	2.0	16.0	18.0	70.0	12.0	82.0	0.0	100.0	2.9	0.6
무직/퇴직/기타	(91)	6.6	17.3	23.8	57.6	17.5	75.1	1.1	100.0	2.9	0.8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14]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문14]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①+②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0.6	7.0	7.6	35.1	55.7	90.8	1.6	100.0	3.5	0.7
성별											
남자	(396)	0.8	6.0	6.8	34.8	57.5	92.3	1.0	100.0	3.5	0.6
여자	(404)	0.5	7.9	8.4	35.4	54.0	89.4	2.2	100.0	3.5	0.7
연령											
20대	(134)	0.7	4.5	5.2	34.3	59.7	94.0	0.7	100.0	3.5	0.6
30대	(128)	1.6	3.9	5.5	27.6	66.9	94.5	0.0	100.0	3.6	0.6
40대	(148)	0.7	10.0	10.7	33.0	55.0	88.0	1.4	100.0	3.4	0.7
50대	(156)	0.6	8.3	9.0	33.3	57.1	90.4	0.6	100.0	3.5	0.7
60대 이상	(234)	0.0	7.3	7.3	42.1	46.8	89.0	3.8	100.0	3.4	0.6
거주 지역											
서울	(152)	0.0	6.6	6.6	31.6	59.2	90.8	2.6	100.0	3.5	0.6
경기/인천	(252)	1.6	9.1	10.7	31.0	56.7	87.7	1.6	100.0	3.5	0.7
대전/세종/충북/충남	(84)	0.0	4.8	4.8	42.4	51.9	94.3	1.0	100.0	3.5	0.6
광주/전북/전남	(79)	0.0	7.6	7.6	39.2	50.6	89.9	2.5	100.0	3.4	0.6
대구/경북	(77)	0.0	6.5	6.5	32.5	61.0	93.5	0.0	100.0	3.5	0.6
부산/울산/경남	(121)	0.8	4.8	5.6	39.8	53.7	93.5	0.8	100.0	3.5	0.6
강원/제주	(35)	0.0	5.7	5.7	42.9	48.6	91.4	2.9	100.0	3.4	0.6
직업											
농/임/어업	(25)	0.0	12.2	12.2	23.6	64.2	87.8	0.0	100.0	3.5	0.7
자영업	(117)	0.0	6.0	6.0	36.7	57.3	94.0	0.0	100.0	3.5	0.6
판매/영업/서비스직	(68)	1.5	4.4	5.9	39.7	54.4	94.1	0.0	100.0	3.5	0.7
생산/기능/노무직	(40)	2.5	2.5	5.0	32.8	59.6	92.4	2.5	100.0	3.5	0.7
사무/관리/전문직	(273)	1.1	5.5	6.6	32.3	60.7	93.0	0.4	100.0	3.5	0.7
전업주부	(136)	0.0	11.0	11.0	41.9	43.4	85.3	3.7	100.0	3.3	0.7
학생	(50)	0.0	2.0	2.0	30.0	68.0	98.0	0.0	100.0	3.7	0.5
무직/퇴직/기타	(91)	0.0	11.8	11.8	33.9	47.9	81.8	6.3	100.0	3.4	0.7
잘 모르겠다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표 15]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정도
 [문15]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①+②	③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④매우 지지한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3.4	8.5	11.9	46.2	41.4	87.5	0.6	100.0	3.3	0.8
성별											
남자	(396)	4.7	10.9	15.6	44.5	39.6	84.1	0.3	100.0	3.2	0.8
여자	(404)	2.0	6.2	8.2	47.8	43.1	90.8	1.0	100.0	3.3	0.7
연령											
20대	(134)	3.7	9.7	13.4	59.7	26.1	85.8	0.7	100.0	3.1	0.7
30대	(128)	4.7	5.5	10.2	47.1	42.7	89.8	0.0	100.0	3.3	0.8
40대	(148)	3.4	10.1	13.5	41.6	44.9	86.5	0.0	100.0	3.3	0.8
50대	(156)	3.2	5.8	9.0	41.0	50.0	91.0	0.0	100.0	3.4	0.7
60대 이상	(234)	2.5	10.3	12.7	44.2	41.4	85.6	1.7	100.0	3.3	0.7
거주 지역											
서울	(152)	3.9	10.5	14.5	42.1	43.4	85.5	0.0	100.0	3.3	0.8
경기/인천	(252)	4.8	6.3	11.1	49.6	38.5	88.1	0.8	100.0	3.2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2.1	11.9	14.0	42.1	42.6	84.8	1.2	100.0	3.3	0.8
광주/전북/전남	(79)	1.3	7.6	8.9	50.6	39.2	89.9	1.3	100.0	3.3	0.7
대구/경북	(77)	3.9	9.1	13.0	45.5	41.6	87.0	0.0	100.0	3.2	0.8
부산/울산/경남	(121)	0.8	9.1	9.9	43.7	45.6	89.3	0.8	100.0	3.4	0.7
강원/제주	(35)	5.7	5.7	11.4	48.6	40.0	88.6	0.0	100.0	3.2	0.8
직업											
농/임/어업	(25)	4.1	16.3	20.3	56.1	19.5	75.6	4.1	100.0	2.9	0.8
자영업	(117)	4.3	8.6	12.9	48.7	37.6	86.3	0.9	100.0	3.2	0.8
판매/영업/서비스직	(68)	2.9	11.8	14.7	42.6	42.6	85.3	0.0	100.0	3.3	0.8
생산/기능/노무직	(40)	7.1	12.6	19.7	34.9	45.4	80.3	0.0	100.0	3.2	0.9
사무/관리/전문직	(273)	2.9	6.2	9.2	45.9	44.9	90.8	0.0	100.0	3.3	0.7
전업주부	(136)	2.2	8.1	10.3	41.2	46.3	87.5	2.2	100.0	3.3	0.7
학생	(50)	2.0	8.0	10.0	58.0	32.0	90.0	0.0	100.0	3.2	0.7
무직/퇴직/기타	(91)	4.4	8.7	13.1	49.9	37.0	86.9	0.0	100.0	3.2	0.8
잘 모르겠다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표 16] 민간기업에 대한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신설 필요성

[문16]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와 같이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 수 (명)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별로 필요하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800)	4.1	10.0	14.2	33.0	50.6	83.6	2.2	100.0	3.3	0.8
성별											
남자	(396)	7.3	11.2	18.5	27.8	51.7	79.5	2.0	100.0	3.3	0.9
여자	(404)	1.0	8.9	9.9	38.1	49.5	87.6	2.5	100.0	3.4	0.7
연령											
20대	(134)	6.0	14.9	20.9	42.5	31.3	73.9	5.2	100.0	3.0	0.9
30대	(128)	5.5	11.2	16.7	33.1	50.3	83.3	0.0	100.0	3.3	0.9
40대	(148)	3.4	6.1	9.5	28.7	58.6	87.3	3.3	100.0	3.5	0.8
50대	(156)	3.2	5.8	9.0	27.6	63.5	91.0	0.0	100.0	3.5	0.7
60대 이상	(234)	3.4	12.0	15.4	33.9	48.1	82.1	2.6	100.0	3.3	0.8
거주 지역											
서울	(152)	5.3	11.2	16.4	28.3	51.3	79.6	3.9	100.0	3.3	0.9
경기/인천	(252)	2.8	9.9	12.7	34.1	52.8	86.9	0.4	100.0	3.4	0.8
대전/세종/충북/충남	(84)	3.6	9.5	13.1	37.4	47.1	84.5	2.4	100.0	3.3	0.8
광주/전북/전남	(79)	6.3	10.1	16.5	30.4	50.6	81.0	2.5	100.0	3.3	0.9
대구/경북	(77)	2.6	11.7	14.3	33.8	49.4	83.1	2.6	100.0	3.3	0.8
부산/울산/경남	(121)	5.0	9.4	14.3	37.1	45.5	82.5	3.2	100.0	3.3	0.8
강원/제주	(35)	5.7	5.7	11.4	25.7	60.0	85.7	2.9	100.0	3.4	0.9
직업											
농/임/어업	(25)	8.1	16.3	24.4	28.5	47.2	75.6	0.0	100.0	3.1	1.0
자영업	(117)	9.4	9.4	18.9	23.9	57.3	81.1	0.0	100.0	3.3	1.0
판매/영업/서비스직	(68)	4.4	5.9	10.3	33.8	55.9	89.7	0.0	100.0	3.4	0.8
생산/기능/노무직	(40)	2.5	5.0	7.6	34.8	47.5	82.3	10.1	100.0	3.4	0.7
사무/관리/전문직	(273)	3.3	10.4	13.7	34.5	50.0	84.5	1.8	100.0	3.3	0.8
전업주부	(136)	1.5	11.8	13.2	32.4	51.5	83.8	2.9	100.0	3.4	0.8
학생	(50)	6.0	8.0	14.0	56.0	24.0	80.0	6.0	100.0	3.0	0.8
무직/퇴직/기타	(91)	2.2	12.0	14.2	29.1	55.8	84.9	0.9	100.0	3.4	0.8
잘 모르겠다	(1)	0.0	0.0	0.0	0.0	0.0	0.0	100.0	100.0		

[표 17]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순위

[문1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800)	34.5	28.1	21.4	13.8	2.3	100.0
성별							
남자	(396)	33.6	30.3	19.9	13.4	2.8	100.0
여자	(404)	35.4	26.0	22.8	14.1	1.7	100.0
연령							
20대	(134)	37.3	29.9	15.7	13.4	3.7	100.0
30대	(128)	36.5	29.7	15.6	17.4	0.8	100.0
40대	(148)	39.8	27.4	16.9	14.6	1.4	100.0
50대	(156)	35.9	28.2	23.7	9.6	2.6	100.0
60대 이상	(234)	27.6	26.8	29.0	14.1	2.6	100.0
거주 지역							
서울	(152)	33.6	31.6	18.4	13.2	3.3	100.0
경기/인천	(252)	32.1	27.4	24.2	13.9	2.4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84)	35.2	31.7	18.8	10.7	3.6	100.0
광주/전북/전남	(79)	41.8	21.5	20.3	16.5	0.0	100.0
대구/경북	(77)	33.8	33.8	19.5	10.4	2.6	100.0
부산/울산/경남	(121)	38.4	23.6	19.8	16.5	1.7	100.0
강원/제주	(35)	25.7	28.6	31.4	14.3	0.0	100.0
직업							
농/임/어업	(25)	28.5	35.8	15.4	20.3	0.0	100.0
자영업	(117)	29.9	35.9	20.6	8.6	5.1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8)	41.2	27.9	17.6	11.8	1.5	100.0
생산/기능/노무직	(40)	27.2	42.5	20.2	7.6	2.5	100.0
사무/관리/전문직	(273)	38.3	25.2	22.0	13.3	1.1	100.0
전업주부	(136)	33.8	25.0	19.9	17.6	3.7	100.0
학생	(50)	38.0	24.0	18.0	18.0	2.0	100.0
무직/퇴직/기타	(91)	28.4	26.0	29.5	16.0	0.0	100.0
잘 모르겠다	(1)	0.0	0.0	0.0	0.0	100.0	100.0

[표 17_1]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2순위

[문1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계
■ 전체 ■		(750)	41.8	33.6	14.9	9.6	100.0
성별	남자	(366)	42.0	34.8	13.7	9.6	100.0
	여자	(384)	41.7	32.6	16.1	9.6	100.0
연령	20대	(124)	41.9	37.9	15.3	4.8	100.0
	30대	(125)	41.3	33.6	16.8	8.3	100.0
	40대	(142)	49.7	32.0	10.6	7.7	100.0
	50대	(147)	42.2	36.1	12.9	8.8	100.0
	60대 이상	(212)	36.5	30.6	17.9	15.0	100.0
거주 지역	서울	(141)	38.3	31.2	17.7	12.8	100.0
	경기/인천	(232)	40.5	37.9	14.7	6.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80)	40.5	41.0	10.0	8.5	100.0
	광주/전북/전남	(76)	39.5	26.3	23.7	10.5	100.0
	대구/경북	(72)	45.8	37.5	5.6	11.1	100.0
	부산/울산/경남	(114)	50.2	24.1	16.6	9.1	100.0
	강원/제주	(35)	37.1	37.1	11.4	14.3	100.0
직업	농/임/어업	(25)	39.8	23.6	16.3	20.3	100.0
	자영업	(106)	41.5	34.9	15.1	8.5	100.0
	판매/영업/서비스직	(66)	40.9	42.4	3.0	13.6	100.0
	생산/기능/노무직	(38)	36.7	47.4	15.9	0.0	100.0
	사무/관리/전문직	(264)	43.4	32.9	14.8	8.9	100.0
	전업주부	(123)	43.9	25.2	18.7	12.2	100.0
	학생	(45)	46.7	31.1	17.8	4.4	100.0
	무직/퇴직/기타	(85)	35.3	37.8	16.5	10.4	100.0

[표 17_2]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2순위(중복응답)

[문1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잘 모르겠다
□ 전체 □	(800)	67.4	48.5	45.3	30.4	2.3
성별						
남자	(396)	69.1	46.2	45.5	28.8	2.8
여자	(404)	65.6	50.7	45.0	31.9	1.7
연령						
20대	(134)	68.7	51.5	48.5	20.1	3.7
30대	(128)	70.1	52.9	50.3	23.7	0.8
40대	(148)	75.1	49.9	45.4	24.3	1.4
50대	(156)	67.9	48.1	43.6	32.1	2.6
60대 이상	(234)	59.8	43.8	41.8	42.6	2.6
거주 지역						
서울	(152)	67.1	50.0	42.1	30.3	3.3
경기/인천	(252)	64.7	45.6	48.8	30.6	2.4
대전/세종/충북/충남	(84)	70.2	44.8	49.8	26.9	3.6
광주/전북/전남	(79)	59.5	64.6	41.8	30.4	0.0
대구/경북	(77)	76.6	39.0	45.5	29.9	2.6
부산/울산/경남	(121)	70.9	54.1	39.3	28.4	1.7
강원/제주	(35)	65.7	37.1	51.4	45.7	0.0
직업						
농/임/어업	(25)	75.6	44.7	43.9	35.8	0.0
자영업	(117)	73.4	43.6	40.1	28.3	5.1
판매/영업/서비스직	(68)	67.6	44.1	52.9	30.9	1.5
생산/기능/노무직	(40)	77.3	42.4	52.6	20.2	2.5
사무/관리/전문직	(273)	67.2	52.6	45.2	30.6	1.1
전업주부	(136)	64.7	50.7	40.4	30.9	3.7
학생	(50)	66.0	54.0	46.0	22.0	2.0
무직/퇴직/기타	(91)	58.6	43.7	51.0	39.1	0.0
잘 모르겠다	(1)	0.0	0.0	0.0	0.0	100.0

[결과표 2. 공직자]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사례수 (명)	
▣ 전체 ▣		(550)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63.6
	공직유관단체	(200)	36.4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21.8
	지방직	(230)	41.8
	공직유관단체	(200)	36.4
직급	관리자	(120)	21.8
	실무자	(430)	78.2
기관 소재지	서울	(54)	9.8
	경기/인천	(106)	19.3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28.5
	광주/전북/전남	(60)	10.9
	대구/경북	(56)	10.2
	부산/울산/경남	(93)	16.9
	강원/제주	(24)	4.4
성별	남자	(363)	66.0
	여자	(187)	34.0
연령	20대	(59)	10.7
	30대	(176)	32.0
	40대	(171)	31.1
	50대	(140)	25.5
	60대 이상	(4)	0.7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문1] 귀하께서는 현재의 식사금액의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3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3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550)	13.3	82.7	3.6	0.4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1.7	85.1	2.9	0.3	100.0
공직유관단체	(200)	16.0	78.5	5.0	0.5	10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11.7	85.8	1.7	0.8	100.0
지방직	(230)	11.7	84.8	3.5	0.0	100.0
공직유관단체	(200)	16.0	78.5	5.0	0.5	100.0
직급						
관리자	(120)	16.7	81.7	1.7	0.0	100.0
실무자	(430)	12.3	83.0	4.2	0.5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54)	22.2	72.2	5.6	0.0	100.0
경기/인천	(106)	15.1	82.1	1.9	0.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12.1	86.0	1.9	0.0	100.0
광주/전북/전남	(60)	11.7	80.0	8.3	0.0	100.0
대구/경북	(56)	12.5	85.7	1.8	0.0	100.0
부산/울산/경남	(93)	9.7	84.9	4.3	1.1	100.0
강원/제주	(24)	12.5	79.2	8.3	0.0	100.0
성별						
남자	(363)	12.9	82.4	4.1	0.6	100.0
여자	(187)	13.9	83.4	2.7	0.0	100.0
연령						
20대	(59)	15.3	79.7	3.4	1.7	100.0
30대	(176)	12.5	84.7	2.3	0.6	100.0
40대	(171)	9.9	84.8	5.3	0.0	100.0
50대	(140)	17.9	78.6	3.6	0.0	100.0
60대 이상	(4)	0.0	100.0	0.0	0.0	100.0

[표 2]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2] 귀하께서는 현재의 선물금액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550)	14.9	78.4	6.2	0.5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3.4	80.3	6.0	0.3	100.0
공직유관단체	(200)	17.5	75.0	6.5	1.0	10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14.2	80.8	4.2	0.8	100.0
지방직	(230)	13.0	80.0	7.0	0.0	100.0
공직유관단체	(200)	17.5	75.0	6.5	1.0	100.0
직급						
관리자	(120)	20.8	75.0	3.3	0.8	100.0
실무자	(430)	13.3	79.3	7.0	0.5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54)	14.8	74.1	11.1	0.0	100.0
경기/인천	(106)	17.0	78.3	2.8	1.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18.5	75.2	5.7	0.6	100.0
광주/전북/전남	(60)	15.0	80.0	5.0	0.0	100.0
대구/경북	(56)	3.6	87.5	8.9	0.0	100.0
부산/울산/경남	(93)	14.0	80.6	5.4	0.0	100.0
강원/제주	(24)	12.5	75.0	12.5	0.0	100.0
성별						
남자	(363)	18.2	75.2	6.1	0.6	100.0
여자	(187)	8.6	84.5	6.4	0.5	100.0
연령						
20대	(59)	3.4	93.2	3.4	0.0	100.0
30대	(176)	10.8	84.7	4.0	0.6	100.0
40대	(171)	15.8	73.1	9.9	1.2	100.0
50대	(140)	23.6	70.7	5.7	0.0	100.0
60대 이상	(4)	25.0	75.0	0.0	0.0	100.0

[표 3]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10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10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550)	9.5	79.3	11.1	0.2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8.3	80.6	10.9	0.3	100.0
공직유관단체	(200)	11.5	77.0	11.5	0.0	10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10.0	79.2	10.0	0.8	100.0
지방직	(230)	7.4	81.3	11.3	0.0	100.0
공직유관단체	(200)	11.5	77.0	11.5	0.0	100.0
직급						
관리자	(120)	7.5	84.2	8.3	0.0	100.0
실무자	(430)	10.0	77.9	11.9	0.2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54)	7.4	81.5	11.1	0.0	100.0
경기/인천	(106)	15.1	78.3	5.7	0.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10.2	75.8	14.0	0.0	100.0
광주/전북/전남	(60)	6.7	83.3	10.0	0.0	100.0
대구/경북	(56)	5.4	76.8	17.9	0.0	100.0
부산/울산/경남	(93)	8.6	82.8	8.6	0.0	100.0
강원/제주	(24)	4.2	83.3	12.5	0.0	100.0
성별						
남자	(363)	10.7	78.8	10.2	0.3	100.0
여자	(187)	7.0	80.2	12.8	0.0	100.0
연령						
20대	(59)	3.4	88.1	8.5	0.0	100.0
30대	(176)	8.0	81.8	9.7	0.6	100.0
40대	(171)	11.1	76.6	12.3	0.0	100.0
50대	(140)	11.4	76.4	12.1	0.0	100.0
60대 이상	(4)	25.0	50.0	25.0	0.0	100.0

[표 3_1]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에 대한 의견(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상향)

[문3_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550)	50.4	49.5	0.2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47.4	52.3	0.3	100.0
공직유관단체	(200)	55.5	44.5	0.0	10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49.2	50.0	0.8	100.0
지방직	(230)	46.5	53.5	0.0	100.0
공직유관단체	(200)	55.5	44.5	0.0	100.0
직급					
관리자	(120)	45.0	55.0	0.0	100.0
실무자	(430)	51.9	47.9	0.2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54)	50.0	48.1	1.9	100.0
경기/인천	(106)	59.4	40.6	0.0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48.4	51.6	0.0	100.0
광주/전북/전남	(60)	46.7	53.3	0.0	100.0
대구/경북	(56)	39.3	60.7	0.0	100.0
부산/울산/경남	(93)	50.5	49.5	0.0	100.0
강원/제주	(24)	58.3	41.7	0.0	100.0
성별					
남자	(363)	54.5	45.2	0.3	100.0
여자	(187)	42.2	57.8	0.0	100.0
연령					
20대	(59)	52.5	47.5	0.0	100.0
30대	(176)	54.5	44.9	0.6	100.0
40대	(171)	49.1	50.9	0.0	100.0
50대	(140)	45.0	55.0	0.0	100.0
60대 이상	(4)	75.0	25.0	0.0	100.0

[표 4] 일반국민 및 기업간에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문4]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6.4	31.1	37.5	46.7	12.2	58.9	3.6	100.0	2.7	0.8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6.0	31.1	37.1	48.6	11.4	60.0	2.9	100.0	2.7	0.8
공직유관단체	(200)	7.0	31.0	38.0	43.5	13.5	57.0	5.0	100.0	2.7	0.8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8.3	28.3	36.7	45.0	12.5	57.5	5.8	100.0	2.7	0.8
지방직	(230)	4.8	32.6	37.4	50.4	10.9	61.3	1.3	100.0	2.7	0.7
공직유관단체	(200)	7.0	31.0	38.0	43.5	13.5	57.0	5.0	100.0	2.7	0.8
직급											
관리자	(120)	5.0	31.7	36.7	47.5	14.2	61.7	1.7	100.0	2.7	0.8
실무자	(430)	6.7	30.9	37.7	46.5	11.6	58.1	4.2	100.0	2.7	0.8
기관 소재지											
서울	(54)	13.0	31.5	44.4	44.4	7.4	51.9	3.7	100.0	2.5	0.8
경기/인천	(106)	4.7	31.1	35.8	44.3	16.0	60.4	3.8	100.0	2.7	0.8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7.0	29.3	36.3	43.3	13.4	56.7	7.0	100.0	2.7	0.8
광주/전북/전남	(60)	5.0	23.3	28.3	53.3	16.7	70.0	1.7	100.0	2.8	0.8
대구/경북	(56)	5.4	32.1	37.5	55.4	7.1	62.5	0.0	100.0	2.6	0.7
부산/울산/경남	(93)	3.2	38.7	41.9	46.2	9.7	55.9	2.2	100.0	2.6	0.7
강원/제주	(24)	12.5	29.2	41.7	50.0	8.3	58.3	0.0	100.0	2.5	0.8
성별											
남자	(363)	5.8	27.3	33.1	48.8	13.5	62.3	4.7	100.0	2.7	0.8
여자	(187)	7.5	38.5	46.0	42.8	9.6	52.4	1.6	100.0	2.6	0.8
연령											
20대	(59)	6.8	37.3	44.1	47.5	5.1	52.5	3.4	100.0	2.5	0.7
30대	(176)	5.1	32.4	37.5	51.1	8.5	59.7	2.8	100.0	2.6	0.7
40대	(171)	8.8	33.9	42.7	39.8	12.3	52.0	5.3	100.0	2.6	0.8
50대	(140)	5.0	24.3	29.3	48.6	19.3	67.9	2.9	100.0	2.8	0.8
60대 이상	(4)	0.0	0.0	0.0	75.0	25.0	100.0	0.0	100.0	3.3	0.5

[표 5] 일반국민 및 기업에 적용할 가액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5]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21.1	41.3	62.4	26.9	10.0	36.9	0.7	100.0	2.3	0.9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8.0	44.0	62.0	28.3	8.9	37.1	0.9	100.0	2.3	0.9
공직유관단체	(200)	26.5	36.5	63.0	24.5	12.0	36.5	0.5	100.0	2.2	1.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27.5	43.3	70.8	17.5	10.0	27.5	1.7	100.0	2.1	0.9
지방직	(230)	13.0	44.3	57.4	33.9	8.3	42.2	0.4	100.0	2.4	0.8
공직유관단체	(200)	26.5	36.5	63.0	24.5	12.0	36.5	0.5	100.0	2.2	1.0
직급											
관리자	(120)	25.0	45.0	70.0	20.8	8.3	29.2	0.8	100.0	2.1	0.9
실무자	(430)	20.0	40.2	60.2	28.6	10.5	39.1	0.7	100.0	2.3	0.9
기관 소재지											
서울	(54)	24.1	33.3	57.4	33.3	9.3	42.6	0.0	100.0	2.3	0.9
경기/인천	(106)	16.0	44.3	60.4	26.4	12.3	38.7	0.9	100.0	2.4	0.9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31.2	39.5	70.7	19.1	8.3	27.4	1.9	100.0	2.0	0.9
광주/전북/전남	(60)	15.0	36.7	51.7	38.3	10.0	48.3	0.0	100.0	2.4	0.9
대구/경북	(56)	12.5	57.1	69.6	21.4	8.9	30.4	0.0	100.0	2.3	0.8
부산/울산/경남	(93)	17.2	39.8	57.0	33.3	9.7	43.0	0.0	100.0	2.4	0.9
강원/제주	(24)	20.8	37.5	58.3	25.0	16.7	41.7	0.0	100.0	2.4	1.0
성별											
남자	(363)	22.0	40.8	62.8	25.6	10.7	36.4	0.8	100.0	2.3	0.9
여자	(187)	19.3	42.2	61.5	29.4	8.6	38.0	0.5	100.0	2.3	0.9
연령											
20대	(59)	8.5	50.8	59.3	35.6	5.1	40.7	0.0	100.0	2.4	0.7
30대	(176)	18.2	40.3	58.5	31.3	9.1	40.3	1.1	100.0	2.3	0.9
40대	(171)	26.9	40.4	67.3	22.2	9.9	32.2	0.6	100.0	2.2	0.9
50대	(140)	22.1	40.7	62.9	23.6	12.9	36.4	0.7	100.0	2.3	1.0
60대 이상	(4)	50.0	0.0	50.0	25.0	25.0	50.0	0.0	100.0	2.3	1.5

[표 6] 경조사비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6]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550)	20.7	76.5	2.5	0.2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8.6	77.7	3.4	0.3	100.0
공직유관단체	(200)	24.5	74.5	1.0	0.0	10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25.8	70.0	3.3	0.8	100.0
지방직	(230)	14.8	81.7	3.5	0.0	100.0
공직유관단체	(200)	24.5	74.5	1.0	0.0	100.0
직급						
관리자	(120)	20.8	77.5	1.7	0.0	100.0
실무자	(430)	20.7	76.3	2.8	0.2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54)	24.1	68.5	7.4	0.0	100.0
경기/인천	(106)	17.0	80.2	1.9	0.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26.1	72.6	1.3	0.0	100.0
광주/전북/전남	(60)	16.7	80.0	3.3	0.0	100.0
대구/경북	(56)	17.9	80.4	1.8	0.0	100.0
부산/울산/경남	(93)	20.4	78.5	1.1	0.0	100.0
강원/제주	(24)	12.5	79.2	8.3	0.0	100.0
성별						
남자	(363)	24.2	73.8	1.7	0.3	100.0
여자	(187)	13.9	81.8	4.3	0.0	100.0
연령						
20대	(59)	22.0	76.3	1.7	0.0	100.0
30대	(176)	22.2	75.0	2.3	0.6	100.0
40대	(171)	19.9	77.8	2.3	0.0	100.0
50대	(140)	19.3	77.1	3.6	0.0	100.0
60대 이상	(4)	25.0	75.0	0.0	0.0	100.0

[표 6_1]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40만원) 기준에 대한 의견_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문6_1]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4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	적정하다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550)	10.7	76.7	10.4	2.2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0.0	79.1	8.9	2.0	100.0
공직유관단체	(200)	12.0	72.5	13.0	2.5	10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15.8	79.2	4.2	0.8	100.0
지방직	(230)	7.0	79.1	11.3	2.6	100.0
공직유관단체	(200)	12.0	72.5	13.0	2.5	100.0
직급						
관리자	(120)	10.0	81.7	8.3	0.0	100.0
실무자	(430)	10.9	75.3	10.9	2.8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54)	13.0	72.2	7.4	7.4	100.0
경기/인천	(106)	10.4	74.5	13.2	1.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12.7	78.3	8.3	0.6	100.0
광주/전북/전남	(60)	6.7	83.3	10.0	0.0	100.0
대구/경북	(56)	8.9	82.1	7.1	1.8	100.0
부산/울산/경남	(93)	8.6	77.4	10.8	3.2	100.0
강원/제주	(24)	16.7	54.2	25.0	4.2	100.0
성별						
남자	(363)	11.8	75.5	10.5	2.2	100.0
여자	(187)	8.6	79.1	10.2	2.1	100.0
연령						
20대	(59)	6.8	84.7	8.5	0.0	100.0
30대	(176)	13.6	73.9	8.5	4.0	100.0
40대	(171)	11.1	77.2	9.9	1.8	100.0
50대	(140)	7.9	77.1	13.6	1.4	100.0
60대 이상	(4)	25.0	50.0	25.0	0.0	100.0

[표 7]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인식

[문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들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2.2	9.1	11.3	50.2	37.1	87.3	1.5	100.0	3.2	0.7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2.0	10.6	12.6	51.7	34.0	85.7	1.7	100.0	3.2	0.7
공직유관단체	(200)	2.5	6.5	9.0	47.5	42.5	90.0	1.0	100.0	3.3	0.7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7.5	7.5	48.3	40.8	89.2	3.3	100.0	3.3	0.6
지방직	(230)	3.0	12.2	15.2	53.5	30.4	83.9	0.9	100.0	3.1	0.7
공직유관단체	(200)	2.5	6.5	9.0	47.5	42.5	90.0	1.0	100.0	3.3	0.7
직급											
관리자	(120)	0.8	10.0	10.8	46.7	40.8	87.5	1.7	100.0	3.3	0.7
실무자	(430)	2.6	8.8	11.4	51.2	36.0	87.2	1.4	100.0	3.2	0.7
기관 소재지											
서울	(54)	1.9	3.7	5.6	64.8	29.6	94.4	0.0	100.0	3.2	0.6
경기/인천	(106)	0.9	8.5	9.4	56.6	31.1	87.7	2.8	100.0	3.2	0.6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1.3	8.9	10.2	47.8	40.1	87.9	1.9	100.0	3.3	0.7
광주/전북/전남	(60)	1.7	8.3	10.0	51.7	38.3	90.0	0.0	100.0	3.3	0.7
대구/경북	(56)	5.4	12.5	17.9	48.2	33.9	82.1	0.0	100.0	3.1	0.8
부산/울산/경남	(93)	2.2	11.8	14.0	41.9	41.9	83.9	2.2	100.0	3.3	0.8
강원/제주	(24)	8.3	8.3	16.7	37.5	45.8	83.3	0.0	100.0	3.2	0.9
성별											
남자	(363)	2.5	8.8	11.3	48.2	39.1	87.3	1.4	100.0	3.3	0.7
여자	(187)	1.6	9.6	11.2	54.0	33.2	87.2	1.6	100.0	3.2	0.7
연령											
20대	(59)	1.7	8.5	10.2	61.0	28.8	89.8	0.0	100.0	3.2	0.6
30대	(176)	2.8	10.8	13.6	54.5	30.1	84.7	1.7	100.0	3.1	0.7
40대	(171)	1.8	8.2	9.9	42.7	46.2	88.9	1.2	100.0	3.3	0.7
50대	(140)	2.1	8.6	10.7	48.6	38.6	87.1	2.1	100.0	3.3	0.7
60대 이상	(4)	0.0	0.0	0.0	75.0	25.0	100.0	0.0	100.0	3.3	0.5

[표 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맥에 의한 부탁/요청 감소
 [문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4.0	15.3	19.3	47.6	30.7	78.4	2.4	100.0	3.1	0.8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3.7	17.4	21.1	49.4	27.1	76.6	2.3	100.0	3.0	0.8
공직유관단체	(200)	4.5	11.5	16.0	44.5	37.0	81.5	2.5	100.0	3.2	0.8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3.3	13.3	16.7	41.7	38.3	80.0	3.3	100.0	3.2	0.8
지방직	(230)	3.9	19.6	23.5	53.5	21.3	74.8	1.7	100.0	2.9	0.8
공직유관단체	(200)	4.5	11.5	16.0	44.5	37.0	81.5	2.5	100.0	3.2	0.8
직급											
관리자	(120)	3.3	15.0	18.3	38.3	43.3	81.7	0.0	100.0	3.2	0.8
실무자	(430)	4.2	15.3	19.5	50.2	27.2	77.4	3.0	100.0	3.0	0.8
기관 소재지											
서울	(54)	7.4	13.0	20.4	50.0	29.6	79.6	0.0	100.0	3.0	0.9
경기/인천	(106)	5.7	17.0	22.6	42.5	30.2	72.6	4.7	100.0	3.0	0.9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6.4	11.5	17.8	47.8	32.5	80.3	1.9	100.0	3.1	0.8
광주/전북/전남	(60)	3.3	23.3	26.7	46.7	25.0	71.7	1.7	100.0	2.9	0.8
대구/경북	(56)	0.0	12.5	12.5	66.1	19.6	85.7	1.8	100.0	3.1	0.6
부산/울산/경남	(93)	0.0	17.2	17.2	44.1	37.6	81.7	1.1	100.0	3.2	0.7
강원/제주	(24)	0.0	16.7	16.7	37.5	37.5	75.0	8.3	100.0	3.2	0.8
성별											
남자	(363)	4.4	12.9	17.4	44.1	36.6	80.7	1.9	100.0	3.2	0.8
여자	(187)	3.2	19.8	23.0	54.5	19.3	73.8	3.2	100.0	2.9	0.7
연령											
20대	(59)	1.7	11.9	13.6	66.1	16.9	83.1	3.4	100.0	3.0	0.6
30대	(176)	2.8	15.9	18.8	55.7	22.7	78.4	2.8	100.0	3.0	0.7
40대	(171)	5.3	17.5	22.8	40.9	33.9	74.9	2.3	100.0	3.1	0.9
50대	(140)	5.0	13.6	18.6	37.9	42.1	80.0	1.4	100.0	3.2	0.9
60대 이상	(4)	0.0	0.0	0.0	50.0	50.0	100.0	0.0	100.0	3.5	0.6

[표 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관행 감소

[문9]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1.5	6.0	7.5	46.5	44.2	90.7	1.8	100.0	3.4	0.7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4	6.3	7.7	49.4	40.6	90.0	2.3	100.0	3.3	0.7
공직유관단체	(200)	1.5	5.5	7.0	41.5	50.5	92.0	1.0	100.0	3.4	0.7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8	3.3	4.2	40.8	52.5	93.3	2.5	100.0	3.5	0.6
지방직	(230)	1.7	7.8	9.6	53.9	34.3	88.3	2.2	100.0	3.2	0.7
공직유관단체	(200)	1.5	5.5	7.0	41.5	50.5	92.0	1.0	100.0	3.4	0.7
직급											
관리자	(120)	0.8	1.7	2.5	39.2	57.5	96.7	0.8	100.0	3.5	0.6
실무자	(430)	1.6	7.2	8.8	48.6	40.5	89.1	2.1	100.0	3.3	0.7
기관 소재지											
서울	(54)	3.7	11.1	14.8	37.0	48.1	85.2	0.0	100.0	3.3	0.8
경기/인천	(106)	1.9	5.7	7.5	46.2	41.5	87.7	4.7	100.0	3.3	0.7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1.3	7.0	8.3	42.0	49.0	91.1	0.6	100.0	3.4	0.7
광주/전북/전남	(60)	1.7	5.0	6.7	56.7	33.3	90.0	3.3	100.0	3.3	0.6
대구/경북	(56)	0.0	1.8	1.8	66.1	30.4	96.4	1.8	100.0	3.3	0.5
부산/울산/경남	(93)	1.1	4.3	5.4	44.1	49.5	93.5	1.1	100.0	3.4	0.6
강원/제주	(24)	0.0	8.3	8.3	37.5	54.2	91.7	0.0	100.0	3.5	0.7
성별											
남자	(363)	1.1	5.5	6.6	41.3	49.9	91.2	2.2	100.0	3.4	0.7
여자	(187)	2.1	7.0	9.1	56.7	33.2	89.8	1.1	100.0	3.2	0.7
연령											
20대	(59)	0.0	5.1	5.1	67.8	27.1	94.9	0.0	100.0	3.2	0.5
30대	(176)	2.3	5.7	8.0	52.8	38.1	90.9	1.1	100.0	3.3	0.7
40대	(171)	1.8	7.6	9.4	40.9	47.4	88.3	2.3	100.0	3.4	0.7
50대	(140)	0.7	5.0	5.7	36.4	55.0	91.4	2.9	100.0	3.5	0.6
60대 이상	(4)	0.0	0.0	0.0	50.0	50.0	100.0	0.0	100.0	3.5	0.6

[표 9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 감소
 [문9_1]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2.4	9.6	12.0	53.5	32.9	86.4	1.6	100.0	3.2	0.7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2.9	10.6	13.4	56.0	28.9	84.9	1.7	100.0	3.1	0.7
공직유관단체	(200)	1.5	8.0	9.5	49.0	40.0	89.0	1.5	100.0	3.3	0.7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8	10.8	11.7	46.7	38.3	85.0	3.3	100.0	3.3	0.7
지방직	(230)	3.9	10.4	14.3	60.9	23.9	84.8	0.9	100.0	3.1	0.7
공직유관단체	(200)	1.5	8.0	9.5	49.0	40.0	89.0	1.5	100.0	3.3	0.7
직급											
관리자	(120)	1.7	5.0	6.7	48.3	41.7	90.0	3.3	100.0	3.3	0.7
실무자	(430)	2.6	10.9	13.5	54.9	30.5	85.3	1.2	100.0	3.1	0.7
기관 소재지											
서울	(54)	3.7	13.0	16.7	40.7	42.6	83.3	0.0	100.0	3.2	0.8
경기/인천	(106)	3.8	9.4	13.2	50.9	33.0	84.0	2.8	100.0	3.2	0.8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2.5	10.2	12.7	52.9	32.5	85.4	1.9	100.0	3.2	0.7
광주/전북/전남	(60)	1.7	6.7	8.3	63.3	25.0	88.3	3.3	100.0	3.2	0.6
대구/경북	(56)	3.6	16.1	19.6	66.1	14.3	80.4	0.0	100.0	2.9	0.7
부산/울산/경남	(93)	0.0	6.5	6.5	48.4	44.1	92.5	1.1	100.0	3.4	0.6
강원/제주	(24)	0.0	4.2	4.2	62.5	33.3	95.8	0.0	100.0	3.3	0.6
성별											
남자	(363)	3.0	7.4	10.5	51.0	36.6	87.6	1.9	100.0	3.2	0.7
여자	(187)	1.1	13.9	15.0	58.3	25.7	84.0	1.1	100.0	3.1	0.7
연령											
20대	(59)	0.0	6.8	6.8	74.6	18.6	93.2	0.0	100.0	3.1	0.5
30대	(176)	1.1	11.4	12.5	59.7	26.7	86.4	1.1	100.0	3.1	0.6
40대	(171)	3.5	11.7	15.2	46.2	36.8	83.0	1.8	100.0	3.2	0.8
50대	(140)	3.6	6.4	10.0	45.7	41.4	87.1	2.9	100.0	3.3	0.7
60대 이상	(4)	0.0	0.0	0.0	50.0	50.0	100.0	0.0	100.0	3.5	0.6

[표 1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공직자/언론인/교원 직무수행 공정성
 [문10]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2.2	12.7	14.9	60.2	24.2	84.4	0.7	100.0	3.1	0.7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2.0	12.9	14.9	62.9	21.7	84.6	0.6	100.0	3.0	0.7
공직유관단체	(200)	2.5	12.5	15.0	55.5	28.5	84.0	1.0	100.0	3.1	0.7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11.7	11.7	61.7	26.7	88.3	0.0	100.0	3.2	0.6
지방직	(230)	3.0	13.5	16.5	63.5	19.1	82.6	0.9	100.0	3.0	0.7
공직유관단체	(200)	2.5	12.5	15.0	55.5	28.5	84.0	1.0	100.0	3.1	0.7
직급											
관리자	(120)	0.8	7.5	8.3	62.5	28.3	90.8	0.8	100.0	3.2	0.6
실무자	(430)	2.6	14.2	16.7	59.5	23.0	82.6	0.7	100.0	3.0	0.7
기관 소재지											
서울	(54)	1.9	16.7	18.5	51.9	29.6	81.5	0.0	100.0	3.1	0.7
경기/인천	(106)	3.8	10.4	14.2	60.4	25.5	85.8	0.0	100.0	3.1	0.7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0.6	13.4	14.0	60.5	24.2	84.7	1.3	100.0	3.1	0.6
광주/전북/전남	(60)	3.3	11.7	15.0	65.0	20.0	85.0	0.0	100.0	3.0	0.7
대구/경북	(56)	3.6	12.5	16.1	71.4	12.5	83.9	0.0	100.0	2.9	0.6
부산/울산/경남	(93)	0.0	10.8	10.8	57.0	31.2	88.2	1.1	100.0	3.2	0.6
강원/제주	(24)	8.3	20.8	29.2	50.0	16.7	66.7	4.2	100.0	2.8	0.9
성별											
남자	(363)	2.8	9.4	12.1	59.8	27.0	86.8	1.1	100.0	3.1	0.7
여자	(187)	1.1	19.3	20.3	61.0	18.7	79.7	0.0	100.0	3.0	0.7
연령											
20대	(59)	0.0	13.6	13.6	69.5	15.3	84.7	1.7	100.0	3.0	0.5
30대	(176)	2.8	14.2	17.0	63.6	18.2	81.8	1.1	100.0	3.0	0.7
40대	(171)	2.9	13.5	16.4	56.1	26.9	83.0	0.6	100.0	3.1	0.7
50대	(140)	1.4	10.0	11.4	56.4	32.1	88.6	0.0	100.0	3.2	0.7
60대 이상	(4)	0.0	0.0	0.0	75.0	25.0	100.0	0.0	100.0	3.3	0.5

[표 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인식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
 [문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는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2.5	12.2	14.7	48.9	35.6	84.5	0.7	100.0	3.2	0.7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7	14.3	16.0	56.0	27.4	83.4	0.6	100.0	3.1	0.7
공직유관단체	(200)	4.0	8.5	12.5	36.5	50.0	86.5	1.0	100.0	3.3	0.8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1.7	18.3	20.0	46.7	32.5	79.2	0.8	100.0	3.1	0.8
지방직	(230)	1.7	12.2	13.9	60.9	24.8	85.7	0.4	100.0	3.1	0.7
공직유관단체	(200)	4.0	8.5	12.5	36.5	50.0	86.5	1.0	100.0	3.3	0.8
직급											
관리자	(120)	1.7	10.8	12.5	50.0	36.7	86.7	0.8	100.0	3.2	0.7
실무자	(430)	2.8	12.6	15.3	48.6	35.3	84.0	0.7	100.0	3.2	0.8
기관 소재지											
서울	(54)	1.9	20.4	22.2	38.9	38.9	77.8	0.0	100.0	3.1	0.8
경기/인천	(106)	3.8	12.3	16.0	46.2	37.7	84.0	0.0	100.0	3.2	0.8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2.5	12.7	15.3	45.2	38.2	83.4	1.3	100.0	3.2	0.8
광주/전북/전남	(60)	1.7	15.0	16.7	58.3	25.0	83.3	0.0	100.0	3.1	0.7
대구/경북	(56)	0.0	12.5	12.5	67.9	19.6	87.5	0.0	100.0	3.1	0.6
부산/울산/경남	(93)	3.2	4.3	7.5	48.4	41.9	90.3	2.2	100.0	3.3	0.7
강원/제주	(24)	4.2	12.5	16.7	41.7	41.7	83.3	0.0	100.0	3.2	0.8
성별											
남자	(363)	3.0	11.8	14.9	46.0	38.3	84.3	0.8	100.0	3.2	0.8
여자	(187)	1.6	12.8	14.4	54.5	30.5	85.0	0.5	100.0	3.1	0.7
연령											
20대	(59)	5.1	8.5	13.6	64.4	22.0	86.4	0.0	100.0	3.0	0.7
30대	(176)	2.8	13.6	16.5	52.3	31.3	83.5	0.0	100.0	3.1	0.7
40대	(171)	1.2	14.0	15.2	41.5	41.5	83.0	1.8	100.0	3.3	0.7
50대	(140)	2.9	10.0	12.9	47.1	39.3	86.4	0.7	100.0	3.2	0.7
60대 이상	(4)	0.0	0.0	0.0	50.0	50.0	100.0	0.0	100.0	3.5	0.6

[표 11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인식_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되었다
 [문11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3.1	20.0	23.1	55.5	20.7	76.2	0.7	100.0	2.9	0.7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3.4	22.6	26.0	55.7	17.4	73.1	0.9	100.0	2.9	0.7
공직유관단체	(200)	2.5	15.5	18.0	55.0	26.5	81.5	0.5	100.0	3.1	0.7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5.8	20.0	25.8	53.3	20.8	74.2	0.0	100.0	2.9	0.8
지방직	(230)	2.2	23.9	26.1	57.0	15.7	72.6	1.3	100.0	2.9	0.7
공직유관단체	(200)	2.5	15.5	18.0	55.0	26.5	81.5	0.5	100.0	3.1	0.7
직급											
관리자	(120)	0.8	22.5	23.3	64.2	11.7	75.8	0.8	100.0	2.9	0.6
실무자	(430)	3.7	19.3	23.0	53.0	23.3	76.3	0.7	100.0	3.0	0.8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22.2	22.2	55.6	22.2	77.8	0.0	100.0	3.0	0.7
경기/인천	(106)	1.9	17.9	19.8	58.5	20.8	79.2	0.9	100.0	3.0	0.7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5.7	21.7	27.4	49.7	22.9	72.6	0.0	100.0	2.9	0.8
광주/전북/전남	(60)	1.7	16.7	18.3	68.3	13.3	81.7	0.0	100.0	2.9	0.6
대구/경북	(56)	1.8	21.4	23.2	64.3	12.5	76.8	0.0	100.0	2.9	0.6
부산/울산/경남	(93)	3.2	20.4	23.7	48.4	24.7	73.1	3.2	100.0	3.0	0.8
강원/제주	(24)	4.2	16.7	20.8	54.2	25.0	79.2	0.0	100.0	3.0	0.8
성별											
남자	(363)	3.3	19.0	22.3	55.4	21.5	76.9	0.8	100.0	3.0	0.7
여자	(187)	2.7	21.9	24.6	55.6	19.3	74.9	0.5	100.0	2.9	0.7
연령											
20대	(59)	1.7	25.4	27.1	61.0	11.9	72.9	0.0	100.0	2.8	0.6
30대	(176)	3.4	19.9	23.3	53.4	22.7	76.1	0.6	100.0	3.0	0.8
40대	(171)	4.7	15.2	19.9	52.6	26.3	78.9	1.2	100.0	3.0	0.8
50대	(140)	0.7	24.3	25.0	58.6	15.7	74.3	0.7	100.0	2.9	0.7
60대 이상	(4)	25.0	0.0	25.0	75.0	0.0	75.0	0.0	100.0	2.5	1.0

[표 1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1)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감소하였다

[문12]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0.5	6.2	6.7	60.5	31.6	92.2	1.1	100.0	3.2	0.6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0.3	5.4	5.7	64.6	28.3	92.9	1.4	100.0	3.2	0.6
공직유관단체	(200)	1.0	7.5	8.5	53.5	37.5	91.0	0.5	100.0	3.3	0.6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5.0	5.0	56.7	36.7	93.3	1.7	100.0	3.3	0.6
지방직	(230)	0.4	5.7	6.1	68.7	23.9	92.6	1.3	100.0	3.2	0.5
공직유관단체	(200)	1.0	7.5	8.5	53.5	37.5	91.0	0.5	100.0	3.3	0.6
직급											
관리자	(120)	0.0	1.7	1.7	58.3	39.2	97.5	0.8	100.0	3.4	0.5
실무자	(430)	0.7	7.4	8.1	61.2	29.5	90.7	1.2	100.0	3.2	0.6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7.4	7.4	68.5	24.1	92.6	0.0	100.0	3.2	0.5
경기/인천	(106)	0.9	4.7	5.7	65.1	28.3	93.4	0.9	100.0	3.2	0.6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0.6	8.3	8.9	56.7	33.1	89.8	1.3	100.0	3.2	0.6
광주/전북/전남	(60)	1.7	8.3	10.0	61.7	28.3	90.0	0.0	100.0	3.2	0.6
대구/경북	(56)	0.0	3.6	3.6	69.6	25.0	94.6	1.8	100.0	3.2	0.5
부산/울산/경남	(93)	0.0	3.2	3.2	51.6	43.0	94.6	2.2	100.0	3.4	0.6
강원/제주	(24)	0.0	8.3	8.3	58.3	33.3	91.7	0.0	100.0	3.3	0.6
성별											
남자	(363)	0.8	5.8	6.6	57.0	35.8	92.8	0.6	100.0	3.3	0.6
여자	(187)	0.0	7.0	7.0	67.4	23.5	90.9	2.1	100.0	3.2	0.5
연령											
20대	(59)	0.0	5.1	5.1	72.9	20.3	93.2	1.7	100.0	3.2	0.5
30대	(176)	0.6	6.3	6.8	65.3	26.1	91.5	1.7	100.0	3.2	0.6
40대	(171)	1.2	9.4	10.5	56.7	32.2	88.9	0.6	100.0	3.2	0.7
50대	(140)	0.0	2.9	2.9	54.3	42.1	96.4	0.7	100.0	3.4	0.5
60대 이상	(4)	0.0	0.0	0.0	50.0	50.0	100.0	0.0	100.0	3.5	0.6

[표 12_1]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2) 공직자에 대한 접대/선물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문12_1]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1.3	3.6	4.9	55.1	39.3	94.4	0.7	100.0	3.3	0.6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0.9	2.9	3.7	58.3	37.1	95.4	0.9	100.0	3.3	0.6
공직유관단체	(200)	2.0	5.0	7.0	49.5	43.0	92.5	0.5	100.0	3.3	0.7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1.7	1.7	51.7	45.8	97.5	0.8	100.0	3.4	0.5
지방직	(230)	1.3	3.5	4.8	61.7	32.6	94.3	0.9	100.0	3.3	0.6
공직유관단체	(200)	2.0	5.0	7.0	49.5	43.0	92.5	0.5	100.0	3.3	0.7
직급											
관리자	(120)	0.8	1.7	2.5	42.5	55.0	97.5	0.0	100.0	3.5	0.6
실무자	(430)	1.4	4.2	5.6	58.6	34.9	93.5	0.9	100.0	3.3	0.6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1.9	1.9	63.0	35.2	98.1	0.0	100.0	3.3	0.5
경기/인천	(106)	1.9	3.8	5.7	61.3	32.1	93.4	0.9	100.0	3.2	0.6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2.5	3.8	6.4	51.0	41.4	92.4	1.3	100.0	3.3	0.7
광주/전북/전남	(60)	0.0	5.0	5.0	53.3	41.7	95.0	0.0	100.0	3.4	0.6
대구/경북	(56)	0.0	3.6	3.6	69.6	26.8	96.4	0.0	100.0	3.2	0.5
부산/울산/경남	(93)	1.1	1.1	2.2	47.3	49.5	96.8	1.1	100.0	3.5	0.6
강원/제주	(24)	0.0	12.5	12.5	37.5	50.0	87.5	0.0	100.0	3.4	0.7
성별											
남자	(363)	1.4	3.6	5.0	50.1	44.9	95.0	0.0	100.0	3.4	0.6
여자	(187)	1.1	3.7	4.8	64.7	28.3	93.0	2.1	100.0	3.2	0.6
연령											
20대	(59)	0.0	3.4	3.4	74.6	22.0	96.6	0.0	100.0	3.2	0.5
30대	(176)	0.6	4.5	5.1	61.9	31.8	93.8	1.1	100.0	3.3	0.6
40대	(171)	1.8	5.3	7.0	52.0	39.8	91.8	1.2	100.0	3.3	0.7
50대	(140)	2.1	0.7	2.9	42.1	55.0	97.1	0.0	100.0	3.5	0.6
60대 이상	(4)	0.0	0.0	0.0	50.0	50.0	100.0	0.0	100.0	3.5	0.6

[표 12_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3)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문12_2]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0.4	4.0	4.4	51.5	43.3	94.7	0.9	100.0	3.4	0.6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0.6	2.6	3.1	54.6	41.4	96.0	0.9	100.0	3.4	0.6
공직유관단체	(200)	0.0	6.5	6.5	46.0	46.5	92.5	1.0	100.0	3.4	0.6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0.8	0.8	50.0	47.5	97.5	1.7	100.0	3.5	0.5
지방직	(230)	0.9	3.5	4.3	57.0	38.3	95.2	0.4	100.0	3.3	0.6
공직유관단체	(200)	0.0	6.5	6.5	46.0	46.5	92.5	1.0	100.0	3.4	0.6
직급											
관리자	(120)	0.0	0.8	0.8	36.7	60.8	97.5	1.7	100.0	3.6	0.5
실무자	(430)	0.5	4.9	5.3	55.6	38.4	94.0	0.7	100.0	3.3	0.6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7.4	7.4	55.6	37.0	92.6	0.0	100.0	3.3	0.6
경기/인천	(106)	0.9	2.8	3.8	59.4	35.8	95.3	0.9	100.0	3.3	0.6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0.6	3.8	4.5	46.5	47.1	93.6	1.9	100.0	3.4	0.6
광주/전북/전남	(60)	0.0	3.3	3.3	53.3	43.3	96.7	0.0	100.0	3.4	0.6
대구/경북	(56)	0.0	3.6	3.6	66.1	30.4	96.4	0.0	100.0	3.3	0.5
부산/울산/경남	(93)	0.0	2.2	2.2	41.9	54.8	96.8	1.1	100.0	3.5	0.5
강원/제주	(24)	0.0	12.5	12.5	37.5	50.0	87.5	0.0	100.0	3.4	0.7
성별											
남자	(363)	0.3	4.1	4.4	46.3	48.5	94.8	0.8	100.0	3.4	0.6
여자	(187)	0.5	3.7	4.3	61.5	33.2	94.7	1.1	100.0	3.3	0.6
연령											
20대	(59)	0.0	3.4	3.4	64.4	32.2	96.6	0.0	100.0	3.3	0.5
30대	(176)	0.0	5.7	5.7	58.5	34.1	92.6	1.7	100.0	3.3	0.6
40대	(171)	1.2	4.1	5.3	48.5	45.6	94.2	0.6	100.0	3.4	0.6
50대	(140)	0.0	2.1	2.1	40.0	57.1	97.1	0.7	100.0	3.6	0.5
60대 이상	(4)	0.0	0.0	0.0	75.0	25.0	100.0	0.0	100.0	3.3	0.5

[표 13]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문13]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②	③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④	잘 모르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0.4	2.4	2.7	58.0	38.7	96.7	0.5	100.0	3.4	0.5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0.6	2.3	2.9	62.3	34.0	96.3	0.9	100.0	3.3	0.5
공직유관단체	(200)	0.0	2.5	2.5	50.5	47.0	97.5	0.0	100.0	3.4	0.5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3.3	3.3	51.7	44.2	95.8	0.8	100.0	3.4	0.6
지방직	(230)	0.9	1.7	2.6	67.8	28.7	96.5	0.9	100.0	3.3	0.5
공직유관단체	(200)	0.0	2.5	2.5	50.5	47.0	97.5	0.0	100.0	3.4	0.5
직급											
관리자	(120)	0.8	0.8	1.7	50.0	48.3	98.3	0.0	100.0	3.5	0.6
실무자	(430)	0.2	2.8	3.0	60.2	36.0	96.3	0.7	100.0	3.3	0.5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3.7	3.7	46.3	48.1	94.4	1.9	100.0	3.5	0.6
경기/인천	(106)	0.0	0.9	0.9	62.3	35.8	98.1	0.9	100.0	3.4	0.5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0.6	2.5	3.2	59.2	37.6	96.8	0.0	100.0	3.3	0.6
광주/전북/전남	(60)	0.0	3.3	3.3	63.3	31.7	95.0	1.7	100.0	3.3	0.5
대구/경북	(56)	1.8	5.4	7.1	64.3	28.6	92.9	0.0	100.0	3.2	0.6
부산/울산/경남	(93)	0.0	1.1	1.1	51.6	47.3	98.9	0.0	100.0	3.5	0.5
강원/제주	(24)	0.0	0.0	0.0	54.2	45.8	100.0	0.0	100.0	3.5	0.5
성별											
남자	(363)	0.6	3.0	3.6	53.2	42.7	95.9	0.6	100.0	3.4	0.6
여자	(187)	0.0	1.1	1.1	67.4	31.0	98.4	0.5	100.0	3.3	0.5
연령											
20대	(59)	0.0	1.7	1.7	81.4	16.9	98.3	0.0	100.0	3.2	0.4
30대	(176)	0.0	2.3	2.3	62.5	34.1	96.6	1.1	100.0	3.3	0.5
40대	(171)	0.6	2.9	3.5	55.0	40.9	95.9	0.6	100.0	3.4	0.6
50대	(140)	0.7	2.1	2.9	46.4	50.7	97.1	0.0	100.0	3.5	0.6
60대 이상	(4)	0.0	0.0	0.0	50.0	50.0	100.0	0.0	100.0	3.5	0.6

[표 14]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되는 정도

[문14]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②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④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0.2	4.4	4.5	59.3	36.0	95.3	0.2	100.0	3.3	0.6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0.3	3.7	4.0	64.3	31.4	95.7	0.3	100.0	3.3	0.5
공직유관단체	(200)	0.0	5.5	5.5	50.5	44.0	94.5	0.0	100.0	3.4	0.6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2.5	2.5	54.2	42.5	96.7	0.8	100.0	3.4	0.5
지방직	(230)	0.4	4.3	4.8	69.6	25.7	95.2	0.0	100.0	3.2	0.5
공직유관단체	(200)	0.0	5.5	5.5	50.5	44.0	94.5	0.0	100.0	3.4	0.6
직급											
관리자	(120)	0.8	3.3	4.2	53.3	42.5	95.8	0.0	100.0	3.4	0.6
실무자	(430)	0.0	4.7	4.7	60.9	34.2	95.1	0.2	100.0	3.3	0.5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5.6	5.6	50.0	44.4	94.4	0.0	100.0	3.4	0.6
경기/인천	(106)	0.0	2.8	2.8	61.3	34.9	96.2	0.9	100.0	3.3	0.5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0.0	4.5	4.5	58.0	37.6	95.5	0.0	100.0	3.3	0.6
광주/전북/전남	(60)	0.0	8.3	8.3	61.7	30.0	91.7	0.0	100.0	3.2	0.6
대구/경북	(56)	1.8	5.4	7.1	69.6	23.2	92.9	0.0	100.0	3.1	0.6
부산/울산/경남	(93)	0.0	2.2	2.2	55.9	41.9	97.8	0.0	100.0	3.4	0.5
강원/제주	(24)	0.0	4.2	4.2	62.5	33.3	95.8	0.0	100.0	3.3	0.6
성별											
남자	(363)	0.3	4.1	4.4	54.3	41.0	95.3	0.3	100.0	3.4	0.6
여자	(187)	0.0	4.8	4.8	69.0	26.2	95.2	0.0	100.0	3.2	0.5
연령											
20대	(59)	0.0	3.4	3.4	72.9	23.7	96.6	0.0	100.0	3.2	0.5
30대	(176)	0.0	5.1	5.1	66.5	27.8	94.3	0.6	100.0	3.2	0.5
40대	(171)	0.0	4.7	4.7	55.0	40.4	95.3	0.0	100.0	3.4	0.6
50대	(140)	0.7	3.6	4.3	50.0	45.7	95.7	0.0	100.0	3.4	0.6
60대 이상	(4)	0.0	0.0	0.0	50.0	50.0	100.0	0.0	100.0	3.5	0.6

[표 15]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문15]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①+②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0.2	4.0	4.2	27.8	67.6	95.5	0.4	100.0	3.6	0.6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0.0	4.0	4.0	27.7	67.7	95.4	0.6	100.0	3.6	0.6
공직유관단체	(200)	0.5	4.0	4.5	28.0	67.5	95.5	0.0	100.0	3.6	0.6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5.0	5.0	24.2	70.8	95.0	0.0	100.0	3.7	0.6
지방직	(230)	0.0	3.5	3.5	29.6	66.1	95.7	0.9	100.0	3.6	0.6
공직유관단체	(200)	0.5	4.0	4.5	28.0	67.5	95.5	0.0	100.0	3.6	0.6
직급											
관리자	(120)	0.0	3.3	3.3	28.3	68.3	96.7	0.0	100.0	3.7	0.5
실무자	(430)	0.2	4.2	4.4	27.7	67.4	95.1	0.5	100.0	3.6	0.6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1.9	1.9	22.2	74.1	96.3	1.9	100.0	3.7	0.5
경기/인천	(106)	0.0	4.7	4.7	32.1	63.2	95.3	0.0	100.0	3.6	0.6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0.6	5.7	6.4	29.9	63.7	93.6	0.0	100.0	3.6	0.6
광주/전북/전남	(60)	0.0	1.7	1.7	20.0	78.3	98.3	0.0	100.0	3.8	0.5
대구/경북	(56)	0.0	5.4	5.4	32.1	60.7	92.9	1.8	100.0	3.6	0.6
부산/울산/경남	(93)	0.0	3.2	3.2	28.0	68.8	96.8	0.0	100.0	3.7	0.5
강원/제주	(24)	0.0	0.0	0.0	16.7	83.3	100.0	0.0	100.0	3.8	0.4
성별											
남자	(363)	0.3	3.9	4.1	27.8	67.8	95.6	0.3	100.0	3.6	0.6
여자	(187)	0.0	4.3	4.3	27.8	67.4	95.2	0.5	100.0	3.6	0.6
연령											
20대	(59)	0.0	5.1	5.1	28.8	66.1	94.9	0.0	100.0	3.6	0.6
30대	(176)	0.0	5.1	5.1	29.0	64.8	93.8	1.1	100.0	3.6	0.6
40대	(171)	0.0	4.1	4.1	28.1	67.8	95.9	0.0	100.0	3.6	0.6
50대	(140)	0.7	2.1	2.9	25.7	71.4	97.1	0.0	100.0	3.7	0.6
60대 이상	(4)	0.0	0.0	0.0	25.0	75.0	100.0	0.0	100.0	3.8	0.5

[표 16]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정도
 [문16]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①+②	③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④매우 지지한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0.4	2.7	3.1	51.3	45.3	96.5	0.4	100.0	3.4	0.6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0.3	2.9	3.1	57.4	39.1	96.6	0.3	100.0	3.4	0.6
공직유관단체	(200)	0.5	2.5	3.0	40.5	56.0	96.5	0.5	100.0	3.5	0.6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0.0	2.5	2.5	48.3	48.3	96.7	0.8	100.0	3.5	0.5
지방직	(230)	0.4	3.0	3.5	62.2	34.3	96.5	0.0	100.0	3.3	0.5
공직유관단체	(200)	0.5	2.5	3.0	40.5	56.0	96.5	0.5	100.0	3.5	0.6
직급											
관리자	(120)	0.0	1.7	1.7	45.0	53.3	98.3	0.0	100.0	3.5	0.5
실무자	(430)	0.5	3.0	3.5	53.0	43.0	96.0	0.5	100.0	3.4	0.6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1.9	1.9	51.9	46.3	98.1	0.0	100.0	3.4	0.5
경기/인천	(106)	0.0	1.9	1.9	50.9	46.2	97.2	0.9	100.0	3.4	0.5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0.6	3.8	4.5	53.5	42.0	95.5	0.0	100.0	3.4	0.6
광주/전북/전남	(60)	0.0	3.3	3.3	48.3	48.3	96.7	0.0	100.0	3.5	0.6
대구/경북	(56)	1.8	3.6	5.4	55.4	39.3	94.6	0.0	100.0	3.3	0.6
부산/울산/경남	(93)	0.0	2.2	2.2	43.0	53.8	96.8	1.1	100.0	3.5	0.5
강원/제주	(24)	0.0	0.0	0.0	66.7	33.3	100.0	0.0	100.0	3.3	0.5
성별											
남자	(363)	0.6	3.3	3.9	47.4	48.2	95.6	0.6	100.0	3.4	0.6
여자	(187)	0.0	1.6	1.6	58.8	39.6	98.4	0.0	100.0	3.4	0.5
연령											
20대	(59)	0.0	1.7	1.7	72.9	25.4	98.3	0.0	100.0	3.2	0.5
30대	(176)	0.0	3.4	3.4	59.1	36.4	95.5	1.1	100.0	3.3	0.5
40대	(171)	0.6	2.9	3.5	46.2	50.3	96.5	0.0	100.0	3.5	0.6
50대	(140)	0.7	2.1	2.9	40.0	57.1	97.1	0.0	100.0	3.5	0.6
60대 이상	(4)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4.0	0.0

[표 17]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받은 경험
 [문1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1회	2회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 전체 ■	(550)	9.1	10.7	77.5	1.8	0.9	100.0	2.7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2.6	14.3	69.4	2.9	0.9	100.0	2.6
공직유관단체	(200)	3.0	4.5	91.5	0.0	1.0	100.0	2.9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8.3	10.8	77.5	1.7	1.7	100.0	2.7
지방직	(230)	14.8	16.1	65.2	3.5	0.4	100.0	2.6
공직유관단체	(200)	3.0	4.5	91.5	0.0	1.0	100.0	2.9
직급								
관리자	(120)	4.2	7.5	85.0	2.5	0.8	100.0	2.9
실무자	(430)	10.5	11.6	75.3	1.6	0.9	100.0	2.7
기관 소재지								
서울	(54)	3.7	9.3	83.3	1.9	1.9	100.0	2.8
경기/인천	(106)	13.2	8.5	76.4	1.9	0.0	100.0	2.7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9.6	10.2	79.0	0.0	1.3	100.0	2.7
광주/전북/전남	(60)	8.3	13.3	76.7	1.7	0.0	100.0	2.7
대구/경북	(56)	7.1	12.5	73.2	5.4	1.8	100.0	2.8
부산/울산/경남	(93)	5.4	9.7	81.7	2.2	1.1	100.0	2.8
강원/제주	(24)	20.8	20.8	54.2	4.2	0.0	100.0	2.4
성별								
남자	(363)	7.2	9.1	81.3	1.7	0.8	100.0	2.8
여자	(187)	12.8	13.9	70.1	2.1	1.1	100.0	2.6
연령								
20대	(59)	20.3	20.3	54.2	5.1	0.0	100.0	2.4
30대	(176)	8.5	13.1	74.4	2.3	1.7	100.0	2.7
40대	(171)	9.9	7.0	80.7	1.8	0.6	100.0	2.7
50대	(140)	4.3	8.6	86.4	0.0	0.7	100.0	2.8
60대 이상	(4)	0.0	0.0	100.0	0.0	0.0	100.0	3.0

[표 17_1] 청탁금지법 교육이 충분한 정도
 [문17_1]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②별로 충분하지 못하다	①+②	③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④매우 충분하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1.3	4.9	6.2	47.5	46.0	93.5	0.4	100.0	3.4	0.6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1.7	5.7	7.4	52.9	39.1	92.0	0.6	100.0	3.3	0.7
공직유관단체	(200)	0.5	3.5	4.0	38.0	58.0	96.0	0.0	100.0	3.5	0.6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1.7	3.3	5.0	49.2	45.8	95.0	0.0	100.0	3.4	0.6
지방직	(230)	1.7	7.0	8.7	54.8	35.7	90.4	0.9	100.0	3.3	0.7
공직유관단체	(200)	0.5	3.5	4.0	38.0	58.0	96.0	0.0	100.0	3.5	0.6
직급											
관리자	(120)	2.5	5.0	7.5	37.5	55.0	92.5	0.0	100.0	3.5	0.7
실무자	(430)	0.9	4.9	5.8	50.2	43.5	93.7	0.5	100.0	3.4	0.6
기관 소재지											
서울	(54)	0.0	3.7	3.7	46.3	50.0	96.3	0.0	100.0	3.5	0.6
경기/인천	(106)	0.9	3.8	4.7	39.6	54.7	94.3	0.9	100.0	3.5	0.6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1.9	4.5	6.4	45.2	48.4	93.6	0.0	100.0	3.4	0.7
광주/전북/전남	(60)	1.7	6.7	8.3	51.7	38.3	90.0	1.7	100.0	3.3	0.7
대구/경북	(56)	0.0	5.4	5.4	66.1	28.6	94.6	0.0	100.0	3.2	0.5
부산/울산/경남	(93)	1.1	4.3	5.4	46.2	48.4	94.6	0.0	100.0	3.4	0.6
강원/제주	(24)	4.2	12.5	16.7	50.0	33.3	83.3	0.0	100.0	3.1	0.8
성별											
남자	(363)	1.7	4.7	6.3	46.0	47.1	93.1	0.6	100.0	3.4	0.7
여자	(187)	0.5	5.3	5.9	50.3	43.9	94.1	0.0	100.0	3.4	0.6
연령											
20대	(59)	1.7	5.1	6.8	45.8	47.5	93.2	0.0	100.0	3.4	0.7
30대	(176)	1.7	4.5	6.3	56.3	37.5	93.8	0.0	100.0	3.3	0.6
40대	(171)	0.6	5.3	5.8	43.3	49.7	93.0	1.2	100.0	3.4	0.6
50대	(140)	1.4	5.0	6.4	41.4	52.1	93.6	0.0	100.0	3.4	0.7
60대 이상	(4)	0.0	0.0	0.0	75.0	25.0	100.0	0.0	100.0	3.3	0.5

[표 17_2] 선호하는 청탁금지법 교육 방식

[문17_2]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사이버강의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자료	워크숍, 설명회 등 집합교육	기타	계	평균
■ 전체 ■	(550)	59.8	17.6	22.4	0.2	100.0	1.6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60.9	17.7	21.1	0.3	100.0	1.6
공직유관단체	(200)	58.0	17.5	24.5	0.0	100.0	1.7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55.0	21.7	23.3	0.0	100.0	1.7
지방직	(230)	63.9	15.7	20.0	0.4	100.0	1.6
공직유관단체	(200)	58.0	17.5	24.5	0.0	100.0	1.7
직급							
관리자	(120)	52.5	25.0	21.7	0.8	100.0	1.7
실무자	(430)	61.9	15.6	22.6	0.0	100.0	1.6
기관 소재지							
서울	(54)	63.0	11.1	25.9	0.0	100.0	1.6
경기/인천	(106)	65.1	17.0	17.9	0.0	100.0	1.5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53.5	19.1	27.4	0.0	100.0	1.7
광주/전북/전남	(60)	65.0	16.7	16.7	1.7	100.0	1.6
대구/경북	(56)	67.9	12.5	19.6	0.0	100.0	1.5
부산/울산/경남	(93)	57.0	24.7	18.3	0.0	100.0	1.6
강원/제주	(24)	50.0	12.5	37.5	0.0	100.0	1.9
성별							
남자	(363)	55.9	18.2	25.6	0.3	100.0	1.7
여자	(187)	67.4	16.6	16.0	0.0	100.0	1.5
연령							
20대	(59)	67.8	11.9	20.3	0.0	100.0	1.5
30대	(176)	63.1	13.6	23.3	0.0	100.0	1.6
40대	(171)	59.1	20.5	20.5	0.0	100.0	1.6
50대	(140)	54.3	22.1	22.9	0.7	100.0	1.7
60대 이상	(4)	25.0	0.0	75.0	0.0	100.0	2.5

[표 18] 민간기업에 대한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신설 필요성

[문18]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와 같이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 수 (명)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별로 필요하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550)	3.6	16.4	20.0	44.2	33.3	77.5	2.5	100.0	3.1	0.8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2.9	18.9	21.7	46.6	28.6	75.1	3.1	100.0	3.0	0.8
공직유관단체	(200)	5.0	12.0	17.0	40.0	41.5	81.5	1.5	100.0	3.2	0.8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6.7	25.8	32.5	34.2	27.5	61.7	5.8	100.0	2.9	0.9
지방직	(230)	0.9	15.2	16.1	53.0	29.1	82.2	1.7	100.0	3.1	0.7
공직유관단체	(200)	5.0	12.0	17.0	40.0	41.5	81.5	1.5	100.0	3.2	0.8
직급											
관리자	(120)	2.5	17.5	20.0	42.5	36.7	79.2	0.8	100.0	3.1	0.8
실무자	(430)	4.0	16.0	20.0	44.7	32.3	77.0	3.0	100.0	3.1	0.8
기관 소재지											
서울	(54)	3.7	16.7	20.4	44.4	29.6	74.1	5.6	100.0	3.1	0.8
경기/인천	(106)	1.9	14.2	16.0	49.1	31.1	80.2	3.8	100.0	3.1	0.7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7.0	22.9	29.9	35.0	32.5	67.5	2.5	100.0	3.0	0.9
광주/전북/전남	(60)	1.7	11.7	13.3	50.0	35.0	85.0	1.7	100.0	3.2	0.7
대구/경북	(56)	3.6	16.1	19.6	50.0	30.4	80.4	0.0	100.0	3.1	0.8
부산/울산/경남	(93)	1.1	9.7	10.8	49.5	38.7	88.2	1.1	100.0	3.3	0.7
강원/제주	(24)	4.2	20.8	25.0	33.3	37.5	70.8	4.2	100.0	3.1	0.9
성별											
남자	(363)	4.7	15.7	20.4	39.9	37.5	77.4	2.2	100.0	3.1	0.8
여자	(187)	1.6	17.6	19.3	52.4	25.1	77.5	3.2	100.0	3.0	0.7
연령											
20대	(59)	1.7	25.4	27.1	47.5	23.7	71.2	1.7	100.0	2.9	0.8
30대	(176)	6.3	14.8	21.0	45.5	29.0	74.4	4.5	100.0	3.0	0.9
40대	(171)	3.5	14.0	17.5	48.0	33.3	81.3	1.2	100.0	3.1	0.8
50대	(140)	1.4	17.9	19.3	37.1	41.4	78.6	2.1	100.0	3.2	0.8
60대 이상	(4)	0.0	0.0	0.0	25.0	75.0	100.0	0.0	100.0	3.8	0.5

[표 19]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순위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550)	38.4	27.5	19.6	13.6	0.9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40.3	25.7	18.9	13.7	1.4	100.0
공직유관단체	(200)	35.0	30.5	21.0	13.5	0.0	10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40.0	26.7	20.8	10.8	1.7	100.0
지방직	(230)	40.4	25.2	17.8	15.2	1.3	100.0
공직유관단체	(200)	35.0	30.5	21.0	13.5	0.0	100.0
직급							
관리자	(120)	43.3	25.0	18.3	13.3	0.0	100.0
실무자	(430)	37.0	28.1	20.0	13.7	1.2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54)	33.3	42.6	16.7	7.4	0.0	100.0
경기/인천	(106)	41.5	24.5	17.9	15.1	0.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40.8	22.9	20.4	14.6	1.3	100.0
광주/전북/전남	(60)	36.7	25.0	23.3	11.7	3.3	100.0
대구/경북	(56)	35.7	28.6	25.0	10.7	0.0	100.0
부산/울산/경남	(93)	34.4	31.2	18.3	16.1	0.0	100.0
강원/제주	(24)	45.8	25.0	12.5	16.7	0.0	100.0
성별							
남자	(363)	40.2	25.3	19.0	14.6	0.8	100.0
여자	(187)	34.8	31.6	20.9	11.8	1.1	100.0
연령							
20대	(59)	23.7	40.7	20.3	15.3	0.0	100.0
30대	(176)	35.8	28.4	19.9	13.6	2.3	100.0
40대	(171)	35.1	29.8	21.1	13.5	0.6	100.0
50대	(140)	52.1	18.6	16.4	12.9	0.0	100.0
60대 이상	(4)	25.0	0.0	50.0	25.0	0.0	100.0

[표 19_1]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2순위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계
■ 전체 ■	(528)	42.6	28.8	19.1	9.5	100.0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36)	42.9	26.5	20.8	9.8	100.0
공직유관단체	(192)	42.2	32.8	16.1	8.9	10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12)	44.6	17.9	27.7	9.8	100.0
지방직	(224)	42.0	30.8	17.4	9.8	100.0
공직유관단체	(192)	42.2	32.8	16.1	8.9	100.0
직급						
관리자	(117)	57.3	18.8	13.7	10.3	100.0
실무자	(411)	38.4	31.6	20.7	9.2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53)	39.6	32.1	20.8	7.5	100.0
경기/인천	(104)	45.2	25.0	18.3	11.5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145)	45.5	26.9	19.3	8.3	100.0
광주/전북/전남	(58)	44.8	22.4	20.7	12.1	100.0
대구/경북	(55)	49.1	23.6	16.4	10.9	100.0
부산/울산/경남	(89)	36.0	39.3	18.0	6.7	100.0
강원/제주	(24)	25.0	37.5	25.0	12.5	100.0
성별						
남자	(348)	44.0	27.6	18.7	9.8	100.0
여자	(180)	40.0	31.1	20.0	8.9	100.0
연령						
20대	(58)	37.9	39.7	13.8	8.6	100.0
30대	(166)	36.7	31.3	21.1	10.8	100.0
40대	(166)	41.0	27.7	22.9	8.4	100.0
50대	(134)	54.5	22.4	14.9	8.2	100.0
60대 이상	(4)	25.0	25.0	0.0	50.0	100.0

[표 19_2]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2순위(중복응답)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잘 모르겠다
■ 전체 ■	(550)	54.5	47.5	47.3	45.8	0.9
공직자 구분 (1)						
공무원	(350)	54.9	49.7	44.3	45.7	1.4
공직유관단체	(200)	54.0	43.5	52.5	46.0	0.0
공직자 구분 (2)						
국가직	(120)	52.5	49.2	37.5	52.5	1.7
지방직	(230)	56.1	50.0	47.8	42.2	1.3
공직유관단체	(200)	54.0	43.5	52.5	46.0	0.0
직급						
관리자	(120)	69.2	53.3	36.7	38.3	0.0
실무자	(430)	50.5	45.8	50.2	47.9	1.2
기관 소재지						
서울	(54)	46.3	40.7	48.1	63.0	0.0
경기/인천	(106)	59.4	52.8	42.5	42.5	0.9
대전/세종/충북/충남	(157)	56.7	48.4	45.2	40.8	1.3
광주/전북/전남	(60)	55.0	48.3	45.0	45.0	3.3
대구/경북	(56)	58.9	46.4	48.2	44.6	0.0
부산/울산/경남	(93)	50.5	40.9	55.9	48.4	0.0
강원/제주	(24)	41.7	58.3	50.0	50.0	0.0
성별						
남자	(363)	56.7	49.6	45.5	43.3	0.8
여자	(187)	50.3	43.3	50.8	50.8	1.1
연령						
20대	(59)	52.5	32.2	59.3	54.2	0.0
30대	(176)	48.3	46.0	49.4	48.3	2.3
40대	(171)	53.2	43.3	48.0	52.0	0.6
50대	(140)	65.0	60.0	37.9	32.9	0.0
60대 이상	(4)	50.0	75.0	75.0	0.0	0.0

[결과표 3. 언론인]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사례수 (명)	
▣ 전체 ▣		(150)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42.7
	지방언론	(66)	44.0
	인터넷 언론	(20)	13.3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74.0
	방송기자	(16)	10.7
	PD	(23)	15.3
성별	남자	(115)	76.7
	여자	(35)	23.3
연령	20대	(1)	0.7
	30대	(40)	26.7
	40대	(58)	38.7
	50대	(44)	29.3
	60대 이상	(7)	4.7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문1] 귀하께서는 현재의 식사금액의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3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3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계
▣ 전체 ▣	(150)	44.0	54.0	2.0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43.8	51.6	4.7	100.0
지방언론	(66)	40.9	59.1	0.0	100.0
인터넷 언론	(20)	55.0	45.0	0.0	100.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47.7	51.4	0.9	100.0
방송기자	(16)	31.3	62.5	6.3	100.0
PD	(23)	34.8	60.9	4.3	100.0
성별					
남자	(115)	47.8	50.4	1.7	100.0
여자	(35)	31.4	65.7	2.9	100.0
연령					
20대	(1)	0.0	100.0	0.0	100.0
30대	(40)	50.0	47.5	2.5	100.0
40대	(58)	41.4	55.2	3.4	100.0
50대	(44)	43.2	56.8	0.0	100.0
60대 이상	(7)	42.9	57.1	0.0	100.0

[표 2]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2] 귀하께서는 현재의 선물금액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50)	50.7	45.3	3.3	0.7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37.5	54.7	6.3	1.6	100.0
지방언론	(66)	62.1	37.9	0.0	0.0	100.0
인터넷 언론	(20)	55.0	40.0	5.0	0.0	100.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55.9	41.4	1.8	0.9	100.0
방송기자	(16)	31.3	62.5	6.3	0.0	100.0
PD	(23)	39.1	52.2	8.7	0.0	100.0
성별						
남자	(115)	55.7	42.6	1.7	0.0	100.0
여자	(35)	34.3	54.3	8.6	2.9	100.0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30대	(40)	52.5	42.5	2.5	2.5	100.0
40대	(58)	46.6	46.6	6.9	0.0	100.0
50대	(44)	52.3	47.7	0.0	0.0	100.0
60대 이상	(7)	71.4	28.6	0.0	0.0	100.0

[표 3]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10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10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50)	28.0	58.0	12.7	1.3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25.0	59.4	14.1	1.6	100.0
지방언론	(66)	33.3	57.6	9.1	0.0	100.0
인터넷 언론	(20)	20.0	55.0	20.0	5.0	100.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32.4	56.8	9.0	1.8	100.0
방송기자	(16)	12.5	56.3	31.3	0.0	100.0
PD	(23)	17.4	65.2	17.4	0.0	100.0
성별						
남자	(115)	27.8	59.1	12.2	0.9	100.0
여자	(35)	28.6	54.3	14.3	2.9	100.0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30대	(40)	40.0	40.0	15.0	5.0	100.0
40대	(58)	20.7	67.2	12.1	0.0	100.0
50대	(44)	29.5	56.8	13.6	0.0	100.0
60대 이상	(7)	14.3	85.7	0.0	0.0	100.0

[표 3_1]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에 대한 의견(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상향)

[문3_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50)	58.0	38.0	4.0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53.1	43.8	3.1	100.0
지방언론	(66)	62.1	33.3	4.5	100.0
인터넷 언론	(20)	60.0	35.0	5.0	100.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63.1	31.5	5.4	100.0
방송기자	(16)	31.3	68.8	0.0	100.0
PD	(23)	52.2	47.8	0.0	100.0
성별					
남자	(115)	61.7	35.7	2.6	100.0
여자	(35)	45.7	45.7	8.6	100.0
연령					
20대	(1)	100.0	0.0	0.0	100.0
30대	(40)	55.0	35.0	10.0	100.0
40대	(58)	53.4	44.8	1.7	100.0
50대	(44)	59.1	38.6	2.3	100.0
60대 이상	(7)	100.0	0.0	0.0	100.0

[표 4] 일반국민 및 기업간에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문4]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6.0	27.3	33.3	55.3	8.7	64.0	2.7	100.0	2.7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7.8	26.6	34.4	57.8	6.3	64.1	1.6	100.0	2.6	0.7
지방언론	(66)	3.0	24.2	27.3	56.1	12.1	68.2	4.5	100.0	2.8	0.7
인터넷 언론	(20)	10.0	40.0	50.0	45.0	5.0	50.0	0.0	100.0	2.5	0.8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6.3	27.0	33.3	53.2	10.8	64.0	2.7	100.0	2.7	0.8
방송기자	(16)	12.5	31.3	43.8	56.3	0.0	56.3	0.0	100.0	2.4	0.7
PD	(23)	0.0	26.1	26.1	65.2	4.3	69.6	4.3	100.0	2.8	0.5
성별											
남자	(115)	6.1	24.3	30.4	56.5	9.6	66.1	3.5	100.0	2.7	0.7
여자	(35)	5.7	37.1	42.9	51.4	5.7	57.1	0.0	100.0	2.6	0.7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7.5	30.0	37.5	47.5	12.5	60.0	2.5	100.0	2.7	0.8
40대	(58)	3.4	31.0	34.5	51.7	8.6	60.3	5.2	100.0	2.7	0.7
50대	(44)	9.1	25.0	34.1	61.4	4.5	65.9	0.0	100.0	2.6	0.7
60대 이상	(7)	0.0	0.0	0.0	85.7	14.3	100.0	0.0	100.0	3.1	0.4

[표 5] 일반국민 및 기업에 적용할 가액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5]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26.0	35.3	61.3	29.3	8.7	38.0	0.7	100.0	2.2	0.9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32.8	37.5	70.3	23.4	6.3	29.7	0.0	100.0	2.0	0.9
지방언론	(66)	21.2	37.9	59.1	30.3	9.1	39.4	1.5	100.0	2.3	0.9
인터넷 언론	(20)	20.0	20.0	40.0	45.0	15.0	60.0	0.0	100.0	2.5	1.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27.0	29.7	56.8	33.3	9.0	42.3	0.9	100.0	2.2	1.0
방송기자	(16)	31.3	37.5	68.8	18.8	12.5	31.3	0.0	100.0	2.1	1.0
PD	(23)	17.4	60.9	78.3	17.4	4.3	21.7	0.0	100.0	2.1	0.7
성별											
남자	(115)	26.1	33.9	60.0	27.8	11.3	39.1	0.9	100.0	2.2	1.0
여자	(35)	25.7	40.0	65.7	34.3	0.0	34.3	0.0	100.0	2.1	0.8
연령											
20대	(1)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1.0	
30대	(40)	27.5	20.0	47.5	40.0	12.5	52.5	0.0	100.0	2.4	1.0
40대	(58)	22.4	43.1	65.5	27.6	5.2	32.8	1.7	100.0	2.2	0.8
50대	(44)	29.5	43.2	72.7	22.7	4.5	27.3	0.0	100.0	2.0	0.8
60대 이상	(7)	14.3	14.3	28.6	28.6	42.9	71.4	0.0	100.0	3.0	1.2

[표 6] 경조사비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6]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50)	48.7	49.3	1.3	0.7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48.4	50.0	1.6	0.0	100.0
지방언론	(66)	45.5	53.0	1.5	0.0	100.0
인터넷 언론	(20)	60.0	35.0	0.0	5.0	100.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50.5	48.6	0.0	0.9	100.0
방송기자	(16)	43.8	50.0	6.3	0.0	100.0
PD	(23)	43.5	52.2	4.3	0.0	100.0
성별						
남자	(115)	51.3	47.0	1.7	0.0	100.0
여자	(35)	40.0	57.1	0.0	2.9	100.0
연령						
20대	(1)	100.0	0.0	0.0	0.0	100.0
30대	(40)	55.0	45.0	0.0	0.0	100.0
40대	(58)	48.3	46.6	3.4	1.7	100.0
50대	(44)	40.9	59.1	0.0	0.0	100.0
60대 이상	(7)	57.1	42.9	0.0	0.0	100.0

[표 6_3]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100만원) 기준에 대한 의견_2) 언론인
 [문6_3]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	적정하다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50)	12.7	58.7	24.7	4.0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15.6	64.1	12.5	7.8	100.0
지방언론	(66)	10.6	54.5	33.3	1.5	100.0
인터넷 언론	(20)	10.0	55.0	35.0	0.0	100.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14.4	53.2	27.9	4.5	100.0
방송기자	(16)	6.3	75.0	12.5	6.3	100.0
PD	(23)	8.7	73.9	17.4	0.0	100.0
성별						
남자	(115)	10.4	59.1	25.2	5.2	100.0
여자	(35)	20.0	57.1	22.9	0.0	100.0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100.0
30대	(40)	17.5	52.5	22.5	7.5	100.0
40대	(58)	15.5	60.3	20.7	3.4	100.0
50대	(44)	6.8	59.1	31.8	2.3	100.0
60대 이상	(7)	0.0	71.4	28.6	0.0	100.0

[표 7]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인식

[문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들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3.3	18.0	21.3	64.0	14.0	78.0	0.7	100.0	2.9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3.1	12.5	15.6	62.5	20.3	82.8	1.6	100.0	3.0	0.7
지방언론	(66)	3.0	21.2	24.2	66.7	9.1	75.8	0.0	100.0	2.8	0.6
인터넷 언론	(20)	5.0	25.0	30.0	60.0	10.0	70.0	0.0	100.0	2.8	0.7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4.5	20.7	25.2	65.8	9.0	74.8	0.0	100.0	2.8	0.7
방송기자	(16)	0.0	12.5	12.5	75.0	12.5	87.5	0.0	100.0	3.0	0.5
PD	(23)	0.0	8.7	8.7	47.8	39.1	87.0	4.3	100.0	3.3	0.6
성별											
남자	(115)	3.5	22.6	26.1	59.1	13.9	73.0	0.9	100.0	2.8	0.7
여자	(35)	2.9	2.9	5.7	80.0	14.3	94.3	0.0	100.0	3.1	0.5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7.5	12.5	20.0	60.0	20.0	80.0	0.0	100.0	2.9	0.8
40대	(58)	3.4	19.0	22.4	65.5	10.3	75.9	1.7	100.0	2.8	0.6
50대	(44)	0.0	20.5	20.5	65.9	13.6	79.5	0.0	100.0	2.9	0.6
60대 이상	(7)	0.0	28.6	28.6	57.1	14.3	71.4	0.0	100.0	2.9	0.7

[표 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맥에 의한 부탁/요청 감소
 [문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6.0	29.3	35.3	56.0	7.3	63.3	1.3	100.0	2.7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6.3	21.9	28.1	62.5	7.8	70.3	1.6	100.0	2.7	0.7
지방언론	(66)	4.5	33.3	37.9	53.0	7.6	60.6	1.5	100.0	2.6	0.7
인터넷 언론	(20)	10.0	40.0	50.0	45.0	5.0	50.0	0.0	100.0	2.5	0.8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6.3	36.0	42.3	49.5	6.3	55.9	1.8	100.0	2.6	0.7
방송기자	(16)	6.3	6.3	12.5	68.8	18.8	87.5	0.0	100.0	3.0	0.7
PD	(23)	4.3	13.0	17.4	78.3	4.3	82.6	0.0	100.0	2.8	0.6
성별											
남자	(115)	6.1	32.2	38.3	52.2	7.8	60.0	1.7	100.0	2.6	0.7
여자	(35)	5.7	20.0	25.7	68.6	5.7	74.3	0.0	100.0	2.7	0.7
연령											
20대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30대	(40)	17.5	32.5	50.0	37.5	10.0	47.5	2.5	100.0	2.4	0.9
40대	(58)	1.7	24.1	25.9	63.8	8.6	72.4	1.7	100.0	2.8	0.6
50대	(44)	2.3	27.3	29.5	65.9	4.5	70.5	0.0	100.0	2.7	0.6
60대 이상	(7)	0.0	57.1	57.1	42.9	0.0	42.9	0.0	100.0	2.4	0.5

[표 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관행 감소

[문9]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4.7	8.7	13.3	70.0	16.0	86.0	0.7	100.0	3.0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3.1	10.9	14.1	71.9	14.1	85.9	0.0	100.0	3.0	0.6
지방언론	(66)	3.0	6.1	9.1	68.2	21.2	89.4	1.5	100.0	3.1	0.6
인터넷 언론	(20)	15.0	10.0	25.0	70.0	5.0	75.0	0.0	100.0	2.7	0.8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5.4	9.9	15.3	73.0	10.8	83.8	0.9	100.0	2.9	0.6
방송기자	(16)	6.3	6.3	12.5	43.8	43.8	87.5	0.0	100.0	3.3	0.9
PD	(23)	0.0	4.3	4.3	73.9	21.7	95.7	0.0	100.0	3.2	0.5
성별											
남자	(115)	3.5	11.3	14.8	68.7	15.7	84.3	0.9	100.0	3.0	0.6
여자	(35)	8.6	0.0	8.6	74.3	17.1	91.4	0.0	100.0	3.0	0.7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12.5	12.5	25.0	60.0	15.0	75.0	0.0	100.0	2.8	0.9
40대	(58)	3.4	10.3	13.8	65.5	19.0	84.5	1.7	100.0	3.0	0.7
50대	(44)	0.0	4.5	4.5	81.8	13.6	95.5	0.0	100.0	3.1	0.4
60대 이상	(7)	0.0	0.0	0.0	85.7	14.3	100.0	0.0	100.0	3.1	0.4

[표 9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 감소
 [문9_1]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2.0	17.3	19.3	65.3	15.3	80.7	100.0	2.9	0.6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1.6	23.4	25.0	59.4	15.6	75.0	100.0	2.9	0.7
지방언론	(66)	1.5	12.1	13.6	69.7	16.7	86.4	100.0	3.0	0.6
인터넷 언론	(20)	5.0	15.0	20.0	70.0	10.0	80.0	100.0	2.9	0.7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2.7	18.9	21.6	66.7	11.7	78.4	100.0	2.9	0.6
방송기자	(16)	0.0	25.0	25.0	43.8	31.3	75.0	100.0	3.1	0.8
PD	(23)	0.0	4.3	4.3	73.9	21.7	95.7	100.0	3.2	0.5
성별										
남자	(115)	1.7	20.0	21.7	63.5	14.8	78.3	100.0	2.9	0.6
여자	(35)	2.9	8.6	11.4	71.4	17.1	88.6	100.0	3.0	0.6
연령										
20대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4.0	
30대	(40)	7.5	25.0	32.5	50.0	17.5	67.5	100.0	2.8	0.8
40대	(58)	0.0	15.5	15.5	69.0	15.5	84.5	100.0	3.0	0.6
50대	(44)	0.0	13.6	13.6	72.7	13.6	86.4	100.0	3.0	0.5
60대 이상	(7)	0.0	14.3	14.3	85.7	0.0	85.7	100.0	2.9	0.4

[표 1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공직자/언론인/교원 직무수행 공정성
 [문10]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11.3	40.0	51.3	43.3	1.3	44.7	4.0	100.0	2.4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12.5	39.1	51.6	42.2	0.0	42.2	6.3	100.0	2.3	0.7
지방언론	(66)	10.6	36.4	47.0	48.5	1.5	50.0	3.0	100.0	2.4	0.7
인터넷 언론	(20)	10.0	55.0	65.0	30.0	5.0	35.0	0.0	100.0	2.3	0.7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13.5	46.8	60.4	36.0	0.9	36.9	2.7	100.0	2.3	0.7
방송기자	(16)	12.5	18.8	31.3	50.0	6.3	56.3	12.5	100.0	2.6	0.9
PD	(23)	0.0	21.7	21.7	73.9	0.0	73.9	4.3	100.0	2.8	0.4
성별											
남자	(115)	12.2	40.0	52.2	40.9	1.7	42.6	5.2	100.0	2.3	0.7
여자	(35)	8.6	40.0	48.6	51.4	0.0	51.4	0.0	100.0	2.4	0.7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25.0	37.5	62.5	32.5	2.5	35.0	2.5	100.0	2.1	0.8
40대	(58)	10.3	41.4	51.7	41.4	0.0	41.4	6.9	100.0	2.3	0.7
50대	(44)	2.3	38.6	40.9	54.5	2.3	56.8	2.3	100.0	2.6	0.6
60대 이상	(7)	0.0	57.1	57.1	42.9	0.0	42.9	0.0	100.0	2.4	0.5

[표 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인식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
 [문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는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14.7	39.3	54.0	40.7	4.0	44.7	1.3	100.0	2.3	0.8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17.2	43.8	60.9	32.8	3.1	35.9	3.1	100.0	2.2	0.8
지방언론	(66)	12.1	37.9	50.0	45.5	4.5	50.0	0.0	100.0	2.4	0.8
인터넷 언론	(20)	15.0	30.0	45.0	50.0	5.0	55.0	0.0	100.0	2.5	0.8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13.5	43.2	56.8	40.5	1.8	42.3	0.9	100.0	2.3	0.7
방송기자	(16)	6.3	31.3	37.5	50.0	12.5	62.5	0.0	100.0	2.7	0.8
PD	(23)	26.1	26.1	52.2	34.8	8.7	43.5	4.3	100.0	2.3	1.0
성별											
남자	(115)	17.4	38.3	55.7	39.1	3.5	42.6	1.7	100.0	2.3	0.8
여자	(35)	5.7	42.9	48.6	45.7	5.7	51.4	0.0	100.0	2.5	0.7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12.5	40.0	52.5	37.5	7.5	45.0	2.5	100.0	2.4	0.8
40대	(58)	20.7	43.1	63.8	34.5	1.7	36.2	0.0	100.0	2.2	0.8
50대	(44)	9.1	36.4	45.5	50.0	2.3	52.3	2.3	100.0	2.5	0.7
60대 이상	(7)	14.3	28.6	42.9	42.9	14.3	57.1	0.0	100.0	2.6	1.0

[표 11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인식_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되었다
 [문11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20.0	60.0	80.0	18.0	1.3	19.3	0.7	100.0	2.0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28.1	62.5	90.6	9.4	0.0	9.4	0.0	100.0	1.8	0.6
지방언론	(66)	15.2	59.1	74.2	22.7	1.5	24.2	1.5	100.0	2.1	0.7
인터넷 언론	(20)	10.0	55.0	65.0	30.0	5.0	35.0	0.0	100.0	2.3	0.7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18.9	63.1	82.0	17.1	0.0	17.1	0.9	100.0	2.0	0.6
방송기자	(16)	25.0	56.3	81.3	12.5	6.3	18.8	0.0	100.0	2.0	0.8
PD	(23)	21.7	47.8	69.6	26.1	4.3	30.4	0.0	100.0	2.1	0.8
성별											
남자	(115)	22.6	60.9	83.5	14.8	0.9	15.7	0.9	100.0	1.9	0.6
여자	(35)	11.4	57.1	68.6	28.6	2.9	31.4	0.0	100.0	2.2	0.7
연령											
20대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30대	(40)	30.0	50.0	80.0	17.5	2.5	20.0	0.0	100.0	1.9	0.8
40대	(58)	24.1	58.6	82.8	15.5	1.7	17.2	0.0	100.0	1.9	0.7
50대	(44)	6.8	65.9	72.7	25.0	0.0	25.0	2.3	100.0	2.2	0.5
60대 이상	(7)	14.3	85.7	100.0	0.0	0.0	0.0	0.0	100.0	1.9	0.4

[표 1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1)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감소하였다
 [문12]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8.0	31.3	39.3	55.3	2.0	57.3	3.3	100.0	2.5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10.9	31.3	42.2	54.7	0.0	54.7	3.1	100.0	2.5	0.7
지방언론	(66)	3.0	31.8	34.8	59.1	3.0	62.1	3.0	100.0	2.6	0.6
인터넷 언론	(20)	15.0	30.0	45.0	45.0	5.0	50.0	5.0	100.0	2.4	0.8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9.0	36.0	45.0	48.6	1.8	50.5	4.5	100.0	2.5	0.7
방송기자	(16)	6.3	18.8	25.0	68.8	6.3	75.0	0.0	100.0	2.8	0.7
PD	(23)	4.3	17.4	21.7	78.3	0.0	78.3	0.0	100.0	2.7	0.5
성별											
남자	(115)	7.8	33.0	40.9	53.0	2.6	55.7	3.5	100.0	2.5	0.7
여자	(35)	8.6	25.7	34.3	62.9	0.0	62.9	2.9	100.0	2.6	0.7
연령											
20대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30대	(40)	12.5	37.5	50.0	42.5	2.5	45.0	5.0	100.0	2.4	0.8
40대	(58)	10.3	24.1	34.5	60.3	1.7	62.1	3.4	100.0	2.6	0.7
50대	(44)	2.3	29.5	31.8	63.6	2.3	65.9	2.3	100.0	2.7	0.6
60대 이상	(7)	0.0	57.1	57.1	42.9	0.0	42.9	0.0	100.0	2.4	0.5

[표 12_1]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2) 공직자에 대한 접대/선물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문12_1]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6.0	20.0	26.0	66.0	4.0	70.0	4.0	100.0	2.7	0.6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9.4	23.4	32.8	59.4	4.7	64.1	3.1	100.0	2.6	0.7
지방언론	(66)	1.5	16.7	18.2	72.7	4.5	77.3	4.5	100.0	2.8	0.5
인터넷 언론	(20)	10.0	20.0	30.0	65.0	0.0	65.0	5.0	100.0	2.6	0.7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6.3	22.5	28.8	63.1	3.6	66.7	4.5	100.0	2.7	0.7
방송기자	(16)	6.3	12.5	18.8	68.8	6.3	75.0	6.3	100.0	2.8	0.7
PD	(23)	4.3	13.0	17.4	78.3	4.3	82.6	0.0	100.0	2.8	0.6
성별											
남자	(115)	5.2	21.7	27.0	66.1	2.6	68.7	4.3	100.0	2.7	0.6
여자	(35)	8.6	14.3	22.9	65.7	8.6	74.3	2.9	100.0	2.8	0.7
연령											
20대	(1)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2.0	
30대	(40)	15.0	20.0	35.0	60.0	2.5	62.5	2.5	100.0	2.5	0.8
40대	(58)	5.2	15.5	20.7	65.5	6.9	72.4	6.9	100.0	2.8	0.7
50대	(44)	0.0	22.7	22.7	72.7	2.3	75.0	2.3	100.0	2.8	0.5
60대 이상	(7)	0.0	28.6	28.6	71.4	0.0	71.4	0.0	100.0	2.7	0.5

[표 12_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3)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문12_2]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5.3	20.0	25.3	62.7	8.0	70.7	4.0	100.0	2.8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7.8	20.3	28.1	57.8	9.4	67.2	4.7	100.0	2.7	0.8
지방언론	(66)	0.0	19.7	19.7	66.7	9.1	75.8	4.5	100.0	2.9	0.5
인터넷 언론	(20)	15.0	20.0	35.0	65.0	0.0	65.0	0.0	100.0	2.5	0.8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6.3	22.5	28.8	62.2	4.5	66.7	4.5	100.0	2.7	0.7
방송기자	(16)	0.0	18.8	18.8	50.0	25.0	75.0	6.3	100.0	3.1	0.7
PD	(23)	4.3	8.7	13.0	73.9	13.0	87.0	0.0	100.0	3.0	0.6
성별											
남자	(115)	4.3	22.6	27.0	60.0	7.8	67.8	5.2	100.0	2.8	0.7
여자	(35)	8.6	11.4	20.0	71.4	8.6	80.0	0.0	100.0	2.8	0.7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12.5	20.0	32.5	57.5	5.0	62.5	5.0	100.0	2.6	0.8
40대	(58)	5.2	19.0	24.1	63.8	6.9	70.7	5.2	100.0	2.8	0.7
50대	(44)	0.0	20.5	20.5	63.6	13.6	77.3	2.3	100.0	2.9	0.6
60대 이상	(7)	0.0	28.6	28.6	71.4	0.0	71.4	0.0	100.0	2.7	0.5

[표 13]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문13]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②	③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④	잘 모르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4.0	9.3	13.3	70.0	11.3	81.3	5.3	100.0	2.9	0.6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6.3	4.7	10.9	70.3	14.1	84.4	4.7	100.0	3.0	0.7
지방언론	(66)	3.0	9.1	12.1	74.2	9.1	83.3	4.5	100.0	2.9	0.6
인터넷 언론	(20)	0.0	25.0	25.0	55.0	10.0	65.0	10.0	100.0	2.8	0.6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5.4	10.8	16.2	72.1	4.5	76.6	7.2	100.0	2.8	0.6
방송기자	(16)	0.0	6.3	6.3	75.0	18.8	93.8	0.0	100.0	3.1	0.5
PD	(23)	0.0	4.3	4.3	56.5	39.1	95.7	0.0	100.0	3.3	0.6
성별											
남자	(115)	5.2	10.4	15.7	65.2	13.0	78.3	6.1	100.0	2.9	0.7
여자	(35)	0.0	5.7	5.7	85.7	5.7	91.4	2.9	100.0	3.0	0.3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7.5	10.0	17.5	67.5	7.5	75.0	7.5	100.0	2.8	0.7
40대	(58)	3.4	10.3	13.8	67.2	12.1	79.3	6.9	100.0	2.9	0.6
50대	(44)	0.0	6.8	6.8	75.0	15.9	90.9	2.3	100.0	3.1	0.5
60대 이상	(7)	14.3	14.3	28.6	71.4	0.0	71.4	0.0	100.0	2.6	0.8

[표 14]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되는 정도

[문14]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②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④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8.0	20.7	28.7	60.0	8.7	68.7	2.7	100.0	2.7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7.8	21.9	29.7	59.4	9.4	68.8	1.6	100.0	2.7	0.7
지방언론	(66)	6.1	19.7	25.8	63.6	7.6	71.2	3.0	100.0	2.8	0.7
인터넷 언론	(20)	15.0	20.0	35.0	50.0	10.0	60.0	5.0	100.0	2.6	0.9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9.9	24.3	34.2	58.6	3.6	62.2	3.6	100.0	2.6	0.7
방송기자	(16)	6.3	12.5	18.8	62.5	18.8	81.3	0.0	100.0	2.9	0.8
PD	(23)	0.0	8.7	8.7	65.2	26.1	91.3	0.0	100.0	3.2	0.6
성별											
남자	(115)	9.6	21.7	31.3	56.5	9.6	66.1	2.6	100.0	2.7	0.8
여자	(35)	2.9	17.1	20.0	71.4	5.7	77.1	2.9	100.0	2.8	0.6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10.0	25.0	35.0	55.0	2.5	57.5	7.5	100.0	2.5	0.7
40대	(58)	8.6	24.1	32.8	55.2	10.3	65.5	1.7	100.0	2.7	0.8
50대	(44)	4.5	13.6	18.2	70.5	11.4	81.8	0.0	100.0	2.9	0.7
60대 이상	(7)	14.3	14.3	28.6	57.1	14.3	71.4	0.0	100.0	2.7	1.0

[표 15]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문15]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①+②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2.7	12.0	14.7	56.7	27.3	84.0	1.3	100.0	3.1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3.1	9.4	12.5	56.3	29.7	85.9	1.6	100.0	3.1	0.7
지방언론	(66)	1.5	9.1	10.6	63.6	25.8	89.4	0.0	100.0	3.1	0.6
인터넷 언론	(20)	5.0	30.0	35.0	35.0	25.0	60.0	5.0	100.0	2.8	0.9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3.6	15.3	18.9	57.7	21.6	79.3	1.8	100.0	3.0	0.7
방송기자	(16)	0.0	6.3	6.3	56.3	37.5	93.8	0.0	100.0	3.3	0.6
PD	(23)	0.0	0.0	0.0	52.2	47.8	100.0	0.0	100.0	3.5	0.5
성별											
남자	(115)	3.5	11.3	14.8	54.8	28.7	83.5	1.7	100.0	3.1	0.7
여자	(35)	0.0	14.3	14.3	62.9	22.9	85.7	0.0	100.0	3.1	0.6
연령											
20대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4.0	
30대	(40)	2.5	12.5	15.0	57.5	25.0	82.5	2.5	100.0	3.1	0.7
40대	(58)	5.2	12.1	17.2	50.0	31.0	81.0	1.7	100.0	3.1	0.8
50대	(44)	0.0	9.1	9.1	63.6	27.3	90.9	0.0	100.0	3.2	0.6
60대 이상	(7)	0.0	28.6	28.6	71.4	0.0	71.4	0.0	100.0	2.7	0.5

[표 16]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정도
 [문16]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①+②	③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④매우 지지한다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8.7	12.0	20.7	58.7	20.7	79.3	100.0	2.9	0.8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7.8	10.9	18.8	56.3	25.0	81.3	100.0	3.0	0.8
지방언론	(66)	6.1	13.6	19.7	60.6	19.7	80.3	100.0	2.9	0.8
인터넷 언론	(20)	20.0	10.0	30.0	60.0	10.0	70.0	100.0	2.6	0.9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11.7	13.5	25.2	63.1	11.7	74.8	100.0	2.7	0.8
방송기자	(16)	0.0	12.5	12.5	56.3	31.3	87.5	100.0	3.2	0.7
PD	(23)	0.0	4.3	4.3	39.1	56.5	95.7	100.0	3.5	0.6
성별										
남자	(115)	9.6	13.9	23.5	56.5	20.0	76.5	100.0	2.9	0.8
여자	(35)	5.7	5.7	11.4	65.7	22.9	88.6	100.0	3.1	0.7
연령										
20대	(1)	0.0	0.0	0.0	0.0	100.0	100.0	100.0	4.0	
30대	(40)	12.5	15.0	27.5	62.5	10.0	72.5	100.0	2.7	0.8
40대	(58)	10.3	12.1	22.4	55.2	22.4	77.6	100.0	2.9	0.9
50대	(44)	4.5	6.8	11.4	59.1	29.5	88.6	100.0	3.1	0.7
60대 이상	(7)	0.0	28.6	28.6	71.4	0.0	71.4	100.0	2.7	0.5

[표 17]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받은 경험
 [문1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1회	2회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 전체 ▣	(150)	21.3	16.7	42.7	10.7	8.7	100.0	2.5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21.9	17.2	40.6	7.8	12.5	100.0	2.4
지방언론	(66)	21.2	19.7	40.9	12.1	6.1	100.0	2.5
인터넷 언론	(20)	20.0	5.0	55.0	15.0	5.0	100.0	2.7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22.5	18.0	39.6	14.4	5.4	100.0	2.5
방송기자	(16)	31.3	6.3	37.5	0.0	25.0	100.0	2.1
PD	(23)	8.7	17.4	60.9	0.0	13.0	100.0	2.6
성별								
남자	(115)	18.3	17.4	43.5	10.4	10.4	100.0	2.5
여자	(35)	31.4	14.3	40.0	11.4	2.9	100.0	2.3
연령								
20대	(1)	0.0	100.0	0.0	0.0	0.0	100.0	2.0
30대	(40)	25.0	5.0	42.5	17.5	10.0	100.0	2.6
40대	(58)	20.7	25.9	46.6	0.0	6.9	100.0	2.3
50대	(44)	22.7	15.9	43.2	9.1	9.1	100.0	2.4
60대 이상	(7)	0.0	0.0	14.3	71.4	14.3	100.0	3.8

[표 17_1] 청탁금지법 교육이 충분한 정도
 [문17_1]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②별로 충분하지 못하다	①+②	③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④매우 충분하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6.7	48.0	54.7	39.3	3.3	42.7	2.7	100.0	2.4	0.7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7.8	50.0	57.8	37.5	3.1	40.6	1.6	100.0	2.4	0.7
지방언론	(66)	6.1	43.9	50.0	40.9	4.5	45.5	4.5	100.0	2.5	0.7
인터넷 언론	(20)	5.0	55.0	60.0	40.0	0.0	40.0	0.0	100.0	2.4	0.6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7.2	48.6	55.9	38.7	2.7	41.4	2.7	100.0	2.4	0.7
방송기자	(16)	12.5	43.8	56.3	43.8	0.0	43.8	0.0	100.0	2.3	0.7
PD	(23)	0.0	47.8	47.8	39.1	8.7	47.8	4.3	100.0	2.6	0.7
성별											
남자	(115)	7.8	47.8	55.7	38.3	3.5	41.7	2.6	100.0	2.4	0.7
여자	(35)	2.9	48.6	51.4	42.9	2.9	45.7	2.9	100.0	2.5	0.6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10.0	47.5	57.5	37.5	5.0	42.5	0.0	100.0	2.4	0.7
40대	(58)	5.2	48.3	53.4	43.1	3.4	46.6	0.0	100.0	2.4	0.7
50대	(44)	4.5	43.2	47.7	40.9	2.3	43.2	9.1	100.0	2.5	0.6
60대 이상	(7)	14.3	85.7	100.0	0.0	0.0	0.0	0.0	100.0	1.9	0.4

[표 17_2] 선호하는 청탁금지법 교육 방식

[문17_2]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사이버강의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자료	워크숍, 설명회 등 집합교육	잘 모르겠다	계	평균
▣ 전체 ▣	(150)	38.0	28.0	25.3	8.7	100.0	1.9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50.0	26.6	14.1	9.4	100.0	1.6
지방언론	(66)	28.8	25.8	34.8	10.6	100.0	2.1
인터넷 언론	(20)	30.0	40.0	30.0	0.0	100.0	2.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35.1	27.0	28.8	9.0	100.0	1.9
방송기자	(16)	31.3	31.3	18.8	18.8	100.0	1.8
PD	(23)	56.5	30.4	13.0	0.0	100.0	1.6
성별							
남자	(115)	39.1	25.2	27.0	8.7	100.0	1.9
여자	(35)	34.3	37.1	20.0	8.6	100.0	1.8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17.5	37.5	27.5	17.5	100.0	2.1
40대	(58)	50.0	24.1	19.0	6.9	100.0	1.7
50대	(44)	43.2	22.7	29.5	4.5	100.0	1.9
60대 이상	(7)	28.6	42.9	28.6	0.0	100.0	2.0

[표 18] 민간기업에 대한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신설 필요성

[문18]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와 같이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 수 (명)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별로 필요하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150)	6.7	16.0	22.7	55.3	21.3	76.7	0.7	100.0	2.9	0.8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6.3	21.9	28.1	53.1	18.8	71.9	0.0	100.0	2.8	0.8
지방언론	(66)	4.5	12.1	16.7	57.6	24.2	81.8	1.5	100.0	3.0	0.7
인터넷 언론	(20)	15.0	10.0	25.0	55.0	20.0	75.0	0.0	100.0	2.8	1.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9.0	14.4	23.4	59.5	17.1	76.6	0.0	100.0	2.8	0.8
방송기자	(16)	0.0	25.0	25.0	31.3	43.8	75.0	0.0	100.0	3.2	0.8
PD	(23)	0.0	17.4	17.4	52.2	26.1	78.3	4.3	100.0	3.1	0.7
성별											
남자	(115)	7.8	16.5	24.3	51.3	23.5	74.8	0.9	100.0	2.9	0.8
여자	(35)	2.9	14.3	17.1	68.6	14.3	82.9	0.0	100.0	2.9	0.6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30대	(40)	10.0	15.0	25.0	55.0	20.0	75.0	0.0	100.0	2.9	0.9
40대	(58)	8.6	17.2	25.9	50.0	22.4	72.4	1.7	100.0	2.9	0.9
50대	(44)	2.3	18.2	20.5	59.1	20.5	79.5	0.0	100.0	3.0	0.7
60대 이상	(7)	0.0	0.0	0.0	71.4	28.6	100.0	0.0	100.0	3.3	0.5

[표 19]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순위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50)	46.0	20.0	19.3	10.7	4.0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43.8	15.6	32.8	3.1	4.7	100.0
지방언론	(66)	50.0	24.2	7.6	15.2	3.0	100.0
인터넷 언론	(20)	40.0	20.0	15.0	20.0	5.0	100.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47.7	21.6	15.3	10.8	4.5	100.0
방송기자	(16)	25.0	6.3	56.3	6.3	6.3	100.0
PD	(23)	52.2	21.7	13.0	13.0	0.0	100.0
성별							
남자	(115)	49.6	20.9	16.5	7.8	5.2	100.0
여자	(35)	34.3	17.1	28.6	20.0	0.0	100.0
연령							
20대	(1)	0.0	0.0	100.0	0.0	0.0	100.0
30대	(40)	42.5	15.0	27.5	7.5	7.5	100.0
40대	(58)	44.8	25.9	13.8	10.3	5.2	100.0
50대	(44)	56.8	15.9	15.9	11.4	0.0	100.0
60대 이상	(7)	14.3	28.6	28.6	28.6	0.0	100.0

[표 19_1]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2순위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계
▣ 전체 ▣	(144)	27.8	27.1	25.7	19.4	100.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1)	27.9	34.4	21.3	16.4	100.0
지방언론	(64)	28.1	23.4	28.1	20.3	100.0
인터넷 언론	(19)	26.3	15.8	31.6	26.3	100.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06)	33.0	17.9	28.3	20.8	100.0
방송기자	(15)	13.3	60.0	13.3	13.3	100.0
PD	(23)	13.0	47.8	21.7	17.4	100.0
성별						
남자	(109)	28.4	26.6	24.8	20.2	100.0
여자	(35)	25.7	28.6	28.6	17.1	100.0
연령						
20대	(1)	0.0	0.0	0.0	100.0	100.0
30대	(37)	29.7	21.6	29.7	18.9	100.0
40대	(55)	34.5	18.2	29.1	18.2	100.0
50대	(44)	20.5	43.2	18.2	18.2	100.0
60대 이상	(7)	14.3	28.6	28.6	28.6	100.0

[표 19_2]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2순위(중복응답)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잘 모르겠다
□ 전체 □	(150)	64.7	46.0	44.0	37.3	4.0
언론사 구분						
중앙언론	(64)	59.4	48.4	53.1	29.7	4.7
지방언론	(66)	69.7	47.0	34.8	42.4	3.0
인터넷 언론	(20)	65.0	35.0	45.0	45.0	5.0
담당 업무						
신문기자	(111)	67.6	38.7	42.3	42.3	4.5
방송기자	(16)	37.5	62.5	68.8	18.8	6.3
PD	(23)	69.6	69.6	34.8	26.1	0.0
성별						
남자	(115)	68.7	46.1	40.0	34.8	5.2
여자	(35)	51.4	45.7	57.1	45.7	0.0
연령						
20대	(1)	100.0	0.0	100.0	0.0	0.0
30대	(40)	60.0	35.0	55.0	35.0	7.5
40대	(58)	62.1	43.1	41.4	43.1	5.2
50대	(44)	75.0	59.1	34.1	31.8	0.0
60대 이상	(7)	42.9	57.1	57.1	42.9	0.0

[결과표 4. 교원]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사례수 (명)	
▣ 전체 ▣		(303)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16.5
	중/고등학교	(100)	33.0
	대학교	(153)	50.5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49.5
	사립	(153)	50.5
기관 소재지			
	서울	(91)	30.0
	경기/인천	(76)	25.1
	대전/세종/충북/충남	(35)	11.6
	광주/전북/전남	(35)	11.6
	대구/경북	(25)	8.3
	부산/울산/경남	(28)	9.2
	강원/제주	(13)	4.3
성별			
	남자	(156)	51.5
	여자	(147)	48.5
연령			
	20대	(21)	6.9
	30대	(48)	15.8
	40대	(88)	29.0
	50대	(106)	35.0
	60대 이상	(40)	13.2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문1] 귀하께서는 현재의 식사금액의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3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3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303)	22.4	74.3	3.0	0.3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14.0	82.0	4.0	0.0	100.0
중/고등학교	(100)	9.0	87.0	4.0	0.0	100.0
대학교	(153)	34.0	63.4	2.0	0.7	100.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12.0	82.7	5.3	0.0	100.0
사립	(153)	32.7	66.0	0.7	0.7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91)	36.3	62.6	1.1	0.0	100.0
경기/인천	(76)	18.4	78.9	2.6	0.0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5)	17.1	77.1	5.7	0.0	100.0
광주/전북/전남	(35)	20.0	74.3	5.7	0.0	100.0
대구/경북	(25)	12.0	80.0	4.0	4.0	100.0
부산/울산/경남	(28)	10.7	85.7	3.6	0.0	100.0
강원/제주	(13)	15.4	84.6	0.0	0.0	100.0
성별						
남자	(156)	30.8	67.3	1.9	0.0	100.0
여자	(147)	13.6	81.6	4.1	0.7	100.0
연령						
20대	(21)	23.8	76.2	0.0	0.0	100.0
30대	(48)	12.5	85.4	2.1	0.0	100.0
40대	(88)	17.0	80.7	2.3	0.0	100.0
50대	(106)	28.3	66.0	4.7	0.9	100.0
60대 이상	(40)	30.0	67.5	2.5	0.0	100.0

[표 2]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2] 귀하께서는 현재의 선물금액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303)	23.1	72.3	3.3	1.3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10.0	80.0	10.0	0.0	100.0
중/고등학교	(100)	7.0	92.0	1.0	0.0	100.0
대학교	(153)	37.9	56.9	2.6	2.6	100.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14.0	82.0	3.3	0.7	100.0
사립	(153)	32.0	62.7	3.3	2.0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91)	26.4	67.0	4.4	2.2	100.0
경기/인천	(76)	25.0	73.7	1.3	0.0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5)	20.0	74.3	2.9	2.9	100.0
광주/전북/전남	(35)	17.1	77.1	5.7	0.0	100.0
대구/경북	(25)	24.0	64.0	8.0	4.0	100.0
부산/울산/경남	(28)	25.0	75.0	0.0	0.0	100.0
강원/제주	(13)	7.7	92.3	0.0	0.0	100.0
성별						
남자	(156)	34.6	62.2	1.9	1.3	100.0
여자	(147)	10.9	83.0	4.8	1.4	100.0
연령						
20대	(21)	9.5	90.5	0.0	0.0	100.0
30대	(48)	8.3	89.6	2.1	0.0	100.0
40대	(88)	17.0	77.3	5.7	0.0	100.0
50대	(106)	32.1	63.2	2.8	1.9	100.0
60대 이상	(40)	37.5	55.0	2.5	5.0	100.0

[표 3]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10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10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303)	11.9	74.9	11.9	1.3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6.0	76.0	18.0	0.0	100.0
중/고등학교	(100)	8.0	82.0	10.0	0.0	100.0
대학교	(153)	16.3	69.9	11.1	2.6	100.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8.0	78.0	13.3	0.7	100.0
사립	(153)	15.7	71.9	10.5	2.0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91)	17.6	72.5	6.6	3.3	100.0
경기/인천	(76)	10.5	76.3	13.2	0.0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5)	14.3	74.3	8.6	2.9	100.0
광주/전북/전남	(35)	2.9	80.0	17.1	0.0	100.0
대구/경북	(25)	12.0	72.0	16.0	0.0	100.0
부산/울산/경남	(28)	7.1	78.6	14.3	0.0	100.0
강원/제주	(13)	7.7	69.2	23.1	0.0	100.0
성별						
남자	(156)	16.0	72.4	9.6	1.9	100.0
여자	(147)	7.5	77.6	14.3	0.7	100.0
연령						
20대	(21)	9.5	90.5	0.0	0.0	100.0
30대	(48)	0.0	87.5	12.5	0.0	100.0
40대	(88)	12.5	69.3	18.2	0.0	100.0
50대	(106)	16.0	72.6	8.5	2.8	100.0
60대 이상	(40)	15.0	70.0	12.5	2.5	100.0

[표 3_1]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에 대한 의견(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상향)
 [문3_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 수 (명)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303)	43.6	52.8	3.6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48.0	50.0	2.0	100.0
중/고등학교	(100)	38.0	59.0	3.0	100.0
대학교	(153)	45.8	49.7	4.6	100.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40.0	56.0	4.0	100.0
사립	(153)	47.1	49.7	3.3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91)	45.1	50.5	4.4	100.0
경기/인천	(76)	48.7	48.7	2.6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5)	37.1	57.1	5.7	100.0
광주/전북/전남	(35)	42.9	57.1	0.0	100.0
대구/경북	(25)	48.0	52.0	0.0	100.0
부산/울산/경남	(28)	39.3	53.6	7.1	100.0
강원/제주	(13)	23.1	69.2	7.7	100.0
성별					
남자	(156)	47.4	50.0	2.6	100.0
여자	(147)	39.5	55.8	4.8	100.0
연령					
20대	(21)	38.1	61.9	0.0	100.0
30대	(48)	43.8	54.2	2.1	100.0
40대	(88)	42.0	54.5	3.4	100.0
50대	(106)	48.1	47.2	4.7	100.0
60대 이상	(40)	37.5	57.5	5.0	100.0

[표 4] 일반국민 및 기업간에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문4]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6.9	24.4	31.4	52.1	13.2	65.3	3.3	100.0	2.7	0.8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4.0	24.0	28.0	62.0	10.0	72.0	0.0	100.0	2.8	0.7
중/고등학교	(100)	4.0	29.0	33.0	51.0	15.0	66.0	1.0	100.0	2.8	0.7
대학교	(153)	9.8	21.6	31.4	49.7	13.1	62.7	5.9	100.0	2.7	0.8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7.3	26.7	34.0	47.3	14.0	61.3	4.7	100.0	2.7	0.8
사립	(153)	6.5	22.2	28.8	56.9	12.4	69.3	2.0	100.0	2.8	0.8
기관 소재지											
서울	(91)	7.7	20.9	28.6	57.1	9.9	67.0	4.4	100.0	2.7	0.8
경기/인천	(76)	5.3	23.7	28.9	51.3	18.4	69.7	1.3	100.0	2.8	0.8
대전/세종/충북/충남	(35)	2.9	20.0	22.9	60.0	14.3	74.3	2.9	100.0	2.9	0.7
광주/전북/전남	(35)	11.4	22.9	34.3	45.7	17.1	62.9	2.9	100.0	2.7	0.9
대구/경북	(25)	8.0	28.0	36.0	52.0	8.0	60.0	4.0	100.0	2.6	0.8
부산/울산/경남	(28)	3.6	35.7	39.3	39.3	14.3	53.6	7.1	100.0	2.7	0.8
강원/제주	(13)	15.4	38.5	53.8	46.2	0.0	46.2	0.0	100.0	2.3	0.8
성별											
남자	(156)	9.0	20.5	29.5	53.2	13.5	66.7	3.8	100.0	2.7	0.8
여자	(147)	4.8	28.6	33.3	51.0	12.9	63.9	2.7	100.0	2.7	0.7
연령											
20대	(21)	0.0	33.3	33.3	57.1	9.5	66.7	0.0	100.0	2.8	0.6
30대	(48)	8.3	22.9	31.3	54.2	14.6	68.8	0.0	100.0	2.8	0.8
40대	(88)	6.8	29.5	36.4	50.0	11.4	61.4	2.3	100.0	2.7	0.8
50대	(106)	7.5	20.8	28.3	50.9	16.0	67.0	4.7	100.0	2.8	0.8
60대 이상	(40)	7.5	20.0	27.5	55.0	10.0	65.0	7.5	100.0	2.7	0.8

[표 5] 일반국민 및 기업에 적용할 가액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5]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19.8	34.0	53.8	35.0	9.2	44.2	2.0	100.0	2.3	0.9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10.0	40.0	50.0	42.0	8.0	50.0	0.0	100.0	2.5	0.8
중/고등학교	(100)	10.0	40.0	50.0	40.0	8.0	48.0	2.0	100.0	2.5	0.8
대학교	(153)	29.4	28.1	57.5	29.4	10.5	39.9	2.6	100.0	2.2	1.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22.7	38.7	61.3	30.0	6.7	36.7	2.0	100.0	2.2	0.9
사립	(153)	17.0	29.4	46.4	39.9	11.8	51.6	2.0	100.0	2.5	0.9
기관 소재지											
서울	(91)	16.5	35.2	51.6	34.1	11.0	45.1	3.3	100.0	2.4	0.9
경기/인천	(76)	13.2	34.2	47.4	40.8	11.8	52.6	0.0	100.0	2.5	0.9
대전/세종/충북/충남	(35)	22.9	48.6	71.4	22.9	2.9	25.7	2.9	100.0	2.1	0.8
광주/전북/전남	(35)	28.6	22.9	51.4	42.9	5.7	48.6	0.0	100.0	2.3	1.0
대구/경북	(25)	32.0	32.0	64.0	28.0	4.0	32.0	4.0	100.0	2.0	0.9
부산/울산/경남	(28)	17.9	32.1	50.0	32.1	14.3	46.4	3.6	100.0	2.4	1.0
강원/제주	(13)	30.8	23.1	53.8	38.5	7.7	46.2	0.0	100.0	2.2	1.0
성별											
남자	(156)	27.6	25.0	52.6	35.9	9.6	45.5	1.9	100.0	2.3	1.0
여자	(147)	11.6	43.5	55.1	34.0	8.8	42.9	2.0	100.0	2.4	0.8
연령											
20대	(21)	4.8	47.6	52.4	42.9	0.0	42.9	4.8	100.0	2.4	0.6
30대	(48)	10.4	39.6	50.0	41.7	8.3	50.0	0.0	100.0	2.5	0.8
40대	(88)	22.7	31.8	54.5	31.8	12.5	44.3	1.1	100.0	2.3	1.0
50대	(106)	19.8	34.0	53.8	34.0	10.4	44.3	1.9	100.0	2.4	0.9
60대 이상	(40)	32.5	25.0	57.5	32.5	5.0	37.5	5.0	100.0	2.1	1.0

[표 6] 경조사비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6]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303)	29.0	69.3	1.0	0.7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10.0	88.0	0.0	2.0	100.0
중/고등학교	(100)	13.0	87.0	0.0	0.0	100.0
대학교	(153)	45.8	51.6	2.0	0.7	100.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19.3	79.3	0.7	0.7	100.0
사립	(153)	38.6	59.5	1.3	0.7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91)	42.9	56.0	1.1	0.0	100.0
경기/인천	(76)	27.6	72.4	0.0	0.0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5)	31.4	68.6	0.0	0.0	100.0
광주/전북/전남	(35)	17.1	80.0	2.9	0.0	100.0
대구/경북	(25)	16.0	76.0	4.0	4.0	100.0
부산/울산/경남	(28)	25.0	75.0	0.0	0.0	100.0
강원/제주	(13)	0.0	92.3	0.0	7.7	100.0
성별						
남자	(156)	42.9	55.8	1.3	0.0	100.0
여자	(147)	14.3	83.7	0.7	1.4	100.0
연령						
20대	(21)	19.0	81.0	0.0	0.0	100.0
30대	(48)	14.6	85.4	0.0	0.0	100.0
40대	(88)	23.9	73.9	1.1	1.1	100.0
50대	(106)	32.1	65.1	1.9	0.9	100.0
60대 이상	(40)	55.0	45.0	0.0	0.0	100.0

[표 6_2]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100만원) 기준에 대한 의견_1) 국공립 교원

[문6_2]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사립과 마찬가지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	적정하다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국공립 교원	(150)	8.0	62.7	26.0	3.3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32)	0.0	56.3	40.6	3.1	100.0
중/고등학교	(65)	7.7	61.5	26.2	4.6	100.0
대학교	(53)	13.2	67.9	17.0	1.9	100.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8.0	62.7	26.0	3.3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17)	11.8	76.5	11.8	0.0	100.0
경기/인천	(38)	7.9	47.4	36.8	7.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26)	15.4	61.5	19.2	3.8	100.0
광주/전북/전남	(26)	3.8	73.1	23.1	0.0	100.0
대구/경북	(17)	0.0	70.6	29.4	0.0	100.0
부산/울산/경남	(18)	11.1	66.7	22.2	0.0	100.0
강원/제주	(8)	0.0	50.0	37.5	12.5	100.0
성별						
남자	(65)	13.8	63.1	21.5	1.5	100.0
여자	(85)	3.5	62.4	29.4	4.7	100.0
연령						
20대	(10)	10.0	80.0	10.0	0.0	100.0
30대	(26)	11.5	76.9	7.7	3.8	100.0
40대	(45)	4.4	62.2	31.1	2.2	100.0
50대	(51)	5.9	56.9	33.3	3.9	100.0
60대 이상	(18)	16.7	50.0	27.8	5.6	100.0

[표 6_3]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100만원) 기준에 대한 의견_2) 사립 교원
 [문6_3] 교직원 및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사례금 상한액 기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	적정하다	사례금 상한액 기준이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춰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 사립 교원 ▣	(153)	13.7	53.6	28.8	3.9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18)	0.0	50.0	50.0	0.0	100.0
중/고등학교	(35)	2.9	71.4	20.0	5.7	100.0
대학교	(100)	20.0	48.0	28.0	4.0	100.0
국공립 여부						
사립	(153)	13.7	53.6	28.8	3.9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74)	17.6	51.4	25.7	5.4	100.0
경기/인천	(38)	10.5	63.2	26.3	0.0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9)	33.3	22.2	44.4	0.0	100.0
광주/전북/전남	(9)	0.0	66.7	33.3	0.0	100.0
대구/경북	(8)	12.5	50.0	25.0	12.5	100.0
부산/울산/경남	(10)	0.0	50.0	40.0	10.0	100.0
강원/제주	(5)	0.0	60.0	40.0	0.0	100.0
성별						
남자	(91)	18.7	51.6	27.5	2.2	100.0
여자	(62)	6.5	56.5	30.6	6.5	100.0
연령						
20대	(11)	9.1	72.7	9.1	9.1	100.0
30대	(22)	0.0	81.8	18.2	0.0	100.0
40대	(43)	9.3	51.2	34.9	4.7	100.0
50대	(55)	25.5	41.8	29.1	3.6	100.0
60대 이상	(22)	9.1	50.0	36.4	4.5	100.0

[표 7]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인식

[문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공직자들에게 일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이나 접대, 선물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1.7	8.6	10.2	54.1	32.7	86.8	3.0	100.0	3.2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2.0	16.0	18.0	52.0	28.0	80.0	2.0	100.0	3.1	0.7
중/고등학교	(100)	1.0	6.0	7.0	56.0	34.0	90.0	3.0	100.0	3.3	0.6
대학교	(153)	2.0	7.8	9.8	53.6	33.3	86.9	3.3	100.0	3.2	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2.0	4.7	6.7	51.3	38.0	89.3	4.0	100.0	3.3	0.7
사립	(153)	1.3	12.4	13.7	56.9	27.5	84.3	2.0	100.0	3.1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3.3	15.4	18.7	60.4	17.6	78.0	3.3	100.0	3.0	0.7
경기/인천	(76)	1.3	3.9	5.3	56.6	35.5	92.1	2.6	100.0	3.3	0.6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8.6	8.6	45.7	42.9	88.6	2.9	100.0	3.4	0.6
광주/전북/전남	(35)	0.0	2.9	2.9	60.0	37.1	97.1	0.0	100.0	3.3	0.5
대구/경북	(25)	0.0	4.0	4.0	36.0	56.0	92.0	4.0	100.0	3.5	0.6
부산/울산/경남	(28)	3.6	10.7	14.3	50.0	32.1	82.1	3.6	100.0	3.1	0.8
강원/제주	(13)	0.0	7.7	7.7	46.2	38.5	84.6	7.7	100.0	3.3	0.7
성별											
남자	(156)	1.9	8.3	10.3	53.2	32.7	85.9	3.8	100.0	3.2	0.7
여자	(147)	1.4	8.8	10.2	55.1	32.7	87.8	2.0	100.0	3.2	0.7
연령											
20대	(21)	0.0	19.0	19.0	66.7	14.3	81.0	0.0	100.0	3.0	0.6
30대	(48)	2.1	8.3	10.4	58.3	29.2	87.5	2.1	100.0	3.2	0.7
40대	(88)	0.0	8.0	8.0	50.0	38.6	88.6	3.4	100.0	3.3	0.6
50대	(106)	2.8	8.5	11.3	50.9	34.0	84.9	3.8	100.0	3.2	0.7
60대 이상	(40)	2.5	5.0	7.5	60.0	30.0	90.0	2.5	100.0	3.2	0.7

[표 8]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인맥에 의한 부탁/요청 감소

[문8]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인맥을 통해 이루어지던 부탁이나 요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2.6	13.5	16.2	54.1	26.1	80.2	3.6	100.0	3.1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14.0	14.0	46.0	36.0	82.0	4.0	100.0	3.2	0.7
중/고등학교	(100)	4.0	6.0	10.0	51.0	37.0	88.0	2.0	100.0	3.2	0.7
대학교	(153)	2.6	18.3	20.9	58.8	15.7	74.5	4.6	100.0	2.9	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2.7	10.7	13.3	50.7	33.3	84.0	2.7	100.0	3.2	0.7
사립	(153)	2.6	16.3	19.0	57.5	19.0	76.5	4.6	100.0	3.0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3.3	15.4	18.7	59.3	16.5	75.8	5.5	100.0	2.9	0.7
경기/인천	(76)	2.6	14.5	17.1	42.1	38.2	80.3	2.6	100.0	3.2	0.8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14.3	14.3	60.0	22.9	82.9	2.9	100.0	3.1	0.6
광주/전북/전남	(35)	5.7	11.4	17.1	48.6	31.4	80.0	2.9	100.0	3.1	0.8
대구/경북	(25)	0.0	4.0	4.0	68.0	28.0	96.0	0.0	100.0	3.2	0.5
부산/울산/경남	(28)	3.6	14.3	17.9	50.0	25.0	75.0	7.1	100.0	3.0	0.8
강원/제주	(13)	0.0	15.4	15.4	69.2	15.4	84.6	0.0	100.0	3.0	0.6
성별											
남자	(156)	1.3	17.3	18.6	58.3	19.9	78.2	3.2	100.0	3.0	0.7
여자	(147)	4.1	9.5	13.6	49.7	32.7	82.3	4.1	100.0	3.2	0.8
연령											
20대	(21)	0.0	4.8	4.8	81.0	14.3	95.2	0.0	100.0	3.1	0.4
30대	(48)	4.2	10.4	14.6	50.0	33.3	83.3	2.1	100.0	3.1	0.8
40대	(88)	2.3	11.4	13.6	51.1	30.7	81.8	4.5	100.0	3.2	0.7
50대	(106)	1.9	15.1	17.0	51.9	26.4	78.3	4.7	100.0	3.1	0.7
60대 이상	(40)	5.0	22.5	27.5	57.5	12.5	70.0	2.5	100.0	2.8	0.7

[표 9]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관행 감소

[문9]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 제공 관행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1.7	7.9	9.6	50.5	37.6	88.1	2.3	100.0	3.3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10.0	10.0	40.0	50.0	90.0	0.0	100.0	3.4	0.7
중/고등학교	(100)	1.0	6.0	7.0	47.0	45.0	92.0	1.0	100.0	3.4	0.6
대학교	(153)	2.6	8.5	11.1	56.2	28.8	85.0	3.9	100.0	3.2	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0.7	6.0	6.7	42.0	49.3	91.3	2.0	100.0	3.4	0.6
사립	(153)	2.6	9.8	12.4	58.8	26.1	85.0	2.6	100.0	3.1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4.4	12.1	16.5	56.0	23.1	79.1	4.4	100.0	3.0	0.7
경기/인천	(76)	1.3	6.6	7.9	50.0	42.1	92.1	0.0	100.0	3.3	0.7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2.9	2.9	48.6	45.7	94.3	2.9	100.0	3.4	0.6
광주/전북/전남	(35)	0.0	14.3	14.3	40.0	45.7	85.7	0.0	100.0	3.3	0.7
대구/경북	(25)	0.0	4.0	4.0	48.0	48.0	96.0	0.0	100.0	3.4	0.6
부산/울산/경남	(28)	0.0	3.6	3.6	50.0	39.3	89.3	7.1	100.0	3.4	0.6
강원/제주	(13)	0.0	0.0	0.0	53.8	46.2	100.0	0.0	100.0	3.5	0.5
성별											
남자	(156)	1.3	10.9	12.2	51.9	33.3	85.3	2.6	100.0	3.2	0.7
여자	(147)	2.0	4.8	6.8	49.0	42.2	91.2	2.0	100.0	3.3	0.7
연령											
20대	(21)	0.0	14.3	14.3	66.7	14.3	81.0	4.8	100.0	3.0	0.6
30대	(48)	2.1	8.3	10.4	39.6	50.0	89.6	0.0	100.0	3.4	0.7
40대	(88)	0.0	6.8	6.8	53.4	38.6	92.0	1.1	100.0	3.3	0.6
50대	(106)	1.9	5.7	7.5	47.2	41.5	88.7	3.8	100.0	3.3	0.7
60대 이상	(40)	5.0	12.5	17.5	57.5	22.5	80.0	2.5	100.0	3.0	0.8

[표 9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금액 감소
 [문9_1]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2.3	6.9	9.2	55.4	33.0	88.4	2.3	100.0	3.2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6.0	6.0	56.0	38.0	94.0	0.0	100.0	3.3	0.6
중/고등학교	(100)	1.0	7.0	8.0	52.0	39.0	91.0	1.0	100.0	3.3	0.6
대학교	(153)	3.9	7.2	11.1	57.5	27.5	85.0	3.9	100.0	3.1	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0.7	5.3	6.0	50.7	40.0	90.7	3.3	100.0	3.3	0.6
사립	(153)	3.9	8.5	12.4	60.1	26.1	86.3	1.3	100.0	3.1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5.5	8.8	14.3	58.2	25.3	83.5	2.2	100.0	3.1	0.8
경기/인천	(76)	1.3	7.9	9.2	53.9	36.8	90.8	0.0	100.0	3.3	0.7
대전/세종/충북/충남	(35)	2.9	5.7	8.6	51.4	34.3	85.7	5.7	100.0	3.2	0.7
광주/전북/전남	(35)	0.0	2.9	2.9	54.3	42.9	97.1	0.0	100.0	3.4	0.6
대구/경북	(25)	0.0	4.0	4.0	52.0	44.0	96.0	0.0	100.0	3.4	0.6
부산/울산/경남	(28)	0.0	10.7	10.7	53.6	25.0	78.6	10.7	100.0	3.2	0.6
강원/제주	(13)	0.0	0.0	0.0	69.2	30.8	100.0	0.0	100.0	3.3	0.5
성별											
남자	(156)	2.6	7.7	10.3	53.8	33.3	87.2	2.6	100.0	3.2	0.7
여자	(147)	2.0	6.1	8.2	57.1	32.7	89.8	2.0	100.0	3.2	0.7
연령											
20대	(21)	0.0	14.3	14.3	66.7	19.0	85.7	0.0	100.0	3.0	0.6
30대	(48)	2.1	6.3	8.3	56.3	33.3	89.6	2.1	100.0	3.2	0.7
40대	(88)	1.1	3.4	4.5	56.8	37.5	94.3	1.1	100.0	3.3	0.6
50대	(106)	1.9	4.7	6.6	53.8	36.8	90.6	2.8	100.0	3.3	0.7
60대 이상	(40)	7.5	17.5	25.0	50.0	20.0	70.0	5.0	100.0	2.9	0.8

[표 10]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의 공직자/언론인/교원 직무수행 공정성
 [문10]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의 직무수행이 공정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4.0	19.1	23.1	56.1	18.5	74.6	2.3	100.0	2.9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18.0	18.0	54.0	26.0	80.0	2.0	100.0	3.1	0.7
중/고등학교	(100)	3.0	10.0	13.0	57.0	30.0	87.0	0.0	100.0	3.1	0.7
대학교	(153)	5.9	25.5	31.4	56.2	8.5	64.7	3.9	100.0	2.7	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2.7	12.7	15.3	58.7	22.7	81.3	3.3	100.0	3.0	0.7
사립	(153)	5.2	25.5	30.7	53.6	14.4	68.0	1.3	100.0	2.8	0.8
기관 소재지											
서울	(91)	7.7	29.7	37.4	48.4	12.1	60.4	2.2	100.0	2.7	0.8
경기/인천	(76)	3.9	13.2	17.1	63.2	19.7	82.9	0.0	100.0	3.0	0.7
대전/세종/충북/충남	(35)	2.9	14.3	17.1	60.0	20.0	80.0	2.9	100.0	3.0	0.7
광주/전북/전남	(35)	2.9	11.4	14.3	54.3	28.6	82.9	2.9	100.0	3.1	0.7
대구/경북	(25)	0.0	20.0	20.0	52.0	24.0	76.0	4.0	100.0	3.0	0.7
부산/울산/경남	(28)	0.0	10.7	10.7	64.3	17.9	82.1	7.1	100.0	3.1	0.6
강원/제주	(13)	0.0	30.8	30.8	53.8	15.4	69.2	0.0	100.0	2.8	0.7
성별											
남자	(156)	4.5	23.1	27.6	55.1	15.4	70.5	1.9	100.0	2.8	0.7
여자	(147)	3.4	15.0	18.4	57.1	21.8	78.9	2.7	100.0	3.0	0.7
연령											
20대	(21)	0.0	4.8	4.8	71.4	23.8	95.2	0.0	100.0	3.2	0.5
30대	(48)	2.1	16.7	18.8	54.2	27.1	81.3	0.0	100.0	3.1	0.7
40대	(88)	3.4	15.9	19.3	55.7	22.7	78.4	2.3	100.0	3.0	0.7
50대	(106)	4.7	19.8	24.5	58.5	14.2	72.6	2.8	100.0	2.8	0.7
60대 이상	(40)	7.5	35.0	42.5	45.0	7.5	52.5	5.0	100.0	2.6	0.8

[표 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인식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
 [문1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귀하는 각자내기 하는 것이 편해졌다고 느끼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5.6	20.1	25.7	46.9	26.4	73.3	1.0	100.0	3.0	0.8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12.0	12.0	50.0	36.0	86.0	2.0	100.0	3.2	0.7
중/고등학교	(100)	2.0	11.0	13.0	48.0	39.0	87.0	0.0	100.0	3.2	0.7
대학교	(153)	9.8	28.8	38.6	45.1	15.0	60.1	1.3	100.0	2.7	0.9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3.3	16.7	20.0	42.7	36.0	78.7	1.3	100.0	3.1	0.8
사립	(153)	7.8	23.5	31.4	51.0	17.0	68.0	0.7	100.0	2.8	0.8
기관 소재지											
서울	(91)	11.0	24.2	35.2	50.5	13.2	63.7	1.1	100.0	2.7	0.8
경기/인천	(76)	2.6	17.1	19.7	47.4	32.9	80.3	0.0	100.0	3.1	0.8
대전/세종/충북/충남	(35)	5.7	25.7	31.4	48.6	20.0	68.6	0.0	100.0	2.8	0.8
광주/전북/전남	(35)	2.9	11.4	14.3	40.0	45.7	85.7	0.0	100.0	3.3	0.8
대구/경북	(25)	4.0	32.0	36.0	40.0	20.0	60.0	4.0	100.0	2.8	0.8
부산/울산/경남	(28)	0.0	10.7	10.7	50.0	35.7	85.7	3.6	100.0	3.3	0.7
강원/제주	(13)	7.7	15.4	23.1	38.5	38.5	76.9	0.0	100.0	3.1	1.0
성별											
남자	(156)	7.7	26.3	34.0	46.2	18.6	64.7	1.3	100.0	2.8	0.8
여자	(147)	3.4	13.6	17.0	47.6	34.7	82.3	0.7	100.0	3.1	0.8
연령											
20대	(21)	0.0	4.8	4.8	81.0	14.3	95.2	0.0	100.0	3.1	0.4
30대	(48)	2.1	16.7	18.8	47.9	33.3	81.3	0.0	100.0	3.1	0.8
40대	(88)	6.8	10.2	17.0	45.5	35.2	80.7	2.3	100.0	3.1	0.9
50대	(106)	6.6	28.3	34.9	42.5	21.7	64.2	0.9	100.0	2.8	0.9
60대 이상	(40)	7.5	32.5	40.0	42.5	17.5	60.0	0.0	100.0	2.7	0.9

[표 11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더치페이 인식_2)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자와의 각자내기가 일상화되었다
 [문11_1]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직무관련 공직자등과 각자내기가 일상화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8.9	25.7	34.7	45.9	15.2	61.1	4.3	100.0	2.7	0.8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14.0	14.0	52.0	28.0	80.0	6.0	100.0	3.1	0.7
중/고등학교	(100)	3.0	13.0	16.0	57.0	25.0	82.0	2.0	100.0	3.1	0.7
대학교	(153)	15.7	37.9	53.6	36.6	4.6	41.2	5.2	100.0	2.3	0.8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5.3	22.0	27.3	45.3	22.0	67.3	5.3	100.0	2.9	0.8
사립	(153)	12.4	29.4	41.8	46.4	8.5	54.9	3.3	100.0	2.5	0.8
기관 소재지											
서울	(91)	15.4	30.8	46.2	39.6	8.8	48.4	5.5	100.0	2.4	0.9
경기/인천	(76)	3.9	22.4	26.3	51.3	19.7	71.1	2.6	100.0	2.9	0.8
대전/세종/충북/충남	(35)	8.6	31.4	40.0	40.0	14.3	54.3	5.7	100.0	2.6	0.9
광주/전북/전남	(35)	2.9	20.0	22.9	51.4	25.7	77.1	0.0	100.0	3.0	0.8
대구/경북	(25)	8.0	28.0	36.0	44.0	12.0	56.0	8.0	100.0	2.7	0.8
부산/울산/경남	(28)	7.1	21.4	28.6	46.4	17.9	64.3	7.1	100.0	2.8	0.8
강원/제주	(13)	15.4	15.4	30.8	61.5	7.7	69.2	0.0	100.0	2.6	0.9
성별											
남자	(156)	10.9	32.1	42.9	45.5	7.1	52.6	4.5	100.0	2.5	0.8
여자	(147)	6.8	19.0	25.9	46.3	23.8	70.1	4.1	100.0	2.9	0.9
연령											
20대	(21)	0.0	4.8	4.8	71.4	23.8	95.2	0.0	100.0	3.2	0.5
30대	(48)	2.1	16.7	18.8	54.2	22.9	77.1	4.2	100.0	3.0	0.7
40대	(88)	9.1	19.3	28.4	46.6	20.5	67.0	4.5	100.0	2.8	0.9
50대	(106)	11.3	34.0	45.3	41.5	9.4	50.9	3.8	100.0	2.5	0.8
60대 이상	(40)	15.0	40.0	55.0	32.5	5.0	37.5	7.5	100.0	2.3	0.8

[표 1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1)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 감소하였다
 [문12]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2.6	12.5	15.2	58.1	24.4	82.5	2.3	100.0	3.1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2.0	6.0	8.0	54.0	38.0	92.0	0.0	100.0	3.3	0.7
중/고등학교	(100)	1.0	6.0	7.0	55.0	37.0	92.0	1.0	100.0	3.3	0.6
대학교	(153)	3.9	19.0	22.9	61.4	11.8	73.2	3.9	100.0	2.8	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0.7	8.7	9.3	55.3	32.7	88.0	2.7	100.0	3.2	0.6
사립	(153)	4.6	16.3	20.9	60.8	16.3	77.1	2.0	100.0	2.9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6.6	16.5	23.1	60.4	13.2	73.6	3.3	100.0	2.8	0.7
경기/인천	(76)	0.0	7.9	7.9	56.6	34.2	90.8	1.3	100.0	3.3	0.6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20.0	20.0	62.9	17.1	80.0	0.0	100.0	3.0	0.6
광주/전북/전남	(35)	2.9	14.3	17.1	45.7	37.1	82.9	0.0	100.0	3.2	0.8
대구/경북	(25)	0.0	4.0	4.0	72.0	20.0	92.0	4.0	100.0	3.2	0.5
부산/울산/경남	(28)	0.0	10.7	10.7	50.0	32.1	82.1	7.1	100.0	3.2	0.7
강원/제주	(13)	7.7	7.7	15.4	61.5	23.1	84.6	0.0	100.0	3.0	0.8
성별											
남자	(156)	2.6	13.5	16.0	61.5	20.5	82.1	1.9	100.0	3.0	0.7
여자	(147)	2.7	11.6	14.3	54.4	28.6	83.0	2.7	100.0	3.1	0.7
연령											
20대	(21)	0.0	4.8	4.8	76.2	19.0	95.2	0.0	100.0	3.1	0.5
30대	(48)	0.0	8.3	8.3	58.3	31.3	89.6	2.1	100.0	3.2	0.6
40대	(88)	3.4	11.4	14.8	51.1	31.8	83.0	2.3	100.0	3.1	0.8
50대	(106)	1.9	14.2	16.0	61.3	18.9	80.2	3.8	100.0	3.0	0.7
60대 이상	(40)	7.5	20.0	27.5	55.0	17.5	72.5	0.0	100.0	2.8	0.8

[표 12_1]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2) 공직자에 대한 접대/선물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문12_1]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접대 및 선물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2.3	9.6	11.9	58.7	27.4	86.1	2.0	100.0	3.1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6.0	6.0	48.0	46.0	94.0	0.0	100.0	3.4	0.6
중/고등학교	(100)	2.0	4.0	6.0	53.0	40.0	93.0	1.0	100.0	3.3	0.7
대학교	(153)	3.3	14.4	17.6	66.0	13.1	79.1	3.3	100.0	2.9	0.6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0.0	5.3	5.3	54.7	37.3	92.0	2.7	100.0	3.3	0.6
사립	(153)	4.6	13.7	18.3	62.7	17.6	80.4	1.3	100.0	2.9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5.5	13.2	18.7	63.7	15.4	79.1	2.2	100.0	2.9	0.7
경기/인천	(76)	1.3	5.3	6.6	59.2	32.9	92.1	1.3	100.0	3.3	0.6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11.4	11.4	65.7	22.9	88.6	0.0	100.0	3.1	0.6
광주/전북/전남	(35)	2.9	11.4	14.3	42.9	42.9	85.7	0.0	100.0	3.3	0.8
대구/경북	(25)	0.0	8.0	8.0	56.0	32.0	88.0	4.0	100.0	3.3	0.6
부산/울산/경남	(28)	0.0	7.1	7.1	50.0	35.7	85.7	7.1	100.0	3.3	0.6
강원/제주	(13)	0.0	7.7	7.7	69.2	23.1	92.3	0.0	100.0	3.2	0.6
성별											
남자	(156)	1.3	10.9	12.2	62.8	23.1	85.9	1.9	100.0	3.1	0.6
여자	(147)	3.4	8.2	11.6	54.4	32.0	86.4	2.0	100.0	3.2	0.7
연령											
20대	(21)	0.0	4.8	4.8	71.4	23.8	95.2	0.0	100.0	3.2	0.5
30대	(48)	2.1	2.1	4.2	56.3	37.5	93.8	2.1	100.0	3.3	0.6
40대	(88)	2.3	10.2	12.5	55.7	29.5	85.2	2.3	100.0	3.2	0.7
50대	(106)	1.9	9.4	11.3	60.4	25.5	85.8	2.8	100.0	3.1	0.7
60대 이상	(40)	5.0	20.0	25.0	57.5	17.5	75.0	0.0	100.0	2.9	0.8

[표 12_2]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비교_3)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

[문12_2]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법 시행 5년이 지난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 행위가 감소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3.0	8.3	11.2	59.4	27.1	86.5	2.3	100.0	3.1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8.0	8.0	52.0	40.0	92.0	0.0	100.0	3.3	0.6
중/고등학교	(100)	1.0	5.0	6.0	51.0	42.0	93.0	1.0	100.0	3.4	0.6
대학교	(153)	5.2	10.5	15.7	67.3	13.1	80.4	3.9	100.0	2.9	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0.0	4.7	4.7	54.7	38.0	92.7	2.7	100.0	3.3	0.6
사립	(153)	5.9	11.8	17.6	64.1	16.3	80.4	2.0	100.0	2.9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7.7	12.1	19.8	65.9	11.0	76.9	3.3	100.0	2.8	0.7
경기/인천	(76)	1.3	5.3	6.6	55.3	36.8	92.1	1.3	100.0	3.3	0.6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5.7	5.7	62.9	31.4	94.3	0.0	100.0	3.3	0.6
광주/전북/전남	(35)	2.9	5.7	8.6	48.6	40.0	88.6	2.9	100.0	3.3	0.7
대구/경북	(25)	0.0	8.0	8.0	60.0	32.0	92.0	0.0	100.0	3.2	0.6
부산/울산/경남	(28)	0.0	10.7	10.7	53.6	28.6	82.1	7.1	100.0	3.2	0.6
강원/제주	(13)	0.0	7.7	7.7	69.2	23.1	92.3	0.0	100.0	3.2	0.6
성별											
남자	(156)	2.6	7.7	10.3	67.3	19.9	87.2	2.6	100.0	3.1	0.6
여자	(147)	3.4	8.8	12.2	51.0	34.7	85.7	2.0	100.0	3.2	0.7
연령											
20대	(21)	0.0	4.8	4.8	71.4	23.8	95.2	0.0	100.0	3.2	0.5
30대	(48)	0.0	6.3	6.3	52.1	39.6	91.7	2.1	100.0	3.3	0.6
40대	(88)	2.3	10.2	12.5	56.8	28.4	85.2	2.3	100.0	3.1	0.7
50대	(106)	2.8	8.5	11.3	62.3	23.6	85.8	2.8	100.0	3.1	0.7
60대 이상	(40)	10.0	7.5	17.5	60.0	20.0	80.0	2.5	100.0	2.9	0.8

[표 13]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문13]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②	③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④	잘 모르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1.0	4.3	5.3	59.7	34.0	93.7	1.0	100.0	3.3	0.6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2.0	2.0	62.0	36.0	98.0	0.0	100.0	3.3	0.5
중/고등학교	(100)	0.0	1.0	1.0	55.0	44.0	99.0	0.0	100.0	3.4	0.5
대학교	(153)	2.0	7.2	9.2	62.1	26.8	88.9	2.0	100.0	3.2	0.6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0.0	4.7	4.7	50.0	44.7	94.7	0.7	100.0	3.4	0.6
사립	(153)	2.0	3.9	5.9	69.3	23.5	92.8	1.3	100.0	3.2	0.6
기관 소재지											
서울	(91)	2.2	6.6	8.8	68.1	20.9	89.0	2.2	100.0	3.1	0.6
경기/인천	(76)	0.0	2.6	2.6	52.6	43.4	96.1	1.3	100.0	3.4	0.5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11.4	11.4	48.6	40.0	88.6	0.0	100.0	3.3	0.7
광주/전북/전남	(35)	0.0	0.0	0.0	57.1	42.9	100.0	0.0	100.0	3.4	0.5
대구/경북	(25)	0.0	0.0	0.0	68.0	32.0	100.0	0.0	100.0	3.3	0.5
부산/울산/경남	(28)	3.6	3.6	7.1	60.7	32.1	92.9	0.0	100.0	3.2	0.7
강원/제주	(13)	0.0	0.0	0.0	61.5	38.5	100.0	0.0	100.0	3.4	0.5
성별											
남자	(156)	1.9	5.8	7.7	60.9	30.1	91.0	1.3	100.0	3.2	0.6
여자	(147)	0.0	2.7	2.7	58.5	38.1	96.6	0.7	100.0	3.4	0.5
연령											
20대	(21)	0.0	0.0	0.0	81.0	19.0	100.0	0.0	100.0	3.2	0.4
30대	(48)	0.0	4.2	4.2	52.1	43.8	95.8	0.0	100.0	3.4	0.6
40대	(88)	1.1	4.5	5.7	58.0	36.4	94.3	0.0	100.0	3.3	0.6
50대	(106)	0.0	4.7	4.7	60.4	33.0	93.4	1.9	100.0	3.3	0.6
60대 이상	(40)	5.0	5.0	10.0	60.0	27.5	87.5	2.5	100.0	3.1	0.7

[표 14]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되는 정도

[문14]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②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④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1.0	8.9	9.9	59.1	29.4	88.4	1.7	100.0	3.2	0.6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6.0	6.0	52.0	42.0	94.0	0.0	100.0	3.4	0.6
중/고등학교	(100)	0.0	6.0	6.0	58.0	35.0	93.0	1.0	100.0	3.3	0.6
대학교	(153)	2.0	11.8	13.7	62.1	21.6	83.7	2.6	100.0	3.1	0.6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0.0	6.7	6.7	51.3	38.7	90.0	3.3	100.0	3.3	0.6
사립	(153)	2.0	11.1	13.1	66.7	20.3	86.9	0.0	100.0	3.1	0.6
기관 소재지											
서울	(91)	2.2	12.1	14.3	65.9	17.6	83.5	2.2	100.0	3.0	0.6
경기/인천	(76)	1.3	7.9	9.2	55.3	35.5	90.8	0.0	100.0	3.3	0.7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8.6	8.6	60.0	31.4	91.4	0.0	100.0	3.2	0.6
광주/전북/전남	(35)	0.0	2.9	2.9	54.3	40.0	94.3	2.9	100.0	3.4	0.6
대구/경북	(25)	0.0	0.0	0.0	72.0	28.0	100.0	0.0	100.0	3.3	0.5
부산/울산/경남	(28)	0.0	14.3	14.3	42.9	35.7	78.6	7.1	100.0	3.2	0.7
강원/제주	(13)	0.0	15.4	15.4	53.8	30.8	84.6	0.0	100.0	3.2	0.7
성별											
남자	(156)	1.3	9.0	10.3	61.5	26.3	87.8	1.9	100.0	3.2	0.6
여자	(147)	0.7	8.8	9.5	56.5	32.7	89.1	1.4	100.0	3.2	0.6
연령											
20대	(21)	0.0	0.0	0.0	90.5	9.5	100.0	0.0	100.0	3.1	0.3
30대	(48)	0.0	8.3	8.3	50.0	41.7	91.7	0.0	100.0	3.3	0.6
40대	(88)	1.1	8.0	9.1	58.0	30.7	88.6	2.3	100.0	3.2	0.6
50대	(106)	0.0	9.4	9.4	57.5	31.1	88.7	1.9	100.0	3.2	0.6
60대 이상	(40)	5.0	15.0	20.0	60.0	17.5	77.5	2.5	100.0	2.9	0.7

[표 15]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는 정도

[문15]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그렇다	②그런 편이다	①+②	③그렇지 않은 편이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1.0	5.9	6.9	39.3	52.8	92.1	1.0	100.0	3.5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4.0	4.0	32.0	64.0	96.0	0.0	100.0	3.6	0.6
중/고등학교	(100)	0.0	6.0	6.0	24.0	69.0	93.0	1.0	100.0	3.6	0.6
대학교	(153)	2.0	6.5	8.5	51.6	38.6	90.2	1.3	100.0	3.3	0.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0.0	5.3	5.3	30.0	63.3	93.3	1.3	100.0	3.6	0.6
사립	(153)	2.0	6.5	8.5	48.4	42.5	90.8	0.7	100.0	3.3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3.3	7.7	11.0	38.5	49.5	87.9	1.1	100.0	3.4	0.8
경기/인천	(76)	0.0	5.3	5.3	34.2	60.5	94.7	0.0	100.0	3.6	0.6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2.9	2.9	54.3	42.9	97.1	0.0	100.0	3.4	0.6
광주/전북/전남	(35)	0.0	2.9	2.9	42.9	51.4	94.3	2.9	100.0	3.5	0.6
대구/경북	(25)	0.0	4.0	4.0	40.0	52.0	92.0	4.0	100.0	3.5	0.6
부산/울산/경남	(28)	0.0	10.7	10.7	35.7	53.6	89.3	0.0	100.0	3.4	0.7
강원/제주	(13)	0.0	7.7	7.7	30.8	61.5	92.3	0.0	100.0	3.5	0.7
성별											
남자	(156)	1.9	6.4	8.3	44.9	46.2	91.0	0.6	100.0	3.4	0.7
여자	(147)	0.0	5.4	5.4	33.3	59.9	93.2	1.4	100.0	3.6	0.6
연령											
20대	(21)	0.0	0.0	0.0	33.3	66.7	100.0	0.0	100.0	3.7	0.5
30대	(48)	0.0	6.3	6.3	25.0	68.8	93.8	0.0	100.0	3.6	0.6
40대	(88)	1.1	8.0	9.1	35.2	54.5	89.8	1.1	100.0	3.4	0.7
50대	(106)	0.9	6.6	7.5	45.3	45.3	90.6	1.9	100.0	3.4	0.7
60대 이상	(40)	2.5	2.5	5.0	52.5	42.5	95.0	0.0	100.0	3.4	0.7

[표 16]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정도
 [문16]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②별로 지지하지 않는다	①+②	③대체로 지지하는 편이다	④매우 지지한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2.6	3.6	6.3	46.5	46.5	93.1	0.7	100.0	3.4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4.0	4.0	42.0	54.0	96.0	0.0	100.0	3.5	0.6
중/고등학교	(100)	0.0	2.0	2.0	47.0	50.0	97.0	1.0	100.0	3.5	0.5
대학교	(153)	5.2	4.6	9.8	47.7	41.8	89.5	0.7	100.0	3.3	0.8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2.0	3.3	5.3	36.7	57.3	94.0	0.7	100.0	3.5	0.7
사립	(153)	3.3	3.9	7.2	56.2	35.9	92.2	0.7	100.0	3.3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6.6	3.3	9.9	56.0	33.0	89.0	1.1	100.0	3.2	0.8
경기/인천	(76)	0.0	2.6	2.6	44.7	52.6	97.4	0.0	100.0	3.5	0.6
대전/세종/충북/충남	(35)	2.9	2.9	5.7	48.6	45.7	94.3	0.0	100.0	3.4	0.7
광주/전북/전남	(35)	0.0	2.9	2.9	42.9	51.4	94.3	2.9	100.0	3.5	0.6
대구/경북	(25)	0.0	12.0	12.0	28.0	60.0	88.0	0.0	100.0	3.5	0.7
부산/울산/경남	(28)	3.6	3.6	7.1	42.9	50.0	92.9	0.0	100.0	3.4	0.7
강원/제주	(13)	0.0	0.0	0.0	38.5	61.5	100.0	0.0	100.0	3.6	0.5
성별											
남자	(156)	5.1	4.5	9.6	48.7	41.7	90.4	0.0	100.0	3.3	0.8
여자	(147)	0.0	2.7	2.7	44.2	51.7	95.9	1.4	100.0	3.5	0.6
연령											
20대	(21)	0.0	0.0	0.0	66.7	33.3	100.0	0.0	100.0	3.3	0.5
30대	(48)	0.0	4.2	4.2	47.9	47.9	95.8	0.0	100.0	3.4	0.6
40대	(88)	3.4	3.4	6.8	42.0	50.0	92.0	1.1	100.0	3.4	0.7
50대	(106)	2.8	4.7	7.5	47.2	45.3	92.5	0.0	100.0	3.3	0.7
60대 이상	(40)	5.0	2.5	7.5	42.5	47.5	90.0	2.5	100.0	3.4	0.8

[표 17]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받은 경험
 [문17]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1회	2회	3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 전체 ▣	(303)	10.6	18.8	63.4	4.6	2.6	100.0	2.6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12.0	8.0	76.0	2.0	2.0	100.0	2.7
중/고등학교	(100)	13.0	17.0	67.0	2.0	1.0	100.0	2.6
대학교	(153)	8.5	23.5	56.9	7.2	3.9	100.0	2.7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8.0	16.7	66.7	5.3	3.3	100.0	2.7
사립	(153)	13.1	20.9	60.1	3.9	2.0	100.0	2.6
기관 소재지								
서울	(91)	9.9	22.0	62.6	3.3	2.2	100.0	2.6
경기/인천	(76)	10.5	15.8	68.4	3.9	1.3	100.0	2.7
대전/세종/충북/충남	(35)	8.6	20.0	68.6	0.0	2.9	100.0	2.6
광주/전북/전남	(35)	11.4	22.9	48.6	14.3	2.9	100.0	2.7
대구/경북	(25)	4.0	12.0	72.0	8.0	4.0	100.0	2.9
부산/울산/경남	(28)	10.7	14.3	64.3	3.6	7.1	100.0	2.7
강원/제주	(13)	30.8	23.1	46.2	0.0	0.0	100.0	2.2
성별								
남자	(156)	8.3	21.2	60.9	6.4	3.2	100.0	2.7
여자	(147)	12.9	16.3	66.0	2.7	2.0	100.0	2.6
연령								
20대	(21)	33.3	23.8	42.9	0.0	0.0	100.0	2.1
30대	(48)	8.3	20.8	62.5	4.2	4.2	100.0	2.7
40대	(88)	10.2	18.2	70.5	0.0	1.1	100.0	2.6
50대	(106)	7.5	17.0	70.8	3.8	0.9	100.0	2.7
60대 이상	(40)	10.0	20.0	40.0	20.0	10.0	100.0	2.8

[표 17_1] 청탁금지법 교육이 충분한 정도
 [문17_1]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충분하지 못하다	②별로 충분하지 못하다	①+②	③대체로 충분한 편이다	④매우 충분하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1.7	10.9	12.5	52.8	32.3	85.1	2.3	100.0	3.2	0.7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2.0	10.0	12.0	38.0	50.0	88.0	0.0	100.0	3.4	0.7
중/고등학교	(100)	1.0	3.0	4.0	46.0	49.0	95.0	1.0	100.0	3.4	0.6
대학교	(153)	2.0	16.3	18.3	62.1	15.7	77.8	3.9	100.0	3.0	0.6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1.3	8.0	9.3	48.0	40.0	88.0	2.7	100.0	3.3	0.7
사립	(153)	2.0	13.7	15.7	57.5	24.8	82.4	2.0	100.0	3.1	0.7
기관 소재지											
서울	(91)	2.2	14.3	16.5	49.5	30.8	80.2	3.3	100.0	3.1	0.7
경기/인천	(76)	0.0	7.9	7.9	52.6	38.2	90.8	1.3	100.0	3.3	0.6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14.3	14.3	60.0	25.7	85.7	0.0	100.0	3.1	0.6
광주/전북/전남	(35)	8.6	8.6	17.1	37.1	40.0	77.1	5.7	100.0	3.2	0.9
대구/경북	(25)	0.0	4.0	4.0	60.0	36.0	96.0	0.0	100.0	3.3	0.6
부산/울산/경남	(28)	0.0	10.7	10.7	67.9	17.9	85.7	3.6	100.0	3.1	0.5
강원/제주	(13)	0.0	15.4	15.4	53.8	30.8	84.6	0.0	100.0	3.2	0.7
성별											
남자	(156)	2.6	14.1	16.7	53.2	27.6	80.8	2.6	100.0	3.1	0.7
여자	(147)	0.7	7.5	8.2	52.4	37.4	89.8	2.0	100.0	3.3	0.6
연령											
20대	(21)	0.0	4.8	4.8	66.7	28.6	95.2	0.0	100.0	3.2	0.5
30대	(48)	2.1	6.3	8.3	37.5	52.1	89.6	2.1	100.0	3.4	0.7
40대	(88)	1.1	6.8	8.0	60.2	30.7	90.9	1.1	100.0	3.2	0.6
50대	(106)	1.9	12.3	14.2	53.8	30.2	84.0	1.9	100.0	3.1	0.7
60대 이상	(40)	2.5	25.0	27.5	45.0	20.0	65.0	7.5	100.0	2.9	0.8

[표 17_2] 선호하는 청탁금지법 교육 방식

[문17_2]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방식의 교육을 선호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사이버강의	리플릿, 동영상 등 홍보자료	워크숍, 설명회 등 집합교육	기타	잘 모르겠다	계	평균
■ 전체 ■	(303)	56.8	26.7	13.5	0.7	2.3	100.0	1.6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60.0	20.0	18.0	2.0	0.0	100.0	1.6
중/고등학교	(100)	58.0	21.0	21.0	0.0	0.0	100.0	1.6
대학교	(153)	54.9	32.7	7.2	0.7	4.6	100.0	1.5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52.0	28.0	16.7	0.7	2.7	100.0	1.7
사립	(153)	61.4	25.5	10.5	0.7	2.0	100.0	1.5
기관 소재지								
서울	(91)	54.9	24.2	13.2	1.1	6.6	100.0	1.6
경기/인천	(76)	63.2	26.3	10.5	0.0	0.0	100.0	1.5
대전/세종/충북/충남	(35)	54.3	25.7	17.1	2.9	0.0	100.0	1.7
광주/전북/전남	(35)	51.4	28.6	20.0	0.0	0.0	100.0	1.7
대구/경북	(25)	64.0	28.0	8.0	0.0	0.0	100.0	1.4
부산/울산/경남	(28)	53.6	25.0	17.9	0.0	3.6	100.0	1.6
강원/제주	(13)	46.2	46.2	7.7	0.0	0.0	100.0	1.6
성별								
남자	(156)	57.1	26.9	10.9	0.6	4.5	100.0	1.5
여자	(147)	56.5	26.5	16.3	0.7	0.0	100.0	1.6
연령								
20대	(21)	47.6	33.3	19.0	0.0	0.0	100.0	1.7
30대	(48)	58.3	20.8	20.8	0.0	0.0	100.0	1.6
40대	(88)	59.1	26.1	10.2	1.1	3.4	100.0	1.5
50대	(106)	58.5	24.5	15.1	0.0	1.9	100.0	1.6
60대 이상	(40)	50.0	37.5	5.0	2.5	5.0	100.0	1.6

[표 18] 민간기업에 대한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규정의 신설 필요성

[문18]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민간기업에 채용을 청탁하는 경우와 같이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에 민간부문에 대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 수 (명)	①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별로 필요하지 않다	①+②	③대체로 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편차
■ 전체 ■	(303)	4.0	11.2	15.2	41.6	40.3	81.8	3.0	100.0	3.2	0.8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0.0	4.0	4.0	52.0	44.0	96.0	0.0	100.0	3.4	0.6
중/고등학교	(100)	0.0	5.0	5.0	45.0	47.0	92.0	3.0	100.0	3.4	0.6
대학교	(153)	7.8	17.6	25.5	35.9	34.6	70.6	3.9	100.0	3.0	0.9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2.0	10.7	12.7	38.0	44.0	82.0	5.3	100.0	3.3	0.8
사립	(153)	5.9	11.8	17.6	45.1	36.6	81.7	0.7	100.0	3.1	0.8
기관 소재지											
서울	(91)	7.7	11.0	18.7	47.3	31.9	79.1	2.2	100.0	3.1	0.9
경기/인천	(76)	1.3	10.5	11.8	40.8	47.4	88.2	0.0	100.0	3.3	0.7
대전/세종/충북/충남	(35)	0.0	20.0	20.0	34.3	45.7	80.0	0.0	100.0	3.3	0.8
광주/전북/전남	(35)	0.0	5.7	5.7	45.7	45.7	91.4	2.9	100.0	3.4	0.6
대구/경북	(25)	8.0	8.0	16.0	40.0	28.0	68.0	16.0	100.0	3.0	0.9
부산/울산/경남	(28)	7.1	10.7	17.9	28.6	46.4	75.0	7.1	100.0	3.2	1.0
강원/제주	(13)	0.0	15.4	15.4	46.2	38.5	84.6	0.0	100.0	3.2	0.7
성별											
남자	(156)	7.7	15.4	23.1	39.1	35.3	74.4	2.6	100.0	3.0	0.9
여자	(147)	0.0	6.8	6.8	44.2	45.6	89.8	3.4	100.0	3.4	0.6
연령											
20대	(21)	0.0	4.8	4.8	61.9	33.3	95.2	0.0	100.0	3.3	0.6
30대	(48)	0.0	6.3	6.3	56.3	35.4	91.7	2.1	100.0	3.3	0.6
40대	(88)	5.7	8.0	13.6	39.8	40.9	80.7	5.7	100.0	3.2	0.8
50대	(106)	4.7	16.0	20.8	34.0	42.5	76.4	2.8	100.0	3.2	0.9
60대 이상	(40)	5.0	15.0	20.0	37.5	42.5	80.0	0.0	100.0	3.2	0.9

[표 19]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순위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303)	28.7	26.1	22.8	19.8	2.6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26.0	14.0	36.0	24.0	0.0	100.0
중/고등학교	(100)	33.0	12.0	33.0	22.0	0.0	100.0
대학교	(153)	26.8	39.2	11.8	17.0	5.2	100.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26.0	22.0	30.7	18.7	2.7	100.0
사립	(153)	31.4	30.1	15.0	20.9	2.6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91)	33.0	29.7	16.5	16.5	4.4	100.0
경기/인천	(76)	25.0	19.7	28.9	26.3	0.0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5)	28.6	34.3	20.0	14.3	2.9	100.0
광주/전북/전남	(35)	34.3	20.0	22.9	22.9	0.0	100.0
대구/경북	(25)	24.0	28.0	16.0	24.0	8.0	100.0
부산/울산/경남	(28)	32.1	25.0	25.0	14.3	3.6	100.0
강원/제주	(13)	7.7	30.8	46.2	15.4	0.0	100.0
성별							
남자	(156)	30.1	31.4	18.6	15.4	4.5	100.0
여자	(147)	27.2	20.4	27.2	24.5	0.7	100.0
연령							
20대	(21)	23.8	14.3	38.1	23.8	0.0	100.0
30대	(48)	37.5	8.3	33.3	20.8	0.0	100.0
40대	(88)	27.3	25.0	25.0	17.0	5.7	100.0
50대	(106)	28.3	34.9	17.9	17.9	0.9	100.0
60대 이상	(40)	25.0	32.5	10.0	27.5	5.0	100.0

[표 19_1]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2순위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계
■ 전체 ■	(294)	36.4	26.9	21.1	15.6	100.0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46.0	36.0	16.0	2.0	100.0
중/고등학교	(99)	37.4	36.4	18.2	8.1	100.0
대학교	(145)	32.4	17.2	24.8	25.5	100.0
국공립 여부						
국공립	(146)	38.4	32.9	15.8	13.0	100.0
사립	(148)	34.5	20.9	26.4	18.2	100.0
기관 소재지						
서울	(87)	35.6	28.7	24.1	11.5	100.0
경기/인천	(76)	34.2	25.0	22.4	18.4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4)	41.2	23.5	17.6	17.6	100.0
광주/전북/전남	(34)	38.2	32.4	17.6	11.8	100.0
대구/경북	(23)	47.8	13.0	21.7	17.4	100.0
부산/울산/경남	(27)	33.3	25.9	25.9	14.8	100.0
강원/제주	(13)	23.1	46.2	0.0	30.8	100.0
성별						
남자	(148)	37.8	20.3	20.9	20.9	100.0
여자	(146)	34.9	33.6	21.2	10.3	100.0
연령						
20대	(21)	38.1	47.6	4.8	9.5	100.0
30대	(47)	31.9	38.3	21.3	8.5	100.0
40대	(83)	42.2	30.1	14.5	13.3	100.0
50대	(105)	35.2	16.2	24.8	23.8	100.0
60대 이상	(38)	31.6	23.7	34.2	10.5	100.0

[표 19_2]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2순위(중복응답)

[문1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잘 모르겠다
■ 전체 ■	(303)	61.4	45.9	43.9	43.2	2.6
소속기관 유형						
초등학교	(50)	60.0	60.0	28.0	52.0	0.0
중/고등학교	(100)	49.0	58.0	41.0	51.0	0.0
대학교	(153)	69.9	33.3	51.0	35.3	5.2
국공립 여부						
국공립	(150)	59.3	50.7	38.7	46.0	2.7
사립	(153)	63.4	41.2	49.0	40.5	2.6
기관 소재지						
서울	(91)	63.7	44.0	44.0	39.6	4.4
경기/인천	(76)	53.9	51.3	43.4	51.3	0.0
대전/세종/충북/충남	(35)	74.3	37.1	45.7	37.1	2.9
광주/전북/전남	(35)	57.1	54.3	45.7	40.0	0.0
대구/경북	(25)	72.0	36.0	40.0	36.0	8.0
부산/울산/경남	(28)	57.1	39.3	46.4	50.0	3.6
강원/제주	(13)	53.8	61.5	38.5	46.2	0.0
성별						
남자	(156)	67.3	34.6	50.0	38.5	4.5
여자	(147)	55.1	57.8	37.4	48.3	0.7
연령						
20대	(21)	52.4	71.4	33.3	42.9	0.0
30대	(48)	39.6	58.3	45.8	54.2	0.0
40대	(88)	64.8	45.5	39.8	38.6	5.7
50대	(106)	69.8	34.0	51.9	42.5	0.9
60대 이상	(40)	62.5	50.0	35.0	42.5	5.0

[결과표 5. 영향업종]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사례수 (명)	1.00
▣ 전체 ▣		(200)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50.0
	농수축산화훼업	(100)	5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5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17.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17.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16.0
세부업종	한식	(20)	10.0
	중식	(20)	10.0
	일식	(20)	10.0
	서양식	(20)	10.0
	음식점 기타	(20)	10.0
	농업	(24)	12.0
	축산업	(31)	15.5
	수산업	(21)	10.5
	화훼업	(24)	12.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6.5
	경기/인천	(38)	19.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15.5
	광주/전북/전남	(33)	16.5
	대구/경북	(37)	18.5
	부산/울산/경남	(40)	20.0
	강원/제주	(8)	4.0
	상권		
관공서 인근	(19)	9.5	
대형오피스 밀집지	(4)	2.0	
학교 주변	(15)	7.5	
주택가	(44)	22.0	
도시 번두리	(38)	19.0	
대도시 교외	(2)	1.0	
역세권	(8)	4.0	
도심 유흥 변화가	(19)	9.5	
농어촌	(26)	13.0	
시장	(11)	5.5	
기타	(14)	7.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23.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22.5
	1억~5억원 미만	(42)	21.0
	5억~10억원 미만	(21)	10.5
	10억원 이상	(24)	12.0
	잘 모르겠다	(22)	11.0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79.5
	5인 이상 10인 미만	(21)	10.5
	10인 이상	(20)	10.0

[표 1] 식사금액 한도 3만원에 대한 의견

[문1] 귀하께서는 현재의 식사금액의 한도 3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3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3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00)	39.5	52.0	3.0	5.5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50.0	42.0	2.0	6.0	100.0
농수축산화훼업	(100)	29.0	62.0	4.0	5.0	10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50.0	42.0	2.0	6.0	10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14.7	76.5	5.9	2.9	100.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38.2	50.0	5.9	5.9	100.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34.4	59.4	0.0	6.3	100.0
세부업종						
한식	(20)	65.0	30.0	0.0	5.0	100.0
중식	(20)	45.0	45.0	0.0	10.0	100.0
일식	(20)	70.0	25.0	5.0	0.0	100.0
서양식	(20)	60.0	35.0	0.0	5.0	100.0
음식점 기타	(20)	10.0	75.0	5.0	10.0	100.0
농업	(24)	33.3	66.7	0.0	0.0	100.0
축산업	(31)	25.8	64.5	6.5	3.2	100.0
수산업	(21)	23.8	61.9	4.8	9.5	100.0
화훼업	(24)	33.3	54.2	4.2	8.3	100.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53.8	30.8	0.0	15.4	100.0
경기/인천	(38)	39.5	50.0	2.6	7.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38.7	58.1	3.2	0.0	100.0
광주/전북/전남	(33)	51.5	45.5	0.0	3.0	100.0
대구/경북	(37)	27.0	64.9	2.7	5.4	100.0
부산/울산/경남	(40)	35.0	50.0	7.5	7.5	100.0
강원/제주	(8)	50.0	50.0	0.0	0.0	100.0
상권						
관공서 인근	(19)	57.9	36.8	0.0	5.3	100.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50.0	50.0	0.0	0.0	100.0
학교 주변	(15)	46.7	33.3	0.0	20.0	100.0
주택가	(44)	43.2	50.0	4.5	2.3	100.0
도시 번두리	(38)	26.3	65.8	2.6	5.3	100.0
대도시 교외	(2)	50.0	50.0	0.0	0.0	100.0
역세권	(8)	62.5	25.0	0.0	12.5	100.0
도심 유흥 변화가	(19)	36.8	52.6	10.5	0.0	100.0
농어촌	(26)	30.8	65.4	0.0	3.8	100.0
시장	(11)	36.4	36.4	9.1	18.2	100.0
기타	(14)	35.7	64.3	0.0	0.0	100.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37.0	50.0	2.2	10.9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44.4	51.1	0.0	4.4	100.0
1억-5억원 미만	(42)	45.2	45.2	2.4	7.1	100.0
5억-10억원 미만	(21)	38.1	61.9	0.0	0.0	100.0
10억원 이상	(24)	29.2	58.3	8.3	4.2	100.0
잘 모르겠다	(22)	36.4	54.5	9.1	0.0	100.0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42.8	50.3	1.3	5.7	100.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38.1	57.1	0.0	4.8	100.0
10인 이상	(20)	15.0	60.0	20.0	5.0	100.0

[표 2] 선물금액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2] 귀하께서는 현재의 선물금액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00)	40.0	54.0	5.0	1.0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39.0	53.0	8.0	0.0	100.0
농수축산화훼업	(100)	41.0	55.0	2.0	2.0	10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39.0	53.0	8.0	0.0	10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38.2	55.9	5.9	0.0	100.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32.4	64.7	0.0	2.9	100.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53.1	43.8	0.0	3.1	100.0
세부업종						
한식	(20)	55.0	40.0	5.0	0.0	100.0
중식	(20)	35.0	50.0	15.0	0.0	100.0
일식	(20)	40.0	50.0	10.0	0.0	100.0
서양식	(20)	35.0	65.0	0.0	0.0	100.0
음식점 기타	(20)	30.0	60.0	10.0	0.0	100.0
농업	(24)	54.2	45.8	0.0	0.0	100.0
축산업	(31)	45.2	54.8	0.0	0.0	100.0
수산업	(21)	23.8	66.7	4.8	4.8	100.0
화훼업	(24)	37.5	54.2	4.2	4.2	100.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30.8	61.5	7.7	0.0	100.0
경기/인천	(38)	31.6	63.2	0.0	5.3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51.6	41.9	6.5	0.0	100.0
광주/전북/전남	(33)	66.7	33.3	0.0	0.0	100.0
대구/경북	(37)	35.1	54.1	10.8	0.0	100.0
부산/울산/경남	(40)	20.0	72.5	7.5	0.0	100.0
강원/제주	(8)	62.5	37.5	0.0	0.0	100.0
상권						
관공서 인근	(19)	36.8	63.2	0.0	0.0	100.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50.0	50.0	0.0	0.0	100.0
학교 주변	(15)	33.3	60.0	6.7	0.0	100.0
주택가	(44)	52.3	38.6	9.1	0.0	100.0
도시 번두리	(38)	34.2	60.5	5.3	0.0	100.0
대도시 교외	(2)	0.0	50.0	50.0	0.0	100.0
역세권	(8)	37.5	50.0	0.0	12.5	100.0
도심 유흥 변화가	(19)	26.3	68.4	5.3	0.0	100.0
농어촌	(26)	53.8	42.3	3.8	0.0	100.0
시장	(11)	36.4	54.5	0.0	9.1	100.0
기타	(14)	28.6	71.4	0.0	0.0	100.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43.5	47.8	6.5	2.2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37.8	55.6	6.7	0.0	100.0
1억-5억원 미만	(42)	45.2	47.6	4.8	2.4	100.0
5억-10억원 미만	(21)	47.6	52.4	0.0	0.0	100.0
10억원 이상	(24)	29.2	66.7	4.2	0.0	100.0
잘 모르겠다	(22)	31.8	63.6	4.5	0.0	100.0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41.5	52.2	5.0	1.3	100.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42.9	57.1	0.0	0.0	100.0
10인 이상	(20)	25.0	65.0	10.0	0.0	100.0

[표 3]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한 의견
 [문3] 귀하께서는 현재의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한도 10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10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10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00)	23.5	68.0	7.5	1.0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24.0	67.0	8.0	1.0	100.0
농수축산화훼업	(100)	23.0	69.0	7.0	1.0	10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24.0	67.0	8.0	1.0	10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20.6	73.5	5.9	0.0	100.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23.5	64.7	8.8	2.9	100.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25.0	68.8	6.3	0.0	100.0
세부업종						
한식	(20)	45.0	50.0	0.0	5.0	100.0
중식	(20)	10.0	75.0	15.0	0.0	100.0
일식	(20)	25.0	60.0	15.0	0.0	100.0
서양식	(20)	25.0	70.0	5.0	0.0	100.0
음식점 기타	(20)	15.0	80.0	5.0	0.0	100.0
농업	(24)	12.5	79.2	8.3	0.0	100.0
축산업	(31)	38.7	58.1	3.2	0.0	100.0
수산업	(21)	23.8	66.7	9.5	0.0	100.0
화훼업	(24)	12.5	75.0	8.3	4.2	100.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23.1	69.2	7.7	0.0	100.0
경기/인천	(38)	28.9	55.3	13.2	2.6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19.4	74.2	6.5	0.0	100.0
광주/전북/전남	(33)	27.3	72.7	0.0	0.0	100.0
대구/경북	(37)	18.9	67.6	10.8	2.7	100.0
부산/울산/경남	(40)	17.5	75.0	7.5	0.0	100.0
강원/제주	(8)	50.0	50.0	0.0	0.0	100.0
상권						
관공서 인근	(19)	21.1	73.7	5.3	0.0	100.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25.0	75.0	0.0	0.0	100.0
학교 주변	(15)	20.0	73.3	6.7	0.0	100.0
주택가	(44)	31.8	59.1	9.1	0.0	100.0
도시 번두리	(38)	15.8	71.1	10.5	2.6	100.0
대도시 교외	(2)	0.0	50.0	50.0	0.0	100.0
역세권	(8)	12.5	75.0	0.0	12.5	100.0
도심 유흥 변화가	(19)	21.1	68.4	10.5	0.0	100.0
농어촌	(26)	34.6	61.5	3.8	0.0	100.0
시장	(11)	9.1	81.8	9.1	0.0	100.0
기타	(14)	28.6	71.4	0.0	0.0	100.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17.4	76.1	4.3	2.2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26.7	64.4	8.9	0.0	100.0
1억-5억원 미만	(42)	21.4	69.0	7.1	2.4	100.0
5억-10억원 미만	(21)	23.8	61.9	14.3	0.0	100.0
10억원 이상	(24)	25.0	70.8	4.2	0.0	100.0
잘 모르겠다	(22)	31.8	59.1	9.1	0.0	100.0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24.5	66.7	7.5	1.3	100.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14.3	81.0	4.8	0.0	100.0
10인 이상	(20)	25.0	65.0	10.0	0.0	100.0

[표 3_1] 농축수산물 선물금액 20만원 상향에 대한 의견(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상향)
 [문3_1] 귀하께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 수 (명)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진작을 위해 한시적인 선물금액 한도 상향은 필요하다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으로 입법취지에 맞게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00)	51.0	45.0	4.0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50.0	46.0	4.0	100.0
농수축산화훼업	(100)	52.0	44.0	4.0	10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50.0	46.0	4.0	10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55.9	41.2	2.9	100.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50.0	41.2	8.8	100.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50.0	50.0	0.0	100.0
세부업종					
한식	(20)	60.0	40.0	0.0	100.0
중식	(20)	45.0	55.0	0.0	100.0
일식	(20)	75.0	25.0	0.0	100.0
서양식	(20)	40.0	50.0	10.0	100.0
음식점 기타	(20)	30.0	60.0	10.0	100.0
농업	(24)	41.7	58.3	0.0	100.0
축산업	(31)	61.3	35.5	3.2	100.0
수산업	(21)	47.6	47.6	4.8	100.0
화훼업	(24)	54.2	37.5	8.3	100.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53.8	38.5	7.7	100.0
경기/인천	(38)	50.0	44.7	5.3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51.6	45.2	3.2	100.0
광주/전북/전남	(33)	69.7	30.3	0.0	100.0
대구/경북	(37)	40.5	56.8	2.7	100.0
부산/울산/경남	(40)	45.0	47.5	7.5	100.0
강원/제주	(8)	50.0	50.0	0.0	100.0
상권					
관공서 인근	(19)	52.6	47.4	0.0	100.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25.0	50.0	25.0	100.0
학교 주변	(15)	53.3	46.7	0.0	100.0
주택가	(44)	47.7	45.5	6.8	100.0
도시 번두리	(38)	44.7	52.6	2.6	100.0
대도시 교외	(2)	50.0	50.0	0.0	100.0
역세권	(8)	50.0	37.5	12.5	100.0
도심 유흥 변화가	(19)	68.4	31.6	0.0	100.0
농어촌	(26)	73.1	23.1	3.8	100.0
시장	(11)	36.4	63.6	0.0	100.0
기타	(14)	28.6	64.3	7.1	100.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43.5	54.3	2.2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53.3	42.2	4.4	100.0
1억~5억원 미만	(42)	57.1	35.7	7.1	100.0
5억~10억원 미만	(21)	38.1	52.4	9.5	100.0
10억원 이상	(24)	58.3	41.7	0.0	100.0
잘 모르겠다	(22)	54.5	45.5	0.0	100.0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47.8	47.8	4.4	100.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57.1	42.9	0.0	100.0
10인 이상	(20)	70.0	25.0	5.0	100.0

[표 4] 일반국민 및 기업간에도 청탁금지법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문4] 청탁금지법상 선물가액은 공직자들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국민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간에 선물을 주고 받을 때에도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 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200)	9.0	23.0	32.0	44.0	16.0	60.0	8.0	100.0	2.7	0.9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5.0	28.0	33.0	44.0	12.0	56.0	11.0	100.0	2.7	0.8
농수축산화훼업	(100)	13.0	18.0	31.0	44.0	20.0	64.0	5.0	100.0	2.7	0.9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5.0	28.0	33.0	44.0	12.0	56.0	11.0	100.0	2.7	0.8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8.8	11.8	20.6	52.9	14.7	67.6	11.8	100.0	2.8	0.8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17.6	23.5	41.2	35.3	20.6	55.9	2.9	100.0	2.6	1.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12.5	18.8	31.3	43.8	25.0	68.8	0.0	100.0	2.8	1.0
세부업종											
한식	(20)	0.0	45.0	45.0	30.0	20.0	50.0	5.0	100.0	2.7	0.8
중식	(20)	20.0	10.0	30.0	55.0	5.0	60.0	10.0	100.0	2.5	0.9
일식	(20)	0.0	25.0	25.0	40.0	20.0	60.0	15.0	100.0	2.9	0.7
서양식	(20)	5.0	25.0	30.0	45.0	10.0	55.0	15.0	100.0	2.7	0.8
음식점 기타	(20)	0.0	35.0	35.0	50.0	5.0	55.0	10.0	100.0	2.7	0.6
농업	(24)	20.8	29.2	50.0	37.5	4.2	41.7	8.3	100.0	2.3	0.9
축산업	(31)	6.5	22.6	29.0	48.4	22.6	71.0	0.0	100.0	2.9	0.8
수산업	(21)	19.0	9.5	28.6	38.1	23.8	61.9	9.5	100.0	2.7	1.1
화훼업	(24)	8.3	8.3	16.7	50.0	29.2	79.2	4.2	100.0	3.0	0.9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7.7	23.1	30.8	38.5	7.7	46.2	23.1	100.0	2.6	0.8
경기/인천	(38)	10.5	31.6	42.1	31.6	26.3	57.9	0.0	100.0	2.7	1.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9.7	29.0	38.7	38.7	9.7	48.4	12.9	100.0	2.6	0.8
광주/전북/전남	(33)	9.1	18.2	27.3	57.6	12.1	69.7	3.0	100.0	2.8	0.8
대구/경북	(37)	5.4	18.9	24.3	45.9	18.9	64.9	10.8	100.0	2.9	0.8
부산/울산/경남	(40)	10.0	22.5	32.5	47.5	12.5	60.0	7.5	100.0	2.7	0.9
강원/제주	(8)	12.5	0.0	12.5	50.0	25.0	75.0	12.5	100.0	3.0	1.0
상권											
관광서 인근	(19)	15.8	26.3	42.1	26.3	21.1	47.4	10.5	100.0	2.6	1.1
대형오피스 밀집지	(4)	0.0	25.0	25.0	75.0	0.0	75.0	0.0	100.0	2.8	0.5
학교 주변	(15)	0.0	33.3	33.3	40.0	13.3	53.3	13.3	100.0	2.8	0.7
주택가	(44)	6.8	29.5	36.4	43.2	13.6	56.8	6.8	100.0	2.7	0.8
도시 변두리	(38)	5.3	21.1	26.3	47.4	23.7	71.1	2.6	100.0	2.9	0.8
대도시 교외	(2)	0.0	50.0	50.0	0.0	0.0	0.0	50.0	100.0	2.0	
역세권	(8)	0.0	25.0	25.0	50.0	25.0	75.0	0.0	100.0	3.0	0.8
도심 유흥 변화가	(19)	5.3	21.1	26.3	47.4	15.8	63.2	10.5	100.0	2.8	0.8
농어촌	(26)	11.5	15.4	26.9	61.5	3.8	65.4	7.7	100.0	2.6	0.8
시장	(11)	27.3	9.1	36.4	18.2	36.4	54.5	9.1	100.0	2.7	1.3
기타	(14)	21.4	14.3	35.7	42.9	7.1	50.0	14.3	100.0	2.4	1.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8.7	19.6	28.3	39.1	21.7	60.9	10.9	100.0	2.8	0.9
5천만원-1억원 미만	(45)	6.7	20.0	26.7	55.6	13.3	68.9	4.4	100.0	2.8	0.8
1억-5억원 미만	(42)	14.3	16.7	31.0	42.9	23.8	66.7	2.4	100.0	2.8	1.0
5억-10억원 미만	(21)	4.8	23.8	28.6	52.4	9.5	61.9	9.5	100.0	2.7	0.7
10억원 이상	(24)	16.7	20.8	37.5	41.7	12.5	54.2	8.3	100.0	2.5	1.0
잘 모르겠다	(22)	0.0	50.0	50.0	27.3	4.5	31.8	18.2	100.0	2.4	0.6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9.4	23.3	32.7	42.8	17.6	60.4	6.9	100.0	2.7	0.9
5인 이상 10인 미만	(21)	9.5	14.3	23.8	57.1	4.8	61.9	14.3	100.0	2.7	0.8
10인 이상	(20)	5.0	30.0	35.0	40.0	15.0	55.0	10.0	100.0	2.7	0.8

[표 5] 일반국민 및 기업에 적용할 가액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문5] 청탁금지법상 선물 등 가액 기준을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도 널리 쓰고 있어 소비가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일반국민이나 기업 간에 적용할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 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200)	15.5	28.5	44.0	36.5	14.5	51.0	5.0	100.0	2.5	0.9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14.0	30.0	44.0	38.0	12.0	50.0	6.0	100.0	2.5	0.9
농수축산화훼업	(100)	17.0	27.0	44.0	35.0	17.0	52.0	4.0	100.0	2.5	1.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14.0	30.0	44.0	38.0	12.0	50.0	6.0	100.0	2.5	0.9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11.8	29.4	41.2	44.1	11.8	55.9	2.9	100.0	2.6	0.9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20.6	26.5	47.1	32.4	17.6	50.0	2.9	100.0	2.5	1.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18.8	25.0	43.8	28.1	21.9	50.0	6.3	100.0	2.6	1.1
세부업종											
한식	(20)	5.0	30.0	35.0	45.0	20.0	65.0	0.0	100.0	2.8	0.8
중식	(20)	10.0	35.0	45.0	50.0	5.0	55.0	0.0	100.0	2.5	0.8
일식	(20)	20.0	30.0	50.0	25.0	15.0	40.0	10.0	100.0	2.4	1.0
서양식	(20)	20.0	30.0	50.0	25.0	15.0	40.0	10.0	100.0	2.4	1.0
음식점 기타	(20)	15.0	25.0	40.0	45.0	5.0	50.0	10.0	100.0	2.4	0.9
농업	(24)	20.8	33.3	54.2	29.2	16.7	45.8	0.0	100.0	2.4	1.0
축산업	(31)	12.9	9.7	22.6	58.1	16.1	74.2	3.2	100.0	2.8	0.9
수산업	(21)	9.5	38.1	47.6	28.6	19.0	47.6	4.8	100.0	2.6	0.9
화훼업	(24)	25.0	33.3	58.3	16.7	16.7	33.3	8.3	100.0	2.3	1.1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23.1	30.8	53.8	23.1	7.7	30.8	15.4	100.0	2.2	1.0
경기/인천	(38)	26.3	10.5	36.8	36.8	18.4	55.3	7.9	100.0	2.5	1.1
대전/세종/충북/충남	(31)	3.2	38.7	41.9	35.5	16.1	51.6	6.5	100.0	2.7	0.8
광주/전북/전남	(33)	15.2	27.3	42.4	36.4	21.2	57.6	0.0	100.0	2.6	1.0
대구/경북	(37)	13.5	35.1	48.6	37.8	10.8	48.6	2.7	100.0	2.5	0.9
부산/울산/경남	(40)	15.0	35.0	50.0	40.0	7.5	47.5	2.5	100.0	2.4	0.8
강원/제주	(8)	12.5	12.5	25.0	37.5	25.0	62.5	12.5	100.0	2.9	1.1
상권											
관광서 인근	(19)	5.3	26.3	31.6	31.6	36.8	68.4	0.0	100.0	3.0	0.9
대형오피스 밀집지	(4)	0.0	50.0	50.0	25.0	0.0	25.0	25.0	100.0	2.3	0.6
학교 주변	(15)	33.3	6.7	40.0	46.7	13.3	60.0	0.0	100.0	2.4	1.1
주택가	(44)	15.9	31.8	47.7	29.5	13.6	43.2	9.1	100.0	2.5	1.0
도시 변두리	(38)	13.2	31.6	44.7	44.7	10.5	55.3	0.0	100.0	2.5	0.9
대도시 교외	(2)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2.5	0.7
역세권	(8)	25.0	25.0	50.0	25.0	12.5	37.5	12.5	100.0	2.3	1.1
도심 유흥 변화가	(19)	21.1	26.3	47.4	31.6	21.1	52.6	0.0	100.0	2.5	1.1
농어촌	(26)	15.4	30.8	46.2	50.0	3.8	53.8	0.0	100.0	2.4	0.8
시장	(11)	9.1	0.0	9.1	36.4	27.3	63.6	27.3	100.0	3.1	1.0
기타	(14)	14.3	50.0	64.3	21.4	7.1	28.6	7.1	100.0	2.2	0.8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8.7	30.4	39.1	45.7	8.7	54.3	6.5	100.0	2.6	0.8
5천만원-1억원 미만	(45)	15.6	28.9	44.4	40.0	11.1	51.1	4.4	100.0	2.5	0.9
1억-5억원 미만	(42)	26.2	19.0	45.2	23.8	26.2	50.0	4.8	100.0	2.5	1.2
5억-10억원 미만	(21)	14.3	23.8	38.1	38.1	19.0	57.1	4.8	100.0	2.7	1.0
10억원 이상	(24)	20.8	25.0	45.8	33.3	16.7	50.0	4.2	100.0	2.5	1.0
잘 모르겠다	(22)	4.5	50.0	54.5	36.4	4.5	40.9	4.5	100.0	2.4	0.7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17.0	28.3	45.3	33.3	15.7	49.1	5.7	100.0	2.5	1.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9.5	23.8	33.3	47.6	19.0	66.7	0.0	100.0	2.8	0.9
10인 이상	(20)	10.0	35.0	45.0	50.0	0.0	50.0	5.0	100.0	2.4	0.7

[표 6] 경조사비 한도 5만원에 대한 의견

[문6] 귀하께서는 현재의 경조사비의 한도 5만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5만원 한도는 너무 낮아 상한액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적정하다	5만원 한도는 너무 높아 상한액을 낮출 필요가 있다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00)	41.0	55.0	1.0	3.0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39.0	57.0	1.0	3.0	100.0
농수축산화훼업	(100)	43.0	53.0	1.0	3.0	10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39.0	57.0	1.0	3.0	10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35.3	61.8	0.0	2.9	100.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41.2	55.9	0.0	2.9	100.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53.1	40.6	3.1	3.1	100.0
세부업종						
한식	(20)	60.0	40.0	0.0	0.0	100.0
중식	(20)	35.0	60.0	0.0	5.0	100.0
일식	(20)	35.0	50.0	5.0	10.0	100.0
서양식	(20)	40.0	60.0	0.0	0.0	100.0
음식점 기타	(20)	25.0	75.0	0.0	0.0	100.0
농업	(24)	37.5	62.5	0.0	0.0	100.0
축산업	(31)	45.2	51.6	0.0	3.2	100.0
수산업	(21)	38.1	57.1	4.8	0.0	100.0
화훼업	(24)	50.0	41.7	0.0	8.3	100.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46.2	38.5	0.0	15.4	100.0
경기/인천	(38)	50.0	42.1	2.6	5.3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38.7	58.1	3.2	0.0	100.0
광주/전북/전남	(33)	48.5	48.5	0.0	3.0	100.0
대구/경북	(37)	43.2	54.1	0.0	2.7	100.0
부산/울산/경남	(40)	20.0	80.0	0.0	0.0	100.0
강원/제주	(8)	62.5	37.5	0.0	0.0	100.0
상권						
관공서 인근	(19)	26.3	68.4	0.0	5.3	100.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25.0	75.0	0.0	0.0	100.0
학교 주변	(15)	33.3	66.7	0.0	0.0	100.0
주택가	(44)	40.9	54.5	2.3	2.3	100.0
도시 번두리	(38)	39.5	55.3	2.6	2.6	100.0
대도시 교외	(2)	50.0	50.0	0.0	0.0	100.0
역세권	(8)	37.5	50.0	0.0	12.5	100.0
도심 유흥 변화가	(19)	52.6	42.1	0.0	5.3	100.0
농어촌	(26)	53.8	46.2	0.0	0.0	100.0
시장	(11)	45.5	45.5	0.0	9.1	100.0
기타	(14)	35.7	64.3	0.0	0.0	100.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37.0	60.9	0.0	2.2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48.9	48.9	2.2	0.0	100.0
1억-5억원 미만	(42)	47.6	45.2	0.0	7.1	100.0
5억-10억원 미만	(21)	28.6	61.9	0.0	9.5	100.0
10억원 이상	(24)	45.8	50.0	4.2	0.0	100.0
잘 모르겠다	(22)	27.3	72.7	0.0	0.0	100.0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40.3	55.3	0.6	3.8	100.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57.1	42.9	0.0	0.0	100.0
10인 이상	(20)	30.0	65.0	5.0	0.0	100.0

[표 7] 청탁금지법 시행이 사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 유무
 [문7] 청탁금지법 시행이 귀 사업체 매출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명)	없다	있다	잘 모르겠다	계	평균
▣ 전체 ▣		(200)	53.0	43.0	4.0	100.0	1.4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57.0	38.0	5.0	100.0	1.4
	농수축산화훼업	(100)	49.0	48.0	3.0	100.0	1.5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57.0	38.0	5.0	100.0	1.4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61.8	35.3	2.9	100.0	1.4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50.0	47.1	2.9	100.0	1.5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34.4	62.5	3.1	100.0	1.6
세부업종	한식	(20)	40.0	60.0	0.0	100.0	1.6
	중식	(20)	70.0	20.0	10.0	100.0	1.2
	일식	(20)	30.0	65.0	5.0	100.0	1.7
	서양식	(20)	70.0	30.0	0.0	100.0	1.3
	음식점 기타	(20)	75.0	15.0	10.0	100.0	1.2
	농업	(24)	70.8	29.2	0.0	100.0	1.3
	축산업	(31)	54.8	38.7	6.5	100.0	1.4
	수산업	(21)	38.1	57.1	4.8	100.0	1.6
	화훼업	(24)	29.2	70.8	0.0	100.0	1.7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46.2	53.8	0.0	100.0
경기/인천		(38)	47.4	50.0	2.6	100.0	1.5
대전/세종/충북/충남		(31)	58.1	38.7	3.2	100.0	1.4
광주/전북/전남		(33)	45.5	48.5	6.1	100.0	1.5
대구/경북		(37)	59.5	35.1	5.4	100.0	1.4
부산/울산/경남		(40)	65.0	32.5	2.5	100.0	1.3
강원/제주		(8)	12.5	75.0	12.5	100.0	1.9
상권	관공서 인근	(19)	36.8	57.9	5.3	100.0	1.6
	대형오피스 밀집지	(4)	50.0	50.0	0.0	100.0	1.5
	학교 주변	(15)	60.0	40.0	0.0	100.0	1.4
	주택가	(44)	52.3	43.2	4.5	100.0	1.5
	도시 번두리	(38)	63.2	31.6	5.3	100.0	1.3
	대도시 교외	(2)	50.0	50.0	0.0	100.0	1.5
	역세권	(8)	50.0	50.0	0.0	100.0	1.5
	도심 유흥 변화가	(19)	36.8	63.2	0.0	100.0	1.6
	농어촌	(26)	61.5	38.5	0.0	100.0	1.4
	시장	(11)	45.5	27.3	27.3	100.0	1.4
기타	(14)	57.1	42.9	0.0	100.0	1.4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47.8	47.8	4.3	100.0	1.5
	5천만원-1억원 미만	(45)	57.8	40.0	2.2	100.0	1.4
	1억-5억원 미만	(42)	47.6	52.4	0.0	100.0	1.5
	5억-10억원 미만	(21)	57.1	42.9	0.0	100.0	1.4
	10억원 이상	(24)	54.2	33.3	12.5	100.0	1.4
	잘 모르겠다	(22)	59.1	31.8	9.1	100.0	1.4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52.2	44.0	3.8	100.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61.9	38.1	0.0	100.0	1.4
10인 이상		(20)	50.0	40.0	10.0	100.0	1.4

[표 7_1]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사업체 매출 변화
 [문7_1]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귀하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매출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크게 감소 했다	②조금 감소 했다	①+②	③조금 증가 했다	④크게 증가 했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 편차
사업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자	(86)	44.2	40.7	84.9	4.7	1.2	5.8	9.3	100.0	1.6	0.7
업종 (1)											
일반음식업	(38)	42.1	39.5	81.6	5.3	2.6	7.9	10.5	100.0	1.6	0.7
농수축산화훼업	(48)	45.8	41.7	87.5	4.2	0.0	4.2	8.3	100.0	1.5	0.6
업종 (2)											
일반음식업	(38)	42.1	39.5	81.6	5.3	2.6	7.9	10.5	100.0	1.6	0.7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12)	33.3	41.7	75.0	8.3	0.0	8.3	16.7	100.0	1.7	0.7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16)	31.3	56.3	87.5	6.3	0.0	6.3	6.3	100.0	1.7	0.6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20)	65.0	30.0	95.0	0.0	0.0	0.0	5.0	100.0	1.3	0.5
세부업종											
한식	(12)	41.7	41.7	83.3	0.0	8.3	8.3	8.3	100.0	1.7	0.9
중식	(4)	25.0	50.0	75.0	0.0	0.0	0.0	25.0	100.0	1.7	0.6
일식	(13)	46.2	38.5	84.6	7.7	0.0	7.7	7.7	100.0	1.6	0.7
서양식	(6)	66.7	16.7	83.3	16.7	0.0	16.7	0.0	100.0	1.5	0.8
음식점 기타	(3)	0.0	66.7	66.7	0.0	0.0	0.0	33.3	100.0	2.0	0.0
농업	(7)	71.4	14.3	85.7	0.0	0.0	0.0	14.3	100.0	1.2	0.4
축산업	(12)	33.3	50.0	83.3	8.3	0.0	8.3	8.3	100.0	1.7	0.6
수산업	(12)	33.3	50.0	83.3	0.0	0.0	0.0	16.7	100.0	1.6	0.5
화훼업	(17)	52.9	41.2	94.1	5.9	0.0	5.9	0.0	100.0	1.5	0.6
사업체 소재지											
서울	(7)	57.1	28.6	85.7	0.0	14.3	14.3	0.0	100.0	1.7	1.1
경기/인천	(19)	52.6	31.6	84.2	5.3	0.0	5.3	10.5	100.0	1.5	0.6
대전/세종/충북/충남	(12)	33.3	41.7	75.0	0.0	0.0	0.0	25.0	100.0	1.6	0.5
광주/전북/전남	(16)	43.8	43.8	87.5	12.5	0.0	12.5	0.0	100.0	1.7	0.7
대구/경북	(13)	30.8	53.8	84.6	0.0	0.0	0.0	15.4	100.0	1.6	0.5
부산/울산/경남	(13)	38.5	46.2	84.6	7.7	0.0	7.7	7.7	100.0	1.7	0.7
강원/제주	(6)	66.7	33.3	100.0	0.0	0.0	0.0	0.0	100.0	1.3	0.5
상권											
관광서 인근	(11)	54.5	18.2	72.7	9.1	0.0	9.1	18.2	100.0	1.4	0.7
대형오피스 밀집지	(2)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2.5	0.7
학교 주변	(6)	66.7	16.7	83.3	16.7	0.0	16.7	0.0	100.0	1.5	0.8
주택가	(19)	47.4	42.1	89.5	0.0	0.0	0.0	10.5	100.0	1.5	0.5
도시 번두리	(12)	33.3	50.0	83.3	0.0	0.0	0.0	16.7	100.0	1.6	0.5
대도시 교외	(1)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4.0	
역세권	(4)	75.0	25.0	100.0	0.0	0.0	0.0	0.0	100.0	1.3	0.5
도심 유흥 변화가	(12)	16.7	66.7	83.3	0.0	0.0	0.0	16.7	100.0	1.8	0.4
농어촌	(10)	40.0	50.0	90.0	10.0	0.0	10.0	0.0	100.0	1.7	0.7
시장	(3)	66.7	33.3	100.0	0.0	0.0	0.0	0.0	100.0	1.3	0.6
기타	(6)	66.7	33.3	100.0	0.0	0.0	0.0	0.0	100.0	1.3	0.5
매출액											
5천만원 미만	(22)	50.0	36.4	86.4	4.5	0.0	4.5	9.1	100.0	1.5	0.6
5천만원~1억원 미만	(18)	38.9	50.0	88.9	5.6	0.0	5.6	5.6	100.0	1.6	0.6
1억~5억원 미만	(22)	50.0	31.8	81.8	4.5	4.5	9.1	9.1	100.0	1.6	0.8
5억~10억원 미만	(9)	55.6	22.2	77.8	11.1	0.0	11.1	11.1	100.0	1.5	0.8
10억원 이상	(8)	12.5	75.0	87.5	0.0	0.0	0.0	12.5	100.0	1.9	0.4
잘 모르겠다	(7)	42.9	42.9	85.7	0.0	0.0	0.0	14.3	100.0	1.5	0.5
종사자 수											
5인 미만	(70)	50.0	35.7	85.7	4.3	1.4	5.7	8.6	100.0	1.5	0.7
5인 이상 10인 미만	(8)	25.0	62.5	87.5	0.0	0.0	0.0	12.5	100.0	1.7	0.5
10인 이상	(8)	12.5	62.5	75.0	12.5	0.0	12.5	12.5	100.0	2.0	0.6

[표 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업종 전반의 매출감소 여부
 [문8]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종 전반에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별로 그렇지 않다	①+②	③ 대체로 그렇다	④매우 그렇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200)	12.5	30.0	42.5	30.5	23.0	53.5	4.0	100.0	2.7	1.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14.0	29.0	43.0	29.0	24.0	53.0	4.0	100.0	2.7	1.0
농수축산화훼업	(100)	11.0	31.0	42.0	32.0	22.0	54.0	4.0	100.0	2.7	1.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14.0	29.0	43.0	29.0	24.0	53.0	4.0	100.0	2.7	1.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14.7	35.3	50.0	29.4	20.6	50.0	0.0	100.0	2.6	1.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11.8	38.2	50.0	26.5	17.6	44.1	5.9	100.0	2.5	0.9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6.3	18.8	25.0	40.6	28.1	68.8	6.3	100.0	3.0	0.9
세부업종											
한식	(20)	10.0	15.0	25.0	45.0	30.0	75.0	0.0	100.0	3.0	0.9
중식	(20)	15.0	30.0	45.0	25.0	20.0	45.0	10.0	100.0	2.6	1.0
일식	(20)	15.0	20.0	35.0	20.0	40.0	60.0	5.0	100.0	2.9	1.1
서양식	(20)	15.0	40.0	55.0	20.0	25.0	45.0	0.0	100.0	2.5	1.1
음식점 기타	(20)	15.0	40.0	55.0	35.0	5.0	40.0	5.0	100.0	2.3	0.8
농업	(24)	16.7	33.3	50.0	20.8	16.7	37.5	12.5	100.0	2.4	1.0
축산업	(31)	12.9	38.7	51.6	35.5	9.7	45.2	3.2	100.0	2.4	0.9
수산업	(21)	9.5	28.6	38.1	23.8	38.1	61.9	0.0	100.0	2.9	1.0
화훼업	(24)	4.2	20.8	25.0	45.8	29.2	75.0	0.0	100.0	3.0	0.8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15.4	23.1	38.5	0.0	53.8	53.8	7.7	100.0	3.0	1.3
경기/인천	(38)	15.8	23.7	39.5	26.3	26.3	52.6	7.9	100.0	2.7	1.1
대전/세종/충북/충남	(31)	9.7	25.8	35.5	45.2	16.1	61.3	3.2	100.0	2.7	0.9
광주/전북/전남	(33)	12.1	30.3	42.4	33.3	18.2	51.5	6.1	100.0	2.6	1.0
대구/경북	(37)	8.1	32.4	40.5	35.1	21.6	56.8	2.7	100.0	2.7	0.9
부산/울산/경남	(40)	15.0	42.5	57.5	27.5	15.0	42.5	0.0	100.0	2.4	0.9
강원/제주	(8)	12.5	12.5	25.0	25.0	50.0	75.0	0.0	100.0	3.1	1.1
상권											
관광서 인근	(19)	15.8	10.5	26.3	26.3	42.1	68.4	5.3	100.0	3.0	1.1
대형오피스 밀집지	(4)	0.0	50.0	50.0	0.0	50.0	50.0	0.0	100.0	3.0	1.2
학교 주변	(15)	33.3	26.7	60.0	20.0	20.0	40.0	0.0	100.0	2.3	1.2
주택가	(44)	11.4	36.4	47.7	25.0	22.7	47.7	4.5	100.0	2.6	1.0
도시 번두리	(38)	7.9	39.5	47.4	34.2	15.8	50.0	2.6	100.0	2.6	0.9
대도시 교외	(2)	0.0	50.0	50.0	0.0	50.0	50.0	0.0	100.0	3.0	1.4
역세권	(8)	12.5	12.5	25.0	25.0	50.0	75.0	0.0	100.0	3.1	1.1
도심 유흥 변화가	(19)	10.5	26.3	36.8	47.4	15.8	63.2	0.0	100.0	2.7	0.9
농어촌	(26)	15.4	23.1	38.5	38.5	19.2	57.7	3.8	100.0	2.6	1.0
시장	(11)	0.0	27.3	27.3	36.4	27.3	63.6	9.1	100.0	3.0	0.8
기타	(14)	14.3	35.7	50.0	28.6	7.1	35.7	14.3	100.0	2.3	0.9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8.7	21.7	30.4	34.8	32.6	67.4	2.2	100.0	2.9	1.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15.6	28.9	44.4	28.9	24.4	53.3	2.2	100.0	2.6	1.0
1억~5억원 미만	(42)	16.7	23.8	40.5	33.3	21.4	54.8	4.8	100.0	2.6	1.0
5억~10억원 미만	(21)	14.3	42.9	57.1	23.8	19.0	42.9	0.0	100.0	2.5	1.0
10억원 이상	(24)	8.3	45.8	54.2	25.0	16.7	41.7	4.2	100.0	2.5	0.9
잘 모르겠다	(22)	9.1	31.8	40.9	31.8	13.6	45.5	13.6	100.0	2.6	0.9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12.6	28.3	40.9	28.9	25.8	54.7	4.4	100.0	2.7	1.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19.0	42.9	61.9	23.8	14.3	38.1	0.0	100.0	2.3	1.0
10인 이상	(20)	5.0	30.0	35.0	50.0	10.0	60.0	5.0	100.0	2.7	0.7

[표 9]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문9]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본 법의 시행이 종합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매우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다소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①+②	③다소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④매우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200)	8.5	20.5	29.0	49.0	15.5	64.5	6.5	100.0	2.8	0.8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5.0	19.0	24.0	48.0	20.0	68.0	8.0	100.0	2.9	0.8
농수축산화훼업	(100)	12.0	22.0	34.0	50.0	11.0	61.0	5.0	100.0	2.6	0.9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5.0	19.0	24.0	48.0	20.0	68.0	8.0	100.0	2.9	0.8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8.8	17.6	26.5	58.8	8.8	67.6	5.9	100.0	2.7	0.8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8.8	26.5	35.3	41.2	17.6	58.8	5.9	100.0	2.7	0.9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18.8	21.9	40.6	50.0	6.3	56.3	3.1	100.0	2.5	0.9
세부업종											
한식	(20)	10.0	20.0	30.0	50.0	15.0	65.0	5.0	100.0	2.7	0.9
중식	(20)	0.0	20.0	20.0	60.0	15.0	75.0	5.0	100.0	2.9	0.6
일식	(20)	0.0	20.0	20.0	35.0	35.0	70.0	10.0	100.0	3.2	0.8
서양식	(20)	10.0	10.0	20.0	55.0	10.0	65.0	15.0	100.0	2.8	0.8
음식점 기타	(20)	5.0	25.0	30.0	40.0	25.0	65.0	5.0	100.0	2.9	0.9
농업	(24)	8.3	20.8	29.2	54.2	8.3	62.5	8.3	100.0	2.7	0.8
축산업	(31)	12.9	19.4	32.3	51.6	12.9	64.5	3.2	100.0	2.7	0.9
수산업	(21)	9.5	33.3	42.9	38.1	9.5	47.6	9.5	100.0	2.5	0.8
화훼업	(24)	16.7	16.7	33.3	54.2	12.5	66.7	0.0	100.0	2.6	0.9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15.4	0.0	15.4	46.2	30.8	76.9	7.7	100.0	3.0	1.0
경기/인천	(38)	13.2	28.9	42.1	39.5	13.2	52.6	5.3	100.0	2.6	0.9
대전/세종/충북/충남	(31)	9.7	12.9	22.6	64.5	9.7	74.2	3.2	100.0	2.8	0.8
광주/전북/전남	(33)	6.1	30.3	36.4	45.5	15.2	60.6	3.0	100.0	2.7	0.8
대구/경북	(37)	5.4	13.5	18.9	48.6	18.9	67.6	13.5	100.0	2.9	0.8
부산/울산/경남	(40)	5.0	22.5	27.5	52.5	15.0	67.5	5.0	100.0	2.8	0.8
강원/제주	(8)	12.5	25.0	37.5	37.5	12.5	50.0	12.5	100.0	2.6	1.0
상권											
관광서 인근	(19)	5.3	15.8	21.1	36.8	36.8	73.7	5.3	100.0	3.1	0.9
대형오피스 밀집지	(4)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3.0	0.0
학교 주변	(15)	6.7	26.7	33.3	53.3	13.3	66.7	0.0	100.0	2.7	0.8
주택가	(44)	9.1	27.3	36.4	40.9	22.7	63.6	0.0	100.0	2.8	0.9
도시 변두리	(38)	7.9	23.7	31.6	47.4	10.5	57.9	10.5	100.0	2.7	0.8
대도시 교외	(2)	50.0	0.0	50.0	50.0	0.0	50.0	0.0	100.0	2.0	1.4
역세권	(8)	25.0	12.5	37.5	50.0	0.0	50.0	12.5	100.0	2.3	1.0
도심 유흥 변화가	(19)	5.3	5.3	10.5	57.9	15.8	73.7	15.8	100.0	3.0	0.7
농어촌	(26)	7.7	23.1	30.8	57.7	7.7	65.4	3.8	100.0	2.7	0.7
시장	(11)	9.1	27.3	36.4	45.5	0.0	45.5	18.2	100.0	2.4	0.7
기타	(14)	7.1	14.3	21.4	50.0	21.4	71.4	7.1	100.0	2.9	0.9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8.7	17.4	26.1	47.8	15.2	63.0	10.9	100.0	2.8	0.9
5천만원~1억원 미만	(45)	8.9	22.2	31.1	55.6	13.3	68.9	0.0	100.0	2.7	0.8
1억~5억원 미만	(42)	11.9	26.2	38.1	38.1	21.4	59.5	2.4	100.0	2.7	1.0
5억~10억원 미만	(21)	19.0	14.3	33.3	42.9	14.3	57.1	9.5	100.0	2.6	1.0
10억원 이상	(24)	0.0	16.7	16.7	70.8	12.5	83.3	0.0	100.0	3.0	0.6
잘 모르겠다	(22)	0.0	22.7	22.7	40.9	13.6	54.5	22.7	100.0	2.9	0.7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10.7	22.6	33.3	43.4	18.2	61.6	5.0	100.0	2.7	0.9
5인 이상 10인 미만	(21)	0.0	9.5	9.5	76.2	0.0	76.2	14.3	100.0	2.9	0.3
10인 이상	(20)	0.0	15.0	15.0	65.0	10.0	75.0	10.0	100.0	2.9	0.5

[표 10] 청탁금지법 시행이 공직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되는 정도

[문10]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의 부조리 관행이나 부패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②별로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①+②	③ 대체로 도움이 되고 있다	④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200)	9.0	30.0	39.0	40.5	18.5	59.0	2.0	100.0	2.7	0.9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4.0	25.0	29.0	46.0	21.0	67.0	4.0	100.0	2.9	0.8
농수축산화훼업	(100)	14.0	35.0	49.0	35.0	16.0	51.0	0.0	100.0	2.5	0.9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4.0	25.0	29.0	46.0	21.0	67.0	4.0	100.0	2.9	0.8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5.9	35.3	41.2	44.1	14.7	58.8	0.0	100.0	2.7	0.8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14.7	26.5	41.2	38.2	20.6	58.8	0.0	100.0	2.6	1.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21.9	43.8	65.6	21.9	12.5	34.4	0.0	100.0	2.3	1.0
세부업종											
한식	(20)	5.0	40.0	45.0	45.0	10.0	55.0	0.0	100.0	2.6	0.8
중식	(20)	5.0	20.0	25.0	55.0	20.0	75.0	0.0	100.0	2.9	0.8
일식	(20)	0.0	25.0	25.0	40.0	30.0	70.0	5.0	100.0	3.1	0.8
서양식	(20)	5.0	15.0	20.0	50.0	25.0	75.0	5.0	100.0	3.0	0.8
음식점 기타	(20)	5.0	25.0	30.0	40.0	20.0	60.0	10.0	100.0	2.8	0.9
농업	(24)	4.2	33.3	37.5	33.3	29.2	62.5	0.0	100.0	2.9	0.9
축산업	(31)	12.9	29.0	41.9	38.7	19.4	58.1	0.0	100.0	2.6	1.0
수산업	(21)	14.3	52.4	66.7	28.6	4.8	33.3	0.0	100.0	2.2	0.8
화훼업	(24)	25.0	29.2	54.2	37.5	8.3	45.8	0.0	100.0	2.3	1.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7.7	23.1	30.8	46.2	23.1	69.2	0.0	100.0	2.8	0.9
경기/인천	(38)	15.8	42.1	57.9	26.3	13.2	39.5	2.6	100.0	2.4	0.9
대전/세종/충북/충남	(31)	3.2	22.6	25.8	54.8	16.1	71.0	3.2	100.0	2.9	0.7
광주/전북/전남	(33)	9.1	24.2	33.3	42.4	24.2	66.7	0.0	100.0	2.8	0.9
대구/경북	(37)	10.8	24.3	35.1	45.9	18.9	64.9	0.0	100.0	2.7	0.9
부산/울산/경남	(40)	7.5	32.5	40.0	40.0	17.5	57.5	2.5	100.0	2.7	0.9
강원/제주	(8)	0.0	50.0	50.0	12.5	25.0	37.5	12.5	100.0	2.7	1.0
상권											
관광서 인근	(19)	10.5	26.3	36.8	31.6	31.6	63.2	0.0	100.0	2.8	1.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0.0	25.0	25.0	50.0	25.0	75.0	0.0	100.0	3.0	0.8
학교 주변	(15)	13.3	26.7	40.0	40.0	20.0	60.0	0.0	100.0	2.7	1.0
주택가	(44)	4.5	31.8	36.4	40.9	22.7	63.6	0.0	100.0	2.8	0.8
도시 변두리	(38)	10.5	34.2	44.7	42.1	10.5	52.6	2.6	100.0	2.5	0.8
대도시 교외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1.5	0.7
역세권	(8)	12.5	62.5	75.0	12.5	0.0	12.5	12.5	100.0	2.0	0.6
도심 유흥 변화가	(19)	10.5	10.5	21.1	52.6	21.1	73.7	5.3	100.0	2.9	0.9
농어촌	(26)	3.8	30.8	34.6	50.0	15.4	65.4	0.0	100.0	2.8	0.8
시장	(11)	18.2	36.4	54.5	18.2	18.2	36.4	9.1	100.0	2.4	1.1
기타	(14)	7.1	21.4	28.6	50.0	21.4	71.4	0.0	100.0	2.9	0.9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10.9	34.8	45.7	37.0	13.0	50.0	4.3	100.0	2.5	0.9
5천만원-1억원 미만	(45)	11.1	26.7	37.8	42.2	17.8	60.0	2.2	100.0	2.7	0.9
1억-5억원 미만	(42)	9.5	28.6	38.1	38.1	23.8	61.9	0.0	100.0	2.8	0.9
5억-10억원 미만	(21)	14.3	9.5	23.8	52.4	23.8	76.2	0.0	100.0	2.9	1.0
10억원 이상	(24)	4.2	41.7	45.8	37.5	16.7	54.2	0.0	100.0	2.7	0.8
잘 모르겠다	(22)	0.0	36.4	36.4	40.9	18.2	59.1	4.5	100.0	2.8	0.7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11.3	30.8	42.1	37.7	18.9	56.6	1.3	100.0	2.6	0.9
5인 이상 10인 미만	(21)	0.0	19.0	19.0	47.6	23.8	71.4	9.5	100.0	3.1	0.7
10인 이상	(20)	0.0	35.0	35.0	55.0	10.0	65.0	0.0	100.0	2.8	0.6

[표 11]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정도
 [문11] 귀하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명)	①전혀 지지 않는다	②별로 지지 않는다	①+②	③ 대체로 지지 하는 편이다	④매우 지지 한다	③+④	잘 모르 겠다	계	평균	표준 편차
▣ 전체 ▣	(200)	10.5	25.5	36.0	43.5	19.0	62.5	1.5	100.0	2.7	0.9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9.0	24.0	33.0	44.0	21.0	65.0	2.0	100.0	2.8	0.9
농수축산화훼업	(100)	12.0	27.0	39.0	43.0	17.0	60.0	1.0	100.0	2.7	0.9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9.0	24.0	33.0	44.0	21.0	65.0	2.0	100.0	2.8	0.9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8.8	23.5	32.4	44.1	20.6	64.7	2.9	100.0	2.8	0.9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17.6	17.6	35.3	47.1	17.6	64.7	0.0	100.0	2.6	1.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9.4	40.6	50.0	37.5	12.5	50.0	0.0	100.0	2.5	0.8
세부업종											
한식	(20)	20.0	20.0	40.0	45.0	15.0	60.0	0.0	100.0	2.5	1.0
중식	(20)	5.0	45.0	50.0	30.0	20.0	50.0	0.0	100.0	2.7	0.9
일식	(20)	0.0	25.0	25.0	45.0	30.0	75.0	0.0	100.0	3.1	0.8
서양식	(20)	10.0	20.0	30.0	50.0	20.0	70.0	0.0	100.0	2.8	0.9
음식점 기타	(20)	10.0	10.0	20.0	50.0	20.0	70.0	10.0	100.0	2.9	0.9
농업	(24)	12.5	33.3	45.8	41.7	12.5	54.2	0.0	100.0	2.5	0.9
축산업	(31)	9.7	19.4	29.0	45.2	25.8	71.0	0.0	100.0	2.9	0.9
수산업	(21)	4.8	42.9	47.6	42.9	9.5	52.4	0.0	100.0	2.6	0.7
화훼업	(24)	20.8	16.7	37.5	41.7	16.7	58.3	4.2	100.0	2.6	1.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0.0	23.1	23.1	38.5	30.8	69.2	7.7	100.0	3.1	0.8
경기/인천	(38)	15.8	28.9	44.7	39.5	13.2	52.6	2.6	100.0	2.5	0.9
대전/세종/충북/충남	(31)	3.2	22.6	25.8	51.6	22.6	74.2	0.0	100.0	2.9	0.8
광주/전북/전남	(33)	15.2	21.2	36.4	36.4	27.3	63.6	0.0	100.0	2.8	1.0
대구/경북	(37)	10.8	35.1	45.9	45.9	8.1	54.1	0.0	100.0	2.5	0.8
부산/울산/경남	(40)	7.5	22.5	30.0	47.5	22.5	70.0	0.0	100.0	2.9	0.9
강원/제주	(8)	25.0	12.5	37.5	37.5	12.5	50.0	12.5	100.0	2.4	1.1
상권											
관광서 인근	(19)	15.8	15.8	31.6	36.8	31.6	68.4	0.0	100.0	2.8	1.1
대형오피스 밀집지	(4)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2.5	0.6
학교 주변	(15)	13.3	33.3	46.7	13.3	40.0	53.3	0.0	100.0	2.8	1.1
주택가	(44)	11.4	25.0	36.4	43.2	20.5	63.6	0.0	100.0	2.7	0.9
도시 번두리	(38)	5.3	34.2	39.5	42.1	15.8	57.9	2.6	100.0	2.7	0.8
대도시 교외	(2)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2.5	0.7
역세권	(8)	25.0	37.5	62.5	37.5	0.0	37.5	0.0	100.0	2.1	0.8
도심 유흥 변화가	(19)	10.5	10.5	21.1	63.2	15.8	78.9	0.0	100.0	2.8	0.8
농어촌	(26)	11.5	23.1	34.6	53.8	11.5	65.4	0.0	100.0	2.7	0.8
시장	(11)	18.2	18.2	36.4	36.4	9.1	45.5	18.2	100.0	2.4	1.0
기타	(14)	0.0	21.4	21.4	50.0	28.6	78.6	0.0	100.0	3.1	0.7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15.2	28.3	43.5	37.0	15.2	52.2	4.3	100.0	2.5	1.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11.1	28.9	40.0	46.7	13.3	60.0	0.0	100.0	2.6	0.9
1억-5억원 미만	(42)	14.3	19.0	33.3	38.1	28.6	66.7	0.0	100.0	2.8	1.0
5억-10억원 미만	(21)	9.5	28.6	38.1	42.9	19.0	61.9	0.0	100.0	2.7	0.9
10억원 이상	(24)	4.2	20.8	25.0	50.0	25.0	75.0	0.0	100.0	3.0	0.8
잘 모르겠다	(22)	0.0	27.3	27.3	54.5	13.6	68.2	4.5	100.0	2.9	0.7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12.6	28.3	40.9	39.0	18.9	57.9	1.3	100.0	2.6	0.9
5인 이상 10인 미만	(21)	0.0	14.3	14.3	61.9	19.0	81.0	4.8	100.0	3.1	0.6
10인 이상	(20)	5.0	15.0	20.0	60.0	20.0	80.0	0.0	100.0	3.0	0.8

[표 12]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순위

[문12]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순위)

(단위 : %)

	사례 수 (명)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200)	24.5	24.0	22.5	22.0	7.0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19.0	27.0	26.0	26.0	2.0	100.0
농수축산화훼업	(100)	30.0	21.0	19.0	18.0	12.0	100.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19.0	27.0	26.0	26.0	2.0	10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32.4	17.6	17.6	20.6	11.8	100.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32.4	14.7	20.6	23.5	8.8	100.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25.0	31.3	18.8	9.4	15.6	100.0
세부업종							
한식	(20)	15.0	20.0	25.0	40.0	0.0	100.0
중식	(20)	10.0	45.0	30.0	15.0	0.0	100.0
일식	(20)	20.0	25.0	30.0	25.0	0.0	100.0
서양식	(20)	20.0	10.0	20.0	45.0	5.0	100.0
음식점 기타	(20)	30.0	35.0	25.0	5.0	5.0	100.0
농업	(24)	16.7	29.2	20.8	12.5	20.8	100.0
축산업	(31)	38.7	12.9	25.8	9.7	12.9	100.0
수산업	(21)	28.6	33.3	14.3	19.0	4.8	100.0
화훼업	(24)	33.3	12.5	12.5	33.3	8.3	100.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15.4	30.8	7.7	46.2	0.0	100.0
경기/인천	(38)	26.3	23.7	31.6	10.5	7.9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31)	16.1	19.4	32.3	29.0	3.2	100.0
광주/전북/전남	(33)	30.3	24.2	21.2	18.2	6.1	100.0
대구/경북	(37)	16.2	29.7	27.0	16.2	10.8	100.0
부산/울산/경남	(40)	35.0	20.0	12.5	25.0	7.5	100.0
강원/제주	(8)	25.0	25.0	0.0	37.5	12.5	100.0
상권							
관공서 인근	(19)	26.3	26.3	21.1	26.3	0.0	100.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25.0	0.0	0.0	75.0	0.0	100.0
학교 주변	(15)	33.3	26.7	0.0	26.7	13.3	100.0
주택가	(44)	25.0	25.0	25.0	20.5	4.5	100.0
도시 변두리	(38)	31.6	18.4	18.4	26.3	5.3	100.0
대도시 교외	(2)	0.0	50.0	0.0	50.0	0.0	100.0
역세권	(8)	25.0	12.5	25.0	37.5	0.0	100.0
도심 유흥 변화가	(19)	47.4	10.5	36.8	5.3	0.0	100.0
농어촌	(26)	7.7	34.6	23.1	23.1	11.5	100.0
시장	(11)	9.1	27.3	36.4	9.1	18.2	100.0
기타	(14)	7.1	35.7	28.6	7.1	21.4	100.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23.9	26.1	19.6	26.1	4.3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45)	11.1	35.6	24.4	17.8	11.1	100.0
1억-5억원 미만	(42)	28.6	21.4	21.4	23.8	4.8	100.0
5억-10억원 미만	(21)	33.3	14.3	28.6	14.3	9.5	100.0
10억원 이상	(24)	33.3	16.7	25.0	20.8	4.2	100.0
잘 모르겠다	(22)	27.3	18.2	18.2	27.3	9.1	100.0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24.5	23.9	22.0	21.4	8.2	100.0
5인 이상 10인 미만	(21)	28.6	28.6	19.0	23.8	0.0	100.0
10인 이상	(20)	20.0	20.0	30.0	25.0	5.0	100.0

[표 12_1]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2순위

[문12]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2순위)

(단위 : %)

	사례 수 (명)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잘 모르겠다	계
■ 전체 ■	(170)	35.9	32.9	19.4	11.2	0.6	100.0
업종 (1)							
일반음식업	(92)	31.5	31.5	22.8	14.1	0.0	100.0
농수축산화훼업	(78)	41.0	34.6	15.4	7.7	1.3	100.0
업종 (2)							
일반음식업	(92)	31.5	31.5	22.8	14.1	0.0	100.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27)	40.7	40.7	11.1	3.7	3.7	100.0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25)	52.0	28.0	12.0	8.0	0.0	100.0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26)	30.8	34.6	23.1	11.5	0.0	100.0
세부업종							
한식	(19)	26.3	15.8	31.6	26.3	0.0	100.0
중식	(19)	42.1	15.8	26.3	15.8	0.0	100.0
일식	(18)	38.9	27.8	22.2	11.1	0.0	100.0
서양식	(17)	29.4	41.2	17.6	11.8	0.0	100.0
음식점 기타	(19)	21.1	57.9	15.8	5.3	0.0	100.0
농업	(18)	38.9	33.3	22.2	5.6	0.0	100.0
축산업	(25)	52.0	28.0	16.0	4.0	0.0	100.0
수산업	(18)	44.4	33.3	11.1	5.6	5.6	100.0
화훼업	(17)	23.5	47.1	11.8	17.6	0.0	100.0
사업체 소재지							
서울	(11)	18.2	54.5	9.1	18.2	0.0	100.0
경기/인천	(31)	45.2	19.4	29.0	6.5	0.0	100.0
대전/세종/충북/충남	(27)	33.3	37.0	18.5	11.1	0.0	100.0
광주/전북/전남	(30)	33.3	33.3	20.0	13.3	0.0	100.0
대구/경북	(30)	33.3	30.0	26.7	10.0	0.0	100.0
부산/울산/경남	(35)	40.0	40.0	5.7	11.4	2.9	100.0
강원/제주	(6)	33.3	16.7	33.3	16.7	0.0	100.0
상권							
관공서 인근	(17)	41.2	29.4	17.6	11.8	0.0	100.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25.0	0.0	25.0	50.0	0.0	100.0
학교 주변	(11)	18.2	54.5	18.2	9.1	0.0	100.0
주택가	(41)	19.5	41.5	29.3	9.8	0.0	100.0
도시 변두리	(32)	46.9	28.1	12.5	12.5	0.0	100.0
대도시 교외	(1)	100.0	0.0	0.0	0.0	0.0	100.0
역세권	(7)	42.9	28.6	14.3	14.3	0.0	100.0
도심 유흥 변화가	(17)	41.2	47.1	11.8	0.0	0.0	100.0
농어촌	(21)	47.6	28.6	9.5	9.5	4.8	100.0
시장	(8)	50.0	12.5	25.0	12.5	0.0	100.0
기타	(11)	27.3	18.2	36.4	18.2	0.0	100.0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0)	37.5	30.0	20.0	12.5	0.0	100.0
5천만원~1억원 미만	(36)	36.1	30.6	19.4	13.9	0.0	100.0
1억~5억원 미만	(36)	27.8	36.1	22.2	13.9	0.0	100.0
5억~10억원 미만	(18)	38.9	33.3	22.2	0.0	5.6	100.0
10억원 이상	(20)	60.0	20.0	15.0	5.0	0.0	100.0
잘 모르겠다	(20)	20.0	50.0	15.0	15.0	0.0	100.0
종사자 수							
5인 미만	(132)	35.6	31.8	17.4	14.4	0.8	100.0
5인 이상 10인 미만	(19)	36.8	42.1	21.1	0.0	0.0	100.0
10인 이상	(19)	36.8	31.6	31.6	0.0	0.0	100.0

[표 12_2] 청탁금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_1+2순위(중복응답)

[문12] 귀하께서는 청탁금지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1+2순위)

(단위 : %)

	사례수 (명)	부정청탁 등을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선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강화	잘 모르겠다
■ 전체 ■	(200)	52.5	50.5	41.0	33.5	7.5
업종 (1)						
일반음식업	(100)	55.0	55.0	40.0	40.0	2.0
농수축산화훼업	(100)	50.0	46.0	42.0	27.0	13.0
업종 (2)						
일반음식업	(100)	55.0	55.0	40.0	40.0	2.0
농수축산화훼 생산업	(34)	52.9	50.0	41.2	20.6	14.7
농수축산화훼 도매업	(34)	61.8	41.2	41.2	20.6	8.8
농수축산화훼 소매업	(32)	34.4	46.9	43.8	40.6	15.6
세부업종						
한식	(20)	65.0	40.0	45.0	45.0	0.0
중식	(20)	55.0	45.0	35.0	60.0	0.0
일식	(20)	60.0	55.0	40.0	35.0	0.0
서양식	(20)	70.0	55.0	35.0	20.0	5.0
음식점 기타	(20)	25.0	80.0	45.0	40.0	5.0
농업	(24)	41.7	45.8	33.3	33.3	20.8
축산업	(31)	51.6	48.4	51.6	16.1	12.9
수산업	(21)	57.1	42.9	38.1	38.1	9.5
화훼업	(24)	50.0	45.8	41.7	25.0	8.3
사업체 소재지						
서울	(13)	61.5	53.8	23.1	46.2	0.0
경기/인천	(38)	47.4	47.4	50.0	28.9	7.9
대전/세종/충북/충남	(31)	58.1	64.5	32.3	29.0	3.2
광주/전북/전남	(33)	48.5	51.5	48.5	36.4	6.1
대구/경북	(37)	43.2	51.4	37.8	37.8	10.8
부산/울산/경남	(40)	60.0	47.5	40.0	30.0	10.0
강원/제주	(8)	62.5	12.5	50.0	37.5	12.5
상권						
관공서 인근	(19)	63.2	47.4	42.1	36.8	0.0
대형오피스 밀집지	(4)	100.0	0.0	50.0	50.0	0.0
학교 주변	(15)	40.0	40.0	46.7	33.3	13.3
주택가	(44)	38.6	63.6	52.3	34.1	4.5
도시 번두리	(38)	65.8	42.1	42.1	28.9	5.3
대도시 교외	(2)	100.0	0.0	0.0	50.0	0.0
역세권	(8)	75.0	50.0	37.5	25.0	0.0
도심 유흥 변화가	(19)	42.1	78.9	57.9	10.5	0.0
농어촌	(26)	61.5	46.2	15.4	42.3	15.4
시장	(11)	45.5	45.5	27.3	36.4	18.2
기타	(14)	28.6	42.9	35.7	50.0	21.4
매출액						
5천만원 미만	(46)	58.7	45.7	41.3	37.0	4.3
5천만원~1억원 미만	(45)	46.7	48.9	26.7	46.7	11.1
1억~5억원 미만	(42)	47.6	52.4	47.6	33.3	4.8
5억~10억원 미만	(21)	47.6	57.1	52.4	14.3	14.3
10억원 이상	(24)	70.8	41.7	45.8	20.8	4.2
잘 모르겠다	(22)	45.5	63.6	40.9	31.8	9.1
종사자 수						
5인 미만	(159)	50.9	48.4	39.0	35.8	8.8
5인 이상 10인 미만	(21)	57.1	57.1	47.6	28.6	0.0
10인 이상	(20)	60.0	60.0	50.0	20.0	5.0